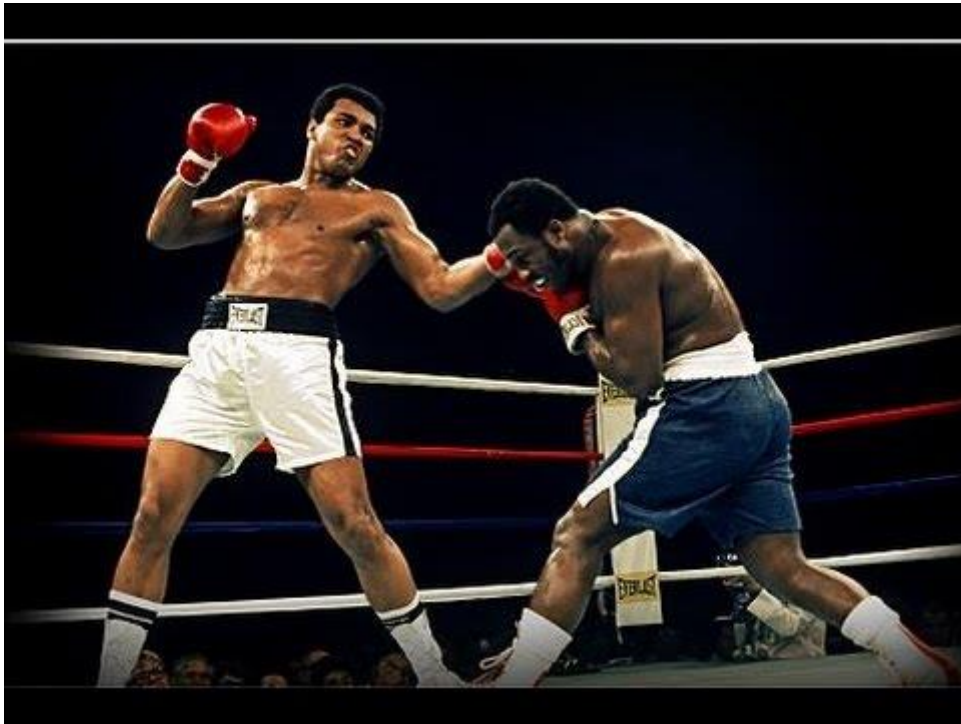


정보기관과 경찰의 은밀한 자살강요 민간인 제거 수법

공.개.사.찰

**(Overt Surveillance
a.k.a. Organized Stalking)**



아직 냉랭한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1971년 3월 8일 초봄의 저녁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세기의 대결'이라 불리는 '무하마드 알리(Muhammad Ali)'와 '조 프레이저(Joe Frazier)'의 헤비급 권투 경기가 열리고 있었다. 서로 진정한 헤비급 챔피언이라 주장하며 패배를 모르던 두 선수의 격돌은 전세계 35개국에 중계가 될 정도로 미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이 경기에 빠져 있을 같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 미디어 시에서는 자칭 시민 위원회 일원이라고 밝힌 자들이 직원 2명만 근무하는 FBI의 작은 사무실에 쇠지레를 들고 몰래 잠입해 1,000건이 넘는 문서를 탈취해 유유히 사라진다.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한 2명의 요원들에 의해 캐비닛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보름 가량 지난 후 수년간의 민간인 불법도청 및 사찰, 거짓 흑색선전을 통한 여론조작, 무기한의 공개감시(Overt surveillance)와 스토킹 수법으로 부패 기득권 저항 세력 자살 강요, 중상모략을 통한 사회적 고립, 블랙리스트 등재에 의한 경제적 능력 박탈, 무단침입, 범죄 혐의 뒤집어 씌우기 등의 온갖 추잡한 방법으로 인권 운동가, 양심적 비평가, 일반 민간인들을 제거하려던 음모의 실체가 담긴 문서들이 각 언론사에 발신자 없이 발송된다. 당시 법무장관 존 미첼(John N. Mitchell)은 여러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으면 보도하지 말라는 압력을 각 언론사에 넣는다.

하지만 1971년 3월 24일 벤 브래들리(Ben Bradlee)가 편집장으로 있던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가 갖가지 협박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최초로 FBI의 온갖 범죄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폭로하게 된다. 극우세력을 옹호하지 않는 민간인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증거없이 살인 및 제거하려던 작전 'Counterintelligence Program', 줄여서 **COINTELPRO**라고 이름 붙여진 이 불법작전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자국민을 테러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고 상원의원 프랭크 처치(Frank Church)에 의해 진상조사 위원회까지 출범을 하게 된다. 놀랍게도 그 작전의 타도대상은 준법시민, 양심적 비평가, 인권 운동가, 전쟁 반대론자, 폭력 사용 반대론자, 평화주의자, 범죄와는 거리가 먼 힘없는 민간인들이었다.

제거대상으로 지목된 자들에겐 무기한의 도청과 전자장비에 의한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졌으며 흑색선전과 중상

모락을 통해 주변인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고,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위해 동독 비밀경찰 슈타



지가 썼던 스토킹 기법까지 동원했으며 경제능력 또한 상실하게 만들었다. 어떤 증거도 안남기기 위한 각종 심리전법이 동원되었으며 피해자들은 계속되는 흥분 상태나 극도의 경계태세로 내몰려 정신과적 문제까지 유발되도록 했다. 이 수법의 피해자로 드러난 사람 중 한명으로는 영화배우 '진 시버그(Jean Seberg)'가 있는데 그녀는 인권운동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FBI에 의해 수년간 불법도청, 무단침입, 중상모략, 흑색선전, 스토킹, 24시간 공개 감시를 당하게 된다. 임신 상태에서도 극도의 불안을 유발하는 심리전법이 계속 사용되어 그녀는 결국 유산을 하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파리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나중에 FBI가 가담해 테러리스트나 적을 무력화시킬 때 사용하는 심리전법을 사용해 그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기사가 L.A Times 지를 통해 나가게 되며 미 전역이 시끄러워지게 된다.

만약 이 문서 탈취가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불법적인 작전의 실체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자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살았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COINTELPRO** 작전 수법을 이용한 민간인 제거 작업이 정보기관과 경찰에 의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유럽에서는 이 수법이 GLADIO / Stay Behind Army란 작전명으로 1950~90년대까지 실시되었다. 한국의 정확한 작전명이 밝혀지지 않은 현재, 피해자들은 이 수법을 '조직스토킹(Organized Stalking)'이란 용어로 부르는데 위장 피해자들의 정신병자 같은 증언들 때문에 이 단어는 조현병 환자의 피해 망상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대중들의 관심도 비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수법의 피해자란 것을 인지한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온갖 허위정보와 역정보 속에서 이 수법의 실체조차 가늠하기 힘들어 할 것이다. 한국에서 개발된 수법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자료는 외국의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의 내용도 <https://fightgangstalking.com/> 에 올라온 자료들을 대부분 번역한 것으로 사이트의 저자는 미국 군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민간 정보업체로 옮겨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직스토킹의 피해자이다. 이 책의 2,3,5 장을 제외하고는 주로 그의 사이트에 있는 정보이다. 2장 스토커의 고백은 Kilde 박사 교본을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번역해준 Eric T. Karlstrom 박사가 올려놓은 자료이다. 3장에 있는 스토커 교본은 핀란드 북부지역 의료센터 원장이었던 Rauni-Leena Luukanen Kilde 박사가 입수한 기밀정보로 피해자라면 상당히 공감할 수법이 꽤나 상세히 나와 있다. 그녀는 이 수법을 세상에 밝히고 스토킹 피해자가 되어 2015년 2월 9일 사망했다. 2019년 4월 22일 MBC 에서 방송된 '스트레이트' 버닝썬 피해자 김상교씨 편을 보면 그의 주변을 공개 감시(Overt surveillance) 수법으로 맴도는 순찰차를 볼 수 있다. 5장 '경찰스토킹 개론'은 '노르웨이 국제정세 연구소(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연구원이자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Reidar Visser 박사가 기고한 글로 조직스토킹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막연한 피해망상적 추측이 아닌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다룬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되어 번역하여 올려놓았다. 피해자라면 이 작전의 교활하고도 불법적인 실체가 한국에서도 하루 빨리 드러나 가담자 모두 사법처리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피해자들의 올바른 정보 취득과 대처 방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판지일보에 서식 중인 햇빛마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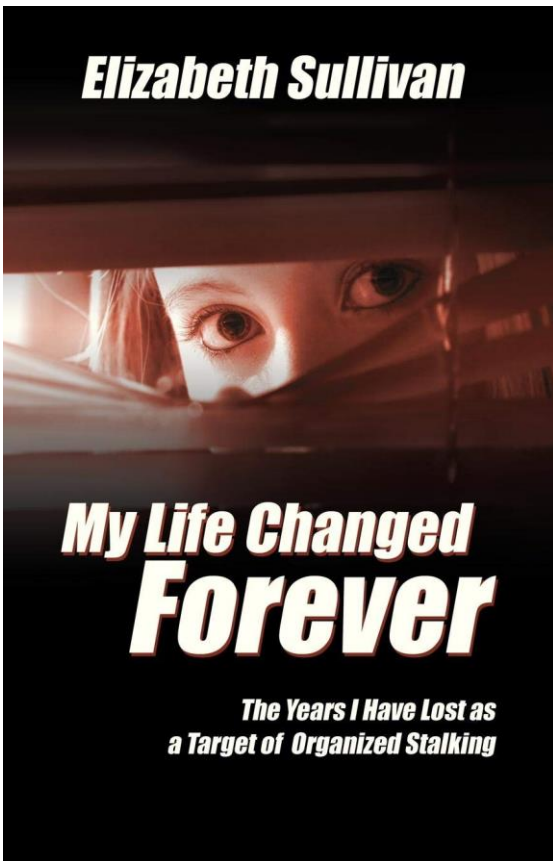
목 차

들어가는 말	1
1. 요약	5
- 조직스토킹이란	
- 목적	
- 기원	
- 전술	
- 은폐를 위한 교란작전	
- 배후 조직체계	
- 대상자 선정	
- 언론보도	
- 기타	
2. 조직스토커의 고백	13
3. 조직스토커 지침 교본(Rauni-Leena Luukanen Kilde 박사)	24
4. 입문	36
- 정의	
- 파괴	
-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	
- 완화된 수사요건	
- 정부 작전의 사적 이용	
- 민간 조직에 의해 일어난다는 주장	
- 경찰국가의 출현	
- 민간인 사찰: 민간 계약직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 미국의 권력: 숨은 권력(Deep State)에 대한 분석	
- 조직 체계	
5. 경찰스토킹 개론 (Reidar Visser 박사)	55
6. 정보기관과 경찰에 의한 범죄	62
7. 정보기관과 경찰에 대한 감시	69
8. 언론 보도	73
9. 역사적 기원	84
- Cointelpro	
- MKUltra	
- Red Squads	
- Stasi	
10. 시행국가	102
11. 가해방법	104
12. 집단 따돌림과 폭력사건	118

13. 대상자 선정.....	128
14. 조직체계.....	136
15. 허위사실 유포 교란작전.....	143
16. 진실을 둘러싼 침묵의 벽.....	152
17. 대응책.....	159
- 종합전술	
- 첩보기술	
- 가해자 대응	
- 가해자 공개	
- 국가적 공개	
18. 경찰스토킹 개론 원문(An Introduction to Police Stalking).....	182

1. 요약

1. 조직스토킹(Organized stalking)이란?



폭력도 개인간에 가해지는 폭력이 있고 조직에 의한 폭력이 있듯이 스토킹도 개인 간의 스토킹이 있고 조직이나 집단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토킹이 있다.

조직스토킹은 집요한 구애 행위와는 전혀 다른 정보기관이나 부패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조직, 집단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를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사찰하고 괴롭혀 한 인간의 삶과 생명을 말살, 파괴하려는 '비접촉 고문행위'를 말한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서 권력을 오남용해 무분별한 감금과 육체적인 고문을 가하던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고 원색적이라는 판단이 들자 공공연한 스토킹과 정신적인 고문을 가해 기득권의 심기를 건드린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대부분 전술이 피해자가 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아주 어렵게 만든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범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는 정신적 학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거센 저항이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첩활동을 하는 연방요원이나 국내 첩보요원, 전직 정보요원이나 경찰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보안업체나 자경단, 유사 정부 협회인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 (LEIU)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흑색선전, 음해, 블랙리스트 등재, 주거 무단침입, 해킹, 공갈 협박, 소유물 훼손, 소음 테러 등의 여러 가지 위협이 가해지며 구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Stasi)에서는 대상자에게 행해지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의 과정을 Zersetzung(분열, 침식)이라고 일컬었으며 미국, 영국에서는 법적인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는 '손 안대는 고문(no-touch torture)'이라고도 표현했다. (<https://www.nytimes.com/books/first/k/koehler-stasi.html>)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는 뉴스나 피해자 사례를 종합해 보면 현 정보기관 요원 뿐만 아니라 과거 정보기관 요원이나 부패한 형사, 경찰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 방지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있지만 헌법과 윤리에 반하는 행위들로 가득 차 있다. 미국에서도 가해자들 대부분은 권한을 남용하는 FBI, 대테러부대 요원, 연방/지방경찰, 보안 관계자,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IA, NSA 요원들이다.

2. 목적

막대한 자본을 들여 이렇게 하는 목적은 부패한 권력이나 기득권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전 요소를 제거하고 주변 사회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해 부패한 극우 보수권력기반을 강화 시키고 새로운 심리전 기법을 시험하여 심리전 조직의 개선과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3. 기원

과거 공산국가였던 동독에서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밀경찰 슈타지(Stasi)에 의해 고안되어 행해졌고 현재는 여러 국가에서 내부고발자, 부패한 권력 및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자, 노조원, 실험 대상이 될 만한 사회적 교류가 없는 약자 등을 상대로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다.



공식 문서로 가장 상세하게 나와있는 것은 에드가 후버(Edgar Hoover)가 1956~1971까지 지휘한 FBI의 방첩작전 COINTELPRO (Counter-Intelligence Programs)로 운동권 인사들이 문서를 탈취해 언론에 공개 한 것이 있다. COINTELPRO의 공식 목표는 대상 개인이나 단체를 '폭로, 분열, 오도, 불신, 무력화'시켜 자멸로의 유도이다.

4. 전술

미 상원의원 Frank Church의 주도로 실시한 COINTELPRO 조사에 의하면 심리적 압박을 위한 공공연한 사찰 (Overt surveillance), 전자장비를 이용한 24시간 감시, 중상모략, 블랙리스트 등재와 각종 심리전의 방법 등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증거만 간직한 채 체계적으로 고립되며 본인의 이성과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고문을 당하게 된다.



법적인 증거로 쉽게 확보되지 않을 방법들 - 이웃에 의해 발생하는 끊이지 않는 자동차 크랙션 같은 소음, 본인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비하발언, 낯선 사람에 의한 본인만 알아차릴 수 있는 열등감과 은밀한 비밀을 상징하는 말과 행위 등 - 이 장기적으로 동원되어 피해자가 아주 싫어하고 예민해 하는 부분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해자를 바꿔가며 고문 아닌 고문을 가하게 된다.

가담하는 공범자들 - 가해요원들은 대상자가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고, 알고 보면 상종 못 할 인간 쓰레기이며 감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평범한 이웃들, 직장 동료, 친구나 친척들을 이간질 및 설득하여 양심의 거리낌 없이 피해자를 가해하도록 한다. 동원되는 심리전법은 나중에 부연설명 하겠지만 위협, 중상모략, 협박전화, 해킹, 소음테러, 조직 내에서 따돌림 등이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해 방식은 물증을 거의 안 남기지만 교본을 보고 따르는 듯한 일정한 형식이 있다고 한다.

5. 은폐를 위한 교란작전

조직스토킹이 언론에 보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수법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이 작전을 은폐하기 위한 교란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피해자 증언과 진술을 보면 악마나 UFO, 외계인, 집 위의 인공 위성 감시, 휴거 등과 관련 있다며 조직스토킹의 모든 피해자들이 정신병자로 매도될 수 밖에 없도록 교란 작전을 펴는데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장 피해자들이 개설한 카페나 블로그들은 피해 내용을 주장하고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을 유도하는 그릇된 정보로 정신병자 흉내를 낸다. 미국의 경우 조직스토킹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FFCHS (Freedom From Covert Harassment and Surveillance)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역시 정보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위장 단체다. 실제 피해자들은 심리적인 충격과 위축 상태로 인해 그럴듯한 카페 운영이나 블로그 운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실제 피해자의 블로그나 카페는 계속되는 검열과 조작, 삭제로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6. 배후 조직체계



Ted L. Gunderson은 COINTELPRO시대에 FBI 고위 관료를 지낸 인물로 기관에서 은퇴 후 "80년대의 COINTELPRO 작전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 다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조직스토킹이 시행되려면 여러 군데 연방기관과 정부기관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고 한다.

9/11 이후 국내 안보기관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 연방 정보기관은 광범위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거대한 보안산업계, 연방 정보기관들(사무실을 공개하지 않는 16개 정보기관 포함), 수백 개의 지역 경찰 부서, LEIUs 등이 관여하고 있어 정확히 어떤 체계로 작전이 시행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기업형 민간사찰 보고서나 경찰과 연방요원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조직스토킹은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개인적 보복차원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감시 업무를 수행할 직원 모집 공고 등이 자주 올라 오는 것을 보면 연방 정보기관에서는 방첩 작전 수행 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을 외주 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6월 10일 USA Today 기사에 의하면 1백4십만명 가량의 미국인이 기밀 업무에 종사한다고 밝힌다.

[\(http://www.usatoday.com/story/news/2013/06/09/government-security-clearance/2406243/\)](http://www.usatoday.com/story/news/2013/06/09/government-security-clearance/2406243/)

법 집행기관은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상당수의 정보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밀고자나 꼬나풀들이 조직스토킹 가담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전과자들이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가해자들의 인상착의도 길거리 건달 같다는 점도 이런 추측을 더욱 신빙성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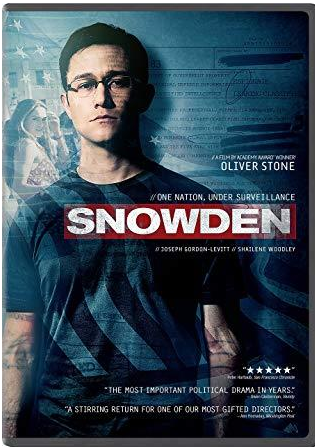
COINTELPRO가 처음 시행될 때도 Robert F. Kennedy 법무장관(U.S. Attorney General Robert F. Kennedy)의 승인이 있었듯이 조직스토킹의 정확한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방첩작전(Counterintelligence program)은 최소한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DOJ)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7. 대상자 선정

기득권과 의견이 다른 자나 내부고발자(혹은 그런 성향을 띄는 사람)같은 민간인이 대부분이며 실험 대상이나 훈련 목적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20년간 CIA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하는 MKUltra 프로그램을 실행한 적이 있다.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보요원과 관계된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수년간 시달려 왔다는 사람도 있다. 2012년 4월 USA Today에서는 기자와 편집장이 정보기관 하도급 업체를 조사 보도했다는 이유로 이 기관으로부터 음해 협박당했다는 보도를 낸다. 2013년 8월엔 NSA(National Security Agency)요원들이 배우자나 연인의 뒤를 캐기 위해 사찰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8. 언론보도

NSA(National Security Agency)가 2013, 2014년에 행한 대규모 민간인 사찰이 에드워드 스노든 (Edward



Snowden)에 의해 폭로되었는데 사회적으로 비교적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최첨단 감시 장비로 더욱 교묘하게 과거 FBI의 COINTELPRO 작전과 유사한 일이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과거 십 수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폴리처 상 수상자이며 CIA에서 분석가로 활동하며 미국 첩보 역사에 일가견 있는 소설가이자 역사학자인 George O'Toole은 'Penthouse' 1976년 12월호에서 "America's Secret Police Network."란 제목으로 은밀한 조직인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 (LEIU)의 존재를 폭로한다. "LEIU는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상호 자료 교환, 상반되는 기준으로 수사까지 행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에 속한 여러 곳의 경찰청이 최근 일반 시민들을 불법도청, 무단침입, 사찰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LEIU는 실질적으로 거

대한 민간 국내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다" 라고 밝힌다.

1979년 4월에 발간된 뉴욕 타임즈에서는 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에서 3년 반 동안 LEIU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LEIU는 개인 및 단체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적으로 사찰해왔고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법의 절차, 사생활 보호 같은 헌법적 권리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해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http://query.nytimes.com/mem/archive-free/pdf?res=9D00E5DA1638E432A25754C1A9629C946890D6CF>



1979년 9월 L. A Times에서는 'Jean Seberg에 관련된 거짓말을 시인하다'란 제하로 성공한 여배우이자 인권 운동가였던 Jean Seberg가 한달 전 파리에서 자살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FBI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 FBI가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그녀를 음해했으며 방첩작전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전술로 썼던 불법도청, 공공연한 스토킹(overt stalking)을 그에게도 가해왔었다는 것이다.

<http://latimesblogs.latimes.com/thedailymirror/2009/03/the-jean-seberg.html>

8-90년대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SWAT(Special Weapons and Tactics)팀 창설 같은 경찰의 군대화 움직임이 있었다. 이 동안 방첩작전과 관련된 뉴스는 비교적 줄어들었는데 불법 사찰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에 출간된 'L.A. Secret Police'란 책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이 시기에 L.A 언론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Daryl Gates 경찰청장(1978~1992)이 시의회 의원들을 협박하고 언론에서 조사하지 못하도록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에 의하면 "L.A 경찰의 부패는 현금 봉투를 주고 받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경찰 권한의 총체적 부패에 있다. 수십 년간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자, 유력인사, 경찰청장이 관심있는 누구나가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기 연방 요원에 의한 조직 스토킹의 희생자로 암 연구학자인 아놀드 락신(Arnold Lockshin)을 들 수 있다. 그는 1986년 가족들을 데리고 소련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그 해 10월 Gadsen Times와 다른 신문들에 의해 그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락신과 그의 부인의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으로 인해 그들 가족은 집요한 스토킹, 음해, 도청, 감청, 사찰, 무단침입, 전화 협박 같은 조직스토킹 수법에 시달렸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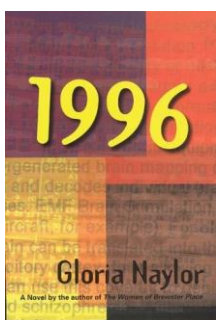
<http://news.google.com/newspapers?nid=1891&dat=19861011&id=b7UfAAAAIBAJ&sjid=VtcEAAAAIBAJ&pg=3007,2092042>

민간인 사찰에 대한 미국과 서방국가의 언론보도는 9/11 이후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 PBS 시사 프로그램 NOW 와 뉴스위크는 펜타곤에서 은밀히 국내 사찰 활동을 재개했는데 예전 방첩작전 Cointelpro 방식을 쓰는 것 같다는 보도를 했다. 미군에 의한 민간 사찰은 1970년대 중반 국회에 의해 처치위원회(Church Committee-Frank Church 상원의원이 주도) 조사로 까지 이어졌던 사건이 유명하다.

<http://www.pbs.org/now/politics/cointelpro.html>

2004년 10월 영국 'The Sunday Times'는 한 내부고발자를 MI5가 미정보기관과 연합해 슈타지 타입(Stasi-type)의 심리전법으로 처단한 기사를 보도했다. <http://www.thesundaytimes.co.uk/sto/news/article241256.ece#>



2005년 10월에 미국 'National Book Award' 수상자인 Gloria Naylor가 그녀의 자서전적인 저서에서 1996년 NSA 요원의 가족과 말싸움을 벌인 뒤 조직스토킹의 피해자가 된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2016년 사망) <http://www.amazon.com/1996-Gloria-Naylor/dp/0883782782>

<http://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5168026>

2006년 5월 캐나다 신문인 The Globe and Mail 은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CSIS) 와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에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테러 용의자에게 조직

스토킹 기법인 "확산과 파괴" 전술을 이용했다고 보도한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lacking-a-case-csisdisrupted-suspects-lives/article709568/\)](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lacking-a-case-csisdisrupted-suspects-lives/article709568/)

2007년 1월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Magazine)에서 군사정책과 무기 체계에 능통한 한 언론인은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며 미 정부에 의해 대상으로 선정된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 있다는 보도를 낸 적이 있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1/10/AR2007011001399.html>

2008년 6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간지인 The Nation에서 Jeremy Scahill이 쓴 기사에 의하면 전직 CIA 정보관인 Melvin Goodman은 정보보안 분야의 민간 계약직원들 대부분의 책임감 부재와 업계 전반의 통제불능 상태에 대한 우려를 보인다고 하였다.

<http://www.thenation.com/article/blackwaters-private-spies>

매일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정치 사이트인 Daily Kos에서는 2010년 10월 영, 미, 캐나다 정보기관이 동독의 조직스토킹 기법을 개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dailykos.com/story/2010/10/12/909826/-ZERZETSEN-TORTURE-Spooks-Lies-and-Threats>

2011년 1월 캘리포니아 지역 방송뉴스(KION 채널46번 KCBA 채널 35)에서 산타크루즈 지방 경찰청의 Larry Richard 경위와 기자가 조직 스토킹에 대해 보도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DB-MlhPmXqk>

2011년 2월 가디언(Guardian)지에서 James Ridgeway 기자가 쓴 '기업형 사찰의 더러운 역사'라는 기사를 보면 기업에서 사설 업체와 결탁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설명한다. "사설 탐정업체는 원하는 기업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연방/지역경찰에서도 인원을 모집한다. 이들 중 일부는 사설업체에서 퇴직을 맞이하기도 한다. 사설정보업체는 법에 있는 보호장치를 따돌리는 경찰에 준하는 체계에까지 다 달았는데 기업형 사찰 산업은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결국엔 금지되어야 한다."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cifamerica/2011/feb/15/activism-protest>

2011년 8월 The Record 지와 3번 채널 KCRA 방송에 캘리포니아의 Stockton 시 행정 담당관이 경찰에게 유리한 계약 협상에 실패한 후 경찰에 의해 스토킹 당한 내용이 보도 되었다. 경찰은 담당관 옆집을 매입하여 방첩요원들이 행하는 심리전을 퍼는 아지트로 사용하는 뽀뽀한 전략을 펴기도 했다고 한다.

http://www.recordnet.com/apps/pbcs.dll/article?AID=/20110818/A_NEWS/108180325

<https://www.youtube.com/watch?v=fDnXIAkq8yE>

폴리처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Sun Sentinel 지는 2012년 12월 한 여자 경찰관이 다른 관할 구역의 여러 경찰들로부터 조직스토킹을 당한 내용을 보도 한다. 협박에 사용할 불법적 개인 정보 취득과 휴무인 다른 경찰의 위협적인 난폭운전과 희롱을 일삼는 스토킹 기법이 동원되었다고 전한다. (http://articles.sun-sentinel.com/2012-12-26/news/fl-deputy-watts-lawsuit-20121224_1_law-enforcement-officers-margateofficers-police-officers)



2013년 CounterPunch 1월호에서는 FBI의 악명높은 COINTELPRO 작전이 완전히 다시 부활했다고 보도한다. (<http://www.counterpunch.org/2013/01/21/the-return-of-cointelpro/>)

2013년 6월 네이션(Nation)지는 사설보안회사와, FBI, 법무성에 의해 행해지는 이런 행위를 "Cointelpro 2.0 이 실시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평했다.

(<http://www.thenation.com/article/174851/strange-case-barrett-brown>)

2013년 9월 워싱턴 타임지에 소개된 워싱턴 D.C. 해군 조선소에서 있었던 무차별 총격사건은 조직스토커들에게 체계적으로 감시 당하고 고문 당해온 사람이 자행한 사건이라고 보도한다.

(<http://communities.washingtontimes.com/neighborhood/freedom-press-not-free/2013/sep/18/elf-extremely-lowfrequency-clue-alexis-motives/>)

2013년 10월 Fortean Times 미국 국내판 표제는 '정부지원의 조직스토킹' 이었다.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인 저자는 군관계자 한 명이 미군 장비를 훔쳤다가 잠복 요원들에게 어떻게 조직적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문을 당했는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the-cover-article-of-fortean-times2.docx>)

2013년 11월 14일 West Virginia 지역 TV 뉴스에서 조직스토킹 기법으로 시달려온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피해자 2명에 대해 보도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nUkfNpZb0gU>)

2013년 11월 Democracy Now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 대기업들이 고용한 사설 감시업체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비평가들을 어떻게 위법적인 방첩작전(counterintelligence operation)으로 압박하는지를 다룬다.

(http://www.democracynow.org/2013/11/25/spooky_business_us_corporations_enlist_ex)

2013년 12월엔 CBS, the Daily Mail, RT, Tech Dirt 와 Courthouse News Service에서 정부의 한 하청 업자가 자기

를 조직스토킹한 여러 연방기관을 고소한 사건을 보도합니다. 원고는 자기 집과 자동차를 포함해 어디서나 끊임 없이 감시 당해 왔으며 직장동료와 낯선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위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월 뉴요커(The New Yorker)는 생물학자인 Tyrone Hayes가 Syngenta사가 제조한 살충제의 위험성을 회사 요구대로 물어두길 거부하자 회사가 고용한 청부업자들로부터 십년 넘게 협박, 공갈, 해킹, 스토킹에 시달린 사례를 자세히 보도했다.

(http://www.newyorker.com/reporting/2014/02/10/140210fa_fact_aviv)

2014년 5월 ABC 뉴스 TV 프로그램인 20/20에서 오하이오주 Hubbard에 사는 한 부부가 마을 소방서 장(?)과 부동산 문제로 싸운 뒤 다른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의 가세로 7년간 집 근처에서 자동차 크랙션을 올리는 공해에 시달린 법정소송 사건을 소개한다. 이 부부는 모두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었으며 방송 당시 계속 소송 중이었다고 한다.

(<http://abcnews.go.com/2020/video/couple-claims-entire-town-turned-23574799>)

9. 기타

윤리, 도덕적으로도 껄뻐하기 그지없는 조직스토킹은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테러방지법 따위의 법에 근거를 둔다고는 하지만 무기한의 사찰과 재판은 거치지 않은 보복성 처벌은 형법,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스토킹과 무관한 삶을 살지만 이런 은밀한 작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뀐 2019년 현재도 경찰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 의해 계속 진행 중이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수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이들은 언제나 대상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군사정권 시절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중범죄자들이 아니라 데모하던 학생들, 김일성이 생각보다 잘 생겼다고 말한 재일교포, 노상방뇨, 고성방가 한 일반 시민들이었다.

이런 경찰과 정보기관의 권력을 오남용하는 추잡한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에서 이 범죄의 범위와 피해자들이 받는 충격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역정보와 거짓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소리는 너무나 작다.

2. 조직스토커의 고백

원문 링크 : <<https://gangstalkingmindcontrolcults.com/category/ti-statements/>>

“증언을 남겨야 죽음의 가치가 있다.”(The dead only count when they leave a testimony)

-Joel Filartiga

이 블로그에 내 증언을 남기는데 만약 죽게 된다면 이 블로그가 계속 공개 상태로 남게 되길 바란다.

- 저자, 인간 제물

Dr. Eric T. Karlstrom의 설명: 다음은 “조직스토커의 고백”이라는 흥미로운 글입니다. 이 저자의 생각보다 조직체가 훨씬 거대하다는 점만 빼고 제가 아는 것과 같군요.

2014년 8/2 업데이트

제 블로그는 구글+, 유튜브, 이메일 계정처럼
정부로부터 계속 감시당하고 내용이 마음대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올린 글은 읽기 편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른쪽에 검은 줄무늬가 생기면서 꽤 읽기 불편하게 되어버렸네요.
오늘 빨간 프린트 버튼을 크게 만들고
원래 오타가 없었던 단어들의 맞춤법 검사도 다시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반복되는군요.
읽기 불편하게 된 점 유감이고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이 블로그를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빅브라더'께서는 이 블로그 내용을 계속 바꾸고
접근도 못하게 막고 진실을 퍼뜨리는 사람을
소리 소문없이 살해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경고 드립니다.
다만 신실하신 하느님과 영원한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짓의 늪에서
진리로 그분이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글은 지난 3월부터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퍼지다가 삭제되기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이 글이 있는 페이스북이 다른 웹사이트에 소개되면 정지를 먹어버리네요.
조식스토킹과 관련된 정보는 집요하게 검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면 왜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서
사라지게 하는 수고를 굳이 하는지요?
사실 권력층에서 이 정보가 세어 나가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저처럼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상검열은 현실이 되었고
법안마련은 진행중이네요.
2012년 파시스트 미합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진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조식스토커의 고백

민간인들을 은밀히 고문하는 FBI, CIA & NSA의 정신병자들과 테러리스트의 활동방식 (MODUS OPERANDI)

...결국 조합?(Syndicate)에서 한자리 차지한 적도 있었다.
조합은 강인한 경찰과 상호 이익을 내는 비밀공제 조합 같은
우애 조직이라고 처음에 소개했다.
하는 일은 더 나은 사회건설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이전에 약속한 승진의 기회는 없었다.
조합의 '승진체계'는 미끄러운 비탈길 같다.
프라이버시는 모두 포기하고 모든 대화는 감시되어도 좋아야 한다.
이메일은 오프라인으로 작성해서 PC방에서 몰래 보내야 하고
어이없는 서약과 성가를 불러야 하는 모임에 계속 나가야한다.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포기한다는 계약에 서명하고
아무 혐의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
나는 관리직으로 한번 승진해봤다.
그런데 이게 보상인지는 모르겠더라.
더 충격적인 건 비밀을 흘리고 다닐까봐 사직도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조합이 나의 신뢰성을 파괴시켜버려도 좋다는 계약을 할 경우에만
사직이 가능하다.(내가 비밀을 누설해도
쓰레기 같은 UFO 관련 잡지에나 기사가 나가거나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게 만드는 등이다)
다른 문제도 있는데
만약 애가 있다면 조합소유 학교에만 보내야한다.
배우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감시하는 것도 승낙하고
배신할 경우 배우자를 TI(Targeted Individual)로 만들어도 된다는 동의도 해야 한다.
공식 '보상' 정책은 집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애들은 내가 말할 수 있다는 정도다.
하지만 집사람 소유물은 아무것도 못 가지게 된다.
집사람도 이혼 소송 중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십일조 거두듯이 도로 가져간다.
조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볼까 한다.
사실 나도 정확히 그들이 뭘 추구하는지 모른다.
선택된 사람도 작전 시행하는 사람도 각각이다.
이 일에 가담하는 다른 그룹들도 있는데 동기도 다르고 접점도 없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테러리스트
(동성애자/공산주의자/주술가처럼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를
감시하는 단체 짬으로 비춰지게 해 놓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로타리 클럽이나 상공회의소 활동으로 보이고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나 저격하는 조직 짬으로 보인다.
청교도들에게는 정화 세력으로 보이고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진짜 무슨 일이든 하는
다른 자유주의 조직으로 보인다.
어쨌든 사람에 따라 다른 조직으로 보인다.
이걸 보면 창설자는 100% 책략가임에 틀림없다.
대상자 선정과정은 내가 꽤 많이 알고 있다.
일단 목표대상이 정해지면 4종류로 분류한다.

용역(mercenary), 실습, 계획, 적.

용역 대상자는 외부 세력에게서 돈 받고 하는 것이다.
'납치 가능한 개인'이라는 광고에서부터
뺨만 치는 구라쟁이처럼 보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광고를 낸다.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Xxxxxx 기관은 단골이고
Xxxxxxs는 고래잡이 반대가 너무 심할 때 고객이 된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굳이 우리 일을 숨기지 않는다.
어떤 비윤리적인 사설보안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난 두 군데 이름을 알고 있다.

Xxxx는 나를 목표로 삼는 일에 참여하면서 유명업체로 성장했고
다른 다국적 기업 Xxxx는 아주 높은 자들과 연줄이 닿아 있다.
아이디 도둑질과 오용을 일삼는 이 회사는 어처구니 없게도
온라인으로 '신분도용 방지' 회사까지 차렸다.
이 회사들은 후한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더 올려 받기도 한다.
7자리 숫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Xxxx는 큰 절도 2건을 의뢰했는데 각각 1백3십만 달러의 순익을 올렸다.
하나는 미술품 절도였고 하나는 절친에게서 보석을 훔치는 일이었다.
우리가 도둑질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폭주족/극우 스킨헤드족/마약상들로부터도 쉽게 일을 맡고
연줄이 있으면 정부인가 업무로 돈을 벌기도 한다.
우리는 Xxxxxx 와 Xxxx's Xxxx 같은 거친 세계의 지원도 받는다.
범죄자들에게 보복하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낀 자들이 많아서
범죄자들을 압박해주는 동맹군들은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우리한테 돈을 대라고 압박하는 것은 꽤 쉬운 작업이다.
'협박편지'라고 불리는데 범죄자들이 무얼 할 수 있나?
경찰에 신고라도 할 것인가?

두번째 타입은 실습용이다.
우리는 그들을 폭도 길들이기 용으로 이용한다.
대상자들은 사실 바뀌지 않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항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실습용 대상은 신입이 들어올 때 마다
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이용한다.
가두 연극이 벌어질 때 마다
같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만 실습한다.

세번째는 계획된 대상이다.
조합에서 결정한 대상들인데 '용역'의 경우처럼 돈을 받지는 않는다.
실습과 다른 점은 숙련자만 참여시킨다.
이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적으로 분류된 대상은 우리에게 질려서 배신한 자들이다.
우리 일이 너무 뻔뻔하고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일을 폭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지옥을 선사한다.
최선의 방법은 정신적 고문이다.
내 상관은 소련이 천천히 정신병자로 만드는 과정에 능했다고 했다.
Xxxx는 1958년 MKUltra 작전으로 유명한
이완 캐머론 박사(Dr. Ewan Cameron)가 Greta Goede를

상대로 실험한 수법을 이용한다.
최상층부 사람들은 우리가 목표대상을 살해하면
검시관이 자연사나 사고사로 위장하도록 해준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Xxx는
마음에 안드는 자 적어도 3명을 살해했다.
Xxx는 우리 조합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네들만의 조직이 따로 있다.
목표대상은 논란을 일으킨 무고한 여성들이었다.
남자처럼 죄 지은 여자가 있었는데 딱 한번 규칙을 어긴 적이 있다.
목표로 정해진 여자에게 작전을 펴면서
방해하는 자들을 살해하는데 대부분 남자들이다.
내 생각엔 그가 남자들을 무서워해서 마음대로 조종이 안될 때 죽여버리는 것 같다.

이제 조합의 주요 부서들을 소개해 보겠다.
각 부서 직원은 한번에 다 뽑아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따로따로 뽑는다.
독립된 업무 추진으로
직원들이 몰라도 될 사항에 접근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부서는 각본, 관찰, 실행에 옮기는 부서였는데
'가두 연극'하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명령이 내려지면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사소한 사고로 보이는 괴롭힘이나
대본 읊는 일을 한다.
무대는 두개의 하위부서로 나누어진다.
대본 작성부서(자기들끼리는 극작가라 부른다)와
현장부서(우리끼리는 비극배우라 불렀다)이다.
직원 배경이 가장 다양한 부서이다.
경찰, 구급대원, 동물원, 각종 기술자 출신이 많았다.
하지만 모든 직종에서 직원을 뽑는다.
대부분 이웃 감시하는 일에 투입되는데
웃기게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확신한다.
학대받는 여자, 암 걸린 여자, 정신병자,
소외계층으로 고통받는 약자들을 돕는다고 모집하고는
증오범죄에 가담 시킨다.
만약 피해자의 친구가 있다면 피해자가 그 친구를 먼저 이간질하고 공격했으므로
당신이 바로 피해자다. 그리니 복수에 동참하라는 식으로 유도한다.

'돈줄'이라고 알려진 권위의 부서가 있는데
조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직업군과 연줄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재판을 좌지우지할 판사부터 정신과 의사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돈줄'이란 별명이 붙은 이유는 이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뒷돈을 대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장단체 설립에도 투자한다.
정부 지원의 '반-증오' 단체처럼 말이다.
실질적으로 이 단체는 증오를 조장한다.
Xxxx는 2007년 우리 지역에도 설립되었다.
조합의 업무 대부분은 이런 적법한 위장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정부기관 뒤에 숨어서 도청이나 신원조회도 할 수 있었다.
Xxxx는 고위급 기업, 정부, 경찰, 정보기관 인맥을 동원해 내 뒤를 짰다.
이들이 주로 '적'으로 분류된 피해자를 뒤쫓는다.
보통 가해행위는 몇가지 '행동규칙'에 따라 짜여진다.
피해자가 '적'이 아니라면 기본 규칙이 적용된다.
앞서 설명한 '작가'들처럼 하위단계 조합원들이
피해자 주위에서 인원을 바꿔가며 연기를 한다.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도
안 바뀌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해내기는 쉽다.
목표 대상이 '적'이면 규칙이 바로 바뀌지는 않지만
최고 의회의 고위급으로부터 명령이 수정되어
피해자를 도발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다.
이것은 '잘게 썰기'라고 불리는데
연기자들이 '고기'로 하여금
싸움을 유발해서
법적인 문제에 걸려들게 하기 위함이다.

부서는 조합원들 보호업무도 맡고 있다.
주로 소송사건 같은 것에 휘말리게 될 때
'돈줄' 부서원들에게 조합원들을 살살 다뤄서
풀어주게 만들라는 명령을 내린다.
명령은 항상 화사한 벚꽃 무늬 용지에
공식문서어나 쓰이는 테두리와 파란색 글자체로 인쇄되어 나온다.
조합원이 불법적인 일을 하다 잡힌 적이 있었는데
언제나처럼 언론보도도 안되고 처벌도 안받았다.
'벚꽃'은 이 비밀과정의 별칭이다.

'권위의 부서'는 변호사, 판사, 의료진 등으로 아주 잘 짜여진 조직이다.
조합을 위해 일하다 죄를 짓게 되면
항상 지역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사촌 난시'(조합 소속 경찰을 이렇게 부르는데
비조합원 경찰이 체포하기 전에 와서 손을 써준다)를
보내서 누가 911에 신고하기 전에
당신을 따라 붙어서 체포해 줄 것이다.

그들은 모두 포섭 잘되는 사람 이용 전략을 따른다.
예를 들어 Xxxxx의 시장은 조합원이 아니다.

하지만 밑에 참모들이나 보좌관들이 우리 조합원들이면
이들을 이용해 법을 조심스럽게 통과 시키게 한다.
만약 유명인사가 목표대상이 되었다면
너무 완고하지 않은 시장 선출을 준비해 일을 마무리 한다.
정부를 사소한 불법에 주로 이용하지만
우리는 법원을 더 선호한다.

기술부서(The Bureau of Technology (Field), BoT)는
전기 장비를 다루는 조직이다.
우리 '비극배우'들과 '십장' 주위에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피로/두통/의학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들은 각종 장비나 컴퓨터, TV를 고장내는 일도 한다.
각기 다른 직원들이 각기 다른 기술을 이용해
기분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데
내 생각에 이들은 지독하게 새디스트적이다.
무기력 유발 요소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눈의 피로를 서서히 증가시켜 피곤하게 만드는 전구도 있고
컴퓨터 모니터나 TV에 적용해서
눈부심으로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네티에도 전자장비를 숨겨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다.
기술부서의 기계장치 범위가 여기까지인 것만은 아니다.
자궁 결함과 유산을 유도하는 약도 만들어
음식에 타 놓기도 한다.
처음 혈액 검사에서 HIV/AIDS 양성반응이 나오도록 조작도 하는데
연이어 검사를 해보면 거짓으로 판명 난다.
목적은 처방대로 따랐다가는 건강한 사람의 건강이
진짜 해쳐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Xxxx는 최근 알츠하이머 클리닉 자금지원을 하면서
노인 정신건강에 일가견 있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새로운 동지로 얻었다.
내가 아는 어떤 현장요원은 피해자의 매독 유발을 극히 좋아했다.
페니실린으로 쉽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의료기록에는 영원히 남게 된다.
이 부서원들은 피해자 모르게 온갖 테스트도 실시한다.
우리가 감시하는 한 피해자는 악성 뇌종양이 있었다.(우리가 한게 아니다)
증상을 모르던 그에게 무기력 유발로 힌트를 주고
친구들을 통해서 암이라는 것을 경고하게 만들었다.
결국 검사를 한 피해자에게
의사가 그 병의 심각성과
얼마나 빨리 죽을지 설명하게 해주는 일을 재미삼아 해본 적이 있다.
6개월 시한부를 선언했고
그 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절대 제거될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다.

물론 뺑이었다.

기술부서에서는 신경외과의를 파견해
그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게 만들었다.
두려움에 떨게 한 효과였다.

통신 기술부는 피해자의 전화통화,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감시한다.

공문서 보관소, 여론조사 사무실, 카드사, 의료보험공단, 보험회사 등에서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들은 병참업무 분과에 소속된다.

내가 언급했듯이 조합의 일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다.

기술부는 카드회사나 정부기관에
해킹이나 정보 취득을 하나도 모르는
'리셉션 여직원'으로 위장 취업 시킨다.

그러면 아무도 안 볼 때

여직원은 온갖 정보를 빼낸다.

'기록 농장'을 완전 접수하길 바라는 끈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포섭을 선호한다.

이 부서가 우리에게 온갖 정보를 제공하고 명령도 내리는 동시에
조합의 통신 지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최고의회는 이들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다.

외부 주문도 '용역'광고를 하는 기술부를 통해서 들어온다.

동맹부서는 '거래업체'나 동맹군들을 처리한다.

내가 아는 한 조합에 Xxxxxxan이 유일했다.

이 나라의 다른 조직스토킹 조직으로는

West Xxxxxxxxan로 불리는 도당이 있었다.

그들은 xxxxx Xxxxx로 너무 자주 밀고 들어오려고 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나 어떻게 해서라도 말리고 있다.

Xxxxxxan 조직과 계약을 맺어

그들의 목표대상이 Xxxxxx로 이사오면

우리가 그 피해자를 넘겨받아 처리한다.

Xxxxan 조직과 그 도당들도 마찬가지로이다.

다른 조직의 목표대상도 우리 구역으로 들어오면

돈을 받고 우리가 처리해준다.

이런 식으로 우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결론적으로는 최고의회가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한다.

단 'OOO국'이 아닌 다른 이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외에는
그들에 대해서 난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은 위원을 직접 뽑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충원한다.

그들 대부분은 태생부터 부자인 사람들로

내부자 거래 같은 투자를 통해서

그들의 부를 이어 나가려 한다.
아무도 CEO, 판사,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냥 Xxxxxx Xxxxx에 사는 지독하게 돈 많은 노친네들 이었다.

우리 조합에도 직급이 있다.
가장 하위층은 '꼬나풀'이다.
정확히 말해 우리 일원은 아니다.
정식 계약도 안 할 뿐더러 우리 일의 성격을 모른다.
명령 받고 일만 하지 회의 참석은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꼬나풀'들을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불렀다.
상층부에는 '급사', '비서'들이 있고
기술부는 '실험실 쥐'(실험에 돈 받고 참가하는 지원자로
우리가 무슨 실험을 하는지 모른다)
통신기술부에는 '동굴 탐험가'가 있고
또 다른 기술부에는 '여행사 직원'이 있었다.
우리에겐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없었다.
주인의 동의를 없었다는 얘기는 안하고
개를 해치우라는 명령을 내릴 때
법적인 문제에 걸려들어도 우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우리의 가두 연극은
조합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진다.
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모른다.

기술부는 해커그룹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문서보관소 명령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 부서는 Xxxxxx의 XXXXX와 부속 제약회사 같은
적법한 기관에서 80%의 연구를 수행한다.
'꼬나풀'들의 업무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이거나
범죄자를 고립시키는 일을 한다고 믿게 만든다.
지원자들은 음모를 알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아는 수준에 머무른다.
우리는 '종교' 집단과 '핑크'집단을 동시에 꾸려 나간다.
전자는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을 한다고 믿고
후자는 말썽을 일으키고 무정부상태로 만드는데 참여한다고 믿는다.
좋을 대로 생각하라지!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한다.
종교 집단에게는 예언과 계시로 무장하고
핑크족에게는 공산주의 사탕발림을 선사하는 식으로 말이다.
어쨌든 이 자들도 우리 조직이 거대하다는 것은 눈치 까고 있다.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을 아니까 이 작전에 참여한다.
돈에만 눈 먼 인간들은 여기서 승진까지도 한다.
모든 부서는 서로 다른 색깔로 위장한다.

'돈줄'부서는 최고의회 다음 순위로
엘리트층을 위한 '비밀조직'이라고 위장하는데
대부분이 권력과 부를 겸비한 자들이다.
기술부는 '인문학'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탐욕에 저항하는 과학자 단체로 위장하는데
사실은 정반대다.
통신 기술부는 음모론을 좋아해서
'일루미나티의 비밀'을 캐거나 일루미나티 자체를
추적하는 단체로 위장한다.
또 다른 기술부는 중개회사, 여행사, 회계법인으로 위장한다.

지원자들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란 것을 알면서도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겠지라고
자기 암시를 주면서 가담한다.
나 같은 관리자가 와서 이들을 가두연극에 짝을 맞추어 주거나
공격조 편성 등을 해준다.
보통 관리자들은 조합의 목적 빼고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다른 부서와 협업을 위해 연락을 하기도 한다.
부서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연극부'에는 '극작가'와 '주연'이 있고
'돈줄'부에는 '성공사례',
기술부에는 '책임연구원',
통신기술부에는 '정보관',
BoA에는 '기획담당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회까지 승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용어해설:

Contract: A TI or Target. This is the official term. Used as "Enemy Contract" or "Planning Contract". Enemy Contract is often referred to as "Hostile Contract".

CHERRYING: Getting out of a legal tangle through the syndicate's intervention.

NIPPLE-KISSER: a 'deviant' recruit, recruited because of a desire for sadism.

HOLY POLY: a 'religious' puritan recruit.

THE EFFECT: the fact that greedy and sadistic recruits are selected for managing jobs more readily than anybody with integrity.

FBG (fertile breeding ground): a crew of nipple-kissers, based on the idea that they are a fertile breeding ground for future managers.

MINCING: Luring a target into the legal system.

DEFACING: making faces at a contract, or otherwise intimidating them.

XXXXXX XXXXX SYNDROME: having a target so socially unpredictable and badly-off that you can't really think of many ways to make their life much worse.

RAINBOW SHOCK: the fact that you have to act nice to the rest of the public immediately after you've stopped defacing a contract.

BREAK-A-LEG JOB: a particularly hostile attack against a contract, or a plan which involves approaching the target and talking to them.

SAKURAKAI: a crew that is particularly overt in its stalking and gets caught too often. In other words, it has to be cherished all the time.

CREW: A unit of recruits and pawns under a single MO. In other words, a group of gang stalkers.

ZAPPERATING: using electronic devices to affect the health of a target.

XXXXXXXX XXXXX: rhyming slang. for big mistake, roughly means "we shouldn't have used this method".

UNCHAINED, UNCOVERED: authorities that are not pawns or recruits.

COVERED: A member of the public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syndicate (as a pawn).

PUBLIC FACE: A recruit or manager's official life outside of the syndicate.

PRIVATE LIFE: a syndicate member's activities with the syndicate.

INCAPACITATOR: a device that affects the sleeping patterns/stress/fatigue/headaches of a contract.

VOODOO: the means of acting hostile to a target (pointing, staring, etc).

LOMOSEXUAL: a syndicate member with a knack for photography. ("There's a lomo in every crew!")

NYUNKIA: (Not Your Usual Nipple-Kissing Incapacitator Asshole), the "yu" is pronounced as the "oo" in 'moon' and refers to a particularly sadistic or deviant BoT(F) member.

BONER: another word for an Enemy Target.

YELLOW MEAT: Criminals, as opposed to "Concerned Citizens" and refers to criminals recruited into the syndicate.

XXXXXXXXX (verb): to Xxxxxx somebody is to run them over or chase them with a car.

GIGOLO-BOP: to make sexual advances to an unattractive target, term mainly used by "nipple kisser" deviants.

CANCELLING: causing a miscarriage.

CRASH TEST DUMMY: a practice target.

HANG-JOB: the experience of having a target that one has enjoyed tormenting suddenly commit suicide. Term used mainly by nipple kissers/nyunkias.

COUSIN NANCY: a police unit sent to tail a crew and arrest them before an unchained police unit can do it.

XXXXXX NECKTIE: a death threat made with no intention of it being carried out.

GENERAL LEEING: randomly chasing after a target and threatening to rape them before immediately running away.

XXXX'S LAW: a police department that is thoroughly under the syndicate's control.

THE GOOD OLD GANG AT THE OFFICE: the Syndicate.

SHALLOW THROAT: see NYUNKIA

CLITWEED: see NYUNKIA

DEJA VOODOO: doing the same skit over and over again.

3. 조직스토커 지침 교본

출처: 핀란드 북부 의료센터 원장 Rauni-Leena Luukanen Kilde 박사의 “검은 그림자에 밝은 빛을(Bright Light on Black Shadows)” 18장

<http://www.ozelburoistihbarat.com/Content/images/archieve/mk-ultra-project-manual-for-organized-gang-stalking-operations-psychological-656d7ca8-d00f-47d0-bdae-7e6941fdfa4b.pdf>

Eric T. Karlstrom 박사의 설명:

Mark M. Rich의 ‘신세계 전쟁: 정치적 통제를 위한 혁명적 방법’ (2011)-New World War: Revolutionary Methods for Political Control” 에는 미군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세계적인 조직스토킹의 수법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이 기밀 작전은 공식적인 적발없이 수십년 간 수행되었다. 작전명 Gladio/Stay Behind는 1990년 이탈리아 수상 Andriotti가 공개하기 전까지 유럽에서 불법적으로 40년간 은밀히 수행되었다. 이후 유럽의회는 이 작전을 공식적으로는 폐기하기로 결의했으나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시인한 적이 있다.

‘1996’(조지 오웰의 1984를 연상시키는 제목)의 저자 미국의 글로리아 네일러 작가(2016년 사망), Rauni Kilde 박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년 간 조직스토킹의 피해자가 되어왔다. Kilde 박사는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결국 이 작전에 의해 2015년 2월 9일 사망하였다. Kilde박사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므로 문법적 실수는 일부 수정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설명을 삽입했다. Kilde 박사는 핀란드 북부지방의 의료센터 원장으로 많은 공개/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경력이 있었고 그의 남편 역시 정치 관계자였다. 그래서 기밀문서에도 내밀히 관여하고 있었다.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위해서 이 교본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많은 관용구와 철자가 영국 영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Kilde 박사의 영어 표현 습관이거나 원본이 영국 군정보기관에서 쓰여진 이유일 것이다. 혹은 1차 대전 후 영국군의 심리전 사단에서 파생한 Tavistock 협회와 연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서 작성한 것일 수도 있다.

작가가 누구든지 간에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다. 복잡한 군 정보기관의 체계를 통해 감시, 차단, 무력화시키다가 결국 자살하도록 고안된 방법을 제대로 보여주는 심리전의 교본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남미, 중동과 전세계 CIA의 비밀구역/특별 범인인도 본부에서 쓰인 CIA의 KUBARK 고문 매뉴얼과는 확연히 다르다. 여기 설명된 심리전 체계는 Mark Rich의 ‘신세계 전쟁: 정치적 통제를 위한 혁명적 방법’에 나온 작전들과 기막힌 유사성을 보인다.

여기서 폭로된 조직스토킹의 수법은 1950년대~70년대까지 FBI에서 은밀히 실시된 방첩 작전인COINTELPRO나 유럽에서 1950~90년대까지 실시된 Gladio나 “Stay Behind Army”작전 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미군에 의해 대테러

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민간인 제거 작전은 195개국 중 140개국에서 수행 중이다. (The World is the Battlefield, US SOCOM (Special Operations Command) Involved in 134 "Counter-Terrorism" Wars를 참고하라).

이제 우리는 유대계 미국인이 주도하는 지구촌 테러와의 전쟁과 "철저한 감시를 통한 지배" 전략의 주요 요소인 조직스토킹 수법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인 전체주의적 경찰공화국에 온 것을 환영하며 당신이 적으로 지목되었다는 점을 알리는 바이다.

조직스토킹에 쓰이는 첨단 기술에 관한 사실은 부록 4에 나와있다. (from Total Individual Control Technology by Omnisense)

별첨 1: 본 교본의 키워드와 문구

별첨 2: Rich의 '신세계 전쟁: 정치적 통제를 위한 혁명적 방법'의 주요 용어(여기 나온 용어들은 킬데 박사의 교본에서 나온 작전과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별첨 3: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Operation Gladio

별첨 4: From Total Individual Control Technology by Omnisense

1. 일반

작전은 대체로 '능동적 감시'의 형태이다. 수동적 감시란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은밀히 지켜보는 것이다. 능동적 감시도 정보수집을 할 수 있으나 상대가 감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한다. 능동적 감시 외에, 요원은 상대가 24시간 불안에 떨게 할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작전은 비밀리에 승인되고 사법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명확한 옳고 그름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범죄 행위로 보이지 않게 만든다.

모든 가학 행위는 발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 말은 경찰한테 고발하거나 공무원, 친구, 이웃, 식구, 의사에게 말하더라도 과대망상이나 정신 이상으로 치부될 수 있게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은폐를 도와줄 의료기관을 수년간 모집해 왔으므로 대부분의 대상자는 정신병자 딱지가 붙을 것이며 정신병 약물 투여가 강요될 것이다. 요원들이 맡은 '처벌'(그들은 정당한 벌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행위를 능숙히 처리해서 상대가 누구에게 말을 하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범죄와는 관련 없다고 결론짓게 만들어야 한다. 선발 요원들은 작전 투입에 앞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첨단 기술 덕에 상대가 집에 있을 때 들키지 않고 조용히 벽 너머로도 처벌할 수도 있다. 요원들은 기초 훈련을 통과해야 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훈련을 받기 전까지 발뺌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야 한다. 전자장비 훈련은 이 교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행히 현장 요원을 지원해 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사소한 침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극대화 시키고 절망을 느끼고 건강을 해치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심리학자들이 맡아서 해준다. 통신, 전력, 건물 전기와 경보시스템 등 모든 분야의 기술자들과 모든 분야의 공익 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절대 '평범해 보이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한다. 숙련된 열쇠 기술자들은 여기서 이용할 수 없다. 지역 기반 요원 (community-based agent -CBA)이라면 팀 단위로 일하면서 법보다 더 나은 '정의' 구현을 실현 할 수도 있다.

2. 감시

감시는 모든 작전의 기초다. 지역 기반 요원의 감시와 전자장비를 이용한 감시가 모두 동원된다. 여기서는 지역 요원에 의한 시각적 감시만 다루게 된다. 지역의 지휘 요원은 그 지역 모든 대상자의 감시 스케줄을 담당한다.

모든 상대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지역기반 요원이 수면시간을 포함한 상시 감시를 해야 한다. 모든 지역기반 요원에게는 상대의 행동과 움직임을 지역 통제 본부(Control Center - CC)에 보고할 휴대전화 번호가 부여될 것이다.

보고할 행동: (다음 사항에만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기상 후 전등 켜기.

화장실 이용이나 샤워.

외출.

운전.

직장 도착.

쇼핑 장소나 기타 방문 장소.

귀가.

식사.

성행위.

일과 후 점등.

한 밤중 불 켜기.

동네를 벗어나는 이동.

일부 관찰은 전자장비반(Electronic Corps-EC)에서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역기반요원은 최대한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상세함이 필요한 이유는 능동적 감시에서 팀장이 상대의 성격에 따라 맞춤 처벌을 가능케 하고 모든 처벌은 '일상의 돌발 행위'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감시의 중요한 처벌 기능 중 하나는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감시 당하고 있거나 처벌받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준다. 대신 면밀한 능동적 감시와 다른 행위들이 일상의 돌발 행위로 보기에 너무 자주 일어나서 본인이 감시와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결국 인식하게 될 것이다. 지역기반 요원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벌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 지시 받게 된다.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는 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경찰과 마주칠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처벌 행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여러 상황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렸다. 통제 본부는 대상자의 집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옆집이나 소유지를 확보한다. 전자장비반 (EC-Electronic Corps)에 벽을 통한 감시와 처벌이 가능한 장비가 있기 때문인데 대상자의 행동을 지역기반 요원과 함께 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통의 경우 지역기반요원은 밤새 대상자의 집이 관찰 가능한 곳에 주차된 차에 배치된다. 이런 구성에서 차에 있는 지역기반요원은 워키토키 스타일의 휴대전화를 통해 지시를 받게 되고 다른 지역기반요원은 대상자 미행을 위해 차로 순회하거나 대기하고 있다. 혹은 직접 미행을 하기도 한다. 미행은 통제 본부의 지시에 따른다.

상대가 이동 중일 때는 눈에 안 띄게 혹은 보이게 미행한다. 의심이 가면 잠시 머뭇거리고 통제 본부에 연락해 지시를 기다리라. 이동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본부는 대상자의 위치를 항상 파악하고 있으므로 시야에서 벗어난다면 최대한 빨리 다른 요원을 배치할 것이다. 목표를 놓쳤다면 즉시 본부에 연락하라.

미행할 때는 당신의 존재로 상대를 불안하게 하라. 미행 중단 시기는 지시가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기반요원이 나 지역 팀이 대체를 하고 미행에서 빠지면 다음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3. 가로막기

지역기반요원은 상대에게 우연히 길을 가로막거나 발을 밟은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그들이 감시와 처벌 중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예민해졌다면 지역기반요원의 '우연히 일어나는' 반복되는 길 막기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통제 본부는 당신이 언제 가로막기를 할 것인지 순번을 정해 준다. 보통 현장 감독 (On-site supervisor-OSS)이 당신을 배치할 것이고 언제 나설 것인지는 수신호를 준다. 상대의 움직임이 항상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기반요원의 가로막기 성공여부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가 있는 전자장비반과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달렸다. OSS는 본부에서 즉각적인 지시를 받을 전문 장비를 가지고 있다.

1. 지역기반요원은 다음 중 어떤 형태의 가로막기로 할 것인지 질문할 것.
2.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행동이 필요한 간단한 길 막기, 외출 나간 대상에게 여러 지역기반요원에 의한 여러 번의 길 막기. 도보 이동시 반대편에서 장시간 걸어오기.
3. 잘 가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기(식당, 공원, 벤치 등) 혹은 보통사람들은 하지 않는 주변 서성거리기
4. 대상자가 버스를 기다리거나 서서 기다리는 곳 근처에서 담배 피기, 동전 짚랑거리기, 휘파람 불기, 발로 툭툭 치기 혹은 분수 같은 곳에서는 바로 뒤에 서있기
5. 12명 가량의 지역기반요원이 있을 경우 상점에 먼저 도착하여 줄을 서서 시간 끌기. 퇴근 후 피곤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게 만든다.
6. 지역기반요원은 대상자가 집을 떠나는 시간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옆집에서 나가는 임무를 할당 받을 수도 있다. 혹은 집에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것들은 사소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상대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매일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이런 행동들을 경계하게 되고 결국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고 믿게 된다. 이것이 목표이다. 차량을 이용해서도 가로막기는 일어난다. 본부에서는 통근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할 수도 있다. 차량 가로막기는 아침 저녁으로 통근 시간에 맞춰 같은 차량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다. 차량 가로막기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거친 요원만 배정한다. 차량 가로막기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주차장에서 차 못 빼게 주차 해놓고 떠나기
- 대상자 집 주위에 일반적이지 않은 영업용 차량 주차시켜 놓기. 예로 회사명도 없는 하얀 밴이 있어서 피해자를 감시하려고 주차해 있다는 생각 들게 하기.
- 근처에서 따라가거나 선두에서 매일같이 따라 다니기. 이러면 상대를 매우 언짢게 만든다.
- 회전 후 상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거리에서 멈추기(이것은 통제 본부의 협조와 워키토키 스타일의 휴대전화기 필요하다.)

- 호위하는 것처럼 상대 차량을 가두어 놓고 느린 속도로 가게 만들기. 지역에 따라 상대만 알아차릴 수 있는 문구를 새긴 번호판을 만든다.

- 차량이 평소 드문 곳에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여 상대가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든다.

차량 가로 막기의 절정은 사고 연출이다. 위험한 작전이므로 경험 많은 요원에게만 배정하도록 한다. 혹은 상대만 알아차릴 수 있는 사고를 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상대가 정보기관의 범주를 대중에게 드러낼 때처럼 심각한 공격을 저지를 때의 처벌로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연출된 사고는 경찰이 적극지원 하는 관할지역에서 일으킴으로써 운전자를 보호한다.

4. 물질적 훼손

경찰의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은 저가의 물건에 국한될 때 효과적이다. 집에 불을 지르거나 비싼 장비를 훔치는 것은 공식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훼손은 사고현장에 수사가 개입되므로 일반적으로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파손시키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고 엔진 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부동액을 조금씩 빼는 것은 용납된다. 그러나 한번에 모두 다 하지는 않는다. 점검을 게을리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다른 사람이 봐도 고의적 훼손처럼 보여 큰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조금씩 여러 번 훼손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상대가 여러가지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건망증이 심하거나 과민 하거나 심할 경우 망상증으로 비취 지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결론짓게 되어있다.

훼손 행위는 상대가 멈출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외에는 제대로 설명할 방법도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 훼손 행위를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다.

훼손은 집, 직장, 차량에 대해 행해진다. 이것은 열쇠전문가와 경보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 지역 통제 본부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고 한적한 시골의 경우 장거리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다.

다음은 지역기반 요원에게 할당될 업무의 예이다:

- 차나 집에 들어가 라디오나 각종 컨트롤러 같은 셋팅 값 바꾸기
- 윈도우 워셔액을 물로 바꿔치기, 겨울에는 부속 파괴
- 자동차나 가구 긁어 놓기
- 본부 승인 하에 타이어가 보도에 닿을 정도로 바람 빼기
- 전기 열선 손상
- 비상등 버튼 고장 내기
- 큰 사고 나지 않을 정도의 오일이나 부동액 제거
- 누가 들어왔다 간 걸 알아채도록 차량내부 물건 옮기기

- 차문 열어놓고 나오기
- 자동차 인테리어 흠집내기
- 외출 시 자동차 앞 뒷문 조금 열어놓기 특히 한밤중
- 가구나 카펫을 알아챌 수준으로 자주 옮겨 놓기
- 가위 같은 저가 물품 절도 후 새로 구입하고 나면 제자리 가져다 놓기
- 대체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서 절도
- 대체 불가능 사진 절도
- 업무 중 우편함에서 우편물 절취해 뿌려 놓기. 벽에 걸린 그림 반복적으로 빼돌려 놓기
- 다른 시간으로 알람 셋팅
- 커피 같은 소비재 계속 버리기
- 새 옷 조금씩 찢어서 여러 차례 벌려놓기
- 속옷 갈라진 곳 넓히거나 비싼 속옷이나 수영복 절도 등
- 사이즈 다른 같은 옷으로 바꾸기
- 단추 채우기 힘들게 만들어 놓기
- 에어 매트리스나 쿠션의 바늘땀 매일 따기
- 의류나 가방의 지퍼 손상시키기
- 방수 신발 바닥 칼집내기
- 직장에서 의자 나사 제거, 집에서 식탁의 나사 제거하여 그릇과 함께 기울어져 쏟아지게 만들기
- 직장에서 그 전날 업무 망쳐 놓기. 컴퓨터 손상은 더욱 효과적임
- 직장에서 현재 파일을 예전 파일로 바꿔 치기(대상이 프로그래머라면 더 치명적임)
- 직장에서 잘못 배달된 증량물로 상대의 사무실 막기
- 직장에서 업무 일부의 책임자라면 점심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반복적으로 수행
- 직장에서 자제 관리를 맡고 있다면 통제 본부의 승인 하에 물건 절도

절도는 통제 본부의 허가 하에 주의 깊게 행할 것. 허가 없는 절도는 금함. 효과적인 절도는 상기 물품 중 자주 사용하는 저가의 물건 절도임. 대체 제품 구입 후 원상 복귀시킬 것. 이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을 불러 일으킨다.

5. 평판 훼손

직업 능력이나 사업 관계와 인간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신입 지역기반요원은 이 수법에 동원시키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상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에는 동조하도록 한다. 소문은 대부분 거짓말로 이루어진다. 처벌 단계에서 특정 인물을 공모자로 확보하기 위해서 애국심이나 지역 사회 봉사 정신에 호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로 고무시키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이 본부에 있다. 그들이 상대의 평판을 망칠 방법을 강구해준다.

아래에 열거한 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와의 인간관계를 끊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도록 정보를 주입시킨다.

- 사업상 지인들.
- 상사.
- 동료.
- 대상자가 회원으로 있는 단체나 잘 가는 바의 단골 손님 같은 격의 없이 만나는 사람들.
- 친구.
- 지역 향우회- 사회봉사단 명분에 감시나 처벌 단계에도 적극 참여한다.
- 상점 직원
- 집주인
- 이웃.
- 집, 차, 사업 관련 소매상들.
- 운행 경로의 버스기사.
- 동네 어린이들.
- 구급대원.
- 노숙자 쉼터 직원과 노숙자.
- 가족 (놀랍게도, 부정적 소문은 잘 믿는다.)
- 구직하려는 직장의 직원들.

얼마나 이 훼손 작전이 잘 수행될 수 있는가는 상대가 부정적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필요성과 비례한다. 목표는 부정적 소문이 동네에 은밀히 퍼져서 대상자와 말도 섞기 싫게 만드는 것이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대상자에게 바로 알려주거나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험에 따르면 친한 친구와 가족이 범죄 사실을 접하게 되면 더 쉽게 등을 돌린다. 본부 직원들은 방어 기술도 개발했지만 그런 기술들은 본 교본의 교육 범위 밖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협조를 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 보상은 지역조직 보다 높은 단계 조직의 전문가에 의해 주어진다. 지역기반요원의 평판 훼손 직무는 통제 본부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사항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6. 신뢰 추락시키기

사법기관과 정신병원의 물밑 도움으로 대중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을 충분히 막아내는 동안 상대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평판 훼손처럼 공석 발언, 인터넷, 언론 노출, 편집장에게 편지쓰기 등에서 신뢰 떨어뜨리기 작업은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의 감독하에 행해지도록 한다. 만약 지역기반요원이 임무수행을 지능적으로 잘 따라했고 컴퓨터도 잘 다룬다면 통제본부에서 신용 떨어뜨리기 작업을 할당할 수도 있다.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감독하에 수행할 업무는:

- 자유게시판 감시, Wogs, 소셜미디어 및 조직스토킹 카페 감시

지역본부보다 상위 본부에서 정하는 스케줄에 따라 교대로 수행한다. 이 감시는 블로그 스캐닝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관련 행위에 표시를 남길 것이다. 이것을 하는 지역기반요원은 "약 먹을 시간 지났다"거나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댓글을 즉시 달도록 한다. 지역기반요원은 인터넷에 올라 온 글을 상위 단계 감독에게 즉각 보고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한다.

- 신문사에 이 행위와 관련하여 편지를 보내는지 감시한다. 대부분의 편집장과 기자들도 동참하고 있으므로 감시 업무에 협조를 보태고 조용히 묵살할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편지가 세어 나갈 수 있다. 이럴 경우 "약 먹을 시간 지났다"는 대응은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편지를 복사해서 계획한 답과 함께 편집자와 감독에게 전달한다. 감독은 당신의 대답을 수정해서 당신의 글이 인쇄되게 해 줄 것이다.

- 당신의 상관은 대상자가 출연할 토크쇼를 감시하고 있다. 대부분 토크쇼 진행자들은 대상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신뢰를 잃게 할 만한 자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출연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피해자는 방송을 타기도 한다. 이런 경우 당신의 상관이 쇼에 출연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말을 하도록 준비시키거나 피해자가 정신병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UFO한테 시달리는' 척을 하도록 만들거나 언론의 마인드컨트롤을 주장하여 주제에서 벗어난 토론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 팀장의 지시와 준비 하에 피해자가 출연할 쇼에 말 재주가 있는 요원을 배정하여 피해자로 위장하여 출연시킨다. 이런 기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이다. UFO나 검은 헬리콥터가 따라다니고 인공위성이 집 위에 떠서 대기 한다거나 귀신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본다는 소리를 해야 한다. 이런 해괴한 주제들은 반드시 쇼가 진행 중일 때만 얘기를 해서 진행자를 혼란에 빠뜨리도록 한다.

- 지역기반요원은 대상자를 24시간 감시하면서 나타난 특이한 행동을 이웃들에게 흘리듯이 말을 한다. 이것은 이웃들이 대상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하도록 하여 그의 행동에 주목을 끌게 하기 위함이다. 일단 많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다닌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면 쉽게 진행되는 사항이다.

지역기반요원이 신뢰를 추락시키는 업무에 선정되었다면 영광으로 생각하라.

7. 상인을 동원한 처벌

이 단원에서는 특정 상인들과 상황을 이용한 발뺌할 수 있는 처벌을 가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 시끄럽게 땅밑에서 일하는 지저분한 작업을 피해자 집 주변 혹은 사업장 주변에서 하도록 하라. 장기간 도로

정비를 반복하는 것도 좋다. 필요도 없는 작업 예산 지원은 본부에서 해줄 것이다. 특히 공항 갈 때 택시가 늦게 도착하도록 만든다.

- 날씨 안 좋은 날 버스기사는 대상자가 기다리는 정류소 한 정거장 앞에서 배차간격 유지를 위한 것처럼 해서 5분간 정차 시키도록 만들라. 이것은 환승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상이 안좋은 날 피해자가 버스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게 만들면 더욱 효과적이다.
- 수리업자들이 물건을 망쳐 놓아 계속되는 리콜을 필요하게 하거나 연기시키거나 더 엉망으로 만들거나 바가지 를 씌우게 하라. 자동차 수리에 특히 잘 통한다.
- 의료기관에서는 혈액 샘플을 바꿔 치기 해서 아무 병이 없는 것처럼 만들라.
- 경찰이 쓸데없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만들라.
- 인터넷, 통신사 기술자가 끊임없이 전화하게 만들어 극도로 화나게 만들라.
- 잘 가는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치워버리도록 상점 점원을 설득하라. 좋아하는 물건을 주문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 피해자가 좋아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못하게 매진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라.

피해자가 계획 하에 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꾸밀 수가 있다.

8. 집

집에서 당하는 처벌은 첩보 작전의 효과를 위해 중요하다. 밖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갇혀 있기로 작정한다면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통제본부에서는 집 근처에 지역기반요원과 전자장비 작전 수행 요원을 위한 공간을 우선 마련한다. 24시간 365일 교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입이나 임대한 가옥을 요원들 거주용으로 사용하지는 않도록 한다. 임차 계약은 가명으로 하거나 아주 먼 곳에 사는 상관의 이름으로 한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웃들은 가해에 동참하도록 만든다. 그들의 참여여부는 작전 초기에 상관에 의해 결정되며 보상도 제공해준다. 다음 과정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대신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소음. 소음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피해자만이 시달린다고 느끼게 해야함을 명심하라. 지역에서 정한 소음 방지 규정은 지켜라. 하지만 얼마든지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경찰 개입을 야기할 만한 행동은 안된다.
- 마당에 있을 때 잎사귀를 불기 시작한다. 혹은 낮잠을 잘 때쯤 전자장비반이 대기하고 있을 때.
-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튼다. 흔한 일로 우수한 작업이다. 창문을 열 때마다 음악을 틀라. 때맞춰서 고의로 한다는 인상을 심어야 한다. 전자장비반은 베이스 강한 음악을 틀 수도 있다.
- 집 주변에서 타이어 비명소리가 들리도록 한다.
- 아파트에서는 피해자 집 벽을 대고 목조나 시멘트 드릴 뚫는 소리를 발생시킨다. 바닥이나 천장도 가능하다. 차선책으로 망치질도 좋다. 낮잠 자려고 할 때 효과적이다.

- 잠들 시간 즈음에 골프 공이나 테니스 공을 던지는데 이웃집 아이들을 동참시키면 더욱 좋다.
- 사이렌을 자주 울린다. 구급대원들은 사회봉사 의식이 있어서 참여 유도가 쉽고 여호와 증인을 끌어 들이는 것도 좋다.
- 잘못된 것처럼 대문을 자주 두드린다. 자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에 특별히 효과가 좋다.
- 쓰레기 투척. 이것은 경찰이 개입 못하게 본부에서 지원해준다.
- 애완동물 겁주기. 일정기간 집을 비운 사이 본부 지원 하에 시행한다. 전자기빔을 이용한 전자장비반의 도움으로 개나 고양이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다.
- 애완동물 죽이기. 정보요원의 이름을 발설한다든지 해서 특별한 처벌이 필요할 때 시행하나 자주하는 것은 아니다.
- 가축이나 야생 짐승을 죽여서 문 앞에 둔다. 이것도 특별한 처벌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 토지를 소유한 경우 옆에서 유해 행위가 가해지도록 한다. 쓰레기 하치장, 자동차 경주 트랙, 교도소를 지어 피해자가 소유한 토지의 자연경관을 해친다. 드물기는 하나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시행한다.
- 경찰이 대상자의 집을 볼 수 있도록 공모한다. 귀가 시간에 맞추어 순찰차를 계속해서 집 앞에 대기시킨다.
- 피해자의 학대나 재산 훼손을 경찰에 고발하더라도 목살하도록 해서 의사만 판단할 수 있다며 판단을 하지 않게 한다. 협조하는 경찰은 승진이나 보너스 지급을 한다.

9. 다른 전략

중요: 지역기반요원이 임의로 대상자를 목록에 올리는 것은 금한다. 대상자 선정은 통제본부나 상위단계에서 한다.

- 대상자의 편이 되거나 도움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친구, 식구, 혹은 조직보다 개인에 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럴 경우 통제본부 승인하의 개인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동정심을 보내는 이들을 범죄와 연루 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것은 체제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 경찰 개입 없이 은행계좌 분열도 가능하다. 이체 한도 설정을 없애고 신설계좌 수준으로 보호장치를 강등 시킨다. '국제 뱅킹 조직'의 개입이라고 부르는데 50-100 달러 정도의 작은 금액부터 대상자가 계좌 이체할 때 빼낸다.

- 돈은 정부 사찰을 반대하는 신문사나 단체의 회원에게는 절대 이체시키지 않는다. 돈은 은행 직원의 협조 하에 그냥 없어지게 한다. 이미 납부한 요금이 다시 청구되게 하거나 이체 자료를 없앤다.

모든 전략은 약화되는 효과없이 시대마다 성공적이었다. 누군가에게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이상 딱지만 붙이면 그들의 모든 증언은 아무도 믿지 않게 되어있다. 군에서는 이 전략을 60년대부터 반항적인 군인에게 응용해 정신병원에 수감시켰다.

확산 방지작전은 그들을 정신병적 가학 기술로 괴롭히는 동안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 행해진다. Cointelpro의 악용은 주목할 만하다. 나치와 전쟁범죄자를 떠올리는 확산 방지작전의 살인적이고 가학적인 기풍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병적인 행위를 행한다.

목표:

신용 떨어뜨리기 / 평판 저격 / 중상모략 / 이미지 오염 / 곡해 / 경제적 성공 압박 /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면이나 긍정적인 면 없애기 / 파트너 정해주거나 파트너 세뇌 / 인간관계 말살 / 반대 성향으로 만들기(신앙이나 행동) / 죄 뒤집어 씌우기 / 벼랑으로 몰아가기 / 즐거움, 감정, 인격의 소독 / 처벌 / 고문 / 인생 파괴 / 출산 막기 / 씨 말리기 / 자살 유도 / 은밀히 암살 / 작전 은폐

핀란드 북부지역 의료센터 원장, 조직스토킹의 피해자, Rauni-Leena Lukanen Kilde 박사

별첨 1. 위 교본의 키워드와 문구

Key words to chapter 18.

작전의 주요 구성요소:

- Community-based agent (CBA) 지역기반요원
- Electronic Corps (EC) 전자장비반
- Electronic Operations Manual
- electromagnetic beam 전자기 빔
- Control Center (CC) 통제본부
- On-Site-Supervisor (OSS) Field Operations People 현장감독
- Psychologists/Psychiatrists 심리학자/정신과의사
- Advanced computer communications systems and computer programs

조직스토킹 작전의 요소:

- Surveillance is foundation of all operations
- Operations are "active surveillance type"
- Passive surveillance, watching the target covertly, to obtain information
- Community-Based Agents- CBA
- Every act of punishment is DENIABLE
- Advanced technology enables heavy punishment (when) the target is in their home, silently through walls.
- Electronic Corps (EC) members get specialized Electronic punishment training

- Advanced electronic surveillance
- This manual -Field operations people
- Psychologists are the key to find ways to maximize feelings of stress and hopelessness in target, and degrading target's health.
- CBA's are given cell phone number for reporting target actions and movement to local Control Center (CC)
- The Center (CC) always has target's position monitored.
- Electronic Corps (EC) has through-the-wall surveillance and punishment equipment
- On-site-supervisor (OSS) will give hand signals
- Computer programs predict exactly when and where a target will be as they move through the community.
- OSS has special means of receiving instant, silent instructions for the Center.
- Intercepts are where CBAs appear to "just coincidentally" cross paths, on foot or by vehicle with the target.
- The ultimate vehicle intercept is the staged accident... excellent means of punishment where target has committed serious offense specifically against secret services by revealing their criminality to the public.
- Sabotage lets the target know they are totally helpless to stop harassment
- Thefts must be authorized by local Control Center
- Sabotage of target's reputation- is special operations category- done by spreading rumors, consisting mainly of lies. The goal is to keep negative information about the target flowing through the community.
- The organization has many top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on permanent staff at headquarters. Their job is to design campaign to destroy target's reputation. -"Incentives" are offered to get neighbors, friends, community members to cooperate
- The "Organization has powerful silent support of operations by the justice and psychiatric systems -Monitoring newspapers for letters to the editor regarding these activities.
- Monitoring talk radio show appearances by targets.
- Repair trades people can damage items (cars, travel trailers, etc.) of targets and/or overbill targets -Police can frequently pull the target over for frivolous reasons
- Punishing the target at the target's home is essential for effective secret service operations to create a "prison without walls." Operations are carried out 24/7 in shifts
- Control Center (CC) will arrange for homes or apartments adjacent to the target's home to be occupied by both community-based agents (CBA) and members in the Electrical Operations manual. -Electronic Corp (EC) operators can render a dog or cat passive for safe entry of the community-based agents, by electromagnetic beam.

4. 입문

조직 스토킹의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본질을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 나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 정부 기밀, 경찰의 부패, 사생활 침해, 사찰, 사설탐정, 여러가지 정부의 스캔들 같은 언론 보도를 분석해보면 조직스토킹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 범죄의 은밀함과 기만 작전 때문에 여기 나온 분석은 때때로 추측을 토대로 한다. 현재의 감시 기술과 정부 정책은 잠재적이고도 실제적인 사생활 침해를 불러 일으키는데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아래의 글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1. 정의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이란 적에 의한 전복, 간첩활동, 반란으로 인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행동을 말한다. 방첩작전은 적에 대한 감시, 작전 방해, 역정보로 교란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상자가 어떤 적으로 분류 되었고 전복을 꾀하는 어떤 행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작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FBI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감시하고 허위로 가득한 흑색선전을 일삼았는데 단지 그의 사상이 불온하다고 분류된 이유였다. 방첩작전의 전략, 전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러 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고 기업고객을 위해서 민간 보안업체에서도 사용하기도 한다.

정보요원이 가택수색영장 등을 가지고 도청장치를 탐지하는 등의 방첩활동을 펴는 것은 합법적인 반면 사설 업체 직원이 가택침입을 하거나 컴퓨터 해킹을 하는 전략을 취하면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 상황에 따라 '경고' 도 잠재적 협박이 될 수 있다. 정보 요원이나 사복형사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친구나, 친척, 지인 등을 수사를 가장해 접촉한다면 그의 평판이나 인간관계를 흠집 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으므로 인격모독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법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들지만)

미국의 방첩 작전 COINTELPRO ("Counterintelligence Program"의 줄임말)는 1956년부터 FBI에 의해 시행된 불법적인 작전으로 1971년 민간 시민 운동가에 의해 최초로 폭로되었고 1970년대 중반 미 상원의 처치 진상조사 위원회(Church Committee)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극우성향의 FBI 국장이던 J. Edgar Hoover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분류된 많은 미국시민들을 사찰하고 협박, 모략과 테러를 가하며 살인을 포함한 폭행을 행사한 일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LEIU(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RED SQUADS로 처음엔 불렀다)는 지역 경찰부서내의 정보분과인데 범죄 조직에 위장 침투하는 등의 합법적 행위도 하지만 19세기부터 기업이나 정치인들에게 사상적으로 불온한 자로 분류된 자들을 사찰하는 업무도 해왔다. FBI가 방첩작전 COINTELPRO 를 개시하기 시작한 같은 해인 1956년 26 개의 RED SQUADS가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을 결성했는데 이때부터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조직 이름을 "Association of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으로 바꾸었는데 기존의 약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http://leiu.org/>) 사조직으로 분류된 특성 때문에 정보 공개 의무에 해당사항이 없다. 역사적으로 미 정보기관과의 연계, 은밀성, 준 정부기관 형태, 직원들의 능력, 전국적인 연계망, 전 현직 형사와 경찰, 정보요원으로 구성된 직원들이란 정기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LEIU가 조직스토킹과 연관된 불법사찰과 가해행위의 중추기관으로 짐작된다.

연방정부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Surveillance Role Players-SRPs) 은 군수업체가 낸 구인 광고에 의해 지난 수년간 모집 되었는데 광고를 살펴보면 이들이 하는 일은 정보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직업 특성은 보고된 바가 없다. 이 구인 광고를 보면 고졸 이상, 첩보 훈련 경험과 신원 확실, 경찰 업무관련 등을 내세우며 거의가 파트타임 직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모르지만 2013년의 경우 5백십만명 이상에게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증이 교부되었는데 이 중 1/3이 민간업체 종사자다.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중 가장 높은 등급인 Top Secret Clearance 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거의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부관계자가 아니라 대부분 민간계약 직원들이다. SRP 들이 스토킹에 가담했는지는 단시일에 밝혀지지 않겠지만 눈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부고발자가 되는 용기와 청렴함을 지닌 자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

2. 파괴(Disruption)

첩보요원들의 전문용어로 정보기관의 고객이나 직원들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자들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다. 누군가를 체포하고 기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암살이 실용적이지 못할 때 차선책으로 장기적인 사찰과 가해행위를 가한다. 표면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의 행동을 제한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계속되는 혼란과 흥분상태를 유지하며 각종 자극과 분노를 유발하는 일을 유도하거나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훼손하고 사생활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휘방을 가한다.

FBI의 방첩작전인 COINTELPRO와 달리 '파괴'는 일종의 전술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공개된 NSA 기밀문서에 의하면 미국정부와 민간업체가 대규모 불법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와 미 상원 보고서가 밝힌 바와 같이 CIA와 관련업체도 고문행위를 행하고는 있지만 부인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자들처럼 '파괴' 활동 대상은 위험해서 라기보다 단순히 보복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리스트에 올려놓기만 하면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정부 고위관료, 청부인, 정보요원들이 이를 정당화하려 한다. '파괴' 작전은 청부인의 복수심 같은 위법적인 동기에서 탄생하지만 가해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위험 인물로 분류해 리스트에 올려놓기도 한다.

이 작전은 불법적이지만 증명하기 힘든 전략을 취한다. 공공연한 미행(스토킹), 협박, 블랙리스트 작성, 직장에

서의 따돌림, 무단침입, 컴퓨터 해킹, 음해, 중상모략, 흑색선전, 사생활 노출, 소음테러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일반대중들은 거의 인식을 못하지만 이 작전이 간헐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2006년5월 The Globe and Mail이란 캐나다 신문은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CSIS) 와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에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테러 용의자에게 조직스토킹 기법인 “확산과 파괴” 전술을 이용했다고 보도한다. 변호사의 주장으로는 의뢰인이 관계당국자들에 의해 가해행위를 당해왔었지만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고 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lacking-a-case-csisdisrupted-suspects-lives/article709568/>)

2010년 11월에 미국 외교 통신문에서 미 국무부 관료와 캐나다 정보국(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 CSIS) 국장이 헤즈볼라 대원에게 스토킹 기법과 관련 있는 방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했다는 대화내용을 보도한다. (<http://wikileaks.org/cable/2008/07/08OTTAWA918.html>)

2016년 2월 발행된 The Intercept지에 따르면 FBI는 방첩활동의 성과를 ‘파괴’ 작전 몇 건이 성공했느냐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연방정부의 비밀경찰이 연관되어 있으면 의례 그러듯이 기자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물었을 때 대답을 거부했다고 한다. ‘파괴’ 작전의 성공에 부합하는 기준이 무엇이나는 기본적인 질문조차도 회피했고 FBI에서 구속한 사람의 숫자보다 성공한 작전 수가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도 대답을 거부했다고 한다. The Intercept지는 FBI의 ‘파괴’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모호하다고 전한다. “파괴란 범죄나 국가 안보에 연관된 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그의 사생활에 직접 휘방을 놓는 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상대를 구속하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재산 압류나 직업적 능력 박탈 등도 포함한다.”(<https://theintercept.com/2016/02/18/fbi-wont-explain-its-bizarre-new-way-of-measuring-its-success-fightingterror/>)

파괴 작전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 인지하고 상관없이 인터셉터 지의 기사는 많은 점에서 이 작전이 방첩작전 COINTELPRO 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ACLU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말이다. (<https://www.aclu.org/sites/default/files/assets/unleashed-and-unaccountable-fbi-report.pdf>)

“FBI의 광범위하고도 공격적인 수사 감시 권한과 범죄와 관련 없는 자에게도 ‘파괴’ 전술을 적용하려는 의지는 많은 무고한 시민에게 끔찍한 충격을 준다.”

“범죄와 연관이 없는 자를 수사대상에 올려놓는 것은 재정적 압박 뿐만 아니라 발가벗겨 현미경에 올려 놓는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가족들에게도 가하는 것이다.”

Zersetzung (파괴, 침식)은 장기간 ‘파괴’ 작전에 말린 사람을 일컫는 독일어로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에 의해 사용되었다. (<https://www.nytimes.com/books/first/k/koehler-stasi.html>) 이 작전은 피해자를 공포에 몰아넣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며 경제적 심리적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어 계속되는 스트레스 거리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2004년 10월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에서는 정부가 저지른 범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처단하기 위해 정보기관인 MI5에서 이 전술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http://www.thesundaytimes.co.uk/sto/news/article241256.ece#>)

갱스토킹(Gang Stalking)은 ‘파괴’ 작전의 은어이다.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지만 파괴 작전과 달리 공식적인 문서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비공식문서엔 가끔 등장하는 이 용어는 그릇된 정보로 오도하기 위해 정보기관에 의해 만들어졌다. 파괴 작전에 갱들이 동원되기는 하지만 사찰과 가해 행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는 의도가 있다. 방첩작전COINTELPRO 대신 웹상에서 많이 쓰이는 또 다른 용어로 조직스토킹(organized stalking)이 있는데 갱스토킹 만큼은 아니더라도 방첩작전의 일환이란 점을 제대로 모르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용어로 이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용어도 아니고 온라인 상으로 논쟁도 있지만 그 정의가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9/11 이후로 소수의 내부고발자들이 거대한 미국 보안 산업계를 떠받치고 있다. 정보기관, 경찰계에서 양심선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도 한 몫 하고 사설업체 직원들이 공무원들보다 실수를 적게 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 “파괴” 작전의 실체가 조만간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고위관료들의 권력 남용이나 자살 당하거나 암살당한 사람들의 사건을 보며 단서를 모아 갈 수는 있을 것이다.

구글에서는 갱스토킹이란 단어가 2005년 이후부터 많이 검색되었다. 이 자료만 보고 ‘파괴’ 작전이 날이 갈수록 많이 시행되는지 사람들이 점차 관심을 가지는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https://www.google.com/trends/>)

유행 같은 다수에 의한 스토킹

미 법무성 (Department of Justice-DOJ)에서 2006년 실시한 범죄 통계 조사에 의하면 연 인원445,220 명의 스토킹 피해자가 3명 이상으로부터 당했다고 한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의 13.1%에 해당한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doj-stalking-survey-20061.pdf>)

공교롭게도 미국 정보기관과 끈끈한 인연이 있는 영국에서도 1998년 12%의 스토킹 피해자가 3명 이상의 가해자로부터 당했다고 보고되었다. 4명 이상의 가해자는 8%나 되는데 이것은 16세에서 59세 사이 인구의 0.994%에 해당한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british-crime-survey-1998.pdf>)

신기하게도 아무 관심 없는 사법기관

Keith Labella 변호사는 국가범죄피해자 센터(법무성에서 자금 지원)에 2008년 10월 조직스토킹 범죄가 보고되는 빈도수를 문의하였는데 ‘매달 수천 수만 통의 전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어떤 조연도 제공 하지 않았으며 다른 기관으로 사안 이송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Mr. Labella의 진술서 (<https://fightgangstalking.com/gang-stalking-documents/#nationalcenter>)

미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DOJ)은 방첩 작전의 전술인 스토킹을 공론화 시키지도 않으며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부인 하지도 않고 있다.

COINTELPRO Version 2.0

국가 안보기관이 모든 사람의 전화와 인터넷을 추적할 수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스토킹 범죄가 해마다 수십 만 건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추적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

다. 법무성 통계자료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이런 범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 점은 정부기관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http://www.victimsofcrime.org/our-programs/stalking-resourcecenter/stalking-laws/criminal-stalking-laws-by-state>)

재판 없는 무단 수색과 처벌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스토킹 또한 범죄이다.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2261A>)

3.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

어떻게 대중들은 방첩작전 COINTELPRO의 부활을 이리도 모를까? “조직스토킹을 둘러싸고 있는 침묵의 벽”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 은밀한 방법

방첩 활동의 기본은 은밀한 작전 수행이다. FBI의 방첩작전 원조 격인 Cointelpro도 문서가 도난 당해 언론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다.

(2) 기밀유지

방첩 활동을 하는 경찰과 정보기관 요원들은 '기밀유지 서약'을 해야 한다. 정보기관에 의해 도급 받은 보안업체 관계자도 마찬가지이다. 보안업체에서 감시역할을 할 직원모집(국내간첩) 구인광고를 보면 첩보 훈련 외에 Security clearance(미국에서 보안2단계 인가 등급 시민)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SA)을 위해 일하는 판사들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기밀유지 서약을 해야 하고 상하원 정보협회 요원들도 마찬가지이다.

(3) 내부고발자 보호 제외

FBI같은 정보기관 요원들은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양심선언을 하는 누구라도 심각한 결과를 예상해야 하며 정보 기관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4) 증인의 법적인 제한

대상자가 국가 전복 혐의로 선정되었다면 주변에서 목격한 증인에게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한다. 수사 중에는

수사기관 측에서 함구령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FBI에서 '국가안보서신' 이란 행정 소환장을 발부할 경우 수신자는 그 어떤 내용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5) 증거를 최소한 남기는 전략

FBI가 이용하는 전략은 예전 Cointelpro 작전의 수법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동독의 슈타지(Stasi)에서 더욱 정교하게 갈고 닦은 전략도 이용한다. 대부분 '손 안대는 고문'(no-touch torture)으로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전략을 이용하는데 피해자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압박해 가해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법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증언은 무시되기 일쑤다. 낯선 사람이 무례했다든지, 가는 곳마다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다든지, 이웃이 소란스럽다든지, 위험 운전을 겪었다든지, 길을 갑자기 가로막는 행인이 있었다든지 하는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자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문이다.

(6) 무관심

많은 사람들은 FBI의 Cointelpro 작전이나 CIA의 MK Ultra Program처럼 1970년대에 국회 조사를 통해 정식으로 공개된 문서에도 잘 나와 있는 이런 사건에 관심이 없다. 비슷한 맥락으로 동독 비밀 경찰에 대해서는 들어봤어도 조직스토킹 기법과 유사한 Zersetzung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미국인의 3/4은 냉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29%는 부통령의 이름도 대지 못한다. (<http://www.newsweek.com/how-ignorant-are-americans-66053>) 이런 무관심한 환경 속에서 방첩작전은 활개를 칠 수가 있는 것이다. 고학력자들도 이런 상황이 Cointelpro와 동독 비밀경찰 같은 역사적인 현상과의 연관성이 있다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환경은 FBI같은 기관이 자경단원을 수월히 모집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3권 분립 기관의 이름을 64%가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들키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govbeat/wp/2014/09/18/only-36-percent-of-americans-can-name-the-three-branches-of-government/>)

(<http://www.npr.org/blogs/thetwo-way/2014/02/14/277058739/1-in-4-americansthink-the-sun-goes-around-the-earth-survey-says>)

(7) 주요 언론의 비겁함, 게으름, 무능함.

조직스토킹은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 지역언론이나 대체언론을 통하여서다. 큰 언론사에서는 정보기관이나 경찰에서 꺼려하는 주제를 다루지 않으려는 무언의 관례가 있다. 언론의 침묵은 Kristina Borjesson이나 Noam Chomsky의 설명처럼 대부분 자체 검열의 결과이기도 하다.

(<http://www.amazon.com/Into-The-Buzzsaw-LEADING-JOURNALISTS/dp/1591022304>)

(<http://www.amazon.com/Manufacturing-Consent-Political-Economy-Media/dp/0375714499>).

게으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연방정부는 종종 심각한 범죄나 속임수에 개입되어 있는데 2013년 스노든의 경우처럼 내부고발자가 유죄를 입증할 공식 문서를 그들의 무릎 위에 놓아주기 전까지는 폭로하지 않으려고 한다.



에드워드 스노든

(<http://reviews.publishersweekly.com/978-0-8078-4562-2>)

Cointelpro 작전이 대중의 안테나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은 언론의 비겁함 때문이다. 역사가인 Kathryn S. Olmsted가 1996년에 발간한 Challenging the Secret Government이란 책에서 말했듯이 미국인들은 언론의 대담성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책의 리뷰에도 나와 있듯이 Seymour Hersh나 Daniel Schorr 같은 예외적인 기자가 간혹 있긴 하지만 미국역사에서 언론은 결정적인 순간에 겁쟁이가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보기관의 뿌리깊은 부패를 폭로할 기회와 개혁할 순간을 잃었다.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미국 언론들은 진상조사의 열의를 가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용기를 얻는 듯 했다. 그러나 언론은 그들의 잠재적 능력의 발견에 위축되어 그런 열의를 거두어 들였다. 닉슨 대통령 사임 6 달 후 뉴욕 타임즈 기자였던 Seymour Hersh는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CIA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에 관한 기사를 기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기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의 기사들이 줄줄이 뒤따랐다. Hersh의 주장은 단지 대규모로 행했기에 잘못이라고 우기는 CIA의 William Colby 국장의 상원에서의 증언에서 나왔다.

(8) 교란작전

인터넷에서 가장 큰 검색엔진인 구글에서는 특정 단어와 문장에 대한 검색결과가 시간에 따라 요동친다. 구글 내부 직원만이 검색결과를 결정하는 정확한 정책과 알고리즘을 알겠지만 온라인 상에서 어떤 주제에 관한 대략적 정보는 확실히 얻을 수 있다.

스크린에 표시되는 사이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0 페이지를 봐도 100개 정도의 링크만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훨씬 많은 개수의 정보를 찾아냈다고 나온다. 2013년 10월 구글에서는 갱스토킹에 관해 6백만개의 결과를 산출해냈다. 천천히 살펴보면 대부분 쓰레기 같은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방첩작전에 관해 피상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교란 작전이란 것을 눈치 챌 것이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더라도 이런 분탕질로 조직스토킹이 대중의 관심을 못 받게 한다. 작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이런 수법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9) 정보 부족

주요언론에서 과거 십년 간의 국내 사찰, 방첩활동이나 조직스토킹에 관한 기사를 전부다 뒤져본다면 정부 인가된 작전의 보고자와 사찰 업무, 조직스토킹이 현재 보안산업 체계의 주요한 요소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부 종합하여 정리된 증거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인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4. 완화된 수사요건

2008년 FBI 수사를 관장하는 미 법무성 지침에 '평가'라는 새로운 수사 항목이 신설되었다. (http://privacysos.org/degraded_standards) 이 수사법은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는 증거 없이도 시행될 수 있고 사찰, 정보제공자의 고용, 용의자 지인들에 대한 탐문수사, 잠복근무 FBI 요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BI 내부 지침은 더욱 완화되어 2011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도 수사대상자의 상업적 데이터 베이스나 쓰레기통을 뒤져서 얻는 정보도 용인하고 있다.

'감시공화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확대로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받는 일은 영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두 나라 정보기관의 친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도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NSA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공개된 기밀문서 중에는 NSA가 영국의 자매기관인 GCHQ가 웹캠을 통해 대중을 감시하는 기술 개발을 도와줬다는 사실이 있다.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feb/27/gchqnsa-webcam-images-internet-yahoo?commentpage=1>)

같은 맥락으로 애국자법(Patriot Act)이나 2000년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RIPA)같은 법은 국가 안보란 미명 하에 감시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전통적인 기본 인권들을 후려갈겼다. (http://en.wikipedia.org/wiki/Regulation_of_Investigatory_Powers_Act_2000)

5. 정부 작전을 사적으로 이용

사설보안업체나 정부기관에서의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나중에 보겠지만 정부가 사설 업체를 고용하여 방첩작전을 시행하는 전략 중 한가지가 역정보 유포이다. 자기네들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 가짜뉴스와 정보를 생산하는 업체에다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경고한 것처럼 국방예산은 더러운 업자들 손에 들어가 더 더럽게도 쓰인다.

USA Today에서 2012년 미국의 선전운동 산업을 파헤쳐 보도하던 기자들이 업자들로부터 모함 당한 사례가 있다. (<http://usatoday30.usatoday.com/news/military/story/2012-02-29/afghanistan-iraq-militaryinformation-operations-usa-today-investigation/53295472/1>)

"펜타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돈을 벌려고 하면서, 군관계자의 말로는 "정보 작전" 사실상 "심리전"을 폈는데 광고와 캠페인 비용으로 수천만 달러를 썼다."라는 보도가 나가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자들 이름으로 가짜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이 만들어져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각종 자유게시판과 블로그에 글이 남겨졌다. 웹사이트는 이들 이름으로 등록되었고~~"

"~ Tom Vanden Brook이라는 펜타곤 기자가 이 작전과 관련하여 펜타곤 하청업자와 만난 지 며칠 후 TomVandenBrook.com이란 사이트가 1월 7일 한 도메인 회사를 통해 등록되었다. 2주 후 편집자 Ray Locker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자 RayLocker.com이란 사이트도 같은 도메인 회사를 통해 등록된다."

어떤 프록시 서비스는 웹사이트 소유자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용되었고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제3의 사이트가 등록되었다고 기사는 전한다.

<http://usatoday30.usatoday.com/news/washington/story/2012-04-19/vanden-brook-locker-propaganda/54419654/1>)

모함은 방첩작전의 전략 중 하나인데 업계에 있는 민간인을 동원한 전략을 펴기도 한다. 이론적으로 조직스토킹은 이런 전략을 잘 알면서 기꺼이 참여하려는 사람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다. 경제적 여유가 풍족한 사람은 개인적 보복이나 겁을 주기 위해 사설업체 직원이나 이런 전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도 있다. 전 현직 경찰이나 정보요원 혹은 군 정보요원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도 정부기관의 공식 승인없이 이런 수법으로 가해 초기단계에 피해자를 괴롭힐 수도 있다.

“미끼 던지기”란 사찰 기법이 있는데 가해에 반응하는 대상자의 증거를 악의적으로 수집해 놓고 이 증거를 정부 요원에게 제시하여 공식 작전 실시 요구 때 발판이 되도록 한다.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순간 가해자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정부 요원에게 자기들이 수집한 증거를 넘겨주며 대상자에게 작전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러신고센터“Terrorism Liaison Officer” (TLO) (<http://progressive.org/mag/mc070208>) 에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사냥하는 일을 한다.

조직스토킹 수법은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자와 관계된 사람의 원한을 산 누구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FBI와 동맹 관계에 있는 InfraGard도 누군가를 충분히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조직스토킹 같은 방첩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정보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마피아에 사촌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6. 민간 조직에 의해 일어난다는 주장

기만은 방첩 활동의 주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방첩 작전과 유사한 조직 스토킹에 관한 글은 의심부터 가져보아야 한다. 지금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스토킹의 가해세력이 자경단 같은 민간 조직이라는 주장도 그 하나다. 현재의 ‘감시 공화국’과 같은 체제에서 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그 실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 체계 구조가 어떻게든 일종의 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 스토킹에는 명령만 따라야하는 기계적 관료 문화 뿐만 아니라 ‘흠집내기 문화’도 한 몫 한다. 가해자들은 새디스트 집단의 비공식 후원도 받는다. 다른 시민들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비정부 조직인 ‘KKK’단도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인과 경찰이 조직원의 일원이기도 했다. 스토킹에 개입하는 민간 조직도 있겠지만 중심은 정부인가 된 조직이다. 가해세력의 배후가 프리메이슨(<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1/apr/23/hitch22-christopher-hitchens-review>) 이나 여호와의 증인, 사이언톨로지-한국에서는 신천지-같은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2013년 3월 15일 브리즈번 타임즈 기사이다.

<http://www.brisbanetimes.com.au/national/jehovahs-witnesses-a-cruel-cult-20130315-2g5x3.html>)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말(사람은 종교적 본성이 강해서 자기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 아침, 테러도 임의로 사용하는데 끝없는 사기, 폭행, 강탈이 뒤따르기도 한다) 에 동의 한다면 종교단체가 배후세력이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이언톨로지교에서는 적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소위 "공정한 게임"이라는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1990년 L.A 타임지에서 전했다. 어떤 전략은 조직스토킹과 연관된 '심리전법', '지저분한 속임수', '가해행위'도 포함하는데 전현직 형사, 경찰, 전과자도 동원된다.

<http://www.latimes.com/news/local/lascientology062990x,0,5646473.story?page=1>)

그들의 비판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세상 반대편에서 사립탐정들을 파견하여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지거나 사생활을 파헤쳐 그들을 음해할 정보를 찾는 짓도 한다. L.A 전직 경찰이 주도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는 반대 세력 리더를 범죄와 연루시키기 위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유명한 조직범죄단과 전과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한다.

사이비 종교에 의한 스토킹은 통계에 나온 스토킹 범죄의 지극히 일부만 차지한다. 이단 종교신자들은 조종당하기 쉬워서 자기네들이 이해도 못하는 동기의 이런 가해 행위에 얼마든지 가담하기도 한다. 내국인을 상대로 방첩 작전이 시행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대중이 많은 현실 속에서 그들이 접하는 정보가 미국판 슈타지에 의한 역정보와 조작이라는 것을 알아챌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음모론의 화두로 많이 언급되며 배후세력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으로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과 무관하다.

이 프리메이슨 조직망이 조직원의 권한 남용을 위해 이용된다는 주장이 있기는 있다. 2013년 6월 인디펜던트 지는 많은 로펌과 부자들과 대기업이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그들을 위한 불법 사찰에 이용해왔다는 영국 경찰에서 빼낸 기밀문서를 폭로했다. 문서에 따르면 사립탐정들은 경찰관계자와 어울리는 방법으로 '이용가치 있는 돈독한 관계로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밝혀진 한가지 방법 중에는 프리메이슨 조직원이 되어 경찰과 판사의 부정을 일삼게 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http://www.independent.co.uk/news/uk/crime/the-other-hacking-scandal-suppressed-report-reveals-that-lawfirms-telecoms-giants-and-insurance-companies-routinely-hire-criminals-to-steal-rivals-information-8669148.html>)

7. 경찰국가의 출현

2013년 백악관 관리 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보고서에 의하면 5백십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비밀취급인가증이 있다고 한다.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the-switch/wp/2014/03/24/5-1-million-americanshave-security-clearances-thats-more-than-the-entire-population-of-norway/>) 3백6십만명은 기밀취급인가이고 1백5십만명은 최고기밀취급이 가능하다. 이중 1/3은 정부관계자가 아니라 민간 계약 직원들이다. 정보활동 예산의 대부분은 비밀에 쌓여 있는데 정부가 민간인 사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2013년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NSA)의 국내 민간인 무분별 사찰이 폭로되면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 졌다. 게다가 사법기관에서 많은 시민들을 기소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 미국은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구속율을 보이고 있다. (<http://www.nytimes.com/2008/04/23/us/23prison.html?oref=slogin>)

현장요원들의 무분별한 권한 확대와 비공개작전의 확장은 정부의 균형성을 잃게 한다. 비슷한 문제로 연방요원들은 최소한의 책임만 지고 작전을 무분별하게 수행하는데 여러 사례를 보면 은밀히 작전을 수행한다는 FBI, CIA, NSA 같은 조직들은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며 권한 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첩보 산업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협

“정부 의회는 방산 업계가 가할 부당한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

나중에 아이젠하워도 이란과 과테말라 CIA 습격작전을 승인하면서 자기가 경고한 세력들처럼 부패되었다. 이란에서는 CIA와 영국 MI6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수상을 제거하고 독재정권을 세웠고,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폭압경찰까지 양성했다. 비슷하게 과테말라에서는 CIA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축출하고 군사독재정권을 세웠다. 두 경우 다 기업의 탐욕과 미국 정부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했다.

조직 스토킹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철저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방첩작전은 민주주의 자체에도 위협을 가한다. 왜냐하면 정부 권한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FBI의 원래 COINTELPRO 작전은 불법적이었고 권한 남용이 심했다. 현재 버전도 비슷한 식으로 부패했고 이제는 더욱 첨단 장비로 무장한 방대한 조직을 가진 비밀기관과 민간계약직원에게 의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8. 민간인 사찰: 민간계약직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첩보활동에 쓰이는 막대한 예산은 감시, 수사, 보안과 각종 첩보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 산업체로 들어간다. 2012년 보고에 의하면 70% 가량의 첩보활동 예산이 민간업체로 흘러 들어갔다. (http://articles.baltimoresun.com/2013-06-10/news/bs-md-snowden-contractors-20130610_1_contractors-government-employees-national-intelligence)

내국인 감시 분야에서 정부와 업체의 결합은 위험할 수 밖에 없다. 2013년 아틀란틱지 기사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http://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3/07/the-nsa-wants-americas-most-powerful-corporations-to-be-dependent-on-it/277822/>)

“정부와 업체는 위험한 일을 할 잠재능력이 있다. 서로 은밀한 결합을 공모하면서 가담하지 않는 자에게는 손해가 가도록 일을 추진한다면 위험한 결과는 뻔한 이치다. 국민은 거대한 정부와 싸울 수 있다. 국민은 금융 재벌과 싸울 수 있다. 국민은 기술 재벌과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은밀한 법으로 한 통속이 된다면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Booz Allen Hamilton은 정부를 위해 우릴 감시한다고 돈을 두둑이 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캠페인을 벌여 감시공화국이 확장되어 들어오는 추가 수익금을 더욱 마련하려 한다.”

전국민 감시를 위한 정치적 지원은 법집행과 테러방지라는 매파적 관점에 일부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상은 탐욕이 원인이다. 돈 다발을 기다리는 업체들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모두가 IG Farben처럼 되기 위해서 말이다. (<http://www.businessweek.com/stories/2008-08-13/ig-farben-and-hitler-a-fateful-chemistry>) (전쟁으로 돈 버는

탐욕스런 기업의 전형)

2013년 7월 국회에서 NSA가 전 국민의 전화와 email을 도청하는 사찰 작전에 제동을 걸지 말지를 투표했을 때 계속 추진하자는 쪽에 투표한 하원의원들은 반대에 표를 던진 의원들보다 방산업체로부터 2배나 많은 재정지원을 받았다. (<http://www.wired.com/threatlevel/2013/07/money-nsavote/>)

NSA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하기 전까지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의 얼마가 그들을 사찰하는데 쓰이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2013년 회계연도에 “검은 예산”에 관한 178페이지에 달하는 기밀 문서도 공개하였는데 그해의 부정 자금은 \$526억 달러에 달했다. (<http://www.theverge.com/2013/8/29/4672414/leaked-snowden-documents-reveal-details-of-surveillance-budget>)

사찰업무에 갈때기를 쫓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막대한 자금도 정부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DIA)의 작전처럼 많은 첩보작전은 펜타곤의 승인 하에 실시된다. 펜타곤에서 사용하는 지출비는 추적이 아주 어렵다. 정부회계 사무서에서도 국방부 지출은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http://www.gao.gov/press/financial_report_2013jan17.htm)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옹호하는 자들은 막강한 자금지원을 받는 산업 기생충들을 마주 해야 한다. 2013년 5월 뉴요커 기사를 보면 전체주의 국가의 실체가 국내 보안산업계 주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http://www.newyorker.com/talk/comment/2013/05/20/130520taco_talk_hertzberg)

“2010년 워싱턴 포스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전역 1만 군데의 지역에서 대테러업무, 국내보안, 첩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3천개 이상의 정부 조직과 관련 있는 민간업체가 있다고 했다.

Frontline은 2013년 4월 현대 방산업계와 치안산업계를 이루는 비밀 기관과 회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프로그램 이름은 “극비의 미국 - 9/11에서 보스턴 폭탄테러까지”이다. (<http://video.pbs.org/video/2365004424/>) 시간이 없다면 초기 3분에서 6분사이와 27분에서 32분까지의 5분가량 민간첩보 산업계의 그림자를 폭로하는 부분만 시청하라.

이 다큐멘터리의 밑바탕이 되는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사는 미국 경찰 공화국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조사 중 하나이다. 12명 이상의 기자가 은밀히 첩보작전을 수행하는 기관과 회사의 광범위한 전국망을 조사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한다. (<http://projects.washingtonpost.com/top-secret-america/articles/a-hidden-world-growing-beyond-control/>)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의 대응으로 정부에서 창조한 특급기밀 세상은 너무 크고, 넓고, 은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는지 얼마나 많은 작전이 수행 중인지 얼마나 많은 기관이 같은 업무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U.C 버클리대학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가르치는 Tom Engelhardt는 보안산업계의 팽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http://www.tomdispatch.com/post/175789/tomgram%3A_engelhardt%2C_a_ripley%27s_believe_it_or_not_national_security_state/)

“지금은 일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비슷한 부대들과 합쳐졌다. 국가 내에서 점차적으로 이윤창출의 중심 국가를 건설할 산업 스파이, 민간 분석가, 기업 용병, 건축업자, 민간 공급자를 만들어내며 민간업체 직원 수 만명을 고용했다.

배럿 브라운의 민간 첩보 계약 직원들

2014년 3월 배럿 브라운 기사는 Stratfor 와 HB Gary 같은 민간 첩보 업체의 내부 이메일을 해킹한 해커의 자료를 공개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 수감 중이다. 드러난 활동 중에는 Glenn Greenwald 기자와 상공회의소의 비평가들에 대한 거짓말을 유포하면서 흑색선전 활동을 벌이는 이메일 내용이 있었다. 적어도 몇몇 이런 비밀스런 회사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CIA가 외국의 적에게 수행할 만한 작전을 시행했다. 다음은 2013년 7월의 배럿 브라운 기사의 기사이다.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jul/01/cyber-intelligence-complex-useful-idiots>)

조지스토크 모집 구인광고?

Whitney, Bradley & Brown, Inc.

Job Summary

Company
Whitney, Bradley & Brown, Inc.

Location
Norfolk, VA

Industries
Government and Military

Job Type
 Full Time
 Employee

Years of Experience
7+ to 10 Years

Education Level
Bachelor's Degree

Role Player and Surveillance Team Member (HT-JCOE)

About the Job

WBB is a technical and management consulting company that provides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that solve government and commercial customer's toughest problems. For more than 30 years, WBB has set the standard for excellence in consulting services, while providing an outstanding work environment with ample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success. WBB continues to enjoy impressive growth, which is directly attributed to the company's hiring practice of always hiring the very best professionals from government, military and industry.

Job Description

Responsibilities:
This position will provide HUMINT role Player and Surveillance team training support to the Joint Center of Excellence East. Candidates will provide practical exercise based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HUMINT practitioners who serve in operational, investigative, collection, and analytical roles.

Qualifications

Basic Qualifications:

- **MINIMUM CLEARANCE REQUIRED:** Must possess an active TS/SCI clearance within 4 years.
- Must have demonstrated experience in HUMINT intelligence career field providing operational, investigative, collection or analytical experience
- Must be familiar and trained in discrete surveillance, surveillance detection methodologies, and associated disciplines
- Must be able to conduct scheduled surveillance activities and evaluate student performance.
- Candidate will be required to provide timely, thorough feedback to all students
- Must be willing to provide exercise support as requested.
- Extended work hours may be required to meet physical requirements to meet training exercise schedules
- Must possess a US driver's license
- Must be proficient in Microsoft Word, Excel, and Outlook
- Candidate supporting role player responsibilities wi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any supporting props such as costumes, communication devices and disguises.
- This position requires physical stamina.
- Must be proficient in Microsoft Word, Excel, and Outlook
- Must possess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s
- Must be able to work in a team environment

Additional Qualifications:

- Experience working in an intelligence community training environment highly desired
-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IC communities organization is highly desired
- Prior military background highly desired
- BA/BS Degree is highly desired

Job Title: Role Player and Surveillance Team Member (HT-JCOE)
Key Words: HUMINT; DIA; training; Coun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role player, intelligence, operational, investigative, collection, analytical, detection, IC, DoD.
Primary Location: Norfolk, VA and several locations throughout the east coast
Travel: Yes as directed by Government

We are proud of our diverse environment, Equal Opportunity Employer. WBB is committed to a policy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WBB participates in E-Verify.

Back to Job Search Results
APPLY

2013년 8월 21일 *Drudge Report* 지는 그 전날 InfoWars에 올라온 샌디에이고의 구인광고 링크를 소개했다. Craigslist에 올라온 첩보/보안 회사 “감시자(Surveillance Role Player)”로 일할 파트타임 모집이 그것이었다.

‘조직체계’ 파트에서도 설명하지만 이런 구인광고는 많이 올라온다. 대부분 국방부 민간계약직원 모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Surveillance role player job”으로 검색해도 많이 나온다. 광고에서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내 첩보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광고에서는 ‘비밀취급인가’ 보유와 ‘첩보훈련’ 경험만 요구한다. 주요언론에서 이 주제에 서광을 비춰줄 만한 보도를 낸 적은 없지만 많은 자료들은 조지스토크를 뽑는 광고라고 결론짓게 해준다.

경찰과 정보기관의 민간업체 지원

민간업체와 경찰/정보기관과의 결합은 첩보 산업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 회사

와 연합한 대테러기구가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기 시작했는지 2013년 5월 '언론과 민주주의 센터'에서 '반대나 테러나'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적이 있다.

http://www.prwatch.org/files/Dissent%20or%20Terror%20FINAL_0.pdf

이 보고서는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두 조직에 대해 묘사한다.

“연방정부 수준의 민관합동의 첩보 기관이 있다. 바로 InfraGard와 국내안보동맹의회(Domestic Security Alliance Council-DSAC)이다. InfraGard는 FBI의 사이버분과 Public/Private Alliance Unit(PPAU)에서 주관하는 민관합동 첩보 조합이다. FBI 설명에 의하면 Infragard는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자료를 공유하는 회사, 학술기관, 중앙 및 지역경찰 같은 조직의 연합체이다. 전국에 86개의 지부가 있고 전국연합센터에서 민간부문 제 3자의 대표로 활약 중이다.

국내안보동맹의회(Domestic Security Alliance Council-DSAC)는 FBI, U.S. DHS I&A와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들 사이에 동맹관계를 제공하는 민관합동 첩보기관이다. 이 중 몇몇 금융회사들이 DSAC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다. DSAC 수뇌부는 29개의 회사와 은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OWS 저항세력과 비판세력의 주축이 되는 업체도 포함하고 있다. DSAC 수뇌부에서 현재 활동중인 업체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마스터카드, 씨티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바클레이(Barclays), RBS Citizens, 3M, Archer Daniels Midland, ConocoPhillips, 타임 워너와 월마트가 있다. DSAC의 위원장은 FBI, U.S. DHS I&A, DSAC에서 선출된 자들과 민간 업체를 대표하는 Grant Ashley사의 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세계안보 부의장은 제약업계의 공룡 Merck & Co.사에서 맡고 있다.

2008년 3월 프로그레시브지(The Progressive)에서 이 소름 끼치는 기업형 스파이 단체를 다루었다. InfraGard, FBI,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비밀로 부쳐져 왔는데 그들의 '기밀 교환'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예외가 적용된다. (http://www.progressive.org/mag_rothschild0308.html)

대중은 당연히 조직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InfraGard 웹사이트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설명한다.

“InfraGard의 관심사는 외부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언론사 직원과 인터뷰하는 동안 InfraGard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힘들다. 인터뷰의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망신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InfraGard 수뇌부와 FBI 대표들은 인터뷰 문항을 사전 점검하고 편향적인 대답을 할 것이라는 것과 협의가 이루어진 인터뷰 취재자를 선정한다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 . .대답은 합의된 청중에게만 하고, 민감한 자료에 대한 질문은 없어야 한다.”

FBI와 민간부문의 이런 비밀스런 엘리트 동맹조직에 가입해서 자기 회사 직원이 FBI 깡패들에게 시달리는 리스트에 올릴 권한을 획득하려면 현 InfraGard 회원이나 지부, 동맹조직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InfraGard 동맹회원의 자격이 갖추어지면 ID카드를 부여 받고 FBI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특권이 주어진다.

2009년 TV 프로그램에서 미네소타 전 주지사였던 Jesse Ventura가 InfraGard에 관해 프로그레시브지 매튜 로스차일드 편집장과 인터뷰를 했다. 권력남용을 일삼는 InfraGard의 연합기관 회원 중 한 명도 출연한다. 바쁜 사람들은 다음 동영상의 25분부터 시청하면 된다.

<http://tv.naturalnews.com/v.asp?v=8E1CDC58F1BD9186D273FC857451B42A%20>

동영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2009년 12월 2일 Conspiracy Theory with Jesse Ventura, Episode #4, "Big Brother"를

검색하면 된다.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기 위한 FBI의 침투세력, 역정보로 상공회의소 비평가들을 음해하려는 첩보회사의 계약 등을 담은 InfraGard에 관한 프로그램은 해커이자 정치운동가인 Jeremy Hammond가 한 미국 치안산업 관련자에 관한 평가 - 1% 기득권을 위해 일하는 제군들 - 가 정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9. 미국의 권력: '숨은 권력' (Deep State) 에 대한 분석

조직스토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인가하는 권력구조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조직스토킹은 정보기관과 경찰, 민간 계약직원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위한 무기이다. 방첩작전은 이론적으로 사회에 위협이 되는 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존재 이유를 합리화 시킨다. 이상하게도 미국 사법부는 이 주제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런 작전은 은밀해서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사찰과 가해행위 일부를 거대한 민간 첩보회사들에게 외주를 줌으로써 상위 먹이사슬을 위한 그럴듯한 부인을 하게 만든다.

1912년 8월 루즈벨트 대통령(1901~1909)의 연설

[\(https://nader.org/2012/12/31/compare-the-1912-elections-with-the-2012-elections/\)](https://nader.org/2012/12/31/compare-the-1912-elections-with-the-2012-elections/)

“눈에 보이는 정부 뒤에 국민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보이지 않는 정부가 앉아있다. 이 보이지 않는 정부를 파괴하고 부패한 기업과 정치인들의 사악한 연합에 흠집을 내는 것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 첫번째 임무이다.”

Mike Lofgren의 '숨은 권력'

2014년 전직 국회 참모였던 Mike Lofgren이 현재의 미국 권력 구조에 관한 일관된 이론을 제시하는 TV 인터뷰와 에세이에서 워싱턴과 월 스트리트, 펜타곤, 실리콘 벨리, 정보기관 경찰과의 연계에 대해 설명한다. 이 큰 그림은 국내 방첩작전의 한 요소가 되는 미국 안보 정책과 경찰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권을 잡은 공식적 정부와 정책을 형성하는 일을 하는 비공식적 '그림자 정부'나 '숨은 권력'과의 차별성에 대해 Peter Dale Scott이 쓴 글(<http://www.voltairenet.org/article169316.html>)이 있으므로 Lofgren의 관점이 완전히 독창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은 꽤 잘 되어있다. 그는 워싱턴 정계에서 일했던 경험과 상하원 예산 위원회를 보좌하며 국회 참모로 30년 가량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숨은 권력'은 미국 기업과 국가 안보기관의 잡종이라고 Lofgren은 설명한다.

“펜실베니아 애비뉴 끝에 있는 눈에 보이는 정부 뒤에 또 다른 정부가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는 이따금씩 통제력을 발휘하지만 관과 민이 합쳐진 이 잡종 기관은 일관성 있게 이 나라를 통제하고 있다. 이 분석 글은 은밀한 음모단을 폭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국가 속의 국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2014년 2월 Mike Lofgren이 Moyers and Company에서 '숨은 권력'에 관해 피력한 의견은 아래에 있다.

[\(http://billmoyers.com/episode/the-deep-state-hiding-in-plain-sight/\)](http://billmoyers.com/episode/the-deep-state-hiding-in-plain-sight/)

<http://billmoyers.com/2014/02/21/anatomy-of-the-deep-state/>)

Lofgren의 '워싱턴의 뿌리 깊은 부패'에 관한 글에 대한 반응이다. 국가법률가 조합의 의장인 Heidi Boghosian의 논설도 나와있다. (<http://billmoyers.com/2014/02/21/reactions-to-mike-lofgrens-essay-on-the-deep-state/>)

“ ‘숨은 권력’이란 용어는 민간보안산업과 정부가 어떻게 독점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낸다. 그것은 금권정치, 끊이지 않는 전쟁, 산업역량의 축소, 미국만 예외법칙, 고장난 정치와 접합했다. Lofgren은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힘을 발휘하는지 잘 설명해준다.”

미국 정부내에서 이 이슈에 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사람으로 NSA 내부고발자 Russ Tice가 있는데 기사와 인터뷰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www.truth-out.org/speakout/item/18659-nsa-whistle-blower-russell-tice-is-the-topechelon-of-the-intelligence-community-running-the-show>)

소수 독재정치를 하는 엘리트 회원들을 좀 더 살펴보고 싶다면 LittleSis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http://littlesis.org/>) 미국의 '그림자 정부'를 이루는 개인과 조직이 나와있는데 정치적 영향력과 연결고리에 대해 설명한다. Little Sis는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가 나오는 연극이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의 '숨은 권력'

MIT 의 언어학 교수이자 철학과 교수인 Noam Chomsky는 미국 정치권력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다. 책과 기사, 연설, 대담이 하도 많아서 그의 관점을 알려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13년 6월17일 독일 본에서 한 연설을 시청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btlgQs0UDxY>) 여기서 그는 미국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자본가들의 민주주의의 기본관점은 거짓이라고 설명한다.

“~ 대략 자산/소득 기준 하위 70%의 인구는 정책 입안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들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따돌려지는데 만약 상류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0.1% 안에 속하는 정상에 오르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 '금권정치'가 오히려 정확한 용어다”

촘스키는 이것이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유럽은 더 심각하다. EU의 경제 모델은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더 많았는데 연이은 반대투표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거의 없다.”

미국은 사실상 일당 체제인데 그 당은 바로 기업당이다. 그는 국가 출범이후로 권력구조는 바뀐 적이 없다고 피력한다.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전체 상황은 꽤 암울하다. 그러나 탈출구는 있다. 역사에서 항상 그래 왔듯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억압과 파멸로 이끄는 길이고 하나는 자유와 정의로 이끄는 길이다. 마틴 루터 킹이 말했듯이 세상을 정의와 자유

로 향하게 구부러지게 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Michael J. Glennon의 '숨은 권력'

2014년 10월 보스턴 글로브에 터프트 대학의 정치과학자인 Michael J. Glennon이 '숨은 권력'에 관해 쓴 기사가 있다. 당신이 만약 투표나 정치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미국의 경찰공화국으로의 전환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이 이미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http://www.bostonglobe.com/ideas/2014/10/18/vote-all-you-want-the-secret-government-wonchange/jVSkXrENQlu8vNcBfMn9sL/story.html?s_campaign=8315)

새로운 관리를 뽑는 투표를 잘 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미국 정치의 기본 원칙이기는 하지만 Glennon은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굴러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간 "국가안보와 두 정부"에서 국방과 국가안보 기구가 어떤 종류의 책임도 투명성도 검토도 균형성도 없이 굴러가는 방법을 목록화 한다. 그의 '두 정부'란 하나는 국민이 뽑은 정부이고 하나는 아무 검토없이 온갖 정책을 조종하는 뒤에 숨은 정부를 의미한다.

국가 안보기구가 저지르는 불한당 같은 행위에 고삐를 당길 만한 희망이 있었냐는 질문에 Glennon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궁극적이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정치적 무지와 이런 비공개 기구에서 나오는 위협에 대한 무관심이다. 개혁을 위한 힘은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서 나온다. 여기서는 정부가 문제다. 국민들 스스로가 소뿔을 잡아야 한다."

Michael Parenti의 '숨은 권력'

예일대학에서 정치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Parenti는 23권의 책을 저술하고 많은 기고활동을 했다. (<https://www.c-span.org/person/?michaelparenti02>) 언론인 Christopher Hitchens과의 논쟁에서 이긴 몇 안되는 사람 (<https://www.youtube.com/watch?v=nik0273l8K4>) 이기도 한데 1996년 깡패국가(숨은 권력)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http://www.michaelparenti.org/JFKAssassination.html>)

"자랑스런 서구민주주의에는 현재도 정경유착을 유지하게 하는 커다란 국가 권력이 존재한다. 감시, 침입, 사업 방해, 사법권 오용, 음해, 날조된 고소, 허위 구속, 부당한 세금부과, 협박, 폭행, 암살까지 동원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려고 말이다. 국가 안보 공화국이라는 국가 속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CIA, DIA, FBI, 펜타곤 고위 관료를 포함하여 백악관 행정수반 정책 결정권자들이 악한 정부의 구성원들이다. 이 구성원들은 국내외에서 반대세력들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왔다."

Michael Parenti가 폭로한 것처럼 '숨은 권력'자들을 위해 더러운 일을 하는 온갖 범죄자들에 대해 관심있는 자들은 다음 인터뷰를 보라. (<https://www.youtube.com/watch?v=tsMExEqYLo>) 29:39초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NSA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관한 질문을 받는데 Parenti는 연방요원들이 은밀한 사찰 외에 사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도록 하면서 겁을 주는 공공연한 사찰에도 개입한다고 하는데 본인도 당했다고 답한다.

George Carlin의 '숨은 권력'

코미디언 조지 칼린의 다음 3분 설교에서 숨은 권력의 핵심을 잘 나타낸다.

<https://www.youtube.com/watch?v=wigDHjEwPuE>

10. 조직스토킹 조직 체계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세력의 배후체계에 대해 추측만 한다. 비밀감시(Covert surveillance)와 공개감시(Overt surveillance)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에도 가담하는 이들은 여러 동기를 가진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피해자와 각각 다른 관계(혹은 무관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가해 하는 사람들은 노숙자나 거의 노숙자처럼 보이는 전과자 타입이다.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시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 길을 막거나, 소름 끼치는 말을 하거나 집 주변에서 각종 소음을 유발하는 따위 말이다. 어떤 경우 이런 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도 모르고 길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만 받고 시키는 대로 한다. 때때로 짬새 꼬나풀로 일하는 전과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스토커 먹이사슬의 조금 더 상위 단계에 속한 자들은 관리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멀쩡한 차림을 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층으로 작전과 관계된 재주와 정보를 가진 전화 기술자, 경비회사 직원, 집주인 등으로 이루어진 지원자들이다.

더 상위계층은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들로,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각종 정보기관 민간계약 직원들로 경찰이나 정보요원 지시를 따르는 자들로 추정된다. 다른 안보기관과 마찰없이 일을 수행하려면 연방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적극적 지원(최소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스토킹과 연관된 기관, 기업, 개인들

역사적으로 과거 국민들에게 방첩활동을 저지른 주요 3개 조직은 Red Squads (지역경찰의 정보분과), Pinkerton(현재는 Securitas)같은 민간정보 보안회사, FBI 였다. 현재는 국토보안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도 포함시킬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George O'Toole 처럼 이 분야에 권위있는 언론인이 LEIUs 와 CIA와의 관계를 보여줄 때도 있다. 이론상 CIA는 내국인을 먹이로 삼으면 안된다. 하지만 MK Ultra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이론적인 제한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2013년 6월 이후로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았다면 NSA가 내국인 사찰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가담한 모든 기관은 '합동본부'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 경찰(특히 LEIU 소속)에서 법무장관에 이르기까지 조직스토킹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과정에 가담한 또 다른 선수들로는 대상자 선정을 도와준 테러신고센터(Terrorism Liaison Officers-TLOs), 민간 계약 업체인 InfraGard와 DSAC, 민간조직인 위협평가팀(Threat Assessment Teams)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중에는 등록 슈타지가 쓰던 Inoffizielle Mitarbeiter(비공식 협조자) 같은 종류의 사람도 있다. 정보원 중에서 지원한 사람도 있지만 권력에 충성하는 앞잡이들이 '이웃 동태파악'이나 '수사'로 위장한 작전에 협조를 보태기도 한다.

이것을 승인한 자는 누구인가? J. Edgar Hoover가 지휘한 FBI의 방첩범죄 Cointelpro를 보면 몇몇 작전은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DOJ)의 승인을 얻었다. 현재에도 법무성이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추정 가능하다. 해외정보 감시법원(FISA Court)이 불공정한 법정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5. 경찰스토킹 개론

2019년 4월 22일 MBC 에서 방송된 '스트레이트' 버닝썬 피해자 김상교씨 편을 보면 그의 주변을 공개 감시 (Overt surveillance) 수법으로 맴도는 순찰차를 볼 수 있다. 조직스토킹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는 가는 곳마다 순찰차가 대기해 있는 것을 자주 본다는 것이다. 다음은 '노르웨이 국제정세 연구소 (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연구원이자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Reidar Visser 박사가 기고한 글로 조직스토킹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막연한 피해망상적 추측이 아닌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다룬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되어 번역하여 올려놓았다.



저자: Reidar Visser 박사
노르웨이의 역사학자이자 정치 과학자로
'노르웨이 국제정세 연구소(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연구원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중동지역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독자적 시각으로 올렸다가 피해자가 됨(譯者 설명)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집단 따돌림'을 어느 정도 경험해 봤을 것이다. 동네, 학교, 직장은 '집단 따돌림'이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무대다. '집단 따돌림'은 사회적 고립, 마약 의존, 자살 시도를 유발하는 파괴적 행위이다. 고맙게도 대부분의 경우 제한적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집 안으로 까지는 파고들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다른 지역, 다른 국가로의 물리적 재배치도 해당된다.

만약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진'들이 국가라고 가정해보자. 개인의 가정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어느 지리적 장소 혹은 다른 국가로 이동하더라도 모든 동선을 추적할 자원과 권한이 있는 국가라면 어떨까? 조지 오웰의 '1984'에서나 나올 법한 전체주의 국가라야 가능할까?

아니다. 현재 서구 여러 민주국가에서 정부 지원의 '집단 협박'을 실시 하고 있다. 다양한 이름, 다양한 모습으로 작전이 진행 중인데 모두 '경찰스토킹' 이란 표제 아래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국가인데 형식과 활동방식은 십대들의 '왕따'와 상당히 유사하다. 다른 점이라면 한 개인의 인생을 손상시킬 자원과 잠재력이 훨씬 방대하다는 점이다.

인권 측면

스토킹은 경찰을 화나게 한 개인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거나 그들의 분노를 법적으로 표출하기 싫을 때 경찰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목표대상은 소수집단(marginal groups)이나 주류에 속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개인들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오토바이 폭주족, 정치적 주변집단, 인권운동가, 학문적 반대세력 등이 여러 서방국가에서 이 작전의 희생자가 되어왔다. 경찰스토킹은 그들의 무지로 일반적인 범죄자 처리방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경우 막대한 권한 남용을 하며 시작된다.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는 주로 대상자가 특정 지역을 떠나도록 몰아붙이게 되는데 스토킹 작업은 전국 어디서나 이어지고 국제적으로 연장될 때도 있다. 경찰스토킹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을 포함하는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표준화된 명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스토킹을 묘사하는 용어들은 영어로는 '눈에 띄게 하는 감시', 노르웨이어로는 '밀착 미행(*fotfølging*)', 덴마크어로는 '밀착마크(*mandsopdækning*)', 네덜란드어로는 '방해목표물(*or persoonsgericht verstoren*)'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찰 스토킹은 경찰 활동 중 가장 비열한 형태 중 하나이다.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기본 원칙들과 대부분 위배되는데 경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을 법정에서 세울 때 개인에게 합당한 절차와 이의 제기할 불가침의 권리가 있지만 경찰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 현대 서구 사법철학에서 가장 신성한 개념 중 하나는 경찰이 누군가를 목표로 삼아 뒤쫓으려면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시 민간인을 성가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UN 인권헌장에도 잘 나와 있다. (5조:무자비하고 모욕적인 대우에서 자유로울 권리, 7조:법 앞에서 평등함, 6조 10조: 재판 받을 권리 (*habeas corpus*), 11a: 유죄로 밝혀지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praesumptio innocentia*), 11b:법적인 위반행위가 없을 시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nulle poena sine lege*), 12조 사생활 보호권)

유럽의 인권 국제협정도 이런 권리는 보장하고 있다.(3조 비인간적/모욕적 대우, 6조 재판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7조 법을 통하지 않는 처벌 불가, 8조 집에서 사생활 보호권) 이 사항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시민을 기소하거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할 때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런 기준을 위반한다면 경찰의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은 없어지게 된다.

경찰스토킹은 현대 서구의 사법 체계 전통을 역행하는 처사다. 경찰스토킹은 상이함과 비주류를 법적인 절차 없이 범죄자로 지목하는 비공식적 행위와 연관 있다. 범법행위와 거의 연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과 공식적으로 마주할 일은 거의 없다. 대신 경찰은 형법과 연관된 어떤 것이라도 기소할 만한 기회를 찾기 위해 주변을 맴돈다. 기존 기소 절차 대신 경찰은 자기네들의 규약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나간다. 현재의 법과 규정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복/사복 경찰과 '지역치안활동'으로 위장해 모집한 시민들을 이용해 그들 만의 협박 작전을 실시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한 시민을 참여시키는 스토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욱 심각하게 위반하고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다른 지리적 영역으로 쫓아내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찰은 이 방법을 애용하려 한다.

일개 화난 경찰들이 자신들의 경찰공화국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일반 대중과 지식층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며 참여하게 만든다면 오웰식 국가 설립은 용이하게 된다. 경찰스토킹은 경찰이 배심원, 판사, 집행인까지 다 해먹는 과정으로 경찰공화국의 주요특징이다.

경찰스토킹 원리

경찰스토킹에 쓰이는 정확한 수법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은 동일하다. 피해자의 동선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이것은 극도의 사생활 침해적인 감시방법을 요구한다. 도청, 인터넷 검열, 몰래카메라 설치 등의 전형적 방법 외에 피해자 소지품, 의복 등에 추적장치를 심어 놓는다. 일단 성공하면 피해자를 밤낮 가리지 않고 최대한 성가시게 만들기 시작한다. 개인의 환경에 따라 정확한 방법은 다르게 적용된다. 피해자가 가는 곳에 각종 경찰 소속 차량이 나타나는 것은 국가적 공통사항이다.(‘공개 감시’란 용어의 유래) 추적장치는 피해자 동선을 예측케 함으로써 경찰이 따라다니기 보다 마주오게 만들어 준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현대의 경찰스토킹이 과거의 ‘임의 미행기법’이나 ‘근접미행’ 방식과 다른 점이다. 과거의 잠복근무 목표가 경찰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라면 스토킹 기법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경찰스토킹의 주요 수법 중 하나는 소음이다.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최대한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 집 주위에 끈임 없이 자동차의 시끄러운 엔진소리를 발생시키거나 크락슨을 쓸데없이 눌러서 놀래키거나 하는 것들이다. 피해자가 어떤 건물에 출입을 할 때마다 경찰이 사이렌을 울려 댄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할 것이고 피해자는 위축되거나 편집증에 사로잡히게 된다.

전조등도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 경찰스토킹에 참여하는 자들은 일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은 전조등을 사용한다. 벌건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화장한 햇빛이 비치는 날에 후레쉬를 비추고 주차된 차가 계속 전조등을 번쩍이기도 한다. 행위자체는 특별하거나 해 될 것 없어 보이지만 하루에 2분씩만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 정신과적 문제가 유발된다.

‘무안 주기’도 자주 사용되는 수법으로 21세기 첨단 기술 시대에 알맹이는 중세 시대의 것을 이용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봐도 회의적인 반응만 돌아오는 것을 잘 이용한 것이다. 여러 다른 국가에서 많은 피해 사실이 보고되는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사복경찰들이 상황극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는 암시를 주는 연행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두연극’으로 피해자 주변에 장님과 장애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둘러 쌓이게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는 등이다. 상황극은 경찰과 마찰이 있었던 장면으로 도발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피해자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사복경찰들이 흉내내면서 어떻게 경찰의 타도대상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암시해준다.

마지막으로 어떤 국가는 수면방해를 도모한다. 이 수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가 계속 잠에서 깨도록 만들어 버린다. 정확한 방법은 피해자 주거환경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문을 광광 닫거나 벽을 쳐 대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경찰스토킹 수법은 인권침해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정은 외부로부터 차단된 개인만의 신성불가침한 공간이라는 현대 유럽국가들의 사생활 침해 해석과 정 반대로 나가는 것들이다. 수면방해는 대부분 판사가 ‘잔학한 행위’로 규정하고 유럽 인권재판소는 ‘고문’이라고 정의한다.

경찰스토킹과 지역 경찰활동

경찰스토킹에 가담하는 많은 민간인들은 여러가지 종류다. 어떤 국가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해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은 경찰에 의해 범죄로 다루어 지기도 한다. 그래서 스토킹은 대부분 정복/사복 경찰에 의해 행해진다. 어떤 국가에서는 지역 기관/조직의 가담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구급대원이 구급차나 앰블런스로 스토킹을 하거나 쇼핑몰이나 관공서 안전요원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일도 하고 슈퍼마켓, 식당, 호텔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경찰이라는 이점으로 돈이 궁한 자들을 경찰업무 협조라는 이유로 매수해 사무실이나

식당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가 자리를 뜨도록 만드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법적인 문제나 인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만든다. 여러 나라에서 경찰의 요구에 조건반사 수준으로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슬프지만 소위 자유주의 국가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사회에 만연한 경찰스토킹의 각 가해 행위는 일반적인 '집단 따돌림'보다는 덜 해로워 보인다. 주 목적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일을 피해자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시켜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상점에서 사람들이 '좋은 하루'라고 피해자를 보고 인사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좋은 하루라고 인사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이용한다) 피해자가 방문하는 곳에 가짜 신고를 해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뜬금없이 출몰했다가 사라지는가 하면 피해자가 쇼핑몰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알람이 울리게도 만든다.(피해자 소지품에 숨겨진 추적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의 신호간섭으로 발생) 어디를 가든지 거리에 일렬로 선 차들이 피해자를 향해 전조등을 번쩍거리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약간 벗어난 고의성 없다고 주장 가능한 행위들이다. 경찰이 빠진 셋팅에서는 매 코너마다 이상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겉보기엔 해가 없어 보이는 가해 행위들이 매일 반복되어 축적되면 일반적인 '집단 따돌림'에 사용되는 방법들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발생시킨다. 스토킹하는 경찰에 협조를 보태는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피해자 이웃에 살면서 소음테러에도 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대사를 읊어달라는 지시나 위협운전에 협조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도 한다. 적어도 EU 국가중 한 곳은 공산주의 동독에서 사회 고립 수단 사용 방법이라고 보도된 전체주의 변형의 하나인 경찰스토킹을 시행 중이다. 경찰스토킹 수법 중 또 다른 성가신 수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을 불규칙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상황극을 거리에서 뻘뻘하게 펼치는 것이다. 지역기반 경찰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뿐만 아니라 어린애들과 법적인 미성년자, 장애인까지 치밀한 계산 아래 참여시키는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신체적 결함을 치욕적으로 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는 믿음을 어린애들한테 심어주고 경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전체주의적 권한으로 아무나 처벌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문제다.

일반 대중이 경찰과 협력하여 피해자 차량을 뒤쫓는 비교적 가벼운 위협행위나 경찰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 수면방해를 하는 수법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보통 결합되어 사용된다. 대중의 관심을 따돌린 피해자의 야간 수면 방해 행위는 참기 힘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통 이사를 결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교활하고 더러운 행위를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경찰의 고귀한 업무에 협조한다는 이미지를 가지도록 위장한다. 경찰의 수면방해 행위는 Darius Rejali에 의해 밝혀진 민주국가에서의 '증거 안남기는 고문' 형태와 일치한다.

경찰스토킹의 법적인 측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경찰의 스토킹 행위는 대부분의 시행국가에서 불법이다. 첫째,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중범죄 용의자가 아닌 한 경찰의 전방위적 개인 사생활 침해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법에 의해 처벌대상인 특정 범죄 용의자의 조직적인 사찰만 허용한다. 둘째, 많은 민주국가에서는 스토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적 고문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경찰이 주범인 일상의 돌발행위로 위장한 스토킹 수법도 특정 피해자와 관련 있는 연출일 경우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기소 가능하다. 경찰스토킹 수법은 본질적으로 특정 개인을 규칙적으로 괴롭히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여러 국가에서(오스트리아-107, 벨기에-442, 독일 241b, 이탈리아와 네덜란드285b)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1997년부터 발의된 영국과 웨일즈의 학대방지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된 행위를 강조한다. 이탈리아

아의 스토킹 방지법은 좋은 예로 1)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2)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3) 일상의 행동을 변경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희롱, 협박, 학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스토킹의 위협 행위를 따로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합법적이든 아니든 지는 중요하지 않다. 동원하는 수법과 상관없이 가해하려는 의도의 반복성이 키포인트다. 예를 들어, 대낮에 상향등을 실수로 켜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향해 상향등을 켜라고 다른 사람을 사주했다면 기소대상 범죄가 된다. 만약 협조한 사람이 의도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조직스토킹에 가담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스토킹을 하는 의도와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가담할 경우 많은 국가에서 경찰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유럽국가의 형법이 이론상 경찰스토킹으로부터 어느정도 보호책을 마련해 주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스토킹 방지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위협을 증거로 요구한다. 그리고 덴마크의 스토킹 방지법은 경찰의 스토킹 금지 명령이 있을 때만 효력이 있으므로 거의 의미가 없다. 세계적으로 스토킹 법안 마련의 최소 요구조건은 가해의 규칙적인 반복성이고 좀더 자유로운 법을 가진 나라들은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경찰스토킹은 현대 사법철학의 모든 기본적 측면과 상충한다. 관련 사법원칙은 집단 위협 규정보다 나올 게 전혀 없다. 경찰스토킹에서는 증명의 압박도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안내도 없다. 경찰에 의한 경찰 처벌은 날조된 연기에 불과하고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최악의 경우 한밤중 괴롭힘은 인권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삶에 대한 존중 이라고는 시리아의 무자비한 폭력단 샤비하(*shabiha*)보다 못한 덜떨어진 머저리들에 의해 행해진다. 이것은 미취학유아의 정신상태를 가진 자들이 밤에 차나 문 닫는 소음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정부 인가(印可) 희롱이다. 또한 고문과 신체적 처벌을 하는 국가들에서처럼 서구 경찰스토킹에는 의학적 검사가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천식, 신경성 결장, 과민성대장증후군 같은 만성질병의 주요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찰스토킹은 민주국가에서 법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이 으르렁거리며 짖어 대는 미친개를 풀어놓고 기르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경찰스토킹 제한 방안

경찰스토킹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변호해 줄 법규가 있을까? 아주 제한적인 지역내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는 아주 성가신 행동만을 하는 자가 있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많은 대중이 무슨 대책을 세워 달라고 경찰에게 요구한다면 경찰은 당황스러워 할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제한적 스토킹 수법을 쓴다면 예방적 수단으로 수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도 국제적 인권 보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스토킹도 집안이나 한적한 장소까지 따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로만 국한되어야 한다. 잠재적으로 피해를 볼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까지의 스토킹은 정당성이 결여된다. 공개사찰 전략은 잠재적 피해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는 방어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방어나 수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주국가에서는 조폭두목 거주지도 대통령궁 처럼 가만히 놔둔다. 목표대상이 잠에서 깨어 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확률이 훨씬 크므로 수면방해는 방어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자연히 범죄혐의도 없는 개인 주거공간에 침입하거나 미행하는 일은 경찰이 할 일이 아니다.

경찰의 공개사찰 수법은 법적으로 애매한 수단이므로 면밀한 감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스토킹 작전에 참여하는 경찰은 지속적 감사가 필요하며 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타당한 법적인 근거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집 앞에서 몇 시간씩 엔진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사복경찰은 인권조항과 관련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지

리적 규모도 고려대상이다. 공개 감시가 법적인 양면가치에 부합되기는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다른 사법관할 지역이나 국가로 이동을 한다면 무죄추정원칙은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 스토킹이 오래 지속되고 지역이 넓어질수록 전체 작전도 예방 기능은 없는 순전한 사법체계 밖의 형벌로만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도 법정에 설 기회조차 주지않고 국제적으로 핍박 받는 낙인이 찍히는 법적으로 모호한 결정은 없어야 한다. 특정국가에서 어느 한 개인을 기소하는 것보다 어떤 법정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모호한 의심에 근거해 국제적 핍박을 받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만약 경찰이 야만적이고 충동적이기는 하지만 특정 지역에 제한된 국가 지원의 불침번 제도를 창설할 생각이라면 근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를 무법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중세 암흑시대이나 횡행했다. 하지만 중세에도 무법자에 대한 비교적 인간적인 처우를 다음처럼 해줬다: 추방과 새출발

마지막으로 경찰스토킹 같은 수법은 인권 침해적인 측면에서 덜 해로운 다른 수단을 더 이상 강구할 수 없을 때 취해야 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함은 양도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것은 일반적 원리의 부수적 관계나 현대 사법이론에서 사회적 재통합의 기본 이념 측면 모두와 일맥상통한다. 사실 여러 국가에서 경찰 법규는 공식적으로 일반 원칙의 점진적 접근법과 경찰의 의무를 안치하고 있다.(노르웨이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이 할 수 있는 덜 과격한 방법을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심지어 피해자와 대질 심문조차도 생략한채 모호한 의심에 의거해 국제적 핍박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과격한 수단 사용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다. 여러 경우 경찰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는 구두 경고 한 번이라도 있다면 법적인 정당성을 떠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역사적 전망과 앞으로의 진로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경찰스토킹은 18세기 서구 계몽운동 시대에 탄생한 근대 사법 체계의 근간에서 비참할 정도로 퇴보해버린 정책의 상징이다. 현대의 경찰스토킹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사형제도를 폐지한 프랑스 혁명가들도 공개치욕형(망신칼-죄인의 목과 양손을 끼운 채 못사람에게 망신을 당하게 하던 옛날의 형틀)을 최대 3일로 제한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된다. 현재의 경찰스토킹은 수년이상 지속된다.

1789년 이전으로 퇴보한 서구 경찰활동은 20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북미의 대도시에서 먼저 실시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진 눈부신 기술의 발전은 2001년 이후 감정 없는 지식층과 결합해 전체주의의 변형으로 발전되었다. 많은 유럽국가에서 경찰의 이런 수법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조지오웰의 "협박 예찬"을 충족시키는 자들로 볼 수 있다: "이 세대가 바로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은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러 형태로 위장한 '협박 예찬'은 세계의 종교가 되었다."

경찰스토킹을 실시하는 많은 국가의 헌법이 프랑스 시민혁명 헌장에 있는 기본 인권조차도 보호 못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무죄추정 원칙 같은 중요한 인권개념은 민주국가로 전환한 제3세계국가의 표준 조항처럼 되어가고 있다. 당연히 이런 원칙을 잘 준수할 것 같은 선진국들은 UN과 EU 인권조항을 오히려 더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스토킹의 경우처럼 현대 자유민주국가에서 법 밖에서의 처벌로 민간인을 자살시켜 제거하려는 범죄가 대부분의 유럽인들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경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내키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현 서구자유국가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학생들, 지식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경찰스토킹이 공식문서로 나온 것은 흔하지 않다. 법정소송까지 간 경우가 몇 건(네덜란드의 경우)있었지만 유럽 인권법원에서 까지 심각하게 다루어 지지는 않았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가 대중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어 하거나 원치 않아서 일 수도 있다. 게다가 경찰이 경찰스토킹 피해자 증언을 묵살해 버리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모임'이라고 개설된 사이트에는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는가 하면 정신병자 흉내를 내는 위장피해자들의 증언들로 도배가 되기도 한다. 경찰이 바로 이 학대 범죄의 주범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피해를 공식 문서화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있다.

경찰스토킹을 제대로 연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발언을 통해서다. 북구 유럽 경찰의 현저한 이원론적 행동방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출중한 잠재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쪽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억압적인 스토킹 작전을 수행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스토킹에 관한 공개토론에 경찰 대표가 참석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으려 한다. 때로는 모호하거나, 때로는 이율배반적이고 멍청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발언을 보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다시 등장한 경찰공화국 구성원들이 그들의 지능상태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다 잘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 법규 전승의 존엄성에 예외적 위협이 되는 그들은 납득가능한 변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정보기관과 경찰에 의한 범죄

“대통령이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님을 의미한다.”

- 리차드 닉슨의 1977년 데이비드 프로스트(David Fros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관료들이 법을 대하는 태도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이나 이란-콘트라 같은 사건이 간헐적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 상층부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눈치채지 못한다. 국내 사찰과 경찰 작전을 감시하는 정부관료들도 법을 준수하는 의무를 등한시한다. 2013년 3월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국가안보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NSA는 수백만 혹은 수억의 내국인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든 수집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연이은 폭로는 클래퍼의 의회에서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했다. 일반인이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기소되지만 클래퍼는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정보기관과 연방경찰기관 요원들은 대부분의 국민이 지켜야하는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 보호구역에서 서식한다. 그들은 그들의 범죄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정당도 사실상 관여 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국내 사찰작전을 벌여도 양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당도 뒤탈 걱정이 없다.

2013년 4월 위키리크스에는 (<http://www.wikileaks.org/>) 1970년대 중반이후 기밀해제 된 1백7십만건 이상의 외교와 첩보 문건을 검색할 수 있다.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회의 사본 등도 포함된다.

한 터키관료가 터키에 군사장비 공급을 미국에서 주선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미 의회 무기 통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키신저는 이 불법성을 놓고 다음과 같이 농담했다.

- 정보공개법 이전에는 회의에서 “위법적인 일은 바로 할 수 있고 위헌적인 일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하곤 했다.“[웃음] 정보공개법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기 꺼려지고, “장황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한다. -

대부분의 국민에게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키신저 같은 정부 관료에게는 농담거리에 불과하다.

2013년 8월 National Review에서 보수적인 칼럼니스트 존 펀드 (John Fund)는 그런 거만과 기만이 만연하다고 넌지시 말한 정보기관 관료의 말을 보도했다. (<http://www.nationalreview.com/article/356098/time-answers-nsa-john-fund>)

여러 정보기관에서 수십년을 근무해온 한 베테랑 요원은 현재 NSA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본다고 했다. “거만한 문화가 팽배해 있다. 의회에서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 정보위원회에서 그들이 모르는 것은 Mike Rogers 와

Dianne Feinstein도 모른다고 했다. 정보기관이 예산을 더 얻어내려는 속셈으로 그 자신도 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왜곡시키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는 이 명령을 거부했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그 자리는 바로 교체되었다.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행동은 경찰이 먹이사슬을 무너뜨리는데 음색을 맞춘다.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

“내가 사람을 잘 죽이는 재주가 있군”

2012년 대선 운동에서 오바마의 발언.

2014년 4월 Rasmussen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그들의 권리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들의 보호자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한다.

http://www.rasmussenreports.com/public_content/politics/general_politics/april_2014/37_of_voters_fear_the_federal_government

54%의 선거권자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에 위협이 된다고 했고 22%만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원천이 된다고 답했고 24%는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관료를 믿지 못하는 2가지 큰 이유는 ‘첫째, 정부의 권한과 비밀의 확대(특히 행정부에서) 권력 남용을 유발했고 둘째, 인터넷을 통해 그런 남용이 더 이상 비밀에 쌓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나쁜 소식은 ABC TV에 나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도 경찰과 관련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https://fightgangstalking.com/gangstalking-videos/#recruitmorons>)

조직스토커들은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는 명목으로 이웃을 감시하는 작전에 가담할 공범자를 쉽게 모집한다. 관계 당국자에 대한 무작정 신임은 조직스토킹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경찰관계자에 대한 신뢰는 2014년 1월 캘리포니아 남부 도시 풀러튼(Fullerton)의 배심원이 정신은 온전하지 않지만 무기도 없고 아무 해도 가하지 않는 노숙자를 그 지역 경찰이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경찰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가 있었음에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fightgangstalking.com/#murderbycops>

정부 부패의 만연

2013년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79%가 정부의 부패가 만연하다고 믿는다고 한다.

<http://www.gallup.com/poll/172019/americans-less-satisfied-freedom.aspx>

이것은 대중이 부패를 인식하는 측정치이지 부패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패는 원래 측정하기 힘들지만 대중의 인식은 중요한 척도가 된다.

정부기관이 저지르는 범죄 빈도수

미국이 경찰공화국의 형태로 나아간다는 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재야의 블로그 등을 방문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부는 은밀한 사찰 활동과 과격한 치안 유지에만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도 관여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부가 피력하는 사항이다. 하원 특별 정보위원회 IC 21(1996년 4월9일)에 따르면 *Into the Buzzsaw* 6장의 설명처럼 CIA는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http://www.amazon.com/Into-The-Buzzsaw-LEADING-JOURNALISTS/dp/1591022304/ref=tmm_pap_title_0)

폴리처 상 후보자였던 존 켈리(John Kelly-'오염되는 증거: FBI 과학수사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스캔들'의 저자)가 인용한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CIA의 비밀업무(Clandestine Service-CS)부서 직원들은 매일 수백건의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한다고 했다. 정부기관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를 대중이 모르는 것은 언론이 정당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어서 보도를 피하거나 축소시키는 이유가 한 부분을 차지한다. 진실된 기사가 나가더라도 대중의 인식 속으로 파고 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1993년 11월 21일 CBS의 60 Minutes에서 베네수엘라 국경 경비대와 CIA가 공모하여 대량의 정제된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사건을 전직 마약단속국(DEA) 국장이 언급한 것을 보도했다. 불법적인 마약거래에 CIA가 관여한다는 다른 보도들처럼 이런 폭로는 국가 기관을 믿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신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쨌든 60 Minutes에 나온 방송을 보고 싶다면 다음 다큐멘터리 29분부터 나온다. (<http://whowhatwhy.com/2013/08/22/twhycounterintelligence-part-2-the-deep-state/>)

2013년 8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마약국 내의 한 비밀 부서는 여러 기관 요원들에게 수사의 출처에 대해 거짓말하라고 지시한다고 한다.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8/05/us-dea-sod-idUSBRE97409R20130805>)

경찰관이 저지르는 범죄는 주요 언론에서 축소 보도 된다. 지역 경찰이 광범위하게 조직스토킹을 묵인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경찰의 범죄행위를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시카고 대학 정치과학부에서 출판한 시카고 경찰관에 의한 범죄 보고서 24~47페이지에 나온 경찰관의 유죄판결을 훑어보자.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찰관의 이름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이것은 드러난 범죄에 불과하다. 범죄 범위가 뇌물수수에서부터 고문,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경찰에게 조직스토킹은 무단횡단 정도의 의미 밖에는 안된다.

(<http://www.uic.edu/depts/pols/ChicagoPolitics/policecorruption.pdf>)

FBI 용인하에 자행되는 범죄

미국 수사기관은 수사중에 전과자 정보원들을 자주 이용하는데 많은 경우 이 범죄자들이 수사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용인한다. 2013년 8월 USA Today 기사를 보자

(<http://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3/08/04/fbi-informant-crimes-report/2613305/>).

“한해동안 FBI는 꼬나풀들에게 5,658회나 불법 행위를 용인했다. 새로 공개된 보고서는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이 범죄와 전쟁을 치루느라 얼마나 자주 범죄자와 협력하는지를 보여준다.”

USA Today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입수한 2011년부터의 FBI 보고서에는 범죄 종류는 나와 있지않다. “보고서는 어떤 범죄를 용인했는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정부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다.”

2013년 12월 FBI가 고나폴들에게 용인한 범죄는 5%가량 늘어 5,939회나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다. (http://www.huffingtonpost.com/2013/12/27/fbi-otherwise-illegal-activity-report_n_4506385.html)

FBI는 경찰도 범죄에 이용한다. COINTELPRO 시대에는 흑인 인권 운동에 가담한 블랙 팬더 당원 청년 둘을 암살하도록 경찰을 사주한 경우가 있다. 1969년 12월 4일 잠자던 두 사람(Fred Hampton과 Mark Clark)의 아파트에 14명의 경찰이 습격하여 이들을 살해한 것이다.

(<http://pbsthisdayinhistory.tumblr.com/post/69016456750/december-4-1969-two-members-of-black-panther>)

2011년 2월 Democracy Now!에서 노암 촘스키 MIT 교수가 암살작전은 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했다.

(http://www.democracynow.org/blog/2011/2/17/noam_chomsky_on_civil_rights_obama_latin_america_and_the_history_of_the_us_in_the_middle_east)

“~ 흑인 인권 운동가 Fred Hampton과 Mark Clark의 암살 작전은 게슈타포 스타일의 작전이었다. FBI가 작전을 세웠고 시카고 경찰이 새벽 4시에 쳐들어가 살해하는 실행조를 맡았다. FBI는 이들이 무기를 쌓아 놓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질 당시와 같은 시기에 일어났는데 이 사건과 비교하면 워터게이트는 다과회 수준이었다. ~”

FBI에 의한 불법 사찰

COINTELPRO 시대에 FBI가 저지른 범죄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문서로도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범죄이다. FBI가 저지르는 작전은 극도의 비밀을 요구하지만 증거는 여기 저기서 자꾸 드러나고 있다. 2011년의 다음 보고서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영리기구인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이 입수한 문서이다. (<https://www.eff.org/deeplinks/2011/01/eff-releases-report-detailing-fbi-intelligence>)

“이 보고서는 FBI 요원이 법원에서 허위 선서를 하거나 기소 배심 소환장 발부를 위해 거짓증거를 제출하거나 영장없이 암호가 걸린 문서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등의 일탈행위 등을 보여주고 있다.”

FBI의 내부고발자들

많은 사람들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FBI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https://www.aclu.org/ten-most-disturbing-things-you-should-know-about-fbi-911>) 정치적 목적으로 내국인 사찰을 행해 온 역사 때문이라도 이 기관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2013년 10월 Reason지의 한 기사에서는 FBI를 ‘위험한’ 국내사찰 기관이라고 묘사한다.

(<http://reason.com/blog/2013/09/24/fbi-plays-the-role-of-domestic-spy-and-s>) 저자인 J.D. Tuccille 은 어떻게 FBI가 직원들의 양심선언을 막고 언론의 취재도 따돌리는지를 설명한다. ”

“배신자와 내부고발자를 처단하는데 일체의 주저도 없다. FBI는 그 어느때 보다 위험하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제외되면서 FBI는 잘못을 폭로하는 직원에게 마음대로 보복을 가한다. 그래서 FBI에는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문화는 다른 기관이나 언론에서도 내부고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Tucille은 2013년 9월부터 나온 ACLU 보고서 '누설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FBI의 확인되지 않은 권한 남용'에서 FBI의 언론인 사찰에 대한 예를 든다. 2010년 FBI는 뉴욕 타임지와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 7명에게 불법적으로 "긴급 편지"를 보내 전화 통화 내용을 수집했다는 감찰관의 보고가 있었다.

(<https://www.aclu.org/national-security/unleashed-and-unaccountable-fbis-uncheckedabuse-authority>)

2013년 5월에는 사법부에서 은밀하게 2달간 AP 통신사 기자들과 편집장의 통화기록을 수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http://www.politico.com/story/2013/05/inside-the-ap-fear-determination-91338.html?hp=t1_3)

워터게이트 사건 기자로 유명한 칼 번스타인(Carl Bernstein)은 2013년 5월 14일 MSNBC 에서 AP 통신사 통화 강탈을 한 의도는 기자들에게 전화한 사람들을 겁주기 위함 일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저먼(Mike German)

마이크 저먼은 첩보활동이 전문으로 FBI에서 훈장까지 수여 받은 요원이었다. 동료 요원들이 도청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상관에게 보고했는데 이 보고는 상관에 의해 묵살되었고 16년간 근무한 그의 직장 경력도 거기서 끝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었다. 정보기관에서 윤리보다 비밀을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경우는 특별할 것도 없다. 사직 후 그는 ACLU 선임 정책고문으로 활약했고 현재는 정의를 위해 Brennan Center에서 일하고 있다. (http://usatoday30.usatoday.com/news/washington/2006-11-23-whistleblowers_x.htm)

Democracy Now! 에서 저먼은 FBI에서 정치적 배신자로 낙인 찍혀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집중 조사를 받은 한 사람과 같이 인터뷰에 출연한 적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zhq4MXKf2c>)

인터뷰 동영상 2:06초에 저널리스트 Amy Goodman은 저먼에게 FBI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없는 개인에 대해서도 '평가'라고 이름 붙인 수사방법을 동원하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2014년 4월 마이크 저먼은 인터뷰에서 FBI의 위협적인 수사방법은 의회에서 말아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요원들은 테러위험을 과장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FBI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했다. (http://www.vice.com/read/the-vice-podcast-inside-the-fbi?utm_source=vicetwitterus)

Ted Gunderson

FBI의 고위관료로 정년퇴직한 Ted Gunderson은 1956년에서 71년까지 존재했던 악명높은 방첩작전 COINTELPRO가 더 진화한 조직스토킹의 형태로 다시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짧게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섹션을 통째로 할애했다.

소시오패스 정보요원들에 의한 전쟁범죄

더글라스 발렌타인(Douglas Valentine)은 베트남전의 피닉스 작전을 상세히 다룬 책을 펴낸 적이 있는 저널리스트로 CIA에 관한 글을 많이 써왔다. 피닉스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전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고문, 암살, 살해하는 작전이다. 관심있는 사람은 2001년 5월 카운터펀치(CounterPunch)를 위해 쓴 기사

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는 이 기사에서 전쟁범죄가 저질러지는 본질과 이 범죄가 어떻게 언론에 의해 세탁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http://www.counterpunch.org/2001/05/17/fragging-bob/>)

2013년 9월 발렌타인은 같은 잡지에 CIA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사를 기고하는데 이것은 다른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CIA는 음지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애국청년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미지를 관리해왔는데 CIA의 전형적인 관료들은 암흑가에서 혼자서 뭘 착착 해낼 용기도 없는 정신병자들이다. 그들은 살인 예찬 교도들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CIA에 붙어 일하고 있는 것이다." (<http://www.counterpunch.org/2013/09/16/the-cia-the-press-and-black-propaganda/>)

관료들은 어떤 범죄까지 저지를까?

연방요원들이 얼마나 극단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잘 설명하는 것은 CIA의 MKUltra 작전이다. 역사적 기원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실험한 사례만 언급하겠다. 20년간 실시된 이 작전에 참여한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고 이 작전이 발각이 되었을 때 CIA 국장은 거의 모든 기록을 파괴해버렸다.

1970년 9월 칠레 총선에서는 좌익이 큰 득표 차로 승리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당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확실시되었다. 칠레의 우익 대표와 펄시, 체이스 맨하탄 뱅크처럼 칠레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대기업과 CIA는 이 결과에 만족할 수 없어 리차드 닉슨 대통령,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기로 작정한다. 칠레의 참모총장 René Schnieder는 이에 가담할 수 없다고 했다가 닉슨과 키신저로부터 살해 당한다.

이 사건과 다른 중대한 범죄도 키신저가 남은 재임기간 동안 언론에서 좋은 평판과 아침을 듣는 것을 막지 못했다. 주요언론의 이런 식의 아침과 안일함은 정부가 비밀리에 하는 악행이 공개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https://www.youtube.com/watch?v=Xghrs_N4Vuo)

작전명 노스우드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아젠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때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범죄도 서슴지 않는다. (가짜 깃발 작전???) "false flag operation" (http://en.wikipedia.org/wiki/False_flag) 작전명 노스우드 "Operation Northwoods."에 잘 드러나는데 2001년 5월 ABC News에서 발췌한 David Ruppe 의 기사를 보면 (<http://abcnews.go.com/US/story?id=92662&page=1>)

" 1960년대 초반 미국 군부 지도자가 쿠바와의 전쟁을 대중으로부터 지지 받을 목적으로 미국 도시에서 민간인 테러에 관한 초안을 내놓는다. 작전명 노스우드라고 명명되었는데 쿠바 망명자 암살과 공해상에서 쿠바난민 선박 침몰시키기, 비행기 납치, 미국 선박 폭파, 미국 도시에서 테러 자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대중과 국제사회를 속여 쿠바의 새로운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를 축출하기 위한 지지를 얻어내려는 속셈이었다. 군 고위장교는 미군 사상자를 유발하는 것도 고려했다."

"관타나모 베이에서 미국 선박을 폭파하고 쿠바를 비난한다. 사망자들 이름이 신문에 채워지면 전국적인 분개가 일어날 것이다."

세세한 사항은 James Bamford 기자가 미국의 가장 큰 첩보기관인 NSA의 역사에 대해 쓴 책 "Body of Secrets"에 잘 나와있다. 그는 이 계획이 NSA와 연관이 없다고 밝히면서 작전은 각 참모총장의 서면 승인이 있었고 1962년

3월 케네디 대통령 시절의 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민간 지도층의 거센 거부와 있었고 40년 가까이 봉인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살인에 관한 거짓말

이 곳을 미국 정부가 저지르는 범죄와 음모를 다 밝히는 공간으로 사용 할 수는 없다. 심각한 기만과 범죄와 관련된 작전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몇몇 예시로 사용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겠다.

2009년 12월 미국 크루즈 미사일이 예멘에 있는 마을을 타격하여 14명의 여자와 21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41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이 있었다. 미국 정부와 예멘 정부는 서로 공모하여 예멘 정부 측에서 알카에다 훈련소를 공격하여 그 대원들을 죽인 것으로 일을 꾸몄다. 위키리크스와 Abdulelah Haider Shaye라는 젊은 예멘 기자가 나중에 이 공격을 실시한 자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여 진실을 알렸다. 미사일 공격의 실상을 세상에 알린 후 Shaye는 허위 기소로 체포되어 거짓 재판을 받고 5년형을 언도 받았는데 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이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http://www.democracynow.org/2013/7/25/yemeni_reporter_who_exposed_us_drone)

2011년 예멘 대통령은 그를 사면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오바마의 전화 때문에 포기한다.

(<http://www.thenation.com/article/166757/why-president-obama-keeping-journalist-prison-yemen>)



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사진에 나온 터지지 않은 소형 폭탄들이 폭발 장소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것들은 토마호크 미사일에 장착된 166개의 소형 폭탄들 중 일부이다. 각 소형 폭탄들이 터지면 150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도 부상을 입힐 수 있는 200개의 날카로운 금속 파편으로 나누어 진다고 한다. 폭탄 내부의 가연성 물질은 지르코늄으로 되어있는데 이 파편들은 주변 물체에 불을 붙이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https://www.amnesty.org/en/news-and-updates/yemen-images-missile-and-cluster-munitions-point-us-role-fatalattack-2010-06-04>)

2010-06-04)

리뷰: 미국 관료가 부녀자 수십 명을 죽인 사건으로 언론과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늘어 놓았다. 전모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사실을 알린 기자를 되려 구속수감 시켰다.

이런 교활하고도 기만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정부가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가해행위를 하는 불법 작전을 묵인하고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너무 순진한 사람이다.

7. 정보기관과 경찰에 대한 감시

무법천지인 정보기관

저널리스트 Tom Engelhardt는 2015년 한 칼럼에서 안보공화국에서 되풀이되는 기만, 오만, 폭력, 무능을 점검했다. 이글은 권한은 극대화하고 섬겨야 할 국민으로부터의 감시는 최소화하는 안보공화국에 대해 드는 의구심을 잘 파헤치고 있다.

“~유례없는 확장 시대로 들어갔는데 어떤 감시나 법의 제재나 구속도 받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범위와 권한이 제도적 DNA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의 전제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최종목표는 자국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상상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감시하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국가안보공화국의 관료들만 감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은 에드워드 스노든의 양심 고백에 미친 듯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그들을 감시한다면 그들도 강간당한 듯한 불쾌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http://www.truthdig.com/report/item/writing_history_before_it_happens_20150520)

미국 경찰과 정보기관은 예전의 COINTELPRO와 MKUltra 때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책임감의 결여 속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 처치위원회 수사 이후 연방정부가 저지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는 노력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법은 형식 뿐, 거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9/11이후 애국자법(Patriot Act)이 시행되고 나면서부터 말이다. FBI와 이제는 IRS까지도 영장없이 모든 국민의 이메일을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외국 정치 지도자를 마음대로 암살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한 처치위원회 개혁도 서서히 무너졌다. 정부는 드론을 이용해 예멘 같은 곳에서 암살을 감행 하거나 2011년 3월 리비아에서의 '군사적 간섭'처럼 국회 승인없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경찰과 정보기관은 악당의 소굴이 되어 '국가 안보'를 핑계로 그들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로 숨기고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국회 의원들의 정치적 비열함, 이윤추구만 하는 주요언론, 집단 사고, 출세제일주의 등이 가장 비밀스러운 기관에 대한 감시의 소홀함을 가져왔다.

다행히 약간의 예외는 있어서 경찰과 정보기관의 고삐가 풀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포브스지 기자는 또 다른 처치위원회 수사가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전직 NSA 관료 William H. Binney 의 말을 인용하며 “우

리나라는 조지 오웰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http://www.forbes.com/sites/jodywestby/2012/09/20/the-sheep-stop-here-another-church-committee-or-full-review-of-privacylaws-needed/>)

2013년 11월 뉴욕타임즈는 NSA의 사찰에 대한 기사에서 Binney는 정보기관의 권력을 자국민을 향한 무기로 사용하는 위험성에 대해 보도한다. (<http://www.nytimes.com/2013/11/03/world/no-morsel-too-minuscule-for-all-consuming-nsa.html?pagewanted=1&r=1&hp>)

Binney 는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법, 총체적인 개혁 없이는, 정보기관이 전체주의 국가의 출현을 언제든 이루어 낼 대표역할을 할 것이다. 내 생각엔 벌써 시작됐는데 우리 모두가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정보기관에 대한 두려움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는 상하원 정보위원회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자기들이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두려워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의원 2명이 이런 두려움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상원의원 Rand Paul은 동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권력에 취해서 뉘우칠 줄도 모르고, 권력을 놓을 마음도 없는 정보기관이 두렵다.

<http://www.politico.com/story/2014/03/rand-paul-berkeley-speech-nsa-cia-104804.html>)

그 다음날 하원 소수당 대표 Nancy Pelosi는 정보기관과 반대의견을 내면서 “대가를 안 치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당신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http://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4/03/nancy-pelosi-whenlegislators-take-on-the-cia-they-come-after-you/284524/>)

2014년 4월 10일 Chuck Grassley 상원의원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대한 연설을 했다. 그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내부위협감지 프로그램은 간첩과 테러리스트 같은 진짜 위협과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구분해 내지 못한다고 한다.

<http://www.emptywheel.net/2014/04/11/chuck-grassley-insider-threat-program-posedthreat-to-whistleblowers/>)

Grassley 상원의원이 그의 연설에서도 설명하는데, “Patrick Leahy 상원의원과 같이 일주일 전 FBI와의 브리핑에 참석하면서 훈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준비 해달라고 했는데 FBI의 내부위협감지 프로그램 팀장은 아무 준비도 해 놓지 않았다”고 한다. 브리핑 시작 10분 가량 경과 후 상원의원이 “ ‘위협’과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분간해 낼 수 있냐”고 질문하자 FBI 관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나가 버렸다고 한다.

Grassley 상원의원은 FBI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FBI는 의회감시를 격렬히 저지하려 한다. 특히 내부고발자 문제에 관해서는 더하다.”

부패한 경찰과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는 때때로 이런 범죄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라는 심산으로 국회의원들의 주목을 끌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한다. Leahy 는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rassley 상원의원과 함께 잠재적 위협이 되는 개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질문에 FBI 관리는 브리핑실에서 그냥 나가버렸다.

민간 첩보산업계의 무법

고삐 풀린 미국 첩보산업계에 대한 걱정은 그 직업을 처음 가져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사실이다. 전직 CIA 정보관 Melvin Goodman은 첩보분야 민간계약직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http://www.thenation.com/article/blackwaters-private-spies>)

“책임감과 의무감의 결여가 심각하다. 전 산업계가 통제불능이다.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업계에 대한 감시의 부족도 걱정이라고 정부감독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2014년 2월 GAO가 발간한 보고서는 1/3 이상이 첩보계약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댈 서류도 부족하고 첩보업무를 맡겨야 하는 이유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GAO - Civilian Intelligence Community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gao-civilian-intelligence-community.pdf>)

민간 유령들에 대한 감시 부족은 정부기관을 위해 일하는 민간계약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정보보안 합자회사에서 일하는 산업 스파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2013년 11월 기업정책본부(Center for Corporate Policy)의 Gary Ruskin은 산업스파이에 대한 보고서에서 산업계를 '무법천지'로 묘사했다. 그의 보고서 '유령 산업'은 민간첩보산업과 수사업계는 사실상 감시가 없는 상태라고 결론 내린다.

업계는 거의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체계에 위협이 된다. 기업은 이제 법이나 윤리의 구속없이 경찰까지 사조직으로 운영할 능력도 갖추었다.

유령 산업(<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spooky-business.pdf>)

2011년 2월 가디언(Guardian)지에서 James Ridgeway 기자가 쓴 '기업형 사찰의 더러운 역사'라는 기사를 보면 기업에서 사설 업체와 결탁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설명한다. "사설탐정업체는 원하는 기업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연방/지역경찰에서도 지원자를 찾는다. 이들 중 일부는 사설업체에서 퇴직을 맞이하기도 한다. 사설첩보업체는 법에 있는 보호장치를 따돌리며 경찰에 준하는 체계에까지 다 달았는데 기업형 사찰 산업은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결국엔 금지되어야 한다."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cifamerica/2011/feb/15/activism-protest>)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에 대한 감시

국토안보국은 2014년 \$39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225,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기관이다.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 커다란 돼지 여물통에서 기생하는 공무원과 민간계약 직원에 대한 감시는 상당히 중요하다. 2014년 4월 상원 감사에 관한 워싱턴포스트 기사가 있다.

“2011년에서 2013까지 국토안보국 감찰관을 역임한 Charles K. Edwards는 부서장들과 정기적으로 술과 저녁을 즐겼으며 수사 시기와 습득물에 관한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http://www.washingtonpost.com/politics/probe-dhs-watchdog-cozy-with-officials-altered-reports-as-he-sought-top-job/2014/04/23/b46a9366-c6ef-11e3-9f37-7ce307c56815_story.html

Ron Johnson 상원의원은 공화당 재정 계약감사 분과위원회 간부로 수사 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Edwards는 부패한 감찰관으로 진짜 감사는 하지 않고 . . . 그의 사무실에서 나온 보고서는 의심이 간다.”

사법부의 감시

경찰체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섹션을 법무성에 관해 할애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음의 간략한 설명으로 대신한다.

1993년 1월 정부감사가 법무성 내사과의 은밀하고도 역기능적 본질에 대해 얘기한 워싱턴 포스트 다음 기사가 있었다. (<http://www.highbeam.com/doc/1P2-927893.html>)

“지금 있는 시스템은 쓰레기를 카펫 밑으로 쓸어 넣는 것 보다 못한 수준이다.”

관련 부패기관의 감시

감시가 얼마나 삼엄하든 출생 자체가 위법이라면 대중의 권리와 이해는 보호받지 못한다. 불행하게도 정확한 현실 지적이다.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와 똑같은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 선포는 시민의 권리를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고 정치적 통제, 기업의 이윤, 성공 제일주의 등이 사찰과 연관된 정부정책을 만들게 할 것이다.

“오세아니아는 동아시아와 항상 전쟁 중이었다.”

- 조지오웰의 1984에서 (<http://www.newspeakdictionary.com/ns-dict.html>)

-

2013년 12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사찰에 관해 브라질 국민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미국의 대규모 사찰 시스템의 표면적 목적인 ‘테러로부터의 보호’는 거짓이라고 말한다.

“테러 때문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 경제적인 감시, 사회적 통제, 외교적 조작 때문이다. 권력에 관한 문제이다.”

8. 언론보도

폭로된 공식문서가 아직까지 없는 관계로 언론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이 방첩 작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밖에 할 수 없다. Dan Froomkin 기자는 권력 남용을 파헤치는 방법 중 하나를 2014년 9월 Intercept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firstlook.org/theintercept/2014/09/03/froomkin-blogs-again/](http://firstlook.org/theintercept/2014/09/03/froomkin-blogs-again/))

“많은 자료를 읽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흠이 많은 언론 풍토 속에서도 인터넷을 많이 뒤져보면 그림이 나올 것이다.”

범죄자가 범죄 현장에서 잡혔다면 다른 많은 죄를 지은 것 중에 하나만 드러난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과 정보기관이 저지른 범죄도 마찬가지다. 다음 사례들은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사건들 중에 지극히 일부분만 나타낼 뿐이다.

1976 12월

펜트하우스에서는 은밀한 준 정부 조직인 경찰첩보대 연합(Association of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LEIU)에 관한 기사를 낸다. 기자는 풀리처 상 수상자이며 CIA에서 분석가로 활동했고 미국 첩보 역사에 일가견 있는 소설가이자 역사학자인 George O'Toole이었다. 그는 “America's Secret Police Network.”이란 기사에서 예전 붉은 분대의 현대판 버전을 드러낸다.

“도시 경찰청 내의 첩보 분과로 침투, 단체 분열 같은 방첩 업무와 사찰 업무를 맡아 한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민감한 첩보 데이터 베이스를 다루지만 LEIU는 사조직이라서 감사에서 제외된다.”

O'Toole은 이 단체를 이렇게 묘사했다.

“LEIU는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자료 교환, 상반되는 기준으로 수사까지 행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에 속한 여러 곳의 경찰청이 최근 일반 시민들을 불법도청, 무단침입, 사찰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LEIU는 실질적으로 거대한 민간 국내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다”

1979년 4월

뉴욕타임즈는 위에서 언급한 LEIU에 관해 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에서 3

년 반 동안 한 연구를 보도한다. LEIU를 인맥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했는데 개인과 단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찰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법의 절차, 사생활 보호 같은 헌법적 권리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불법적 사찰 행위를 해왔다”고 한다.

<http://query.nytimes.com/mem/archive-free/pdf?res=9D00E5DA1638E432A25754C1A9629C946890D6CF>)

1979년 9월

1979년 9월 L. A Times에서는 ‘FBI가 Jean Seberg에 대한 거짓말 유포를 시인하다’란 1면 기사를 내보낸다. 성공한 여배우이자 정치 운동가였던 Jean Seberg가 한달 전 파리에서 자살한 내용을 다룬다. FBI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 FBI가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그녀를 음해했으며 방첩작전(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전술로 썼던 불법도청, 공공연한 스토킹(overt stalking)을 그에게도 가해왔었다는 것이다.

<http://latimesblogs.latimes.com/thedailymirror/2009/03/the-jean-seberg.html>)

1986년 10월



암 연구학자인 아놀드 락신(Arnold Lockshin)은 1986년 가족들을 데리고 소련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그 해 10월 Gadsen Times와 다른 신문들에 의해 그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락신과 그의 부인의 사회주의적 정치 견해로 인해 연방 요원에 의해 그들 가족은 집요한 스토킹, 음해, 도청, 감청, 사찰, 무단침입, 전화 협박 같은 조직스토킹 수법에 시달렸었다는 것이었다. 아놀드 락신 박사는 그의 가족들이 경험한 조직 스토킹을 1988년 ‘조용한 테러(Silent Terror)’라는 책으로 출간했다. (https://fightgangstalking.com/recommended-books/#silen_error)

<http://news.google.com/newspapers?nid=1891&dat=19861011&id=b7UfAAAAIABJ&sjid=VtcEAAAAIABJ&pg=3007,2092042>)

2000년 8월

직장에서 조직적으로 심한 가해행위를 하는 뉴스가 주요언론에 거의 처음으로 보도된 사례가 있다. ‘집단폭행’(속어로 왕따) 과정이라고 불린, 다수의 가해자가 한 직원을 심리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Newsweek 와 Daily Beast에 소개되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이런 조직적인 학대를 더 큰 현상과 연관 짓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의 학대는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조직스토킹의 공통된 요소이기도 하다. (<http://www.newsweek.com/they-call-it-mobbing-159101>)

2004년 3월

PBS 시사 프로그램 NOW는 예전 FBI의 방첩작전 Cointelpro 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 NOW는 에미

상을 수상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이다. 탐 브로코는(Tom Brokaw) "일반 통념을 시험하는 겁 없는" 프로그램으로 The Austin American-Statesman 은 "TV 저널리즘의 최후의 보루 중 하나"로 평가하기도 했다. PBS 홈페이지에는 이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지 않지만 "COINTELPRO Again?" 이란 프로그램에서 줄거리는 소개한다. (<http://www.pbs.org/now/politics/cointelpro.html>)

"Cointelpro가 부활한 것 같은 우려의 말들이 있다. 평화적 시위자들에게 침투하는 잠복요원들이 있는데 같은 시위자로 위장하고 지역경찰들은 "헌법 수정 제1항에 의해 보호받는 정치 철학과 행위"에 따른 지지 행위를 하는지 시위단체들을 감시한다. Cointelpro 사건 조사 이후 처음으로 완화된 지침이 실행되면서 나온 결과이다."

2004년 6월

뉴스위크 지는 펜타곤이 국내 사찰업무를 조용히 개시했다고 보도한다. 1970년대 상원 처치 위원회의 조사로 이어지게 한 사건 중 하나가 미군정보요원에 의한 내국인 사찰이었다. 9/11 테러 발생 수년이 지난 후 군 당국은 다시 슬그머니 그 일을 개시했다고 밝힌다.

"국민의 합의없이 국방부 관계자는 펜타곤의 국내 첩보능력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 승인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간인 정보원 고용도 포함된다."

(<http://www.truth-out.org/archive/item/48419:the-pentagon-spying-in-america>)

2004년 10월

영국의 주요 일간지 The Sunday Times는 첩보기관인 MI5가 내부고발자를 처단하기 위해 조직스토킹 수법을 동원했다고 보도한다. 그 전략은 "Zersetzung"이라고 묘사되는데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가 사용하던 방법이다. (<http://www.thesundaytimes.co.uk/sto/news/article241256.ece#>)

주의: 위의 링크는 유료구독자 이외에는 보지 못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전체 기사는 다음에 나와있다. (<https://fightgangstalking.com/cointelpro-news-2013/#sundaytimes>)

2005년 12월

'The Women of Brewster Place'로 National Book Award 를 수상한 Gloria Naylor의 자서전적 서적이 2005년 출간되었다. 조지오웰의 1984를 연상시키는 '1996' 이란 책에서 그녀는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가 된 경험을 묘사한다. NSA 요원의 형제였던 사람과 말다툼을 한 후 이 수법으로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http://www.amazon.com/1996-Gloria-Naylor/dp/0883782782>)

2006년 1월 23일 National Public Radio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사람과 맞닥뜨렸다고 생각해요. 책에서 쓴 것처럼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는데 끝없이 추락하고 추락하고 또 추락했지요." (<http://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5168026>)

"자동차들이 미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따라다니기 시작했구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생활이 침해 받는다는 생각에 미칠 지경이었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한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래요. 어떤 어린애가 평판 좋은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제 그 애가 다른 부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믿어줄 테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어린 딸에게 절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안 믿겠죠.” 그는 2016년 사망했다.

2006년 5월

캐나다 신문인 The Globe and Mail 은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CSIS) 와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에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테러 용의자에게 조직스토킹 기법인 “확산과 분열” 전술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사의 주장으로는 의뢰인이 관계당국자들에 의해 가해행위를 당해왔었지만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고 했다.

“CSIS 와 RCMP는 민사 법원에서 삼엄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감중인 사람들은 재판을 교묘히 피해가는 기관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CSIS 한 관리는 상원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소가 용이하지 않으면 다른 기술을 쓸 수도 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lacking-a-case-csis-disrupted-suspects-lives/article709568/>)

2006년 11월

뉴욕 타임즈는 테러리스트로 잘못 고소당한 오레곤의 한 남자에게 정부가 \$2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06/11/30/us/30se_le.html?_r=0)

2010년 11월 Christian Science Monitor는 연방요원들의 가해행위 중에 무단침입 같은 조직스토킹 수법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연방요원들은 그의 사무실과 집 곳곳에 도청장치를 설치했고 통화내용을 녹음했으며 가족들까지 끊임없이 감시했다. 아무도 없을 때 집을 샅샅이 뒤지기도 했다.”

(<http://www.csmonitor.com/USA/Justice/2010/1101/Supreme-Court-declines-to-hear-wrongly-accused-man-s-Patriot-Act-challenge>)

2007년 1월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Magazine)에서 군사정책과 무기 체계에 능통한 한 언론인은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지성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이상한 비살상용 무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보도를 낸 적이 있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1/10/AR2007011001399.html>)

“할란 지라드가 미쳤다면, 흉내만 내지는 않을거다지라드는 지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미국이 비밀 연구를 해온 역사를 보면 장거리파 무기를 개발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실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 새런 와인버거(Sharon Weinberger)에 따르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현재 알려진 국방부 기술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려고 했다면서

“에너지 간부회 감독하에 있는 연구소 대변인 리치 가르시아(Rich Garcia)는 그 분야와 관련된 특허나 연구에 관한 언급을 회피했으며 극초단파 연구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연구소 방침이라고 했다.”

“...적어도 2002까지 연구가 계속된 것 같으며 그 후로 계속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연구소는 기밀을 이유로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했다.”

와인버거 기자의 기사에 달린 조직스토킹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댓글을 보면

“... 피해자가 모두 정신병치료를 요하는 병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취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전술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댓글들은 선거 운동원들도 따라하고 싶을 정도일 것이다. 한 네 티즌의 충고대로 말이다:

-워싱턴 포스트 후속 기사가 나와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댓글을 많이 답시다. 가해자들이 우리가 미쳤다는 댓글로 도배하기 전에 우리편인 이 글을 많이 알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두 동참합시다.- ”

2008년 6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간지인 The Nation의 Jeremy Scahill이 쓴 기사에 의하면 전직 CIA 정보관인 Melvin Goodman이 첩보분야 민간계약직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책임감과 의무감의 결여가 심각하다. 전 산업계가 통제불능이다.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다.”

<http://www.thenation.com/article/blackwaters-private-spies>

2009년 3월

“스토커의 주장이 경찰을 요동치게 하다.”란 제목의 기사가 Verona-Cedar Grove Times에 나갔다.

자칭 조직스토킹의 피해자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조직스토킹자들은 피해자의 삶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주민을 선정해 괴롭힌다. 결국에는 손에 피 안 묻히고 살해하려는 것이다. 증오범죄의 전형이다.”

<https://fightgangstalking.com/cointelpro-news-2013/#newjerseyflyers>

2010년 10월

정치 블로그인 Daily Kos에서는 영, 미, 캐나다 정보기관이 동독의 조직 스토킹 기법 ‘Zersetzung’을 개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매일 수십만명이 방문하는 사이트이므로 정부 지원의

범죄행위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가 있다.

<http://www.dailykos.com/story/2010/10/12/909826/-ZERZETSEN-TORTURE-Spooks-Lies-and-Threats>

2010년 11월

위키리크스가 출간한 '미국의 기밀 외교 케이블'에서 캐나다 안보 정보국장(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CSIS)이 미국 국무부 관리에게 " '확산과 분열' 전략(조직스토킹 기법)으로 헤즈볼라 대원을 무참히 괴롭히고 있다"고 한 대화내용을 소개한다.

<http://wikileaks.org/cable/2008/07/08OTTAWA918.html>

2011년 1월

캘리포니아 지역 방송뉴스(KION 채널46번 KCBA 채널 35)에서 산타크루즈 지방 경찰청의 Larry Richard 경위와 기자가 조직 스토킹에 대해 보도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DB-MlhPmXqk>

2011 2월

가디언(Guardian)지에서 James Ridgeway 기자가 쓴 '기업형 사찰의 더러운 역사'라는 기사를 보면 기업에서 사설 업체와 결탁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설명한다.

"사설탐정업체는 원하는 기업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연방/지역경찰에서도 기꺼이 수령자가 될 자를 찾는다. 이들 중 일부는 사설업체에서 퇴직을 맞이하기도 한다. 사설첩보업체는 법에 있는 보호장치를 따돌리는 경찰에 준하는 체계에까지 다 달았는데 기업형 사찰 산업은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결국엔 금지되어야 한다."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cifamerica/2011/feb/15/activism-protest>

2011년 8월

The Record 지와 3번 채널 KCRA 방송에 캘리포니아의 Stockton 시행정 담당관이 계약 협상에서 실패한 후 경찰에 의해 스토킹 당한 내용이 보도 되었다. 경찰은 담당관 옆집을 매입하여 방첩요원들이 행하는 심리전을 퍼는 아지트로 사용하는 뻔뻔한 전략을 펴기도 했다고 한다. KCRA 3 뉴스는 시행정 담당관이 "집에서 학대 당하는 피해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Stockton 시장의 인터뷰를 전하며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다고 보도했다.

http://www.recordnet.com/apps/pbcs.dll/article?AID=/20110818/A_NEWS/108180325

<https://www.youtube.com/watch?v=fDnXIAkq8yE>



폴리처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플로리다의 Sun Sentinel지는 고속도로 근무경찰 Donna Jane Watts가 다른 관할 구역의 여러 경찰들로부터 조직 스토킹을 당한 내용을 보도했다. 피해자는 휴무인 다른 경찰로부터 위협적인 난폭운전을 당했으며(그는 나중에 파면되었다) 불법적 개인정보 취득과 희롱과 협박을 일삼는 미행을 당했다고 했다. Watts양은 불법적 학대를 보상받고자 고소 중이다. 선티넬지는 플로리다 경찰들의 무모한 운전으로 발생한 사망과 부상을 연이어 보도함으로써 폴리처 상을 수상한다.

http://articles.sun-sentinel.com/2012-12-26/news/fl-deputy-watts-lawsuit-20121224_1_law-enforcement-officers-margateofficers-police-officers

“ Donna ‘Jane’ Watts 순경의 69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이 금요일 연방법원에 접수되었는데 청구보상액이 \$1백만에 달한다. 그는 100명 이상의 경관과 기관, 고속도로차량안전국을 고소했다. 25개 관할지역의 88명의 경찰이 200회 이상 불법적으로 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사생활을 침해했다. ”

“ . . .경찰들은 그의 집주소와 사진과 주민번호, 출생일, 소유 차량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수집했으며 . . . ”

“ Watts양은 그 사건 이후로 집 전화, 휴대전화로 협박을 당했으며. . . . ”

며칠 후 플로리다의 또 다른 조직스토킹 피해 경찰의 고소가 접수되었다. 전직 보안관 대리였던 Toni Foudy는 그와 그의 남편이 불법사찰과 학대의 목표가 되었었다고 주장했다. 이 두 사건은 팜 비치에 있는 지역방송 WPTV에 의해 방송되었으며 Treasure Coast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다.

<http://www.wptv.com/news/region-martin-county/lawsuits-allege-law-enforcement-misused-david-system>

<http://www.tcpalm.com/news/former-deputy-files-1-million-lawsuit-against-st>

신문기사 중 일부를 발췌해보면:

월요일 접수된 \$100만 달러 고소에 따르면 전직 인디언강과 세인트 루시 카운티의 보안관 대리는 이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6년간 그와 그의 남편 운전면허증 제시를 수백 번 이상 요구당했다고 한다.

.... Foudy는 그와 그의 남편 운전면허 정보에 접속한 2군데 보안관서의 100명 가량의 이름을 제시했으며. . .

. . .Foudy는 2005년 St. Lucie County 보안관서에 파견되었는데 1년 후 그의 순찰차 고장에 대한 자체 내사 실시 중 강제 퇴직 당했다.

. . .Foudy는 조직 중에 자신을 학대하기로 지목한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사직했고 2006년부터는 희롱하는 이메일이 시작되었으며 몇 년 후 St. Lucie 교도소에서 발송된 이메일로 밝혀졌고. . .일주일에 수차례 순찰차가 집 주위에 와서 갑자기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버리고 이로 인해 2번이나 이사를 했다. . .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foudys-complaint.pdf>

고소장에 따르면(p 36), Foudy의 친척들도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검색이 2군데 데이터베이스에서 6년간 200회 이상 승인없이 이루어졌다.

2013년 1월

CounterPunch 에서는 FBI의 악명높은 COINTELPRO 작전이 완전히 다시 부활했다고 보도한다.

[\(http://www.counterpunch.org/2013/01/21/the-return-of-cointelpro/\)](http://www.counterpunch.org/2013/01/21/the-return-of-cointelpro/)

2013년 6월

네이션(The Nation)지는 노스웨스턴 대학 Peter Ludlow 교수의 '베렛 브라운의 이상한 경우' 라는 기사에서 사설 보안회사, FBI, 법무성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들을 보고 "Cointelpro 2.0 이 실시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평했다.

<http://www.thenation.com/article/174851/strange-case-barrett-brown>

2013년 9월



워싱턴타임지와 'Wired'지에 소개된 워싱턴 D.C. 해군 조선소에서 있었던 무차별 총격사건은 전자 무기와 소음 고문을 가하는 조직 스토커들에게 시달린 사람이 자행한 사건이라고 보도한다.

<http://communities.washingtontimes.com/neighborhood/freedom-press-not-free/2013/sep/18/elf-extremely-lowfrequency-clue-alexis-motives/>

<http://www.wired.com/dangerroom/2013/09/navy-yard-conspiracies/>

2013년 9월

Fortean Times 영국판 표제는 '정부지원의 조직스토킹' 이었다.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 영문과교수인 Robert Guffey는 군이 개입한 조직스토킹에 대해 자세한 서술을 한다. 야간투시경과 기밀이 담긴 노트북 같은 극비성 군사산을 훔친 해군 한명이 무단 결근(AWOL)을 했다. 해군

관계자 한 명이 미군 장비를 훔쳤다가 잠복요원들에게 어떻게 조직적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문을 당했는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해군범죄수사국(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NCIS)은 용의자와 공범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조직스토킹을 실시했다. 공공연한 스토킹(Overt stalking)과 색다른 방법을 동원한 갖가지 심리전법이 사용되었다. 작전은 재판 없는 처벌과 실험을 할 요량이었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the-cover-article-of-fortean-times2.docx>

2013년 11월

CBS 부속뉴스인 West Virginia 지역 TV 뉴스에서 "조직 스토킹"에 대한 보도를 내보낸다. 조직스토킹 기법으로 가해자들에게 오랜 시달려온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피해자 2명의 증언에 대한 내용이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nUkfNpZb0gU>

2013년 11월

Democracy Now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업정책 감독으로 있는 Gary Ruskin이 나와서 미국 대기업들이 고용한 사설 감시업체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비평가들을 어떻게 불법적인 방첩작전(Counterintelligence operation)으로 압박하는지를 다룬다. Amy Goodman기자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전직 CIA, NSA, FBI 요원들을 고용하여 거의 기소조차 안되는 불법적인 민간 사찰업무를 한다."

http://www.democracynow.org/2013/11/25/spooky_business_us_corporations_enlist_ex

2013년 12월

CBS, the Daily Mail, RT, Tech Dirt 와 Courthouse News Service에서 정부의 민간 계약 직원 Jeffrey Kantor가 자기를 집단스토킹(a.k.a.조직스토킹)한 여러 연방기관을 고소한 사건을 보도한다. Kantor는 무선 비행기 제조법을 구글에서 검색한 후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무선 비행기 제조' 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는데 자동으로 검색어에 '폭탄'이 추가되어 검색되었다. 이후 자기 집과 자동차를 포함해 어디서나 끊임없이 감시 당해 왔으며 직장 동료와 낯선 사람들로 부터 정신적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 Kantor씨는 떼지어 자기를 괴롭히도록 한 본인 회사도 고소했다. (<https://fightgangstalking.com/#lawsuit>)

2014년 1월

Winnipeg Free Press는 2013년 7월 Gerald Chudy라는 캐나다 Manitoba에 사는 56세의 한 남성이자신을 수년간 조직스토킹 해온 사람을 칼로 찌른 사건을 보도했다. Chudy씨가 칼로 찌른 스토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상처가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http://www.winnipegfreepress.com/local/suffering-delusions-for-years-239004741.html>)

2014년 2월



뉴욕커(The New Yorker)지는 생물학자인 Tyrone Hayes가 Syngenta에서 제조한 살충제의 위해성을 비밀에 묻어두길 거부하자 회사가 고용한 청부업자들로부터 십년 넘게 협박, 공갈, 해킹, 스토킹에 시달린 사례를 자세히 보도했다.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조직스토킹은 아니지만 처벌도 받지않고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악한 회사들의 폭력적인 대응의 예를 보여준다.

http://www.newyorker.com/reporting/2014/02/10/140210fa_fact_aviv

2014년 5월

ABC 뉴스 TV 프로그램인 20/20에서 오하이오주 Hubbard에 사는 한 부부가 마을 소방서 장(?)과 부동산 문제로 싸운 뒤 다른 소방관들과 경찰관들, 주민들의 가세로 7년간 집 근처에서 5000번 이상 자동차 크랙션을 울리는 공해에 시달린 법정소송 사건을 소개한다. 이 부부는 모두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었으며 방송 당시 계속 소송 중이었다 한다.

<http://abcnews.go.com/2020/video/couple-claims-entire-town-turned-23574799>)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618941/Its-small-town-terrorism-Ohio-couple-claim-theyve-honked-5000-times-town-revengetrying-buy-neighbors-house.html#ixzz30bcKv4>)

2014년 7월

커넥티컷의 지역방송 WTNH News 8과 지역 신문인 Courant지, NBC 뉴스의 부속 지역 TV는 Guilford에서 나눠지고 있는 '조직스토킹' 전단지에 대해 보도했다. Guilford에서 방첩작전인 조직스토킹이 실시된다는 주장이었는데 지역 경찰청도 이 문제에 대해 The Day지에서 언급을 했다.

<http://wtnh.com/2014/07/04/flyers-threatening-gang-stalking-scaring-people-in-guilford/>)

<http://www.nbcconnecticut.com/news/local/Police-Warn-Guilford-Residents-About-Suspicious-Flyer-265842021.html>)

<http://www.courant.com/community/guilford/hc-guilford-gang-stalking-0704-20140704,0,7917043.story>)

<http://www.theday.com/article/20140704/NWS01/140709830/0/SEARCH>)

<http://www.courant.com/community/guilford/hc-guilford-gang-stalking-flyers-20140704,0,5386620.htmlstory>)

2014년 11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31살의 변호사 Myron May가 3명을 총격하는 사건이 NBC 뉴스에 보도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는 정부의 스토커들이 그를 학대하고 있다며 여러 사람들에게 사건을 예고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2명은 경상이고 한 명은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한다.



총격 전 자칭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라고 밝힌 Myron May는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음성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화와 이메일, 문자까지 보내고 여러 사람에게 자신이 당한 일의 자료를 담은 10개의 소포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BI가 소포를 중간에 가로챘다고 한다.

<http://www.nbcnews.com/news/us-news/fsu-shooter-myron-may-left-message-i-do-not-want-n253436>)

[\(http://college.usatoday.com/2014/11/24/florida-state-shooting-victim-is-paralyzed/\)](http://college.usatoday.com/2014/11/24/florida-state-shooting-victim-is-paralyzed/)

<http://www.wptv.com/news/state/fsu-gunman-sent-10-packages-beforeshooting-postal-inspectors-say>

2014년 11월

데일리 메일(Daily Mail)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 11년간 복수와 협박의 차원에서 영국 첩보기관 MI5로부터 사찰과 학대를 받아왔다고 주장한 한 사업가가 한달 전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데일리 메일의 표현으로는 “악명높은 깡패”인 자신의 친구를 MI5가 요구한대로 스토킹 대상으로 선정해 작전 수행하기를 거부한 이유였다고 한다.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MI5 첩보원들은 집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훈련된 새들이 창문을 계속 두드려 시달림 당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업가인 Philip Kerr씨는 첩보기관과 공작을 거부한 이유로 대상으로 지목되었다고 했는데 고등법원이 첩보기관에 금지명령 내리기를 바라는 중이다. 53세인 이 남자는 지난 11년간 학대 작전의 피해자였다고 했는데 Wirral (Wirral), 머지사이드(Merseyside), 태국에 있는 집에 감시카메라와 마이크를 첩보원들이 설치해 놔으며 . . . 고소장에 전화통화나 TV시청 라디오 청취 중에까지 끼어들어 훼방을 놓았다고 했다.”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821478/Curtis-Warren-s-friend-claims-MI5-spies-buggedhome.html>

Kerr씨는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전직 MI5요원이자 내부고발자였던 Annie Machon에게서도 조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W_yYHluFk7w] ← 이 동영상 초반부에 나온 인물이다. 미국 첩보기관 내부 고발자인 Ray McGovern 와 Thomas Drake도 출연한다.]

- Annie는 “MI5가 머릿속을 어떻게 해보려는 작전을 펴고 있다. 심리전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 Kerr씨 변호사 Anthony Barraclough는 “그의 삶을 앗아갔으며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했다.
- MI5측에서는 고등법원 고소장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15년 4월 데일리 미러(Daily Mirror)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http://www.mirror.co.uk/news/uk-news/drugs-kingpincurtis-warrens-pal-5507900>

판사는 시인도 부인도 안하는 MI5 측의 고소취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enior Master Barbara Fontaine은 소송을 연기하고 권력수사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IPT)에 고소를 넣어보라고 했다. 이곳은 비공개 법원으로 공공기관이 은밀히 행한 불법행위들을 조사한다.

Kerr씨는 MI5가 스토킹과 사찰 같은 행위들을 은밀히 하지 않고 드러내 놓고 했는데 이것은 공조를 강요하거나 설득할 심산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9. 역사적 기원

: COINTELPRO, MKUltra, Red Squads, & the Stasi

미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Teapot Dome scandal, Operation Mockingbird, Operation Northwoods, the Pentagon Papers, 워터게이트, 이란-콘트라 같은 정부의 음모에 관해 많이 배웠을 것이다. 조직스토킹에 사용되는 전략 전술은 예전 미국의 방첩 작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저질러지는 방첩 범죄는 다음과 연관이 있다.

COINTELPRO: 자국민을 상대로 전 FBI 국장 J. Edgar Hoover가 실시한 비밀 방첩작전이다.

Project MKUltra: CIA가 1950년대 초부터 70년대 초까지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상대로 벌인 비밀 심리 고문 실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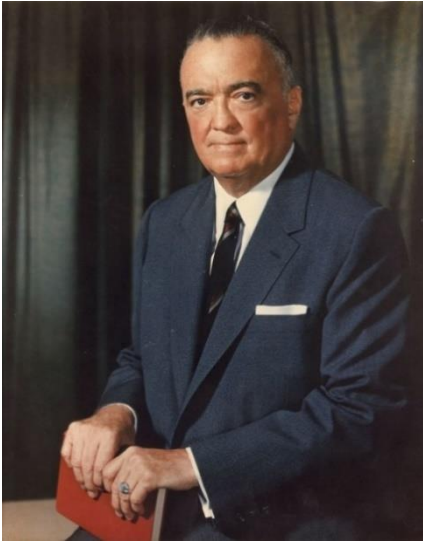
“Red Squads”: 현재는 “경찰첩보대(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LEIUs)”로 불리는 지역 경찰청의 한 부서다. 범죄자 감시 외에 방첩 작전도 하는데 노조나 인권단체 같은 곳에 잠입해 분열 획책하는 일도 한다. 주로 도시 경찰청에서 애용한다. 19세기부터 기업의 이익이나 정치운동 와해에 깊이 관여해 왔다. 법이나 윤리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는 작전을 실시한다.

슈타지(The Stasi): 사찰과 심리 고문을 동시에 가하면서 국민을 통제해 온 동독의 비밀경찰이다. 감시와 심리적 고문을 하는 핵심 전법은 zersetzung이라고 불렀는데 조직스토킹에서도 현재 쓰이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학대를 승인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작전들의 기본 사항만이라도 읽어보라.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정보를 파헤치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주요 언론에서도 논란 없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온 자료들이다.

1. COINTELPRO

J. Edgar Hoover, FBI Director from 1924 to 1972



COINTELPRO는 미국 경찰, 정부 및 민간 첩보관계자들에 의해 시행된 불법적인 비밀 작전으로 자국민 대규모 사찰, 협박, 모략, 테러, 살인을 포함한 폭행을 행사하던 작전이었다. 1971년 민간 시민 운동가들에 의해 최초로 언론에 폭로되면서 중단되었다. 현재의 조직스토킹과 COINTELPRO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 현재 조직스토킹은 COINTELPRO와 유사한 작전이 아니라 그 작전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OINTELPRO 작전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 작전이 외부인에 의해 폭로될때까지 FBI 요원과 관계자들은 충성스럽게 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폭로한 사람들은 FBI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훔쳐내서 언론에 뿌린 사람들이었다. J. Edgar Hoover 의 이름은 아직도 FBI 본부에 걸려있다.

2013년 1월 21일 CounterPunch 잡지는 이 작전이 다시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다고 했다.

[\(http://www.counterpunch.org/2013/01/21/the-return-ofcointelpro/\)](http://www.counterpunch.org/2013/01/21/the-return-ofcointelpro/)

15년간(1956~1971) FBI는 COINTELPRO라고 알려진 국내 첩보/방첩작전을 광범위하게 수행했다.

처음에는 냉전시대에 소련과 사회주의자들의 위협, 침입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출발했지만 곧 국내의 부패한 기득권에 대항하는 세력과 민간인을 억압하기 위한 작전으로 둔갑했다. 대부분 아무 전과도 없는 사람들을 정치 신념과 성향만으로 FBI에서 20,000명 가량을 조사했다. 1976년 상원 보고서에 의하면 FBI는 '현 사회와 정치 체제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세력과 싸우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논리로 합리화 시키려 했다. '잠재적 위협이 되는 세력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동만 하는 민간인들에 지나지 않았다. COINTELPRO의 목표는 현 권력체제를 전복하려거나 위협이 되는 개인과 단체를 '폭로, 분열, 오도, 불신,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FBI는 살인 공모, 정치 반대세력 암살, 무기징역 언도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였다.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협박편지, 허위사실 유포, 중상모략과 학대 등이 있었다. 미국은 서구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 중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인 국내 사찰을 감행한 유일 국가가 되었다는 논쟁이 잇따랐으며 1971년 대중 공개에 맞서 폐지되었다.

진짜인가?

Partnership for Civil Justice Fund (PCJF)의 폭로에 따르면 COINTELPRO는 아직도 건재하다고 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PCJF는 FBI가 월가점령운동(Occupy Wall Street-OWS)을 잠재적 범죄와 국내 테러위협으로 간주하고 초기부터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문서를 입수했다.

퇴직한 FBI관료가 말하는 “조직 스토킹”



가장 흥미로운 증언은 실제 COINTELPRO 작전에 참여했던 전직 FBI 요원에게서 나왔다. Ted L. Gunderson인데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멤피스에서 현장 요원 총책임자로 일했고 1979년 사직 후 사설탐정이 된 사람이다. 그는 전직 미육군 군의관 제프리 맥도날드(Dr. Jeffrey MacDonald)살해 사건(미국에선 유명했던 사건)에서 피고측으로 수사에 참여한 적도 있다. 여러 번 언론에도 나왔는데 Gunderson은 “사악한” 군정보기관과 연방 경찰조직이, 배신자나 바람직하지 않은 자로 지목된 미국인 수 천명을 법 밖에서 감시하고, 학대하고, 협박하고 있는 조직스토커들의 전국적 연락망을 감독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조직스토킹을 폭로하려는 의지 때문에 본인 자신도 피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했다. 전자장비에 의한 감시 등 조직스토킹 방법이 어떻게 자신에게 쓰였는지 설명하는 Gunderson의 오디오 클립은 아래에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dTVB4tqzGR0>

Gunderson에 의하면 조직스토킹은 상원의 처치 위원회(프랭크 처치 상원의원이 주도) 수사로 COINTELPRO 작전을 끝냈다고 생각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1980년대 초부터 다시 시작되었다고 했다. 범위와 강도, 정밀함은 감시/통화 장비 기술 발전에 힘입어 처음 작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Ted Gunderson의 조직스토킹에 대한 분석은 몇 가지 이유로 복잡하다. 첫째, 과거 작전에 참여해 본 전직 고위 FBI관리로 그는 전문적 견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그의 조직 스토킹에 대한 발언과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을 담은 진술은 악마승배, 아동 성교 등 다양한 주제를 같이 다룬다. 그의 주장은 답이 없는 몇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Gunderson은 그의 말을 뒷받침할 문서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기묘한 말을 하는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냥 바보 같아 보인다. COINTELPRO나 MK Ultra 작전이 지금은 조직스토킹이란 수법으로 행해지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먹이감이다.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FBI에서 30년간 고위관리로 재직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을 다루고 우수한 근평을 받았으며 안팎으로 그가 미친 사람이란 것을 알아챈 자가 하나도 없는지 의아하다. 가장 신빙성 있는 대답은 그가 은퇴 후에도 FBI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일을 해왔고 역정보를 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COINTELPRO 작전에 직접 참여한 경력도 그렇고 아무도 그를 정신병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방첩작전에서 교란작전으로 흔히 쓰이는 방법은 그 일원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하여 그들의 주장이 불신 받게 하는 것이다.

<https://www.muckrock.com/foi/united-states-of-america-10/theodore-l-gunderson-fbi-documents-2940/>

Gunderson의 주장이 교란 시키려는 역정보가 아니라 진짜 정신병자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FBI는 정신병자들로 가득 찬 기관이라는 신랄한 비판에 무게를 더해주는 셈이 된다.

Gunderson의 진술:<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gunderson-affidavit.pdf>

FBI가 여배우 Jean Seberg에게 행한 조직스토킹



조직 스토킹의 사악한 본질을 잘 보여주며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으로 문서로도 잘 나와있다. 여배우 Jean Seberg가 인권운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FBI는 그를 체계적으로 괴롭혔다. FBI 비망록이 유죄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고 FBI가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다. FBI는 Seberg양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뉴스에 허위사실 유포, 도청을 통한 은밀한 사찰, 스토킹 같은 공공연한 사찰을 하며 그를 괴롭혔으며 무단 가택 침입까지 저질렀다. 임신중이었던 Seberg양은 이 작전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며 이로 인해 조기 출산을 하는데 아기가 죽게 되자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Seberg양은 FBI 비밀 작전으로 희생된 많은 피해자중 한 사람이다.

(<https://fightgangstalking.com/cointelpro-news-2013/#fbimemo>)

무단침입

COINTELPRO가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매력적인 일로 보도는 많이 되지 않았다.

2006년 3월 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난 기사이다:

“ 35년전 오늘, 펜실베니아주 Media에서 익명의 시민 운동가들이 2명만 근무하는 FBI의 조그마한 사무실에 침입하여 여러 해 동안 도청, 잠입, 언론 조작을 한 사실이 담겨있는 1000개가 넘는 문서를 탈취한다. 국민 모두가 무하마드 알리 대 조 프레지어의 권투경기를 시청하고 있을 때 자칭 시민 위원회라고 밝힌 이들은 FBI를 수사하기 위해 쇠지레를 들고 길을 나섰다. 다음날 아침 정보 요원들이 출근했을 때 캐비닛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2-3주후 이 서류들은 발신자 주소없이 미국 주요 신문사로 배달되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복사본을 받았을 때 John N. Mitchell 법무장관은 편집장 Ben Bradlee에게 수사와 연관된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으면 기사를 내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포스트지는 1971년 3월 24일 처음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FBI가 Swarthmore 대학과 필라델피아 지역 흑인 인권 운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어떻게 지역 경찰서장, 집배원, 전화 교환수를 동원했는지 자세하게 나와있는 14개의 문서를 받고 나서 말이다. 다른 문서들은 다른 기자들과 상원의원들에게 배달되었다. (뉴욕타임즈의 Tom Wicker기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자들, George McGovern 상원의원, Parren J. Mitchell 하원의원 등) 지금까지 무단침입으로 고소당한 자는 없었다. FBI는 이 소송에 6년간 33,000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준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 사건은 현대 미국사에서 정치적 관심을 가장 오래 끈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http://articles.latimes.com/2006/mar/08/opinion/oe-jalon8>)

2014년 1월 7일 New York Times는 COINTELPRO를 폭로한 시민 운동가 신원을 공개했다.

(<http://www.nytimes.com/2014/01/07/us/burglars-who-took-on-fbi-abandon-shadows.html?hp&r=0>)

2015년에는 '1971'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어 나왔다. (<http://www.1971film.com/trailer>)

공식 문서

FBI는 COINTELPRO 시대에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상원 처치위원회 보고서만 수만 페이지나 된다. 대부분의 의회 보고서는 따분하다. 목차만 봐도 FBI가 저지른 범죄의 범위를 가늠하게 해준다.

목차 소제목의 예

불법 부적절한 수단 사용, 편지 열람, 정치적 학대, 법 무시, 음해 시도, 언론 조작, 정부정책과 대중 인지에 영향을 주기 위한 데이터 조작, 잠입 수사, 도청, 감청, 백악관을 위한 정치 첩보, 공산주의 영향 과장, 무단침입, 국세청 오용, 이데올로기 단체 선정, NSA 감시, 무기한 전자장비에 의한 감시, 국내첩보망, 끄나풀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 준법시민 학대, 비평가와 정치인 학대, 법무장관의 FBI 활동 제한과 통제 저지, 조직내 반목과 파벌주의 조장, 폭력 조장, 연설/교수/저술/출판 방해, 가족, 친구, 동료에게 허위정보 유포, 고용주와 접촉, 재판 방해, 방첩과 수사의 모호한 구분

다음은 흥미로운 주제로 가득 차 있다. Volume 6의 청문회는 무단침입에 대한 서신을 담고 있다.

Book 2의 마지막 보고서는 마틴 루터 킹에게 자살을 종용하는 협박편지가 담겨있다.(p.220~221)

Final Report – Book 2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final-report-book-2.pdf>)

Final Report – Book 3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final-report-book-3.pdf>)

Hearings – Volume 6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hearings-volume-6.pdf>)

처치위원회 보고서 전체

(<http://www.intelligence.senate.gov/churchcommittee.html>)

FBI에 의해 불온분자로 분류된 유명인사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존 레논, 진 시버그 등이 있다.

COINTELPRO 시대부터의 조직스토킹 설명

2013년 10월 Fortean Times의 표제 "정부지원의 갱스토킹"의 저자였던 Robert Guffey는 '암호해독법'이란 자신의 블로그에 2014년 1월 26일 다음 자료를 올렸다. (<http://cryptoscatology.blogspot.com>)

다음은 Guffey 기자가 '20세기에 설명하기 힘든 일들을 조사한 발군의 실력자'라고 평한 John A. Keel (1930—2009) 기자의 출판되지 않은 기록이다. (http://www.johnkeel.com/?page_id=21)

Guffey는 이것이 조직스토킹의 기원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 시점에서 이 현상의 진짜 기원을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조직적인 학대는 적어도 John A. Keel 기자가 왕성한 활동을 하던 때인 1960년대나 1970년대부터 있었다."

조직 스토킹에 대한 이런 설명은 냉전시대에 실시된 FBI의 COINTELPRO의 활동 시기와 일치한다. 결국 FBI 요원들이 UFO에나 관심있던 개인들을 조사하고 협박했다는 것은 억지 소리가 아니다.

다음은 출판을 목적으로 한 기록이 아니어서 복잡한 순서로 되어있는데 매겨진 번호는 무시하고 다음 순서로 읽어 보길 권하는 바이다.

Webpage #1 (<http://www.johnkeel.com/?p=2133>)

Webpage #2 (<http://www.johnkeel.com/?m=201402%20>)

2. MKUltra

CIA의 공식 작전 선서는 '미국의 적(외국의 적)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https://www.cia.gov/mobile/about-cia/cia-vision-mission-values.html>) 고문, 암살, 마약 밀매, 민주 정부에서의 쿠데타 모의 등 다채로운 경력을 보유한 CIA지만 "최고의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고 주장한다. 작전 선서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법적 죄를 열거한 기다란 항목을 보면 내국인을 사찰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은밀히 행한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http://s3.documentcloud.org/documents/238963/huge-c-i-a-operation-reported-in-u-s-against.pdf>)

(<https://www.aclu.org/spyfiles/more-about-intelligence-agencies-ciadni-spying>)

또한 CIA는 LEIU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방첩 활동의 범위와 본질을 어떻게 평가하든 CIA가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상대로 은밀한 실험을 한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MKUltra라는 작전으로 CIA는 마인드 컨트롤과 고문 실험을 했었다. 대부분의 실험은 피실험자 동의없이 행해졌으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실험용으로 이용된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행해졌다. 사용된 방법으로는 지각저하, 고립, 최면, 언어 학대, 성희롱, 전기충격, 혼란/뇌 손상/물집/마비를 유발하는 약물이나 물질 사용 등이 있었다.

- 뉴욕 타임즈 1999년 3월 10일 기사 중에서 -

"CIA는 149개의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각기 따로 했는데 25개는 무의식의 상대에게 행했다. 단편적인 정부 보고서와 법원 기록을 보면 적어도 1명이 사망했고 다수가 정신병을 얻거나 실험 뒤에 정신 손상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http://www.nytimes.com/1999/03/10/us/sidney-gottlieb-80-dies-took-bsd-to-cia.html>)

위의 요약은 작전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단편적인 정부 보고서'라는 문구에 실마리가 있지만 CIA 국장 Richard Helms는 1973년 작전 기록 전량 파기를 명령했다.

(<http://www.wired.com/2010/04/0413mk-ultraauthorized/>)

뉴욕 타임즈의 MKUltra에 관한 설명은 CIA 범위를 축소하는 것인데 이 신문은 기관의 거짓말을 그대로 신문에 옮겨온 역사가 있다. (http://www.carlberstein.com/magazine_cia_and_media.php)

실험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수십 개의 대학, 병원, 교도소, 제약회사에서 행해졌다. 이런 곳들을 통해 실험을 하도록 CIA는 위장 기관을 이용했는데 기관 최고 책임자들은 CIA의 개입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조지스토킹 같은 작전이 여러 민/관 기관이나 조직 관료들의 협조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이 작전은 1970년대 중반 미 상원의 처치 위원회 조사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이는 외국 수뇌 암살, 민간인 사찰,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미정부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잇따른 폭로에 대한 반응이었다.

Andrew Goliszek의 책 '과학이라는 이름으로'(In the Name of Science, 2003)를 보면 MKUltra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가 잘 나와 있다. 아래는 CIA에서 세뇌에 관한 연구를 하라고 자금 지원을 받는 정신과 의사 Ewen Cameron 이 행한 실험을 묘사한 것이다. (<http://www.salon.com/2004/01/08/goliszek/>)

"1957년 몬트리올에 있는 Allan Memorial Institute의 작은 방으로 어린 여자애가 실려왔는데 팔과 다리는 침대에 묶여 있었고 머리에는 전기경련요법 기계에 연결된 전극이 달려 있었다. 신호에 따라 스위치가 내려지면 안전 범위의 40배가 넘는 강한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 그러면 가냘픈 여자 아이의 몸이 뻗뻗하게 굳었다가 미친 듯한

경련을 일으키곤 했다. 이후 몇주간 이 아이는 하루 세번 “무늬 지우기”로 알려진 갖가지 충격요법을 받았다. 또다른 환자는 나이 많은 남자였는데 몇 달간 약에 취한 상태로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씩 테이프에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들어야했다. 이 실험과 전기 충격요법의 목적은 반복되는 메시지, 육체적 충격, 약물 복용 혹은 세가지 모두 혼합한 상태에서 한 인간의 인격이 파괴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아내는데 있었다.”

MKUltra의 부작용 – The Unabomber(University+Airplane+bomber)

1978년부터 1995년까지 폭탄 폭발로 3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다.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Theodore Kaczynski라는 수학자였는데 FBI에서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전 그를 유너바머라고 불렀다. 카진스키는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 CIA의 마인드컨트롤 실험 대상이었다.



2000년 6월 아틀란틱(the Atlantic)지는 카진스키의 폭력성을 실험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몇 구절을 인용하자면:

“정신과 의사 Sally Johnson은 카진스키가 분명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며.....”

“카진스키가 마인드 컨트롤의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하자 망상에 빠져들지 않았고. . . 대학과 정신병원은 인간을 의식 없는 기니피그를 다루듯 하는 실험의 공범들이었는데 환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다.”

“카진스키는 정의가 사회에 복수하라고 요구했다고 느꼈다”

<http://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00/06/harvard-and-the-making-of-the-unabomber/378239/>

MKUltra에 관한 책

MKUltra에 관한 가장 좋은 책은 전 국무성 외무부 관리였던 John D. Marks 가 쓴 ‘The Search for the “Manchurian Candidate”이다. 조사 전문 기자로 유명한 Seymour Hersh는 이 책을 보고 “훌륭한 수사 보고서이다. 미국 첩보에 관한 더러운 얘기 중 가장 잘 설명된 것이다.”라고 평했다.

책에서 CIA의 실험을 설명하는 일부를 보면

“병원을 올리는 계속되는 환자들의 비명도 카메론과 동료들이 하는 ‘무늬 지우기’ 작업을 방해하지 못했다.”
“Lauren G의 경우처럼 진정제 약효가 떨어지면 환자들은 도망쳤고 직원들은 잡으러 다녔다.”
등의 묘사가 있다.

MKUltra에 관해 칭송 받는 또 다른 책으로 Walter Bowart가 쓴 ‘Operation Mind Control’이 있다.
다음 링크에 무료 pdf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fightgangstalking.com/recommended-books/#walterbowart>

다음은 국회보고서이다.

http://www.nytimes.com/packages/pdf/national/13inmate_ProjectMKULTRA.pdf

2014년 10월 ABC 방송국에서 MKUltra에 관한 TV 미니시리즈 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http://www.avclub.com/article/abc-making-miniseries-about-mkultra-cia-program-re-210050>

새로운 처치위원회의 필요성



FBI, CIA, NSA가 처치위원회 조사 이후 자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은밀한 범죄를 멈추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 조사는 미국 정보기관과 경찰에 의한 극단적 권한 남용을 어느 정도 밝혔지만 그 기관들의 악랄한 경향을 단속할 수준의 개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악화되었다. 감시 장비는 훨씬 더 발전했고 감시 산업계는 어느때보다 커졌고 힘도 강해졌다. 그리고 국내비밀작전의 감사는 어느 때보다 축소되었다. NSA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 사용 같은 이유로 많은 개인, 출판업계, 단체는 처치위원회 같은 수사를 다시금 요구한다. 2008년 7월 Salon 기사가 그 예이다.

http://www.salon.com/2008/07/23/new_churchcomm/ 처치위원회 같은 수사 요구도 잘 알며 세간의 이목을 끈 국회수사에도 관여한 어떤 민주당 상임고문이 말한다.

Frank Church 상원의원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고문, 탈주범 인도, 비밀 교도소, 무기한 도청에 대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도 이런데 우리가 모를 경우는 어떻게는가?”

국내 불법사찰 범위를 수사하자는 요구들은 아래에 있다.

Forbes 2012/09/20

<http://www.forbes.com/sites/jodywestby/2012/09/20/the-sheep-stop-here-another-church-committee-or-full-review-of-privacy-laws-needed/>

CounterPunch 2013/01/21

<http://www.counterpunch.org/2013/01/21/the-return-of-cointelpro/>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2013/06/07

<https://www.eff.org/deeplinks/2013/06/response-nsa-we-need-new-church-commission-and-we-need-it-now>

New Republic 2013/06/11

(<http://www.newrepublic.com/article/113433/nsa-scandalrequires-new-church-committee>)

Daniel Ellsberg July 1, 2013/07/01

(<http://www.thedailybeast.com/articles/2013/07/01/daniel-ellsberg-issues-call-for-a-new-church-committee-to-probe-nsa.html>)

The Atlantic 2013/08

(<http://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3/08/lawbreaking-at-the-nsa-bring-on-a-new-church-committee/278750/>)

truthout 2014/02/25

(<http://www.truth-out.org/opinion/item/22103-is-it-time-for-a-newchurch-committee>)

The Nation 2014/03/12

(<http://www.thenation.com/article/178813/why-we-need-new-church-committee-fix-our-broken-intelligence-system>)

Members of the original Church Committee 2014/03/17

(<https://www.eff.org/deeplinks/2014/03/ex-church-committee-staffers-call-congress-create-modern-day-church-committee>)

U.S. Senator Rand Paul (R-Kentucky) 2014/03/19

(<http://thelibertarianrepublic.com/randpaul-calls-new-church-committee-stop-surveillance-video/#axzz3Aoa9eJDJ>)

Michael German (former FBI agent) 2014/12/11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blue-line3.jpg>)

3. Red Squads –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 (LEIUs)

Red Squads – 현재는 경찰 첩보대(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LEIUs)로 불리는 지역 경찰청의 한 부서였다(주로 도시 경찰). 19세기부터 범죄조직 잠입 외에 사상 불온단체 잠입에도 관여해 왔다.

헤이마켓 폭동

Red Squad 관련 사건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1886년 시카고 경찰과 사립탐정 기관 소속 첩보요원들이 노동운동을 억압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첩자 노릇을 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결국 헤이마켓 광장의 노동집회가 폭동으로 이어졌다. (http://en.wikipedia.org/wiki/Haymarket_affair) 경찰 일곱이 죽고 노동자 최소 4명이 사망하였고 70명이 부상당했으며(이중 60이 경찰) 재판 후 8명의 노동 운동가가 폭행으로 기소되었다. 8명 중 4명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1명은 자살했으며 3명은 징역형에 처해졌다. 경찰이 그 전날 2명의 노동자를 살해하면서 일어난 이 폭동으로 세계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이 제정되었다. 이 사건은 첫 공식 Red Squad 창설로 이어졌다.

Harper's Magazine – 1886년 5월

The two images below were published in *Harper's* shortly after the riot.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haymarket-riot-harpers.jpg>)

The Haymarket Riot – *Harper's Weekly*, May 15, 1886

돈 받은 자객들이 경찰?

헤이마켓 폭동에서 어떻게 경찰 일꾼이 죽고 시카고 경찰을 대신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던 폭력배 60명이 부상을 당했는지 정확한 평가를 할 만한 역사적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도 조직스토킹 가해자들이 만약 부상당하거나 죽는다면 이들도 경찰 사상자로 통계 내야 하는 것인지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Harper's Magazine – 2015년 5월

Red Squads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간 지 129년이 지난 지금 하퍼스는 아직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깨어진 창문 너머'란 기사는 현재 지역 경찰에 의한 사찰을 다루면서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도 돌이켜본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beyond-the-broken-window.pdf>

“1886년 헤이마켓 광장의 폭격은 시카고 Red Squad 창설로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경찰은 급진당원과 노동운동 관련자들 검거에 나섰다.”

기사는 다른 도시에서도 Red Squads 창설이 이어졌는데 이 비밀 경찰 폭력배들을 뿌리뽑으려는 시도는 거의 수포로 돌아갔다고 전한다. 로스엔젤레스 경찰에 의한 사찰은 20세기 초 Red Squad 활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력 무역회사들은 노동계급의 노조결성을 와해할 목적으로 경찰의 도청, 잠복 요원 잠입, 사찰을 옹호하게 된다. 1차대전 중 LA 경찰은 이데올로기 전복, 급진주의자, 사상불온자나 단체의 사냥 같은 업무까지 맡아보게 된다. LA Red Squads의 뒤를 이은 Public Disorder Intelligence Division은 60년대 말까지 50년동안 합법적 정치 반대세력-세계산업 노동자조합원, 빈곤퇴치 단체, 반전시위단체-에 대한 200만 개의 비밀 파일을 수집했다. 1970년 P.D.I.D는 UCLA 학생과 교수 중에 음모 운동 혐의가 있는 자들을 사찰하고 경찰 앞잡이들은 운동권 학생들 사이에 잠입했다. 이들이 작성한 목록에는 정치단체, 기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기부단체 등도 있었으며 용의자들을 “논객,” “선동가,” “반체제,” “경찰혐오,” ‘데모참여’ 등으로 분류해 놓았었다. 관련 서류들은 시의회 의원과 시장이 보관하고 있었다. 1976년 이 작전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경찰청을 감시하는 시민 감사단은 사찰 기록 파기를 명했는데 1983년 대배심에서는 경찰관들이 파일 박스를 계속 보관해왔으며 P.D.I.D는 200개 이상 단체(경찰 학대반대 단체, 경찰억압 시민 위원회 등)의 보고서를 작성해 온 것을 발견했다. 앞의 두 단체는 소송 중이었는데 그 이듬해 \$180만 달러 합의금을 받았고 LAPD 사찰업무 축소 동의 판결을 받아냈다. 대배심 폭로 후 P.D.I.D는 해체되었지만 바로 대테러부대로 재편성되었다.”

“특권층의 보호자들”

Red Squads에 대해 잘 조사한 책으로 인권변호사 Frank Donner가 쓴 ‘특권층의 보호자들 (Protectors of Privilege, 1990)’이 있다. 이 책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와 재계에서 red squads를 기업용병과 정치폭력배로 이용해 온 것을 잘 보여준다. 대부분 노조, 좌익, 다른 반대세력들이 대상이었다. 12페이지에 보면 1880년대 시카고에서 경찰과 민간정보계약 직원들의 역할이 나와있다. “시카고 재계는 노조 불온 세력을 억압하는 경찰의 진압 방법에 보내는 지원을 감추지 않았다. 사립탐정들처럼 시카고 경찰은 기업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http://www.amazon.com/Protectors-Privilege-Squads-Repression-America/dp/0520080351>

LA 타임즈는 Donner의 책 평론에서 경찰이 왜 red squads에 참여하기 원하는지를 설명한다.

“경찰은 이 제멋대로의 엘리트 조직을 사랑한다. 표면적으로는 테러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자유 진보 정치단체나 인권단체에 잠입, 억압하는 일을 해왔다. 경찰의 단조로운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제임스본드 같은 역할도 해 보고 ... red squads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데 경찰서장에게도 직접 보고하고, 정상 절차 외의 일도 하고...”

http://articles.latimes.com/1991-01-20/books/bk-1017_1_red-squad

표면적으로 Red Squads의 업무는 대중을 범죄와 테러단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테러방지보다 조장을 더 많이 해왔다.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Red Squads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과거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런 경찰 부서의 유산을 잘 알고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1889년 헤이마켓 광장에 경찰 기념 동상이 세워졌다. 헤이마켓 사건 41주년이 되던 1927년, 전차 운전수가(아마 고의로) 동상을 들이 받아버렸다. 동상은 바로 복구가 되었고 곧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1969년 이번에는 그 동상을 누가 폭탄으로 폭파시켰는데 1970년에 또 다시 복구되었다. 나중에 누가 폭탄으로 또 날려버린다. 기업의 암살단으로 일하는 경찰을 모두가 응원하지는 않는 것이다. 지금은 동상이 시카고 경찰청 안에 세워져 있는 상태다. (<http://www.haymarketdocumentary.com/>)

Association of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

“경찰첩보대(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 -LEIU)는 “Red Squad.”의 현대적 용어이다.

경찰첩보대(LEIU) 연합의 기원

FBI가 방첩작전 COINTELPRO 를 개시하기 시작한 같은 해인 1956년 26개의 Red Squads가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을 결성했는데 이때부터 경찰첩보대(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조직 이름을 “Association of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으로 바꾸었는데 기존의 약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범죄정보 공유 체계도 이루고 조직원 훈련과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http://leiu.org/>)

경찰첩보대(LEIUs)와 조직스토킹과의 연관

조직스토킹은 하나의 특수한 작전이 아니라 방첩 작전의 일환이다. 신문기사, 책, 일화, 정부 보고서들은 지역, 주, 연방경찰과 정보기관, 민간 보안첩보회사가 이용하는 전략임을 드러낸다. 많은 보고서들은 조직스토킹이 때로 기업, 정치, 개인적 복수차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대다수의 조직스토킹이 정확히 어떻게 시행되든지 상관없이, 경찰첩보대 (LEIUs)직원들이 이 작전에 참여하거나 감독은 안하더라도 조직스토킹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주의할 점은 LEIU가 준정부단체라는 것이다. 이 조직은 연방 재정지원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망을 구축 해놓고 조직원간 범죄정보를 공유한다. 세금면제 사조직이라서 감사도 받지않는다.

“비밀경찰망”

LEIU는 경찰조직 외부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인 대다수는 존재조차 모른다. LEIU에 정통한 민간자유단체들은 극비 정보취급 같은 활동을 하면서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그 조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다.

언론에는 1970년대부터 이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풀리처 상 수상자이며 CIA에서 분석가로 활동했고 미국 첩보 역사에 일가견 있는 소설가이자 역사학자인 George O'Toole이 LEIU 에 대한 기사를 썼다. 1976년 12월 펜트하우스의 “America’s Secret Police Network.”이란 기사인데 주목할 만한 저널리즘의 모습이다. 출판 이전 5-6년간 미국인들은 정부의 부정한 사건들(워터게이트, Cointelpro, the Pentagon Papers, MK Ultra, CIA의 국내감시작전인 Operation CHAOS 등)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LEIU의 존재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언론과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은 LEIU의 연계망에 관해 O'Toole이 쓴 기사 일부이다. 조직스토킹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경종을 울릴 것이다.

“이 조직은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자료 교환, 상반되는 기준으로 수사까지 행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에 속한 여러 곳의 경찰청이 최근 일반 시민들을 불법도청, 무단침입, 사찰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LEIU는 실질적으로

거대한 민간 국내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극도의 은밀함

O'Toole은 LEIU의 지독한 은밀함에 대해 강조한다. 경찰들도 이 첩보대의 성격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발티모어의 경험 많은 경관들도 수사분과(Inspectional Services Division)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사실 1974년 파업을 한 발티모어 경찰들도 수사 대상이었다. 잠복 경찰들은 피켓을 들고 경찰서를 나선 경찰들을 사진기에 담았다.”

“시카고에서도 Red Squad의 활동은 다른 경찰들에게는 비밀이었다. 신병들은 다른 동료들이 나중에 알아채지 못하게 경찰학교 훈련도 빠졌다.”

LEIU의 범위가 정부 수사와 대배심원들에 의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 검사, 기자, 증인들과 자기 조직원까지 단속을 하려했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시카고에서 경찰을 수사하던 정부 검사는 전화도청을 당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경찰에 비판적인 발티모어 신문기자는 사찰과 다른 학대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청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갔을 때 타이어 바람이 빠진 것을 3번이나 발견했으며... Red Squad의 대배심 수사가 진행될 동안 많은 경찰들은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다. “정부 검사를 만났다는 것을 안다. 멀쩡히 살고 싶으면 대배심한테 말하지 않는게 좋을 것이다.” O'Toole은 LEIU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서류를 불살랐다고 했다.

민간 첩자 이용

슈타지의 작전에서도 그랬지만 조직스토킹과 LEIU 작전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민간 첩자의 이용을 들 수 있다. 경찰 정보과의 시각에서, 가장 쓸모 있는 민간인은 경찰처럼 헌법을 경멸하는 자들이다:

시카고의 한 할머니가 빨갱이전담반에게서 한달에 25불을 받고 교회와 사회단체에 잠입을 했다고 시카고 데일리 뉴스 기자가 전했다. “난 경찰 첩보원이여. 자랑스러운 일이지. 하나님과 국가가 제일 우선이거든, 그래서 경찰 첩보 일을 하는거. 빨갱이들이 우릴 집어 삼키려는데 니네들은 헌법 권리나 따진다고 바쁘잖여”

불법 감시장비

George O'Toole이 밝힌 LEIU의 수법으로 대부분 조직스토킹의 기본이 되기도 하는데 불법 감시 장비 사용을 들 수 있다.

“LEIU 첩보전담반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불법도청으로 전화회사의 협조에 항상 뒤따라 왔다. 전직 발티모어 풍기단속반 경찰이 메릴랜드 상원조사위원회에 한 말에 따르면 정보전담반은 정기적으로 체사피크나 포토맥 통신사에서 일하는 전직 경찰의 도움으로 불법 전화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면 시카고 경찰정보과 경관이 일리노이주 벨 통신사 직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불법도청에 협조하라고 강요한 것도 나와있다.

고객 정보 누설하는 기업

불법도청에 협조한 통신사 얘기는 정치공작에 관여한 기업의 오랜 역사 중 한 예에 불과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해진 칼 번스타인(Carl Bernstein) 기사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CBS 뉴스가 CIA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http://www.carlbernstein.com/magazine_cia_and_media.php) 이런 비윤리적 공모는 오늘날도 계속된다. 2013년에 스노든이 폭로한 NSA 문서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 계획인 '프리즘'에 미국 기업들도 가담했다는 것이 나온다.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3/20/nsa-prism-tech-companies_n_4999378.html) LEIU는 고객의 권리 침해를 전혀 아랑곳 않는 기업들을 잘 이용해왔다. "경찰 교본에 첩보 경찰들은 공기업, 항공사, 은행, 채권회사, 신문사, 사설탐정업체, 상업통신소와의 관계를 잘 가져보라고 충고한다. 연방 사생활보호 연구위원회(Federal 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웨라톤 호텔 같은 기업이 경찰들의 구두 요구에 법원 명령도 없이 고객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개인적 보복을 위한 무기 LEIU

LEIU는 본질적으로 권한남용을 계획하고 조직되었다: 정부 재정지원, 경찰의 권한, 전국적으로 수집한 민간인 비밀 파일로 무장한 비밀사조직.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제외되면서 시민단의 감시를 받을 필요도 없다.

O'Toole은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서류를 어떻게 열람하는지 말해준다.

"LEIU요원이라면 아무나 간단한 서류 작성과 지역 부서장의 허가만으로도 개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조직은 베일에 가려 있어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첨단 감시장비 사용 이외에 조직체계와 절차에도 지난 수십년 간 분명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 조직의 근본 성격은 부패한 경찰들에 의한 법 밖에서의 보복수행이다.

"LEIU를 조직하며 민병대의 근간이기도 한 무력경찰의 뼈대를 세웠다."

Connections between the LEIU, FBI, U.S. Military, & CIA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은 다른 기관에 일종의 경쟁의식이 있다. 예를 들어 군에 소속된 기관들은 국가안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일하면서도 어느 정도 각각의 의제를 따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FBI도 다른 기관과 경쟁의식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로의 위세와 영향을 극대화한 것처럼 보이기 원한다. 이런 영역 다툼은 경찰 조직에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FBI와 경찰사이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 O'Toole의 설명에 따르면 LEIU 설립동기가 FBI에서 독립한 경찰내 국내첩보공유를 위함 이라고 한다. 경찰과 정보기관은 이제 전국 데이터 연합센터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http://www.businessinsider.com/heres-what-it-looks-like-when-the-dhs-enters-you-into-one-of-itscreepy-data-centers-2012-11>)

FBI가 지역 경찰이 전국적으로 하는 조직스토킹을 모르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FBI를 보면 이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문 기사를 보면 FBI는 예전 Cointelpro 시대 때에 하다가 잡힌 수법을 지금도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에게도 써먹고 있다. 더 이상 내부고발자의 폭로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다양한 지역/연방기관, 민간업체가 공모하여 미국판 슈타지로 방첩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정확히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에 의하면 NSA 문서는 NSA와 FBI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여러 장의 슬라이드는 FBI가 사실 국내에서 NSA가 하는 더러운 일에 앞장서는 사냥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http://www.eff.org/deeplinks/2014/05/how-nsa-transforming-law-enforcement>)

LEIU의 미군 정보 기관과의 관계

조지스토크의 얘기들을 보면 전자장비를 사용한 감시, 무단침입, 이상한 무기들과 관계된 보고가 많다.

O'Toole의 기사는 어떻게 이런 전략과 장비를 경찰 정보과에서 사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근래 들어 국민들을 감시해온 경향을 보여온 미군 정보기관은 여러 도시 지역경찰들과 좋은 사이 이상이다. 군은 메릴랜드에 있는 Fort Holabird 첩보학교에서 발티모어 경찰정보과 직원들에게 전자감청장비 사용과 은밀한 침입 훈련을 시켰고 답례로 발티모어 경찰은 많은 첩보 자료를 군에 이송했다. 시카고 Red squads는 60~70년대 육군의 113 군정보그룹과 매일 연락을 취했으며 군에 첩보 자료를 이송하고 다양한 기술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IA의 국내 민간인 사찰 개입

CIA도 국내 민간인 사찰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Cointelpro 작전과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후 1973년 Operation CHAOS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1974년 12월 뉴욕타임즈 Seymour Hersh 기자가 CIA의 정치적 관점에 따른 대규모 민간인 사찰 작전인 CHAOS의 실체를 폭로했다.

(<http://s3.documentcloud.org/documents/238963/huge-c-i-a-operation-reported-in-u-s-against.pdf>) 우연하게도

워터게이트 사건과도 CIA는 연관이 있었다. 주범 중 하나인 Howard Hunt는 CIA 전직 관료였고 Eugenio R.

Martinez는 그 당시 CIA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고 또 다른 공범 Alfred C. Baldwin III는 전직 FBI 요원이었다.

(<http://www.foxnews.com/opinion/2012/06/15/watergate-40-years-later-questions-endure-about-cia-role-in-break-in/>)

적어도 워터게이트 사건은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 임원들이 불법적인 일에 전직 첩보원과 전직 경찰을 용병처럼 부러먹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CIA가 국내 사찰에 개입한다는 미국 자유인권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주장

CIA가 내국인 사찰 업무를 전개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은 O'Toole 만이 아니었다. 지금은 그런 의혹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한다. 다음 ACLU에서 주장하는 불법 사찰을 하는 정보기관에 대한 글에서 발췌한 문장을 보자.

(<https://www.aclu.org/spy-files/more-about-intelligence-agencies-ciadni-spying>)

CIA 작전을 둘러싼 극도의 기밀성 때문에 국내 작전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1947년 CIA 헌장에는 내국인 사찰을 금지하고 있다. . . . 그러나 법도 CIA 내국인 사찰을 막지 못했다. 1960년대 평화시위 관련 내국인 7,000명을 사찰하는 Chaos 작전을 감행했는데 이것은 해외첩보작전만 관여해야 한다는 법령에 확실히 저촉되는 일이었다. 첩보기관에서 9/11 테러를 막지 못한 것이 드러나자 정책 입안자들은 정보기관과 경찰 간의 정보공유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CIA도 국내 작전에 자연스럽게 개입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는 CIA는 FBI의 합동테러대책본부 일원이다. 애국자법은 FBI가 대배심 수사에서 수집한 정보와 CIA와 경찰이 행한 도청자료를 공유하던 것을 금지하던 규제를 완화시켰다. CIA가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 금융 기록을 조회하려고 국가안보서신까지 이용해 먹은 것으로 ACLU 소송을 통해 드러났다. . . . CIA가 권한 남용을 해 온 역사와 책임감 없는 작전수행을 계속 해 온 점은 개인 자유 옹호론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NYPD가 북동쪽의 무고한 이슬람 동네를 겨냥한 작전을 수행할 때 CIA도 개입했다는 사실은 CIA가 다시 한번 자국민을 용의자로 대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CIA와 LEIU와의 관계

George O'Toole은 LEIU 자체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사찰을 감행하는 기관인데 CIA같은 연방기관에 의해 이용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었다. 그의 기사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CIA본부

위치) 경찰청과 CIA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밝힌다. (페어팩스 경찰청은 LEIU 회원이다.)

“CIA와 페어팩스 경찰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CIA는 경찰들에게 전자감시장비, 해정술(자물쇠따기), 금고털이, 잠입, 폭발물에 관한 교육을 시켰고 경찰의 여러 수사에 장비와 인력까지도 공급해줬다.”

O'Toole은 1971년 2월 페어팩스의 경찰관 여럿과 CIA요원이 무단 침입한 사건에 대한 상세 묘사도 한다. 무단침입은 경찰청장이 주도했다.

자국민을 상대로 한 여러 정보기관과 기업의 범죄 공모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LEIU는 정보기관과, 경찰청, 채권회사, 사설탐정업체, 상업흥신소,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업체를 이어주는 인맥 조직 중 일부이다.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경찰 권한의 집합체이다.”

O'Toole의 전체기사는 다음 링크에 있다: America's Secret Police Network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americas-secret-police-network1.pdf>)

CIA와 LEIU의 관계에 대해 더욱 궁금한 점이 있다면

(<http://www.leiuhomepage.org/training/event/speaker/2014/bob-dougherty>)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의 LEIU 기사

1978년 11월25일 San Francisco Chronicle은 '대중에게 폭로: 미국 경찰의 큰 문제' 란 기사를 내보냈다. LEIU의 비평가가 첩보의 오용에 관해 경고를 한 기사이다.

FBI의 Cointelpro나 CIA의 CHAOS 작전에서 그랬듯이 정보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할 때마다 권한남용 가능성은 상당히 크게 존재한다. 특히 사적으로 활동할 때는 더욱 그렇다. 라스베가스 경찰청과 일을 하던 첩보전문가가 LEIU의 데이터베이스를 폭력배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FBI가 알아내고 “앞으로 LEIU와 일을 할 때 모든 요원 주의 요망” 이라는 비망록을 내보냈다고 크로니클지는 보도했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leaks-to-the-mob.pdf>)

뉴욕타임즈의 LEIU 기사

1979년 4월에 발간된 뉴욕 타임즈에서는 미국 웨이커 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에서 3년 반 동안 LEIU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다루었다.

(<http://query.nytimes.com/mem/archivefree/pdf?res=9D00E5DA1638E432A25754C1A9629C946890D6CF>) LEIU를

'인맥으로 이루어진 조직망'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사 일부를 보면

“경찰은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들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해왔다”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법의 절차, 사생활 보호 같은 헌법적 권리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해왔다”

2003년 6월 시애틀에서 LEIU를 향한 데모

'범죄첩보와 테러와의 전쟁' 이란 주제로 시애틀 외곽 Red Lion Inn 에서 6월 2일 LEIU, FBI와 다른 경찰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약 400명의 시민이 모여 애국자법의 국내사찰방침과 시애틀 경찰청의 LEIU 참여를 반대하기 위해 데모를 했는데 12명 가량이 구속되었고 경찰은 데모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후추가스과 고무총을 사용했다.

Seattle Post-Intelligencer의 기사에서 데모 참가자들은 LEIU를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밀 정치경찰”이라고 일컬었다.

<http://www.seattlepi.com/news/article/Seattle-protest-turns-ugly-1116189.php>

4. 슈타지(The Stasi)



동독 국가안보부의 휘장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가 방첩 작전에 쓰던 수법은 현재 조직스토킹에 쓰이고 있다. 개인에게 가해지는 이 심리전법을 일컬어 “Zersetzung”이라고 했는데 번역하자면 ‘분해’ ‘침식’ 이라는 뜻이다. 슈타지는 이 수법을 ‘서서히 은밀히 손상시키거나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 Zersetzung은 명사이고 zersetzen은 동사이다. 슈타지에서 사용한 방법으로는 은밀한 감시와 공개적인 감시, 명예훼손, 허위선전, 심리전법 등이 있었는데 미국의 방첩작전에서 쓰인 방법들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슈타지의 ‘침식법’은 FBI의 COINTELPRO보다는 현재의 조직스토킹 수법과 더 연관이 깊어 보인다.

COINTELPRO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에드가 후버가 살아있을 때 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정교한 감시체계가 갖추어 졌다. 슈타지가 쓰던 기술인 신호 가로채기는 현재의 감시기술에 비하면 원시적인 수준이다. 슈타지는 동독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민간첩보원을 이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2008년 Wired 1월호 기사

- 독일민주공화국 공산당의 집행무기인 슈타지는 1989년 91,000명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1천6백4십만명의 인구를 감시했다. 이는 히틀러 때 나치독일 1/4에 해당하는 국민을 게슈타포가 3배나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감시한 수치이다. 게슈타포의 정치수용소나 소련 KGB의 즉결처분과 달리 슈타지는 교활함을 추구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역사학자 Konrad Jarausch는 “사회전역에 침투하는 비공식 조력자를 뽑고 국민들이 협조하도록 장려금도 지급했다”고 말한다. “사람들을 덜 두들겨 패는 대신에 심리적으로 유린당하게 했다. 무엇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신고문이 더 해롭다.” 이 교묘한 술책은 반대세력들을 진압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방어적이고 자기 정당화하는 편집증도 확산시켰다. -

http://archive.wired.com/politics/security/magazine/16-02/ff_stasi?currentPage=all

Zersetzung의 정신적 고문이 다듬어진 심문



지금은 박물관이 된 베를린에 있는 호헨쇼엔하우젠 교도소 독방이다.

위키피디아에서 슈타지의 전술 전략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조직스토킹 방법과 거의 동일하다.

1970년대 슈타지는 그 당시까지 행해지던 구속과 고문 같은 핍박이 너무 노골적이고 원색적이라고 판단했다. **정신적 학대는 인식도 힘들고 범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거센 저항도 줄어 들 것을 알았다.** Zersetzung은 적으로 판단된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로이탈'을 하거나 '정전' 상태가 되도록 고안되었다. Zersetzung에 사용된 수법은 대체로 피해자와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방법이다. 주로 가택침입을 해서 물건을 어질러 놓고, 가구를 옮기고, 알람시계 시간을 바꿔 놓거나, 벽에 걸린 그림을 없애거나, 마시는 차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등 심리적인 가해를 많이 한다. 소유물 파괴, 자동차 손상, 엉뚱한 의학치료, 합성된 사진이나 문서를 가족에게 배달하기, 비난, 분노유발, 신경전, 정신분열, 도청, 감청, 이상한 전화, 불필요한 배달, 아내에게 성인 기구 배달 등도 시행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슈타지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자살을 감행한다. Zersetzung의 가해 방법이 좋은 이유는 행위의 애매함 때문에 언제든지 부인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동독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기술은 러시아연방보안원(Russian Federal Security Service-FSB)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첩보기관에서도 도입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http://salmonnationeuroblog.wordpress.com/inside-east-berlins-secret-stasi-prison/\)](http://salmonnationeuroblog.wordpress.com/inside-east-berlins-secret-stasi-prison/)

슈타지가 사용한 에너지 무기

슈타지가 행한 방첩작전의 전략은 현재 미국에서 행해지는 방첩작전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 조직스토킹과 함께 나오는 에너지 무기 사용도 동독 비밀경찰 뉴스 기사를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1999년 5월 BBC 뉴스는 슈타지의 에너지 무기 사용 가능성을 보도했다. 구 동독에서 3명의 정치 반대세력이 몇 개월간에 걸쳐 희귀 백혈병으로 모두 죽었는데 지인들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의심이 솟구친다고 했다. Juergen Fuchs 기자는 그 달에 그가 죽기 전 동독 비밀경찰에 의해 높은 수치의 방사능에 의도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암 말기가 유발되었다고 했다. (<http://news.bbc.co.uk/2/hi/europe/352461.stm>)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 시민위원회는 전국 교도소부터 장악했다. 이들은 교도소 병원이 아닌 교도소 방에서 강력한 X-ray 장비가 발견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 . . Thomas Auerbach는 슈타지를 수사하는 연구과학자로 일을 했는데 예전에 독살이나 상해를 목적으로 X-ray를 이용한 여러가지 실험이 교도소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문서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죄수들에게 암을 유발하도록 엑스레이 대신에 방사능 동위원소가 사용되었다고 했다.

슈타지에 관한 책과 동영상

Zersetzung der Seele (“영혼의 분해”)

Subtitle: Psychologie und Psychiatrie im Dienste der Stasi (“psychology and psyhiatry in the service of the Stasi”) 슈타지의 정신적 고문 방법에 관한 이 책은 1995년 출간되었다. 저자인 클라우스 베크(Klaus Behnke)와 위르겐 폭스(Jürgen Fuchs)는 1977년 동독에서 추방되기 전까지 심리학을 연구했었다.

불행히도 아직 번역본은 없다.

2002년 독일어로 된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다.

(<http://www.germanfilms.de/filmarchive/browse-archive/view/detail/query/z/film/decomposition-of-the-soul-the/>)

Das Leben der Anderen (“다른 사람들의 삶”)

슈타지에 관한 이 영화는 2006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 상을 수상했다.

뉴욕 타임지 논평 (<http://www.nytimes.com/movies/movie/350173/The-Lives-of-Others/overview>)

슈타지 피해자가 묘사하는 악랄한 기관

독일 역사학자로 금지 도서를 반입했다는 이유로 슈타지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후베르투스 크나베 (Hubertus Knabe)가 2014년 6월 베를린에서 연설을 하는데 Zersetzung에 관해 설명한다.

(https://www.ted.com/talks/hubertus_knabe_the_dark_secrets_of_a_surveillance_state/transcript)

동영상 소개 글: 동독 비밀기관 슈타지의 깊고 어두운 여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슈타지는 수십년 간 감시체계와 심리적 압박을 통해 국가를 통제하는 주모자 역할을 했었다. Hubertus Knabe는 슈타지를 연구했고 그들에 의해 감시 당해 왔다. 감시공화국의 몰락을 자세히 묘사하며 어떻게 이웃이 이웃을 그리 쉽게도 배신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슈타지 수장



1957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에릭 밀케(Erich Mielke)가 수장을 역임했다. (http://en.wikipedia.org/wiki/Erich_Mielke). FBI 국장 J. Edgar Hoover의 공산주의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85,000명의 전임 첩보원과 170,000명의 끄나풀들을 통솔했다. (<http://www.courthousenews.com/2014/07/15/69493.htm>)

10. 시행국가



역사적 자료나 근래 보도는 조직스토킹이 많은 국가의 정보기관과 경찰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정보기관에서도 동독에서 쓰던 수법을 들여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기자의 보도가 있었다. 2004년 10/10과 2006년 5/31일 보도자료를 보면 북아일랜드 및 캐나다의 정보기관과 경찰에서 조직스토킹 수법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방국가에서 이 수법을 사용한다는 증거로 네덜란드 왕실 배후의 조직스토킹을 당한 자가 직접 출판한 책이 있다. (<http://www.amazon.com/Orange-Bruises-Maud-Oortwijn/dp/1291667210>)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세계 각국의 주소와 내게 이메일을 보내는 여러 국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심증이 더욱 굳어진다. 피해자가 미국 국내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경찰과 정보기관이 국제공조를 하는 상황에서 캐나다로 가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스토킹을 당하는 미국인으로 다른 나라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국과 특별한 공조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음의 4개국을 피하기 바란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전직 국방부 첩보 분석가였으며 CIA 비밀 첩보 훈련을 받은 Lynnae Williams양은 FBI에 의해 조직스토킹을 당했는데 스페인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고 한다. (<http://ciacorrupt.blogspot.com/>) 미국 첩보업계에서 일하는 범죄자와 매국노들과 탐욕스런 업자들에게는 안된 일 이지만 윌리엄스 양은 정보기관들이 다중 아이디를 사용하여 소셜미디어를 감시하고 거짓 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사실을 폭로했다.

(http://www.liveleak.com/view?i=6f2_1355313666) 나중에 NSA의 에드워드 스노든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지만 정보기관 민간계약업자들은 다중 아이디를 사용하여 정성껏 만든 거짓 정보와 뉴스를 인터넷에 유포시켜왔다. NSA와 영국의 자매기관 GCHQ도 같은 방법으로 협력하여 허위정보를 유포시켜왔다. (http://wiki.echelon2.org/wiki/Persona_Development)

(<https://firstlook.org/theintercept/2014/02/24/jtrig-manipulation/>)

11. 수사, 감시, 가해 방법

수사

당연한 얘기지만 철저한 수사가 선행된다. 방첩활동에서 수사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행해진다.

(1) 수집된 정보는 나중에 알맞은 감시와 가해 전략을 짜는데 이용된다. 어떤 경우 그 사람의 유대관계와 능력이 반격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판명 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의도치 않게 학대행위가 노출될 경우 '수사'중이었다는 공식 문서를 변명거리로 내세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연한 스토킹이 노출되었다면 은밀히 감시 중이었다고 설명한다)

(3) 경찰과 정보요원은 경과보고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거동수상자에 대한 수사 진행을 했다는 문서가 필요하다.

(4) 가해행위는 표면적으로 수사로 보이는 행위와 교묘히 결합될 수 있다. 공연한 스토킹이 그 예로 FBI가 여배우인 시버그를 상대로 타도 캠페인을 벌인 것 등이다(수 년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전략으로 명예훼손이 있다. 수사는 법적인 책임에서 지켜줄 방탄복을 입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하는 것과 같다. 피해자 주변인을 탐문해 나가면서 수사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평판과 인간관계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주변인을 상대로 정보 습득을 하는 것은 잠복수사의 과정이고 요원들은 이것을 "유도" 라고 하는데 FBI의 자세한 '유도'전략 전술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fbi-elicitation-tactics.pdf>

감시

"감시는 권력과 동등하다.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를 갖은 방법으로 통제,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시 공화국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자유에 위협이 되는 한 이유이다."

- Glenn Greenwald

수사와 마찬가지로 감시도 세계각국의 사설탐정, 정보요원, 경찰에 의해 쓰이는 조직스토킹의 한 전략이다. 무

단침입, 전자장비 감시(전화 도청, 해킹, 감청 도구, 감시 카메라, 차량 GPS 추적기 등)도 공범자들에 의한 직접적 감시와 함께 이용된다. 조직스토킹에 가담하는 대부분은 기관 소속이든 민간 소속이든 정보 그나폴이든 보수를 받는다. 어떤 경우는 자원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FBI의 불법 방첩작전 Cointelpro가 폭로되었을 때 내부 문건에 의하면 필라델피아 Swarthmore 대학의 흑인 인권운동가들을 사찰하는데 경찰서장, 집배원, 전화 교환수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나와있다.

학대 전략 (a.k.a.-also known as “파멸”)

방첩 작전에서 ‘파멸’이나 ‘무력화’는 적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스토커들은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계속되는 흥분 상태나 극도의 경계태세로 내몰아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한다. 이러면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토커의 고객에게 위협이 되는 자세를 취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보기관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경찰과 정보 공공/민간부문 고용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거대한 민간첩보업계에서 민간과 정부의 구분은 때때로 무의미하다. 이것은 조직스토킹을 하는 또다른 이유다. 가해자들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이다. 스토킹의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들에게 정확히 복수를 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조직 관련자에 의해 법 밖에서 스토킹의 형식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 끊임없는 감시는 사람을 서서히 파멸에 이르게 한다. 자신이 계속 감시를 받고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스토킹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에 제재를 받게 되고 학대에 대항하거나 감시를 피하려는 노력도 모두 다 허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게다가 불법사찰을 당하면서 개인 사생활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정신적 트라우마에도 시달린다. 학대는 육체적 상해를 가하기 보다 심리적으로 괴롭고 화나고 좌절하게 할 의도로 행해진다. 학대는 조직스토킹의 누적된 심리효과를 한 번에 나타내지는 않는다. 명예훼손, 욕설, 소음, 낯선 사람에 의한 위협, 계속되는 감시를 수년간 계속 당하다 보면 정신적 고문, 사회적 고립,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누군가는 ‘서서히 죽이기’라고 표현했는데 가해자가 만들어 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표현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정신적 고문 방법의 역사적 기원

아래 나온 심리전법의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중 적을 괴롭히기 위해 소음을 사용한 방법은 문명시대 초기에도 사용되었다.(ex 구약의 여리고 성 함락) 소음은 미군심리전에서도 사용되는데 자세한 방법은 기밀이다. (<http://www.spin.com/articles/music-torture-war-loud/>)

조직스토킹의 주요 수법은 관타나모 테러리스트 용의자에게도 쓰였는데 군에서 심문 방법으로도 사용한다.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미군 포로를 심문할 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한 몇 가지 개념은 사회학자 Albert D. Biderman에 의해 1957년 신문 기사로 작성되기도 했다. Biderman이 소개한 방법에는 고립, 시각의 독점(현재의 곤경에만 주의 집중시키기), 불면, 협박, 무력과시(저항의 무용함 암시) 모욕, 조롱, 사생활 박탈 등이 있었다.

(<http://www.nytimes.com/2008/07/02/us/02detain.html?pagewanted=all&r=0>)

Biderman의 강제심문 도표는 다음 보고서 48페이지에 있다 (<http://cryptome.org/stoa-atpc.htm>)

증거 불충분을 위해 선택된 전략

조직스토킹은 객관적 증거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게 만든 수법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지문 하나 안남기고 사람을 죽이는 개념이다. 첩보수집과 경찰활동은 본래 범죄를 입증하기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조직스토킹은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만한 방법들을 갈고 다듬어 피해자 진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망상증 환자의 소리로 들리게끔 해 놓았다. 그들의 설명은 무례한 사람, 시끄러운 이웃, 불친절한 서비스, 운전 중 끼어들기처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 이라서 무시되기 일쑤이다. 이런 일들은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정신적인 고문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아래는 주요 전략인데 피해자가 자기가 조직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는 수년간의 고문이 이제 시작될 단계이다.

명예훼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 혹은 위장수사는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할 절호의 기회이다. 형사나 잠복경찰이 이웃, 친척, 직장동료, 고용주에게 피해자에 대해 묻고 다닌다면 명확한 혐의를 언급 안했다라도 그 사람의 평판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방첩작전에서의 중상모략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해진다. 영화배우 진 시버그 양의 경력을 망쳐 놓은 FBI의 성공적인 유세는 두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잘나가던 영화배우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FBI 비망록과 신문 기사에도 나왔듯이 FBI에서 고의로 헛소문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거짓말만 하는 첩보업계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대중들에게는 생소하다. 많은 사람들은 형사라면 합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못 믿겠다면 다음 동영상 시청을 권한다. 시민들이 범죄를 얼마나 쉽게 지원하는지 나온다. (<https://www.youtube.com/watch?v=TMSAwekYxrA>)

블랙리스트 등재

명예훼손과 비슷한 수법으로 블랙리스트가 있다. 수백 년간 블랙리스트는 탐탁치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고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1940~50년대 연예계에서 사회주의적 사상을 지닌 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이었다. 이 전략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치운동이나 내부고발보다 생계부터 걱정하게 만든다.

집단 괴롭힘(Mobbing)

2000년 8월 뉴스위크지는 "그들은 '왕따'라고 불렀다"는 기사를 낸다. 한 직장에서 여러 직원과 상사가 한 직원을 놓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괴롭히는지 일련의 과정을 소개한다. 학대에는 중상모략, 고립, 독설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앞의 방법들은 조직스토킹에도 쓰이는 수법이다. 직장 폭력과도 관계되는 이런 수법들은 나중에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다.

무단침입 (Black Bag Jobs)



피해자들의 공통된 증언 중 하나는 무단 침입이다. 방첩업계에서는 속어로 “black bag job”이라고 부른다. 무단 침입은 주거지, 사무실, 창고, 차량 등에 몰래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 말은 도둑질 할 도구들을 조그만 검은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워터게이트’가 있다. 무단침입은 정보 수집과 감시장비 설치가 주목적이다. 물건을 훔치거나 증거를 박아 놓거나 심리전의 목적으로 파손 행위를 결행하기도 한다. 처치위원회

조사 보고서 6권을 보면 FBI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언급이 담긴 서신이 있다. 이런 작전은 아직도 불법인가? 이론적으로 헌법 수정조항 4항은 유력한 근거가 있더라도 영장 없는 무단 수색과 체포는 금한다고 한다. 사실은 9/11이후 애국자법 같은 정책 때문에 개인의 권리는 상당히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애국자법에 따라 경찰들이 슬쩍 들어가 엿보는 ‘비밀수색영장’ (“sneak and peek” warrant)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의 합법성은 헌법적으로 애매하다. 공식적으로 ‘수색영장 추후통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찰이 개인주거지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거주자에게 통보없이 물건 압류까지 가능케한다.

(<https://www.aclu.org/technology-and-liberty/how-usa-patriot-act-expands-law-enforcement-sneak-and-peekwarrants>) 2002 03월 ACLU

조지아 대학 법학과 교수 Donald E. Wilkes, Jr의 ‘비밀수색영장’ (“sneak and peek” warrant)의 합법성에 관한 비평 (http://www.law.uga.edu/dwilkes_more/36sneak.html)

2010년 11월 오레곤에서 잘못 기소당한 한 남자가 연방요원의 무단침입 같은 행위로 인해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 합의금을 받은 사건이 소개된 적이 있다.

“연방기관에서 그의 사무실과 침실을 포함한 그의 집 전체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전화를 감청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계속된 감시에 시달려야 했는데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요원들이 집에 까지 들어와 비밀수색영장 방식으로 수색까지 했다”

(<http://www.csmonitor.com/USA/Justice/2010/1101/Supreme-Court-declines-to-hear-wronglyaccused-man-s-Patriot-Act-challenge>)

비밀수색영장은 신청 즉시 거의 동시에 발급된다. 2010년 연구에 의하면 이 신청을 거절한 판사는 1%도 안된다고 한다. (<http://www.policestateusa.com/2014/sneak-and-peek-warrants/>)

가스라이팅(Gas-Lighting) -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가해자에게 점차 의존하게 된다.

피해자들에게서 많이 보고되는 전형적인 심리전법 중 하나로 물건 옮기기가 있다. 가해자들이 집에 침입하여 물건 위치를 바꾸어 놓아 피해자들이 건망증을 의심하거나 판단력 혼란을 유도한다. 피해자의 삶이 침략당하고 집중 감시대상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경찰 보고서를 요하는 도둑질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물건이 없어진다면 도둑질하지 않을 만한 싹 물건이라서 사건 보고서는 신빙성 없어 보이거나 정신이 불안한 사람 말처럼 보이게 되어있다.

아래는 가디언지 기자인 Luke Harding의 동영상인데 모스크바에 거주할 때 러시아 첩보원들이 자신에게 가스라이팅 수법을 동원한 장면이다. 하딩은 당연히 동요되었지만 부인과 고용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더 고립되며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건망증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진다.

장난 전화

짓곳은 애들처럼 장난 전화는 피해자를 괴롭히기 쉬운 방법이다. 모욕에서 협박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전화가 녹음되고 있다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말만 한다.

해킹

해킹은 스토킹 피해자의 공통사항이다. 이 수법은 자료 수집이나 협박, 다른 형태의 가해를 위해 쓰인다. 모두 알다시피 인터넷 광고는 사용자 검색에 따른 맞춤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가해 세력은 피해자 IP 어드레스를 이용해 이 맞춤광고를 피해자 희롱도구로 삼는다. 피해자 사생활을 면밀히 감시해야만 알 수 있는 검색도 해본 적 없는 광고가 계속 뜨는 것이다. 이것은 증거를 안남기는 전형적인 조직스토킹 수법이다.

공익변호사이자 보수적 정치 운동가인 Larry Klayman도 NSA의 대규모 사찰 프로그램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후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메일로 자기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는 정보기관 요원들이 자기가 집중 감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위협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 (<http://www.wnd.com/2013/12/stunning-revelation-from-man-who-sued-nsa/>)

2013년 12월 연방판사는 NSA의 무단 통화기록 수집은 헌법 수정 4조항에 위배됨을 들어 래리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다.

(<http://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3/12/16/judge-nsa-surveillance-fourth-amendment/4041995/>)

‘어떻게 FBI가 해킹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5월 Wired 지에 기사가 실렸다. (<https://www.wired.com/2016/05/history-fbis-hacking/>)

“...정부는 이제 당신의 컴퓨터를 해킹해도 되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규정 41에 의해 바뀐 연방형사 법원 조치로 FBI가 합법적으로 해킹해도 되는 범위는 전폭적으로 확대되었다. NSA의 해킹처럼 FBI의 해킹도 새로운 일은 아니다. 기관이 우리를 몰래 해킹해 온 역사는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킹은 대부분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이 문서에 남아있지 않다. 해킹 승인을 요청하는 수색영장 발부는 사실을 숨기는 모호하고 멍뚱그린 어조로 되어있고 피고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해킹 도구나 기술을 제시한 경우도 거의 없다. 정부가 얼마나 자주 해킹을 하는지 대중에 공개한 적도 없다. 연방 판사와 주정부 판사는 국회에 해마다 도청의 횡수와 성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해킹도구에 관해서는 그런 의무가 없다. 결과적으로 기관과 경찰에서 쓰는

침투도구나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획책

조직스토킹 대부분의 수법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 흉계를 꾸밀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상상해보라. 증거를 심어 놓고 더 심한 증상모락을 하거나 피해자가 구속 또는 고소를 당하도록 계락을 꾸밀 수도 있다. 때로는 피해자가 알아보기 쉽게 일부러 증거를 심어 놓고 이런 작전이 시행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정보기관의 '짜맞추기 작업'의 한 예인 위키리크스 창시자 Julian Assange의 경우를 보자. 위키리크스의 2010년 외교 통신문 폭로는 미국 관료들의 좋은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통신문에는 미국이 그 전해 예멘에 발사한 미사일로 수십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났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있었는데 미국은 예멘정부와 공모하여 미국이 공격의 배후였다는 사실을 숨기도록 했다는 불편한 사실도 포함하고 있었다. Assange를 영국에서 인도받기 위해 미국은 스웨덴에서 날조된 고소를 했다. 미국, 영국, 스웨덴 정부 옹호론자들과 생각 없는 바보들은 Assange의 고소가 타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첩보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 흉계를 바로 알아차렸다. (<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10070597/GCHQ-staff-scolded-over-emailsclaiming-Julian-Assange-was-framed.html>)

미국의 방첩요원이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획책한 일은 2013년 6월 기사에도 나온다.

“FBI는 1964년 오랜 기간 사회당 관료였던 William Albertson이 FBI 앞잡이였다고 조작한 허위문서를 심어 놓았다. Albertson은 결국 당에서 축출되었고 친구와 직장까지 잃었다. 1972년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밀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FBI가 Albertson의 미망인에게 \$17만 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1989년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http://www.nybooks.com/blogs/nyrblog/2013/jun/18/spying-americans-very-old-story/>)

협박

상상가능한 어떤 형태를 취하든 조직스토킹에서 위협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익명으로 행해지고 증명하기 힘든 방식을 취한다.

공갈

에드가 후버 교본에 있는 또 다른 수법이다. 유명한 예는 마틴루터킹 목사에게 한 공갈로 상원 보고서 220~221 페이지에도 나와있다. FBI는 킹 목사에게 공갈 협박을 하면서 자살도 부추겼다고 한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final-report-book-2.pdf>)

반달리즘

조직스토킹 피해자는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반격할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집과 소유물

에 대한 손괴가 따르기도 한다. 마당에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차를 긁어 놓거나 애완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하는 등 말이다.

미끼

신용을 잃게 하거나 법적인 올가미에 걸려들게 하려고 미끼를 던지고 반응을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 조직스토킹의 모든 수법은 미끼 던지기의 형태이다. 누적된 효과는 피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다른 문제와 얽히도록 되어있다.

흥내내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 2007년 소설가 글로리아 네일러의 '갱스토킹'이란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소개된 적이 있다.

“비행기에서 옆 좌석 승객이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했다. 마치 길거리에서 마임을 보는 것처럼 ...”

가두 연극

일반적 희롱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것은 여기 나온 수법들과 병행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공공장소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만 알아챌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촬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가로막기/끼어들기/개인공간 침범

피해자는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혹은 혼잡한 곳으로 밀어 넣거나 밀치거나 하는 일도 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망상증 환자의 말처럼 들리게 되어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수법은 캐나다에서 1990년대 말 부패한 폭압 경찰에 의해 쓰여진 전략을 드러내기 위해 첩보업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첩보와 역첩보'(Spy & Counterspy) 란 사이트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

FBI는 이 수법을 '계산된 침해'라고 부르는데 감시작전의 목표물에게 압박을 가하려 할 때 사용한다.

다음은 FBI 감시전담반에서 어떻게 계산된 도발을 하는지 예를 들어 보인다.

“쇼핑몰이나 시내 쇼핑가를 걷고 있으면 감시반 요원이 고의로 당신이 가는 길에 끼어든다. 거리 예술가도 무관심한 척 하며 길을 막아서 피해 가도록 만든다. 요원 무리들은 잡담을 하며 우연히 길을 막아 선 것처럼 해서 당신이 길을 돌아가도록 한다. 또 다른 거리 예술가가 당신과 거의 부딪힐 듯 한 상황을 연출한다. 다른 행인들은 박치기 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피해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심리적 압박이 쌓여가면 요원들이 부주의로 부딪힌 척, 밀친 척 하거나 뒤에서 발을 밟곤 한다. 거리 예술가들은 물건을 사려는 당신 앞에 서서 긴 줄을 만

들거나 음식 주문할 때나 버스표를 살 때도 같은 짓을 할 것이다. 이런 행위는 응어리와 분노를 쌓이게 한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배후를 증명해 내기 어렵다. 요원들은 한 번씩만 마주치며 그 다음 도발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게 된다. 당신은 당황하고 짜증나고 불안해 지고 판단 착오를 하기 쉬워진다. 이게 정확히 감시반이 원하는 상황이다.”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수법의 효과는 예상하지 못했을 때 더 커진다고 한다.

“이것은 교활한 심리게임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는 이 수법을 예상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대응책으로 알려진 방법이다.

-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전화통화 하는 척하라. 그리고 가해자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크게 말한다. 아주 크게.. “딸랑이들을 보냈네! 들려? 미안, 연결 상태가 안 좋나봐! 더 크게 말할께! 딸랑이들을 보냈다고 했거든. 응. 시키는 대로 하는 병신들. 지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병신들. 그냥 병신이야~~” 계속 웃으며 가해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윈크도 날려준다. 무슨 말인지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

예민하게 만들기

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조직스토커들은 최첨단 기술 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심리적인 고문은 전자장비까지는 필요 없고 새로운 심리학도 필요 없다. 신경언어학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은 반복적인 소리나 제스처 같은 특정한 자극에 생각과 반응이 걸려들게 하는 것이다. 특정 소리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소리를 부정적 심리반응을 일으키는 방아쇠로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계속되는 흥분상태로 내몰 수 있다. 왜냐하면 스토커가 이 소리를 내거나 일상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동기화

예민하게 만들기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특정 행동을 할 때 스토커도 특정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집을 나설 때마다 스토커는 항상 기침을 하거나 크랙션을 올리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해서 항상 감시 중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알린다.

소음테러

조직스토커들의 병기창고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이다. 아주 오래된 전략으로 수 천 년간 포위 공격에도 많이 쓰였다. 드라마틱한 광경을 보고 싶다면 포위된 윈터펠 성에서 데온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뿔나팔을 불어대는 게임의 왕좌 시즌2 최종회를 시청하면 된다.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침공 때 바티칸 영사관에 숨어있던 노리예가 장군을 괴롭혀 끌어내기 위해 시끄러운 음악을 튼 일은 보도가 많이 되었다. 그때 정확히 왜 저 전략이 쓰였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음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여기 설명된 많은 수법들처럼 이것도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것보다 이것은 불면을 유도하는데 이렇게 되면 육체적 정신적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스토커가 피해자 집 근처로 이사 왔다면(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피해자에게만 들리는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FBI 앞잡이들이 행하는 다른 심리전법들처럼 소음 테러도 사실상 입증하기 힘들다. 녹음을 하고 범인을 잡아 법정까지 끌고 간다 해도 배후 공모자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괴롭히려고 그랬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첨단 소음테러



초음속 음향 발생기(Hypersonic Sound Device)

조직스토킹에서 소음테러는 단순히 벽을 두드린다든지 음악을 크게 트는 것 말고 복잡한 도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1990년대에 개발된 이 음향발생장치는 특정인에게만 들리는 소음을 내게 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초음속 음향'이라고 하는데 소리를 복잡한 초음파 신호로 변환하여(인간의 청력 범위를 넘어선다) 퍼지는 소리를 내는 스피커와 달리 직진성을 가지게 하여 특정 방향으로 조준이 가능하게 해준다. 만약 소리 진행방향으로 귀가 위치하게 되면 당신만 그 소리를 듣게 된다. 자신만 듣는 이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느냐고 묻게 된다면 정신병자로 매도되기 딱 좋은 기회를 만든 셈이다. 이것은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고문하기에도 안성맞춤인데 본인도 제정신인지 의심을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회의적인 시선만 돌아온다면 피해자는 더욱 분노에 쌓이게 되고 이러면 정신 건강에도 해롭게 된다. 만약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지인들에게 다음 자료에 눈 돌리게 해보라. 2009년에 방송된 20분짜리 TV 프로그램인데 기술자가 나와서 이 장치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보여준다. (http://www.dailymotion.com/video/x1snia4_conspiracy-theory-with-jesse-ventura-big-brother-full-length_tech) 만약 영상이 사라졌다면 Jesse Ventura's Conspiracy Theory, season #1, episode #4 ("Big Brother")로 검색해보면 나올 것이다.

다른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수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소음차단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하지만 이런 첨단 도구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단지로 도배를 해버리거나 지역 관리, 신문사, 교회, 학교,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런 일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다.

- 한국의 경우 소음 발생원이 바로 윗집이라면 보복스피커를 설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구입도 가능하고 스티로폼 박스와 집에 남아도는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제작도 가능하다. 인터넷에 층간 소음 보복이라고 하면 많은 자료가 나오니 따라 해봐도 좋다. 몇 날 며칠이든 한달이든 밤새 쉬지않고 기괴한 소리 등으로 잠을 못 자게 괴롭히면 위층 사람들이 먼저 미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행복하고 그만 해 달라고 사정할 것이다. -

최첨단 소음 테러: 신의 목소리

위에서 설명한 초음파 기술과 더 특이한 심리전 무기인 '신의 목소리'를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두 기술 모두 특정인에게만 들리게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신의 목소리는 극초단파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특정 주파수에서는 머리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기술은 Voice to Skull 줄여서 V2K라고도 한다.

아래는 2007년 1월 14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1/10/AR2007011001399.html>)

- 1990년대 중반 공군 학술논문에서 인간의 머리 속으로 말소리가 들리게 하는 무기에 관한 개념이 언급되었다. 적에게 임박한 죽음을 경고하고 투항을 부추기는 신의 계시처럼 보이게 할 목적이었다. 2002년 공군 실험 연구실에서 극초단파를 이용해 사람의 머리 속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로 특허를 취득했다. 에너지 간부회 감독을 받는 연구소 대변인 Rich Garcia는 극초단파 연구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연구소 규정을 들어 특허나 관련 연구에 관한 일체의 언급을 회피했다. 정보공개법의 요구에 따라 공군은 2002년 특허에 관해 기밀 아닌 문서만 공개를 했다. 문서의 내용은 1994년 10월 공군 실험실에서 특허와 관련된 생체실험을 했고 과학자들이 사람의 머리 속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거의 알아들을 수 없게 설명되어 있다. 연구소는 최소한 2002년까지 연구를 계속했고 이 후 과정은 기밀이라서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

Wired지도 이 기술에 관해 2007년 12월과 2008년 2월 기사를 냈다.

(<http://www.wired.com/dangerroom/2007/12/the-voice-ofgo/>) (<http://www.wired.com/dangerroom/2008/02/report-nonletha/>)

다른 첨단장비: 벽투시기



2010년 2월10일 Stars and Stripes: "한 군인이 벽 뒤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새로운 스캐너 장비를 들고 있다. 이 장비는 올해 안에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색영장 없는 무단 침입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불법이다. 스토킹 피해자들 공통으로 겪는 사항이기도 한데 초소형 감시카메라를 피해자 집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벽투시기 같은 장비는 대부분 불필요하지만 기술은 존재한다. 2005년 6월 Popular Mechanics지에 Frank Vizard가 쓴 기사를 보면 '벽 너머 보는 기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군과 대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해왔다는 내용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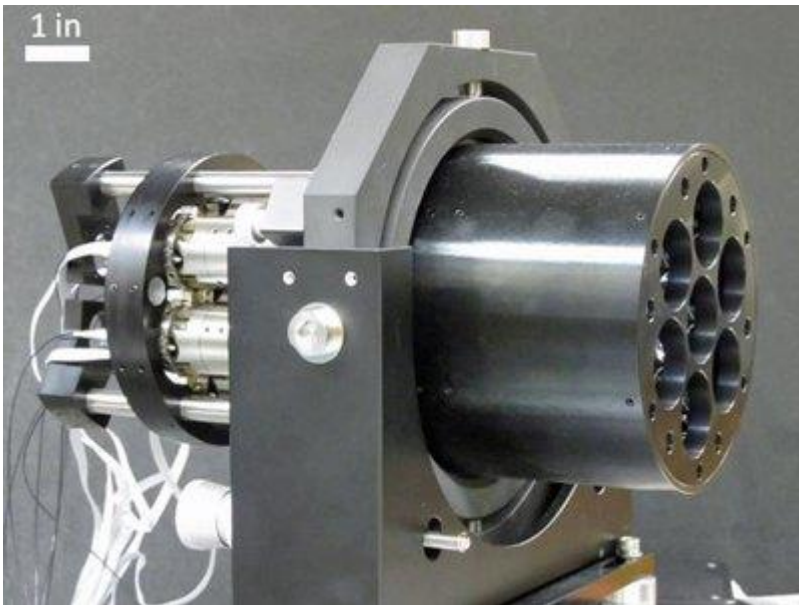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popular-mechanics-june-2005.pdf> 30페이지

2012년 8월 Popular Science지에서는 Wi-Fi 공유기 신호를 이용한 이런 종류의 기술을 소개한다. "Wi-Fi 공유기 신호로 30cm 벽 너머에 있는 사람의 위치, 속도, 방향을 감지해 낼 수 있다."

<http://www.popsci.com/technology/article/2012-07/seeing-through-walls-wireless-router>

이 장비는 전파 발생이 없으므로 탐지가 안된다. 조직스토킹에 딱 알맞은 장비이다.

또 다른 첨단 장비: 지향성 에너지무기(Directed-Energy Weapons-DEWs)



DARPA Laser Gun – from *Business Insider*, September 14, 2012

조직스토킹과 관련해서 가장 특이한 고문의 형태는 에너지 무기 사용인데 이런 것들은 동독 비밀경찰 기사를 보면 나온다. 1999년 5월 BBC 뉴스 기사도 슈타지의 에너지 무기 사용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http://news.bbc.co.uk/2/hi/europe/352461.stm> 미국에서 에너지 무기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사용된다는 주장은 증명하기가 힘들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다음은 2005년 7월 나온 AP 기사의 일부이다.

http://usatoday30.usatoday.com/news/nation/2005-07-09-army-weapons_x.htm

"여러 해 동안 미국은 빠르고 정확하고 사실상 지칠 줄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화력을 연구해왔다. 전자기 에너지 빔 혹은 "지향성에너지"인데 파동은 상황에 따라 살상단계, 기절단계 등으로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 무기의 장

점은 목표물이 사람이든지 기계 장치이든지 빛과 같은 속도로 발포되기 때문에 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진동수에서는 벽을 통과하기도 한다.”

지향성에너지 무기(DEW)는 추진기 없이 발포 가능하고 여러 종류의 살상, 비살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무기는 수십년간 존재해 오면서 세계 여러 나라 군·경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레이저 광선, 전자기 방사선, 입자광선, 소리 등 여러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무기는 칼, 곤봉, 화기, 대포 등과 구분하기 위해 주로 ‘비살상용 무기’로 불린다. 하지만 어떤 강도에서는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 무기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정보 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관련 자료로는 1998년 ‘특정 비살상 무기에 관한 생물학적 효과’라는 펜타곤 보고서가 있다.

http://www.wired.com/images_blogs/dangerroom/files/Bioeffects_of_Selected_Non-Lethal_Weapons.pdf

- 국방부 비살상 무기 사이트(<http://jnlwp.defense.gov/>)

드물지만 기사도 나온다. 2013년 5월 17일 Marine Corps Times의 버지니아주 콰티코에서의 ‘비살상무기 합동 간부회’

<http://www.marinecorpstimes.com/article/20130517/NEWS/305170019/Marine-Col-removed-Pentagon-s-non-lethal-weapons-directorate-chief>

이 간부회는 ‘피부를 태우지 않고 고통을 유발하는 전격(電擊)요법 무기에서부터 능동방어시스템(Active Denial System),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의 모든 연구’를 수행한다고 기사는 전한다.

2012년 9월 Business Insider의 ‘미국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무기’라는 기사에서는 열선(heat ray)을 이용한 전자 무기를 소개한다. (<http://www.businessinsider.com/electronic-warfare-weapons-2012-3#>)

만약 방어용으로 집에서 자체 제작을 해보고 싶다면 다음부터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

<http://fear-of-lightning.wonderhowto.com/how-to/making-electromagnetic-weapons-directedmicrowave-energy-0133231/>) 손재주와 충분한 장비,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미 국방부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사(General Dynamics)가 에너지 무기를 개발하는데 \$49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관한 논쟁이 필요 없는 자료이다. 국내 방첩 작전에서 저런 무기가 가지는 역할은 추측과 일화적 증거의 영역이다. 웹상에는 저런 무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많이 있다. 증언에 따르면 타는 듯한 통증, 두통, 매스꺼움, 급성피로, 가슴 떨림 등이 동반된다고 한다.

<http://news.clearancejobs.com/2013/09/04/general-dynamics-information-technology-awarded-nonlethalweapons-contract-dod-daily-contracts/>

지향성 에너지무기와 조직스토킹에 대한 개인적 견해

(1) 가해자들의 역정보가 판치는 상황에서 지향성 에너지무기(DEW)의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사실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않다. DEW사용은 일반인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확하든 않든 사용여부 논쟁은 조직스토킹 자체를 폭로하는데 도움이 안될 수 있다. 설사 DEW가 드물게 사용되더라도 그 글을 본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두통, 고혈압 같은 증상이 DEW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만 몰두하느라 방첩작전의 목적이 웹상에서 논의되는 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2) 지향성 에너지무기에 의한 몇몇 영향과 심리적 학대에 의한 영향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정신적 고문에 의한 스트레스도 빠른 맥박과 두통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3) 조직스토킹 피해자에게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사용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무기의 존재는 이제 논쟁거리도 아니다. 가까운 이웃에 의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음테러처럼 이 수법도 다른 조직스토킹의 수법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것도 벽을 통과하고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수법이 쓰인다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4) 기사에 난 대로 강도와 치명도는 무기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조직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하는 악의적인 행위들과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은 통하는 면이 있다. 누군가를 무자비하게 심리적으로 증거없이 고문을 가하고 싶다면 설사 그것이 자살이나 심장마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안다 해도 양심의 가책없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5)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믿을 만한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들 중에도 비살상용 무기에 의해 시달리고 있다고 경우가 3번이나 있었다.

대처법

지향성 에너지 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은 허위정보로 가득 둘러 쌓여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정확히 가능하기는 어렵다. 대처법에 관한 기술적 문제는 본인 지식 범주 밖의 일이지만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페러데이 상자(Faraday cage)가 전자기 방사선을 완전 차단한다고 한다. - Wired지 2012년 5월 기사 (<http://www.wired.co.uk/news/archive/2012-05/14/antiwifi-wallpaper-will-still-let-mobile-calls-thro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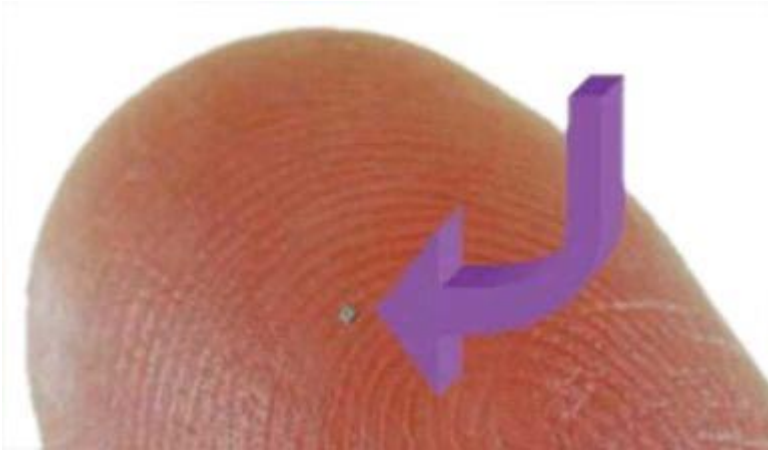
또 다른 첨단 기구: 뇌 이식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짜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조직스토킹의 피해 사실처럼 철저히 계산된 역정보 중의 하나다. 자신들 뇌에 심겨진 칩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교활하고 사악한 첩보원들이 사실을 오도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 사실이다. 이런 허위 정보로 교란시키는 수법은 방첩 작전의 기본을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 대중에게는 지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예일대학 생리학 교수 Jose M.R. Delgado는 신경과학 연구를 개척한 사람이다. 뇌 기능 일부를 조종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심는 기술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다면 다음 기사를 추천한다.

2005년 10월 Scientific American

초 최첨단 기기: 스마트 먼지



세상에 이런 종류의 위협도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소개하기 위함이지 슈타지의 피해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주파수 식별을 이용하는 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고 센서로 사용될 수도 있는 무선전자기기 감시 장비이다. 미래의 빅 브라더 국가 출현 이후에 사용될지도 모를 일이다.

<http://www.technologyreview.com/view/517091/how-smartdust-could-spy-on-your-brain/>

조직 스토킹 수법의 효력

‘Stopping a Stalker’라는 책을 쓴 퇴직한 경감 Robert L. Snow는 스토킹의 후유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장기간의 정부 지원과 심리전법, 감시장비로 무장한 가해자들에게 당하는 조직스토킹이 아닌 스토키 한 명에게 당한 충격을 묘사한다.

“경찰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이들은 강도, 총상, 강간, 사기,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었는데 내가 이들을 만났을 때는 범행 후 치료 과정이 이미 시작된 시기였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들은 범행이 계속 진행중이었는데 피해자들 말로는 계속되는 강간을 당하고 인생의 상실감이 끝없이 이어지는 끔찍한 심정이라고 했다. 스토킹은 심리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범죄 중 하나다. 스토킹은 한 사람의 자유를 앗아가고 살고 싶은 의지까지 박탈한다.”

12. 집단 따돌림과 직장내 폭력 사건

집단 따돌림(Mobbing)은 한국에서 왕따라고 잘 알려져 있어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집단 따돌림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직스토킹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집단 따돌림 당하는 사람 중 지극히 일부만이 불법 감시와 정교한 심리전이 동반되는 조직스토킹의 희생자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내에서의 따돌림이 스토킹을 동반하지는 않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경우 이런 학대는 피해자의 폭력적인 복수로 이어진다.

지금은 국제적인 트렌드가 된 집단 따돌림이 주요 언론에 보도가 간혹 되기도 하는데 2000년 8월 Newsweek/Daily Beast 의 기사처럼 초반에 보도된 사례도 있다.

<http://www.thedailybeast.com/newsweek/2000/08/13/they-call-it-mobbing.html>

회사에서의 정신병자

다음 동영상은 영국 미들섹스대학 Clive Boddy 교수가 2012년 직장에서 정신병자 같은 상사에게 괴롭힘 당하는 역학에 대해 설명한 14분 분량의 영상이다.

다음은 같은 주제의 4분가량 동영상이다: "상사가 미친놈입니까?"

<https://www.stufftheydontwantoutoknow.com/videos/stdwytk-boss-psychopath-video.htm>

집단 따돌림과 조직스토킹과의 관계

위의 동영상은 조직 내에서 가학적인 상사가 어떻게 일터를 지옥처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상사가 경찰이나 안보 기관과 연줄이 닿아 있다면 일반 직장의 가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회사에서 정신병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법을 비웃을 기회는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과 기관은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위해 InfraGard와 DSAC의 경우처럼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과 강한 연합세력을 구축하기도 한다. 그 결과 기업 임원들은 '위협평가팀'을 구동시켜 마음에 안드는 직원을 '내부 위협'으로 선

언하고 분쇄기로 밀어 넣어 버릴 수도 있게 되었다. 특히 경찰의 높은 사람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우면 더하다. 헌법을 뒷전으로 하는 경찰의 패러다임은 사찰, 은밀성, 감시자 목록작성, 예방적 치안활동,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격적 수사와 기소 등에 더욱 무게를 실는데 기업가들에게는 개인적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경찰/정보기관에 연줄이 있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업계 전체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것이다.

9/11이후 국토안보업계는 비약적으로 팽창했는데 수많은 정부 기관과 민간 업체는 예산을 타낼 명분이 있어야 한다. 운동권, 내부고발자, 혹은 경찰의 조준경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인물로 분류된다. 전현직 경찰/정보요원으로 이루어진 사설요원을 고용해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싶은 직원에게 위협을 행사하는 것은 이제 업계의 관행이 되어버렸다. 참고자료:(<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spooky-business.pdf>)

중산층과 하위층의 고용환경 악화도 앞잡이나 꼬나풀의 양산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설득하기가 용이하다. 감시기술의 발전도 기업에 의해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악소식이다. 고용주들은 더 쉽게 직원들의 이메일,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내용을 엿볼 수 있고 사설업체 직원까지 고용하면 직원의 사생활까지 더욱 상세히 알아낼 수 있다.

직장내 따돌림은 잠재적으로 피해자에 의한 직접 응징의 가능성을 만든다. 괴롭힘 당한 직원의 폭발은 수사와 감시 대상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는 당위성을 더해주고 폭력 행사는 더욱 공격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여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집단 따돌림과 조직스토킹의 고소 사건

2013년 12월 연방계약직원 Jeffrey Kantor는 버지니아에서 불법적인 사찰, 공공연한 스토킹, 계획된 정신적 학대, 동료직원들에 의한 희롱 유발 등의 이유로 여러 기관을 고소했다. Kantor의 케이스는 정부가 인가한 조직스토킹의 전형적인 예이다. 사실 고소장에 '조직스토킹'도 언급된다. (<https://fightgangstalking.com/#lawsuit>) 최종결과가 어땠든 자칭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정보요원의 대테러 심리전 수법이 언론에 널리 보도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직장내 폭력 사건과 집단 따돌림의 관계에 대한 신문 보도

직장에서의 총기난사 같은 사건의 주요 언론 보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야기한다. 1)총기 규제법 강화 2)개선된 정신건강 보호정책 3)더욱 엄격한 보안규정-신원조회/금속탐지기 등 4) 대중문화에서 폭력 장면 규제 등의 방법이 강구된다면 이런 사건이 줄어들 수 있는지 말이다.

미성년자가 있는 학교에서의 총기난사 사건에는 '왕따'가 원인으로 논의되기도 하지만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는 그런 분석이 거의 안 이루어진다. 총기 사건이 나기 전까지 동료들이 그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는지는 언론의 관심 밖인 듯하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도 집단 따돌림과의 연관성에는 그리 많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2011년 한 고등학교 여론조사에서 의하면 '왕따' 당한 학생이 무기를 소지하고 학교로 등교할 가능성은 31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이런 통계수치를 보며 부패한 정보기관과 경찰은 조직적인 학대가 심각한 폭력행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http://www.philly.com/philly/health/topics/HealthDay687343_20140505_Many_Bullied_Teens_Carry_Weapons_to_School_Study_Finds.html

직장 총기사건의 진짜 원인을 파헤칠 생각을 안하는 언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을 제시한다. 더욱 엄격한 무기 규제 시행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건이 그런 정책에 대한 대중의 논의가 되는 기회로 보려 할 것이고 감시와 보안체계의 강화를 바라는 사람은 이 사건들을 근육질의 경찰 공화국 탄생을 앞당기게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다. 약자를 괴롭힌 요인을 배제하려는 이유는 그런 사건에 해당 조직이 태만하게 대처한 것을 감추려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8월 Huffington Post 기사는 예외적이다. 인류학자인 Janice Harper는 그 전 해 커넥티컷 주 맨체스터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지 않는다. (트럭배달기사인 Omar Thornton이 동료 8명을 쏘 중상을 입히고 본인은 자살했다.)

“Thornton이 살인을 결심할 만큼 동료들과 상사가 집단으로 괴롭히지는 않았는가? 그의 마지막 행동이 잔인한데 그가 희롱당하고 집단 괴롭힘을 당했는지 밝히는게 의미가 있을까?”

-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작년에 부지사 M. Jodi Rell이 물었다. “이런 비극 뒤에 우리는 항상 같은 질문만 한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저랬을까?” 그의 질문은 쓸데없는 취급을 받았다. 진지한 대답을 하려는 노력은 증오로 가득찬 주제넘은 비평으로 날아갔다. 살인동기를 이해하려는 것이 살인을 용인하고 남은 사람들이 평생 격어야 할 후유증을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라는 것처럼”

Harper가 말한 것처럼 Omar Thornton은 폭력 전과나 정신병 경력이 없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왜 평범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총알을 퍼부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나중에 Thornton은 동료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조직스토킹의 피해자였는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조직스토킹 문제에 관한 암시는 준다.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괴롭힘이 극단적인 폭력을 야기한다 해도 진지한 의문을 도출 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http://www.huffingtonpost.com/janiceharper/omar-thornton-shooting_b_917146.html

학술 논문

캐나다 워털루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명예퇴직한 Kenneth Westhues 박사는 최근 북미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과 집단 괴롭힘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냈다. Westhues는 적어도 분노의 총격 1/3은 집단 괴롭힘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거의 대부분의 총기 난사에서 희생자를 조직적으로 따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창피를 주어 사실상 괴물로 만들어 주는 공통된 모습이 나타났다. 정신병원, 경찰, 행정관료들의 ‘위협평가팀’과 ‘안전사고 방지’의 역할은 완전히 실패였고 오히려 그들이 방지하려는 대량 살상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다음은 2007년 11월 Westhues의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와 집단 괴롭힘에 관한 보고서이다.
(<http://arts.uwaterloo.ca/~kwesthue/vtmassacre.htm>)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예 & 주립대 영문과 4학년 조승희 학생이 학생, 교수 포함 32명을 살해하고 25명을 부상시킨 후 자살한 사건이다. . . 승희 학생은 집단 괴롭힘 이라고 불리는 흔하지 않은 황폐화 과정의 목표물이 된 것 같다. 상사와 동료가 피해자만 빼고 똥똥 뭉치는데 지독한 창피를 주고 많은 무리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워싱턴 해군 조선소(Navy Yard)에서의 총기 난사 2013년 9월

이 사건은 조직스토킹의 피해자가 감행한 것으로 추측되는 총격 사건으로 여기 예시된 사건 중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워싱턴 D.C 해군 조선소에서 2013년 9월 16일 총기 난사로 12명이 죽고(발포자 포함13명) 8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다. 전국 뉴스에 도배가 되다시피 했던 사건으로 범인 Aaron Alexis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스토킹과 전자장비에 의한 학대, 소음테러에 시달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알렉시스는 자신의 장총에 '나의 ELF 무기'란 글자도 새겨 넣었는데 ELF는 보통 극저주파(extremely low frequency)를 의미한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들었다고 하는 목소리는 정신분열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고 다른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은 대체로 성인 초기인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시작되는데 알렉시스는 국방 관계 컴퓨터 회사의 34세 정보기술자라고 대변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대체적으로 폭력적이지 않고 자기자신에게 위험한 존재일 뿐이다.

알렉시스는 그가 들은 목소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음향발생장치와 관계 있다고 했다. 자기 일터에서 20명에게 총격을 가한 동기가 정치나 종교와는 무관하다고 전해졌다. 그는 조직적인 괴롭힘을 참기 힘들만큼 당했고 결국은 무너져버렸다. FBI는 사건 발생 후 ATF(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 - 범외에 쓰인 무기 추적을 담당하는 연방기구)를 배제하고 단독 조사를 벌였다. AP 통신은 전직 ATF 현장요원 관리 차장이었던 Mike Bouchard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ATF의 총기 조사가 신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 이런 경우는 들어 본 적도 없다."

[\(http://www.cbsnews.com/8301-201_162-57604055/\)](http://www.cbsnews.com/8301-201_162-57604055/)

<http://abcnews.go.com/Politics/wireStory/atf-loop-navy-yard-shooting-20332955>

총격사건이 FBI에 의해 다루지면서 항상 은닉하고 부인해온 역사를 가진 이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적인 증거를 대중으로부터 감출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2013년 12월 조직스토킹 연방법원 고소 원고의 경우처럼 총기 사건의 희생자가 조직적 괴롭힘에 적극 가담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https://fightgangstalking.com/#lawsuit>

뉴욕타임지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발포와 관련된 의아한 일들을 언급했다. 고용주와 뉴포트 로드 아일랜드 경찰청, 해군은 모두 알렉시스가 '소리'와 소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해온 것을 알면서도 그의 보안 등급을 변경하거나 정지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http://www.nytimes.com/2013/09/20/us/signs-of-trouble-on-navy-yard-gunmans-path-totragedy.html?pagewanted=all>

의회 경호원(Capitol Police)의 전략대응팀이 그 시기에 그 근방에 있었는데 대응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BBC 뉴스 기사의 무대응에 관한 9월 18일 기사이다. <http://www.bbc.co.uk/news/24153252>

의회 경호원의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고도로 훈련된 4명의 중무장 봉쇄위기대응팀(Containment and Emergency Response Team-Cert)이 그 날 해군 조선소 근처에 있었는데 현지 시각 08:20분 경 사건 관련 첫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의회 경찰 소식통에 의하면 워싱턴 DC 경시청 소속 경관이 CERT에게 그 곳에 장총을 가진 유일한 경찰이니 발포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의회 경호원팀이 상관에게 무전을 취했을 때 당직 지휘관은 오히려 그 자리를 뜨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BBC는 전했다.

Aaron Alexis는 9:00 이후에 죽었다. 며칠 후 지역 SWAT팀에게 개입 말라는 설명하기 힘든 명령이 내려진 것을

한 하원의원이 확인하였다. 공화당 Michael McCaul 의원은 CNN의 Jake Tapper 기자에게 SWAT팀원 중 한명이 워싱턴 해군 조선소 총기 난사에 대응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http://www.infowars.com/congressman-confirms-stand-down-order-at-navy-yard/>)

사건 일주일 후 워싱턴 타임즈지는 총기 사건에 조직스토킹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다.
(<http://communities.washingtontimes.com/neighborhood/freedom-press-not-free/2013/sep/18/elfextremely-low-frequency-clue-alexis-motives/>)

Wired지도 며칠 후 해군 총기 사건의 조직스토킹 연루를 다루었다.

“몇몇 음모론자들은 알렉시스가 Targeted individual TI였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는 주로 악마같은 정부요원에 의해 조직스토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알렉시스의 경찰 보고서에는 극초단파 무기, 불법공모자들, 수면 방해 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직스토킹에 나오는 현상이다. (물론 정신분열증에도 나타난다.) . . . 펜타곤에서 과거 비살상무기로 음성투영기술을 연구해오지 않았었다면 극초단파 무기 이론은 다른 음모론처럼 헛소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 연구에 관한 한 보고서를 보면 이 무기는 조현병에 걸린 사람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극초단파 가청 기술을 적용하면 메시지 전달도 가능한데 이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정신분열적 상황을 맛보게 된다. 청각 기관만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갑자기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인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다.”

(<http://www.wired.com/dangerroom/2013/09/navy-yard-conspiracies/>)

Wired지는 그 전 해에 '신의 소리'로 불리는 기계를 소개한 기사를 낸 적이 있다.

(<http://www.wired.com/dangerroom/2007/12/the-voice-of-go/>)

사건 9일 후 FBI 워싱턴 현장요원 차장 Valerie Parlave는 알렉시스가 “사건에 앞서 메일을 보냈거나 누구에게 사건을 예고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http://www.cnn.com/2013/09/25/us/washington-navy-yard-investigation/>)

한달 후 뉴욕 포스트는 알렉시스가 표면상 조직스토킹 지원 단체인 Freedom From Covert Harassment & Surveillance (FFCHS)에 3통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FFCHS는 피해자들을 교란시키기 위해 설립된 위장기관이다. (<http://nypost.com/2013/10/23/navy-yard-gunman-feared-mind-weapon-before-rampage/>) 군사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보안 등급을 가진 직원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며 이런 사건에 대한 암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던 연방요원들은 이 사건을 막지 않았다.

포스트지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성명에서 다음의 의문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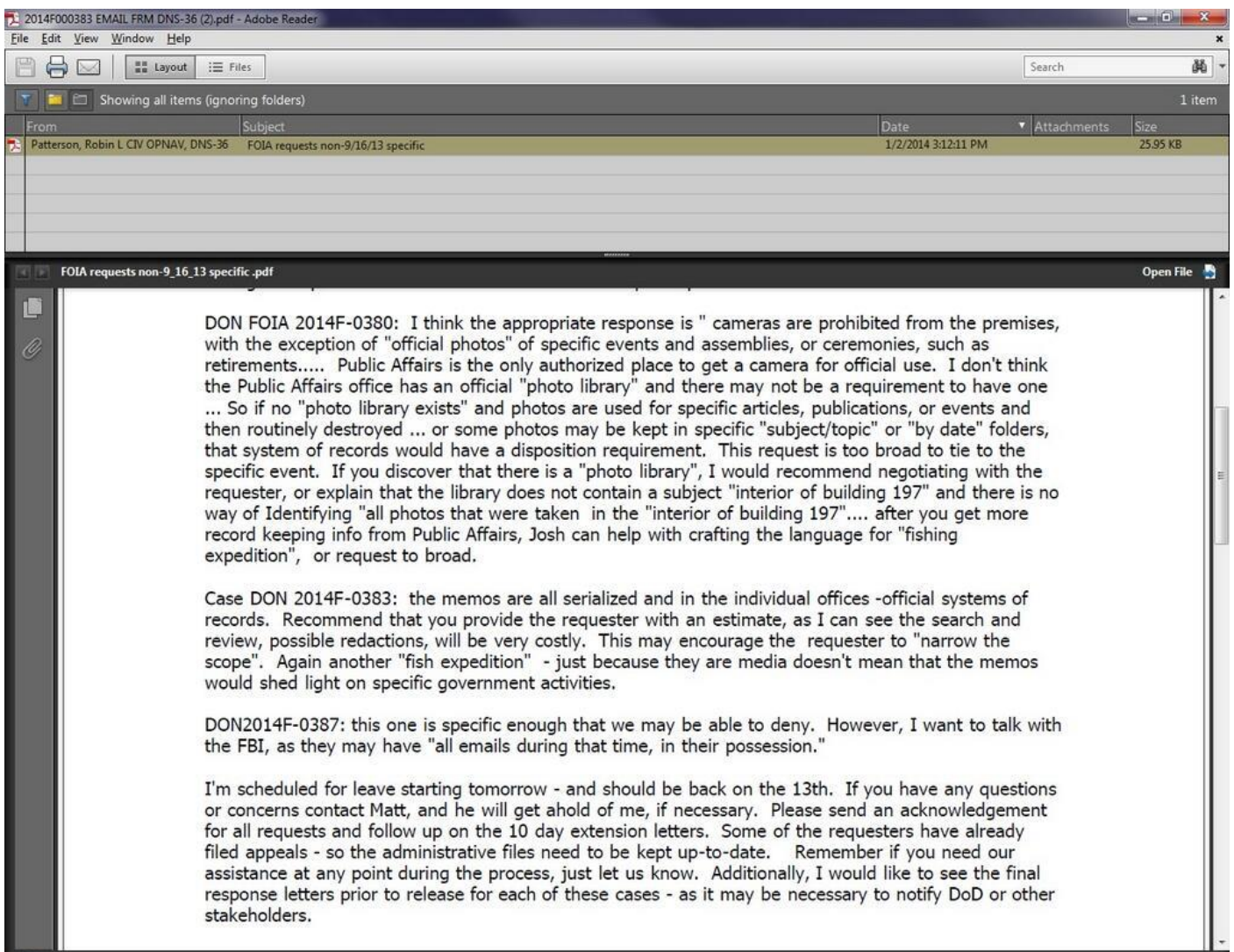
“범인이 특정인에게 앙갚음한 것이 아니라는 FBI의 성명과 달리 그의 이메일은 미 해군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광란의 복수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3년 11월 20일 워싱턴 타임즈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개혁 감시 위원회 의장인 Darrell E. Issa 하원의원이 아론 알렉시스의 보안등급 취득 경위에 대한 자료를 인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OPM)에 요청했다고 한다. 인사국은 서류 이송을 거부했고 문 닫고 들어와서 보는 것만 허락했다고 한다.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3/nov/20/congress-finds-shortcuts-suspects-opmcover-up-in-/>)

2014년 1월 Politico지는 워싱턴의 지역 NBC기자 Scott MacFarlane이 미 해군이 실수로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을 받은 내용을 보도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총격사건 당일 해군 내부 비망록 열람을 요구한 MacFarlane 기자에게 자료를 제한해서 공개하는 기법을 설명한 해군 내부 메일이 전송된 것이었다. 그는 이 사고를 트위터에 올렸다.

“역대급 실수(EPIC FAILURE)” - 미 해군이 정보공개법 요구를 피하는 기법을 설명한 내부 메일을 실수로 기자에게 발송하다.

그는 스크린샷까지 첨부했다.



(<http://www.politico.com/blogs/media/2014/01/navy-mistakenly-sends-foia-plans-to-reporter-180712.html?hp=r3>)

가장 자애로운 분석은 '엉덩이를 아무데서나 까지마라'는 규정에 따라 해군기지에서 안전 사고 관리의 무능함을 숨기려는 정부기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일 것이다.

2014년 1월 31일 AP통신은 Aaron Alexis 총기 사고 몇 주전 정신건강에 이상 없음 소견을 밝힌 보훈병원 (Veterans Affairs) 의사의 의료 자료를 공개했다. "말과 생각은 명확하고 정확하며..."가 담당의사의 소견이었다.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AP통신은 진료 자료를 입수했는데 보통은 정부에서 의료 자료를 공개하지 않지만 보훈회는 총기난사에 관한 대중의 관심 때문에 이번만 예외를 두었다고 했다.

http://hosted.ap.org/dynamic/stories/U/US_NAVY_YARD_SHOOTING?SITE=AP&SECTION=HOME&TEMPLATE=DEFAULT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알렉시스는 사고 6주전 호텔에 투숙하면서 소음 때문에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불면증을 보훈병원 의사에게도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의사는 알렉시스가 3주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자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진술도 곁들였다. 그의 진료기록을 보면 그가 계속 무언가로부터 시달려왔다는 진술과 일치한다.

공식 성명만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높은 보안등급까지 있던 멀쩡한 사람이 돌연 아무 이유도 없이 광란의 살인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미해군 정보공개법 사무소는 황금자물쇠상(Golden Padlock Award) 수상후보에 올랐다.

2014년 6월 수사기자들과 편집장들은 미해군 정보공개법 사무소를 2014년 '황금자물쇠상' 수상자중 하나로 임명했다. 이 상은 숨기는 일을 가장 잘하는 정부기관과 개인에게 주어진다. 해군 조선소 총기 사건의 '기록에 접근을 못하도록 잘 막은' 공로로 이 상이 수여되었는데 현재도 해군은 NBC 뉴스 Scott MacFarlane 기자의 정보공개 요구에 답을 안하고 있다.

<http://ire.org/blog/ire-news/2014/06/28/us-navy-missouri-andoklahoma-governors-win-golden/>

해군 총기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 중에는 2013년 12월 FBI가 가지고 있는 FFCHS와 알렉시스가 주고받은 자료에 관한 파일도 있었다. 알렉시스는 사건 전 FFCHS에 3통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FBI는 수사 파일의 일부분이란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했다. 2014년 1월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람이 항소를 했는데 FFCHS 이사장 Derrick Robinson이 이미 사보를 통해서 FBI 요원 2명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료를 공개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는 이유였다. 2014년 9월 사법부는 그 항소를 기각했다. 요구한 자료가 '~기록이나 자료는 법 집행의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 과정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라는 사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서 제외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미 정부는 해군 조선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포자가 주장한대로 장기간 체계적인 괴롭힘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 아니라 광기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알렉시스가 사망했으므로 가능한 법집행 과정은 보안 등급이나 해군기지에서의 안전관리와 연관된 민사소송 정도일 것이다. 사실 총기 사건의 피해자가족 중 한명이 소송을 한 건 제기했다.

<http://www.fairfaxtimes.com/article/20131213/NEWS/131219470/family-of-reston-woman-killed-in-navy-yard-shooting-filesuit&template=fairfaxTimes>

알렉시스의 주장대로 그가 심리전의 희생양이었는지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는 세상의 빛을 보기 힘들 것이다. 만약 그가 그런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었다면 그의 보안등급과 커다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법무성의 기각장은 정보공개법에 대응하는 천편일률적인 문구 뿐이다.

비밀에 쌓인 또 다른 결정적 단서는 알렉시스와 FFCHS와의 교신자료이다. 보도에 따르면 3통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FFCHS는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는 위장 기관에 불과하다. FBI 수사자료에 드러난 FFCHS에 관한 묘사는 아주 흥미로울 것이다. 하지만 법무성은 정보공개법 예외를 들어 또 공개를 거부할 것이다.

[\(https://www.muckrock.com/foi/united-states-of-america-10/dc-navy-yard-shooter-aaron-alexis-investigation-9441/\)](https://www.muckrock.com/foi/united-states-of-america-10/dc-navy-yard-shooter-aaron-alexis-investigation-9441/)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doj-denial-of-appeal.pdf>

무엇이 워싱턴 해군 조선소 총기난사 사건을 초래했든 한가지만은 분명하다. 해군과 FBI는 대중이 진실을 알기 원치 않는다.

시어도어 카진스키(Theodore Kaczynski-The Unabomber)

1978~1995년 까지 3명을 죽이고 23명을 부상시킨 연쇄 폭발물 사건이 발생했다. 시어도어 카진스키라는 수학자로 FBI에서는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를 유너버머

(Unabomber =

Univiersity+Airplane+bomber) 라고 불렀다. 카진스키는 그의 범행 동기에 관한 성명서를 썼는데 현대 기술로 드리워진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폭로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법원은 카진스키가 재판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것을 거부했고 재판을 그의 관점을 표명하는 연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탄원 합의서를 작성케 했다. 약속에 대한 답례로 사형언도를 안 내리고 카진스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여기까지는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고 잘 모르는 사실은 카진스키가 하버드대 재학시절 MKUltra라는 CIA의 비밀 실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2000년 6월 애틀란틱 지 Alston Chase의 기사는 카진스키의 폭력성이 심리적 고문의 결과라는 점을 파고든다. 그는 일련의 심리학 실험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시 극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효과를 실험하는 진짜 본질은 고지 받지 못했다. 아마도 CIA의 고문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리라. (<http://www.theatlantic.com/past/docs/issues/2000/06/chase.htm>)

아래는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실험의 여파로 즉각적인 정신적 퇴보를 보이는 단서는 없었다. 감정적 동요는 다른 문제이다. 정신 법의학 의사 Sally Johnson은 카진스키가 심한 심적 동요를 보이기 시작하고 반-기술적 견해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Murray의 실험이 적어도 몇몇에게는 크게 영향을 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실험이 끝난 후 행한 면담에서 어떤 학생은 마비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카진스키가 마인드 컨트롤의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 과대망상적 환상에 빠지지는 않았다. 머레이

의 실험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멀쩡하기까지 했다. 대학과 심리재단은 인간을 무의식의 기니피그를 다루는 듯한 실험의 공모자가 되길 원했고 실험 참가자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다.”

“카진스키는 정의가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하라고 한 것처럼 느꼈다.”

카진스키의 폭탄으로 희생된 26명은 비윤리적이고 은밀한 정부 실험의 후유증일 것이다.

13. 대상자 선정

“망치에게는 못만 보인다. 정보원, 경찰, 밀고자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거나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적어도 테러리스트 배아로 본다.”

– Bruce Fein, 미 부검사장, 레이건 행정부

2009년 Bruce Fein은 첩보수집 시스템인 지역데이터 연합센터는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련의 KGB와 동독의 슈타지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과 비교했다.

http://www.fas.org/irp/congress/2009_hr/040109fein.pdf

<http://www.businessinsider.com/heres-what-it-looks-like-when-the-dhs-enters-you-into-one-of-its-creepy-data-centers-2012-11>)

관료들이 하는 위협평가

경찰과 정보기관들의 무능함은 두 가지 위협을 발생시킨다. 9/11이나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처럼 진짜 위협은 감지해내지도 못하면서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제거한다. 진 시버그양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의 죄목은 인권운동을 지지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FBI한테 끊임없이 스토킹을 당하고 시달리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현재 우리가 가진 확실한 문제점 하나는 실질적인 위협이 거의 전무한 국내에 첩보 산업과 관련된 정부 및 민간 조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것들은 자기들의 일자리와 예산이 정당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쓴다. 결국 이것은 마녀사냥을 필연적으로 야기시킨다. 출세 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문제 말고도 첩보계와 경찰 쪽에서 출세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Bruce Fein이 지적한 것처럼 덜 고분고분하고 덜 굽신거리는 사람에 대한 뒤틀린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4년 2월 Mother Jones의 글에 Jon Schwarz는 첩보업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안보공화국은 이미 약간 광적인 직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광기는 어둠에서 피어났다. . . .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머리 속의 패턴 인식 프로그램이 심하게 뒤틀려 있고 항상 과민하다. 그들이 스파이나 첩보 전문가가 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오로가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뿔뿔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여생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http://www.motherjones.com/politics/2014/02/snowden-operation-spy-book>)

영국 위협평가 관료에 의한 블랙리스트

다음은 전형적인 조직스토킹의 피해자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 이 사건은 정부 관료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고립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신문기사 내용이다.

2009년 6월 영국 슬로우(Slough) 읍의 주민인 Jane Clift는 자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고소에서 승소했다. 2005년 동네 공원에 있는 꽃 침대를 훼손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나서 잠재적 위험인물로 분류되었는데 항소법원은 클리프트 양에게 £12,000 파운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클리프트 양은 위원회의 '반사회적행동 조정자'와의 전화 통화에 실망한 후 위원회에 분노의 편지를 날렸다. 위원회는 그를 폭력적 인물로 등록하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다.

<http://www.theguardian.com/uk/2009/jun/24/slough-jane-clift-libel-damages>

http://news.bbc.co.uk/2/hi/uk_news/england/berkshire/8117465.stm

2010 10월 Daily Mail은 그의 블랙리스트 등재로 받은 시련을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의 상세한 얘기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에까지 유포되었는데 의사, 치과 의사, 안경점, 도서관, 피임클리닉, 학교, 놀이방에까지 퍼져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혼자 대면하지 못하게 교육 받았다. 43세의 전직 복지사는 보모가 되려는 지원서도 내보지 못하고 10년간 살던 고장을 떠나야만 했다.”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195399/Woman-branded-potentially-violent-council-complainingdamaged-flowerbed.html>)

테러리스트 감시리스트

조직스토킹의 희생자 대부분은 그들이 테러와 연관 되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국토안보 관료들과 그런 관계에 얽혀 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정부의 테러검열 데이터베이스는 암암리에 퍼져 나가고 있다. 등재되는 이름은 공식 '테러리스트 검열 데이터베이스'에 정기적으로 추가, 삭제되고 있으며 몇 명이 등재되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드나 데이터가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2013년 12월 뉴욕 타임즈는 적어도 700,000 명의 이름이 올라있다고 보도했으며 AP통신은 2014년 7월 1,500,000 명 이상이 지난 5년간 리스트에 추가되었다고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13/12/01/sunday-review/who-is-watching-the-watch-lists.html?_r=0

<http://news.yahoo.com/us-terrorist-database-growing-rapid-rate-223303875.html>

뉴욕 타임즈 기사 중 일부:

“...정부는 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공식 명칭이 테러리스트 검열 데이터베이스인지, 작성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테러리스트 검열 본부는 테러리스트 감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등록 절차나 등재 인원수, 내국인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2014년 3월 ACLU에서 나온 테러리스트 감시리스트에 관한 보고서는 조직스토킹과 연관 있는 사람의 시선을 끌 만한 언급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내국인도 포함되고” “은밀한 기준과 증거에 따라 검증도 없이”

ACLU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도 모르겠다. 정부에서는 비행금지 리스트처럼 감시리스트에 올리는 기준을 못 밝히겠다고 했다."

보고서는 리스트에 오르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감시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고용기회가 박탈되고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ACLU의 제안이다: 궁극적으로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는 9차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말한 것처럼 거대하고 다양한 대테러기관 관료들이 공개도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수십만명의 사람을 추적하는 것에 고삐를 죄어야 한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aclu-u-s-govt-watchlisting.pdf>)

갖가지 감시 리스트

안보공화국을 이루는 요소가 다양한 만큼 감시리스트도 여러 사법기관, 정보기관에 산재해 있고 민/관 조직이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테러리스트 검열 데이터베이스와 비행금지 리스트 외에 경찰첩보대(LEIU)가 작성한 준 정부급 데이터 베이스도 있다. 루이지애나의 '개인별 종합기록' 데이터베이스처럼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파일도 관리한다. (<http://www.infowars.com/louisiana-createsdatabase-of-citizens-who-represent-a-risk-to-the-state/>)

2008년 7월 Salon지 기사는 빅 브라더가 관심 가질 만한 기사이다. 이것은 계엄령이 선포될 때 연방요원들이 우선적으로 검거할 문제소지의 인물들을 따로 관리한 리스트에 관한 기사이다: -1980년대부터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 자료를 수집해 모아 놓은 '핵심 주모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핵심 주모자' 파일은 방대한 개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NSA가 가로챈 개인의 은행, 신용카드 거래 내역과 FBI, CIA 및 다른 기관에서 사찰한 자료 같은 것들이다. 전직 첩보원에 의하면 헌정 중단, 계엄령 선포 같은 국가 재난사태시 군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비상사태 내부 보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한다. 5월 '레이더'지에 익명의 정부 관료 3명이 밝힌 바에 의하면 8백만명의 미국인이 '핵심 주모자' 잠재적 용의자로 올라있고 국가 비상사태시 감시를 강화하고 직접심문과 구류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http://www.salon.com/2008/07/23/new_churchcomm/)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the-last-roundup.pdf>)

감시 리스트에서 이름을 삭제하려면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blacklist.jpg>)

정부 감시리스트와 조직스토킹을 얘기할 때 진부한 '카프카의 방식'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카프카의 소설 '재판'의 주인공은 이름도 모르는 기관 요원에 의해 체포되고 무슨 죄목으로 고소되었는지도 모르고 재판에 넘겨졌다. 감시리스트에 올리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비밀에 쌓여 있고 누가 온갖 리스트에 올라있는지 정부는 시인도 부인도 안하는 공식 규정이 있다.

Rahinah Ibrahim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4/03/after-seven-years-exactly-one-person-gets-off-the-govt-no-fly-list/>)

Ibrahim 박사는 FBI요원이 실수로 서류의 네모 칸에 체크를 하는 바람에 비행금지 리스트에 올랐다. 박사는 7년간의 법정 싸움을 포함 총 9년간의 고투 끝에 감시리스트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었다. (2014년 2월) 그녀는 정

부가 자신을 왜 찍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대부분의 법정 싸움을 이어 나갔다. 판사의 조사 결과까지도 상당부분 편집되어 있었다. (http://www.wired.com/images_blogs/threatlevel/2014/02/ibraruling.pdf.)

수상한 사람 보고 할당량

덴버에 있는 ABC 지역방송국 뉴스는 2006년 7월 연방 보안승무원이 승객 중 일정수의 수상한 사람을 보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안승무원이 좋은 근무 평가, 월급 인상, 보너스, 특별 임무수행을 원한다면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 수상한 행동을 한 승객에 대한 감시탐색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국제 감시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공개적으로 경찰과 정보요원들이 수상한 사람들을 지목해야 한다는 직장내 압박을 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타내고 조직 축소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마녀사냥'을 하는 문화가 여러 기관에 만연하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http://www.thedenverchannel.com/news/marshals-innocent-people-placed-on-watch-list-to-meetquota>)

미래의 잠재적 테러리스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러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조지스토킹에 당선 된다고 한다. 제시할 법적인 증거는 물론 없는 상태에서 이다. 2006 5월 31일 캐나다의 주요 신문 중 하나인 The Globe and Mail은 그런 수법에 관한 기사를 냈다.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국내안보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과 권한은 인지된 테러위협과 비례하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광범위 해진다. 연방기관 계약 직원 Jeffrey Kantor은 구글에서 검색 한 번 잘못했다가 조지스토킹을 당하게 되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lacking-a-case-csis-disrupted-suspects-lives/article709568/>)

2011년 공군의 강사용 훈련 교범에는 공군 정보기관인 OSI에 보고되어야 할 수상한 사람 식별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http://www.judicialwatch.org/wp-content/uploads/2013/08/2161-docs.pdf>)

43페이지 "이데올로기 극단론자와 과격한 정치운동가" 식별법

- 영국 법령에서 해방을 부르짖는 식민지 주민
- 환경파괴와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 환경론자

45페이지에는 증오 단체를 식별하는 교범.

"많은 극단론자들은 개인의 자유, 권리와 세상을 어떻게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인지를 얘기할 것이다."

만약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믿고 동물학대를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원하는 사람을 혹시 만난다면 즉각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해서 감시리스트에 오르게 하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복수

2004년 10/10일 영국의 주요 언론 중 하나인 선데이 타임즈에 나온 사례처럼 조직스토킹은 내부고발자 처단이나 위협을 위해서 정보기관에서 이 수법을 쓴다. (<http://www.thesundaytimes.co.uk/sto/news/article241256.ece#>)

미 정보기관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복수로 자주 비난을 받는다. 2007년 ACLU 보고서에도 몇가지 사례를 자세히 기술했다. 다음은 일부 발췌이다.

“안보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위험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자가 된다. 그들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도록 제정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보안등급도 박탈당하고 직업도 잃고 평판도 땅에 떨어지고 흥계의 희생자가 되고 수사까지 받고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고 독불장군에 거짓말쟁이로 따돌림 당하게 된다.” (https://www.aclu.org/sites/default/files/pdfs/safefree/disavowed_report.pdf)

실험 혹은 훈련용

어떤 사람은 방첩 작전의 심리전법 연구 목적이나 훈련용으로 재수없게 선택되었다. 물론 문서에는 적법한 안보상의 이유로 선택되었다고 나올 것이다. 만약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많은 미국인과 캐나다 인을 실험용 쥐 취급한 CIA의 MK Ultra 실험에 대해서 읽어보라.

법 밖에서 복수

2013년 10월 Fortean Times에서 미군 관계자가 법 밖에서 복수 당하고 심리전법 기술을 시험하는 자세한 기사가 나온다. (<https://fightgangstalking.com/cointelpro-news-2013/#oceanblvd>)

실수

어떤 경우 순전히 무능한 관료 때문에 첩보 업계의 과녁이 되기도 한다. John Cook은 2011년 9월 이에 대한 기사를 썼다. CIA 분석가가 순전히 무고한 사람을 잘못 납치해서 고문한 경우가 있다. (<http://gawker.com/5842912/chief-of-cias-global-jihad-unit-revealed-online>) 일반 직장에서 저런 실수는 용납되지 않겠지만 관대한 CIA는 그 분석가를 승진시켰다.

- Ray Nowosielski와 John Duffy 기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은 Alfreda Frances Bikowsky로 9/11로 이끈 첩보상의 과오에 책임이 있는 자로 ~~~~ Bikowsky는 2003년 Khalid El-Masri를 납치, 약물중독, 동성추행, 고문을 한 CIA의 악랄한 헛짓거리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중에 El-Masri는 테러와 무관한 영똥한 사람으로 판명났다.

- AP 통신의 Adam Goldman과 Matt Apuzzo는 이번 해 초 Frances라는 중간 이름만 밝힌 분석가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El-Masri를 납치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 잘못에 대해 처벌받거나 해고당하기는커녕 CIA 국장 Michael Hayden은 Frances를 세계 지하드부대 책임자로 임명했다. 국장은 직원들에게 대테러 직책의 공로를 인정하여 Frances를 승진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 복수와 기업의 이익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 보복이 있다. 최근 익명으로 복수를 위협인지 장난인지는 알 수 없지만 911에 전화를 걸어 이웃집 주소나 적의 집 주소를 대고 응급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 (<http://en.wikipedia.org/wiki/Swatting>) 비밀에 쌓인 국내보안업계와 연출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수상하다고 신고하는 것처럼 위의 경우보다 좀더 복잡하고 음흉한 수법을 사용하려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경찰과 정보기관에는 권한 남용의 환경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 현재 무한한 테러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은 제한 없는 예산 책정과 확대된 권한 부여 및 활동의 은밀성 보장을 관계기관 및 업체에 해야한다는 정치 논리를 만들어낸다. 세련되게 다듬어진 감시 기법과 '비살상용 무기'기술의 악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 이론적으로 조직스토킹 수법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 보안업계나 경찰과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사업상 연출이 있는 사람이 Terrorism Liaison Officer (TLO)에 누군가를 수상한 사람으로 서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InfraGard 회원이거나 기관 요원의 친인척이라면 더 쉬워진다.

National Book Award 의 소설 부문 수상자인 Gloria Naylor양의 경우가 개인적인 원인으로 조직스토킹을 당한 경우이다. 그가 당한 조직스토킹의 경험은 반 자서전적 소설 '1996'이란 책에 잘 나와있다. '1996'의 리뷰 중에서: "1996에서 Naylor양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은둔한다. NSA에 형이 있는 고집불통의 이웃과 말다툼을 한 후 정부의 집중감시대상에 오르게 되는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데~~" (<http://www.amazon.com/1996-Gloria-Naylor/dp/0883782782>) (2016년 사망)

나의 경우처럼 부패한 경찰과 정보요원에 의해 조직스토킹을 당한 사례는 '조직적인 경찰의 학대-플로리다 피넬라스 카운티'라는 블로그에도 잘 나와있다. 이 블로그는 플로리다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데 지역 보안관 사무실에서 고참 경관의 화를 돋구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http://systematicpoliceharassment-pinellascountyflorida.com/>)

비슷한 경우로 2011년 캘리포니아 스타튼에서 시행정 담당관이 계약 협상에서 실패한 후 경찰에 의해 스토킹 당한 사건은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 2012년 플로리다의 경찰이 다른 경찰에 의해 당하는 사건도 보도된 사례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DnXIAkq8yE>) (http://articles.sun-sentinel.com/2012-12-26/news/fl-deputy-watts-lawsuit-20121224_1_law-enforcement-officers-margateofficers-police-officers)

위협평가팀과 개인적 보복

대상자로 선정되는 다양한 방법 중에 FBI가 고안한 위협평가팀(Threat Assessment Team-TAT)에 의해 지목되는 경우도 있다. 위협평가팀은 어떤 조직에서 한 사람이 위험한 인물인지를 가려내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조직이다. FBI는 이 조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전문가들이 모이거나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단기간에 역동적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위협평가팀은 직원이나 학생이 저지를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의 역동적 상황으로 변화시켜준다. 이 회합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경험, 두려움, 걱정들을 서로 나눈다. 위협평가팀은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보수집. 위험인물과 목표대상자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2. 면담. TAT 요원은 대상 인물과 연관 있는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3. 평가. 이 폭력적 위협이 개인과 조직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4. 결단. 팀은 지금 당장 혹은 가까운 시일내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표대상의 행동과 활동을 통제할 역할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경찰, 경비, 학원 경찰, 정신과의사)?
5. 후속조치.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TAT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인물과 활동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http://www.fbi.gov/stats-services/publications/law-enforcement-bulletin/february-2010/threat-assessmentteams>)

FBI는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할 사람들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수상한 자란 딱지가 붙기 싫다면 그들과 다른 의견을 보이지 말라. 마녀사냥을 당하기 싫다면

FBI는 직장에서의 놀림과 위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사회학자인 Kenneth Westhues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북미의 학교나 직장에서의 폭력사건은 집단 괴롭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의 집단 괴롭힘은 조직스토킹의 한 수법이다. 이것은 방첩작전의 파괴 전략과 연관이 있다. FBI는 국내 방첩업무에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이 문제에 대한 FBI의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 것이다. 위협평가팀의 권한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FBI가 침묵을 선택한 이유도 논란거리지만 한 판사가 업무수행이 벌써 악용되고 있는 것을 알아낸 경우가 있다.

2011년 USA Today는 이 조직이 대학에서 저지른 권한 악용의 사례를 다음과 같은 기사로 실었다.

관리자들이 위협평가팀을 제멋대로 이용한다는 비평이 있다. Valdosta 주립대학에서 한 학생이 퇴학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 주차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전 총장이 학생의 정신건강과 취업, 학점에까지 부당하게 수사를 요청한 경우다. 학생권리위는 자유발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무고한 주장을 했다고 학원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학교에 대한 경찰담화를 오싹하게 만든다. 교육개인권리기구 부회장인 Adam Kissel은 '보안상의 이유로 행동중단팀은 필요이상의 월권행위를 저지른다'고 했다.

http://usatoday30.usatoday.com/news/education/2011-01-13-colleges-keep-watch-for-violentstudents_N.htm?csp=34)

대테러 제거 업무의 공식 원리

'국가안보'라는 마술의 주문을 외기만 하면 어떤 비밀작전을 수행해도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미국의 성실청(星室廳 Star Chamber)인 해외정보감시법원(FISA Court)처럼 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들이 뭘 숨기는지 국민이 알지도 못하게 하는 일도 있다.

<http://www.wired.com/threatlevel/2013/04/secret-surveillance-court/>)

조직스토킹은 법 밖에서 보복하는 수법으로 대부분이 위법행위들이다. 하지만 FBI와 법무성은 위협이 될 만한 자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적법한 대테러 규정을 들어 이 행위들을 정당화 하려 든다. 공식입장에 가장 근접한 표현은 지금은 소멸한 작전인 '잡초 뽑고 씨 뿌리기' 작전일 것이다. 이 작전은 이름이 암시하듯이 경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선별해 이웃들로부터 제거하는 작전이다.

누가 수상한 사람이라고 결정하는가?

2013년 NSA에 의한 대규모 사찰의 한 면만 생각을 해보자. 적어도 12명의 NSA 요원이 그들의 배우자나 연인을 몰래 사찰했었다. 이것은 첩보업계 권한 악용 실태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http://www.slate.com/blogs/future_tense/2013/09/27/loveint_how_nsa_spies_snooped_on_girlfriends_lovers_and_fir_st_dates.html)

이런 사건의 폭로를 보고 정보기관은 “제한된 일탈행위”라고 할 것이다. 권한 남용은 사실이었지만 이런 폭로는 더 심각한 범죄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행해 졌을 것이다.

http://news.clearancejobs.com/2014/02/23/a-limited-hangout-allow-spies-to-tell-one-truth-to-hide-another/?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ontent=3987359)

“그 소식은 해마다 3,000건의 사생활 침해 사건이 있다는 얘기를 무색하게 만든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경찰공화국의 무기는 고위관료에만 주어지는게 아니라고 한다.

“어떤 분석가도 언제든지 아무나 노릴 수 있다. 나도 책상에 앉아서 누구든 도청할 권한이 있었다. 당신이나 당신의 회계사, 판사나 대통령까지도...”

<http://www.counterpunch.org/2013/06/26/why-the-ruling-class-is-so-upset-about-edward-snowden/>)

권력의 맛을 느껴 보기 위해: 동독의 밀고자

지금 국내사찰 프로그램의 사회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고안해 낼 필요는 없다. 시대적 선구자였던 동독의 슈타지는 문서로도 잘 나와있는데 이를 잘 살펴보면 된다.

수만명의 전문 첩보원 외에 슈타지는 100,000명 이상의 민간 정보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슈타지의 끄나풀들을 IM (Inoffizielle Mitarbeiter)이라고 불렀는데 비공식 협조자란 뜻이다. 동독 사회 전반에 IM들이 그들의 동료시민들을 공산정권을 위해 정보를 몰아다 나르고 있었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밀고자들 중 일부만 강요 받아서 했고 대부분은 자의로 한 것이 최근 연구에 의해 드러났다.

2009년 11월 슈피겔(Der Spiegel)지 기사는 사회의 쥐새끼 같은 습성을 파고 들었다.

“친구가 친구를 자발적으로 밀고하고 배우자가 서로 고자질도 했다.”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stasi-files-revisited-the-banalities-and-betraysals-of-life-in-eastgermany-a-659708.html>)

슈타지 문서를 관리하는 총책임자는 “슈타지는 대부분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그들의 정보가 쓸모가 없다고 하면 자기들이 의기소침해졌다.” 배신 뒤에 감춰진 진짜 동기는 의외로 단순하다. “동독정권에 대한 충성보다 개인적 이득을 위해 밀고를 했다. 단순히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이유였다.”

기사에 나온 대로 종종 사소한 사고나 오해에서 사람들을 지목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떤 경우는 부엌에서 서독 회사 푸딩이 나왔다고 고발당했는데 슈타지는 그를 해고시켰고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왔게 되었다.

14. 조직체계

“첩보 조직이 완성 되었으므로 하수인, 첩자, 밀고자들이 들끓고, 횡포한 권력의 기운을 받고 자라난 뱀들이 운 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잠자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기어들어 갈 것이다.”

- John Allen 하원의원, 외국인 치안법(Alien and Sedition Acts) 토론에서 1798.

조직스토킹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정확한 배후 조직체계를 가늠하기 힘들어 한다. 특히나 자기가 체계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지 얼마 안된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적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공모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피해자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허위 정보로 인한 교란 작전 때문에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일 것이다. 개요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범죄는 명목상 정보기관의 방첩 작전으로 결론 날 수 밖에 없다. 이 범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개입한다. 최상층부에는 직접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작전을 승인한 정부관료들과 정보요원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밑으로 여러 단계의 위임 받은 자들이 다양한 작전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FBI의 원조 Cointelpro 작전에서도 지역정부와 민간인들을 하수인으로 썼다. LA 타임즈 기사에도 보면 스와스모어 대학과 필라델피아 지역 흑인 인권 운동 단체를 사찰하기 위해 기관에서는 지역 경찰 서장, 우편 배달부, 전화교환수 등을 동원했다고 나와있다. (<http://articles.latimes.com/2006/mar/08/opinion/oe-jalon8>)

요원과 범죄자

조직스토킹에 가담하는 자들과 승인해 준 자들은 모두가 범죄자다. 스토킹이 연방법과 모든 주의 법에 저촉되고 여러가지로 위헌적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찰과 정보 기관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얼핏 말이 안되는 소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CIA 같은 정보 기관이 주기적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게다가 경찰과 FBI도 하수인들에게 범죄를 용인해 왔다. 경찰과 정보기관에서 왜 밀고자, 민간계약직원, 일반인 같은 외부인들을 그들의 방첩작전에 동참시킬까? 외주를 주고 발뺌하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정부 기관이 민간 업체에 외주를 주고 업체는 고나풀, 전직 경찰, 전직 정보요원들을 고용하여 더러운 일을 시키면서 공식적인 배후 몇 단계를 가린다. 또 다른 이유로 체계가 복잡해서 외부인이 이해하기 어려워야 이런 작전 수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거울미로”



정보기관과 경찰이 민/관을 아우르는 방첩 조직을 장려하는 것은 “A wilderness of mirrors.(거울미로?)”란 대테러 개념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개념은 T.S. 엘리엇의 시 “Gerontion”에서 나왔는데 CIA의 대테러 국장(1954~1974)이었던 James J. Angleton이 잘 써먹었다. 기본적으로 현재 수행되는 작전의 조직, 역학, 아젠다를 알아내기 힘들게 하려는 개념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방첩작전의 정체를 감

추어 불명료하게 보이도록 한다. (http://www.ncix.gov/publications/ci_references/docs/CI_Glossary.pdf)

돼지 여물통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려는 기생충 같은 정보-보안 군수업체들은 정부가 이윤창출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는 많이 동의할 것이다. 국내 첩보산업계도 경찰과 정보 요원들에게 돈 되는 고용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개인적인 권력 과시도 중요한 요인이다. InfraGard와 DSAC 같은 민/관 협력 업체를 통하면 조직스토킹이란 방법으로 개인적 보복도 가능하다. 2011년 스타튼시 행정관 예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경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일부 방첩작전은 FBI와 다른 정보기관이 직접 관여한다. 다른 작전은 정부와 계약한 민간 정보업체가 수행한다. 대기업을 위해 이런 업체들이 방첩작전을 행하기도 한다.

(http://www.democracynow.org/2013/11/25/spooky_business_us_corporations_enlist_ex)

월가 점령운동처럼 FBI와 민간업체가 같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오리지널 Cointelpro와 현재의 조직스토킹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국가안보”를 위해 고용된 수많은 민간 업체의 참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암묵적으로 승인한 조직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연방 법집행 기관과 정보기관 (법무성, 국토보안국, FBI, CIA, NSA, etc.)
- 2) 첩보분야 민간계약직원들(소위 감시자들“Surveillance Role Players”)
- 3) 군 방첩요원 (한국의 경우 기무사)
- 4) 경찰 끄나풀
- 5) InfraGard & DSAC 회원들(한국은 대기업, 대형언론사, 부패한 극우 개신교 대형교회 등) & 위협평가팀 위원
- 6) 테러신고센터 (Terrorism Liaison Officers)
- 7) 경찰
- 8) 구급대원
- 9) 흥신소

10) 이웃, 집주인, 상인, 직장동료, 심지어 피해자의 친척들. 어떤 경우 수사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자원하기도 한다.

11) 친구, 친지, 사업상 지인들도 비공식적으로 협조한다.

동독에서는 10), 11)에 해당하는 자들을 비공식 협조자(Inoffizielle Mitarbeiter)라고 칭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부패한 정치인, 기업가, 정보요원, 경찰, 밀고자, 아첨꾼, 사기꾼, 기회주의자, 정신병자들의 집합체이다. 공산국가 비밀경찰에 의해 발전된 이런 작전에서 우린 다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조직체계를 더 잘 알게 된다.”+

- MIT 교수 Noam Chomsky

<http://www.barnesandnoble.com/w/imperial-ambitions-noam-chomsky/1111651449?ean=9780805079678>)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blue-line3.jpg>)_

법무성, FBI, 국토보안국

미국은 국가안보 업무에 참여할 엄청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웃을 감시하는 업무부터 펜타곤에서 일할 사람까지. . . .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요원과 민간계약업자, 경찰 고나플, 유사정부기관인 LEIU, InfraGard 와 DSAC의 하청을 받는 첩보업체 직원들과 자원하는 단체도 그 일원이다. 보안산업계의 거대한 규모, 복잡성, 은밀성 때문에 방첩작전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일반인이 정확히 짐작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작전의 수행 체계가 어떻게 되든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DOJ)과 FBI, 국토보안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의 암묵적인 승인은 필요 불가결하다. 이 세 조직은 생체 조직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범죄 관련 정보 수집과 공유를 서로 같이 한다. (<http://www.fbi.gov/foia/privacy-impact-assessments/idsm>)

민간계약 직원들(감시자들“Surveillance Role Players”)

국방/안보 관련 구인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는 ‘감시자’ 모집 광고의 공식적인 정보나 성격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 구인 광고는 9/11 이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들이 하는 업무가 스토킹에 가담하는 가해자 역할인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국내 첩보업무에 기업과 연방기관의 결탁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냉전 이후 정부는 대기업과 결탁해서 자국민을 감시해 왔다. Wired지 기사:

“정부는 내국인 감시업무에 기업 참여를 증가시켜 왔는데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보호 법망을 회피하기 위함 이었다.” (<http://www.wired.com/politics/law/news/2004/08/64492?currentPage=all>)

Cointelpro 버전 2.0은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2013년 이후 5백1십만명 가량, 이 중 1/3이 민간계약직원) 많은 민간인들을 이용하고 있다. 국방/안보 구인 사이트의 감시자(SRP) 모집 광고는 유효한 '비밀취급인가증'과 대테러 훈련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몇몇 광고에서는 직업의 성격이 "경찰과 업무 협조"도 있음을 밝힌다. 어떤 경우 감시업무 고용주체가 '국방부'와 '국토안보국'일 때 도 있다. 이런 광고들은 연방기관과 정보기관이 스토킹 업무를 외주 업체에 의뢰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지지만 내부고발자 증언이 전무하므로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다. 하지만 훈련경험이 있는 감시자들이 재정지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고 방첩업무에 임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첩보업계는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므로 이 업무에 참여하는 자들은 보통 기밀유지 대가로 두둑한 보수를 받는다. (<http://www.msnbc.com/all-in/the-whistleblower-protection-act-not-creat>) 그래서 업체에서 양심적인 직원을 실수로 고용했다라도 합법과 불법사이의 이런 애매한 행위들을 폭로하기가 힘들어 지는 것이다.

Surveillance Role Player - 1099

Job Number: 405436
 Location: Mclean, VA
 Category: Intelligence
 Security Clearance Status: Active
 Security Clearance Type: Secret
 Experience Level: Regular
 Travel Required: 100%
 Shift: Rotating
 US Citizenship Required: Yes
 Posting Date: 05/23/2014

*** Independent Contractors*** We are seeking a diverse range of candidates to support a customer's training program. Candidates will operate as Surveillance Role Players (SRPs) in support of field training exercises within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WMA) and surrounding areas. Work schedules will vary according to customer needs, but SRPs must be available at least 8-10 hours per month to support training missions. SRPs should be trained in skills including and beyond basic surveillance detection and may have various levels of increasing expertise to meet the requirements.

SRPs are NOT required by the customer to be exclusive to one company. Even if you are already part of an existing team, broaden your prospects by joining the Spectral/BAE Systems Team.

Travel will consist of mostly Local travel within the WMA, with limited Long Distance travel.

Required Education:
Required Experience:
Required Skills:

- US citizen • Active Secret clearance with polygraph • Able to perform all duties, including driving • Possess, at a minimum, a high school diploma or equivalent • Availability to work flexible hours on a part-time basis • Physically fit and capable of walking and standing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 Experience working as a role player or team leader is highly desired

Preferred Skills:

Qualified personnel should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surveillance techniques and terminology. SRPs will conduct surveillance activities, evaluate students' performance, provide feedback and participate in exercise debriefings.

BAE Systems is a premier global defense and security company with approximately 100,000 employees delivering a full r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air, land and naval forces, as well as advanced electronics, security, 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s and customer support and services.

Information Solutions, based in Reston, Virginia, is among the 10 largest IT providers to

조직스토킹에 이들이 가담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는 FBI 요원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범죄나 테러단체와 전혀 연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서 자기네들이 왜 제거대상에 선정되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든 감시업무를 가장한 가해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은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며 맡은 업무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논리로 양심을 속이는 기회주의자임은 분명하다.

최하위 단계 가해자 훈련

감시자(SRP-Surveillance Role Players) 모집 구인 광고를 보면 지원조건에 '다른 이들 훈련' 조건도 있다. 이것은 조직스토킹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행위이다. 희롱 행위는 피해자와 일회적 상호작용만 요하는 심리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특정 대상만 윽거나 짜려보는 등의 무례한 행동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가담하는 사람들은 왜 피해자에게 이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의 정신을 점차적으로 침식시키는 '비접촉 고문'의 사소한 행위에 참여하는 감시자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직이다. 몇가지 이유에서 관련성 있는 직업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우선 파트타임직이 대중에게서 사실을 숨기는 것이 용이하고 사람 괴롭히는 일을 전업으로 하려면 새디스트적인 정보요원이 아니고서는 가치관의 혼란이 따른다. 사람 괴롭히는 일은 경찰이나 전업으로 할 수 있지 보통 사람은 한 주에 40시간씩 모르는 사람 희롱하는 일만 하고는 못산다. 파트타임으로 한정된 실질적 이유 중 하나는 복지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들 수 있겠다. 광고에 난 직업 특성을 보면 '경찰과 업무협조' 사항이 있다. 감시자들이 스토킹 가해자들이라면 당연히 경찰과 협동 작전을 펴야 한다.

이들의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주요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조직스토킹과 연관성은 추측에 근거한

것이지만 다음 세가지 질문은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다.

“감시자는 무슨 업무를 하는가?”

“조직스토킹 범행에 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

“스토커들은 어떻게 발각이 안되는가?”

감시자 모집 구인광고에는 어느 정부기관이 모집주체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조직스토킹은 지리, 사법, 합법, 도덕 등 여러가지 사항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경제적 이득에 눈이 멀어 피해자들을 도덕적으로 처벌한다고 주장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비밀스런 집단의 일원들로 이들이야 말로 비열하고 은밀한 이슬람 근본주의 탈리반(Taliban)의 또다른 버전이다.

감시자들의 위상

이들은 정보업계에서 1군 선수들이 아니다. 정보기관에서는 첩보 스파이들이 전통적으로 대테러 요원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다. 게다가 국내 방첩작전은 해외 방첩작전보다 한수 아래로 취급한다. 감시자 구인광고에 '대졸'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나 대부분 '고졸'을 요구한다. 다른 민간인을 괴롭히고 감시하는 정도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이므로 가능하다란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저 정도 보수를 받는 일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대테러 제거 대상도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이므로 가장 난이도가 낮은 작전 수준이다. 또한 상대 모르게 은밀히 수행해야 하는 '비밀작전'과 달리 상대가 알아차리도록 하는 '공개감시 수법'에는 수준 높은 첩보기술이 필요 없다.

골디락스의 죽 온도 같은 IQ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아는 것이 달갑지 않을 때가 있다. 좋은 예가 2013년 NSA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폭로할 정도로 총명한 직원을 고용했던 Booz Allen Hamilton 사의 경우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첩보기관의 정보기술 양상을 제대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찰 시스템의 비윤리성과 위헌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는 용감한 일을 했다.

감시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명령만 따를 지능이 있는 자를 원하지 그 목적까지 꿰뚫어 볼 만한 통찰력 있는 높은 지능의 직원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정확히 경찰 쪽에서 나타난다. 커넥티컷 뉴런던 경찰청에서는 한 경찰 지원자가 너무 똑똑해서 불합격 시켰다가 지원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만 더 높은 지능이면 충분하지 너무 똑똑한 지원자들은 신입 훈련과정을 못 견디고 그만두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2000년 8월 연방 상고심에서는 경찰 쪽의 손을 들어줬다.

<http://abcnews.go.com/US/court-oks-barring-high-iqs-cops/story?id=95836>

경찰

지역 경찰들의 법 밖에서의 실력 행사는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대도시 경찰청의 대테러 분과의 역사는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Red Squads'라 불린 이들은 범죄 조직 보다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잠입해 첩보와 제거 임무를 담당했다. 지금은 LEIUs(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로 이름을 바꿔 활동 중이다. 현재 경찰이 중화기로 무장해서 군대화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경찰이 민간인 사찰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겉으로 보기엔 안보 작전으로 위장해 위험적인 스토킹 수법을 써먹는 경우는 이전에도 설명한 2011년 캘리포니아 스타튼 시 행정관의 경우에도 잘 나타나 있다. 경찰에게 충분한 보상이 안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로 집요한 스토킹 수법으로 괴롭힌 사례로 TV와 신문 보도로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경찰이 심리전법을 익숙하게 이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어떤 경우 경찰은 다른 기관에서 조직스토킹 수법을 자기 관할에서 사용할 때 모른 척 단청을 피우기도 한다. 2011년 위키리크스와 토르(익명의 브라우저 네트워크)로 유명한 시민운동가 Jacob Appelbaum과 그의 연인의 사건에서 잘 나타난다. 정보기관에서는 그들의 비리와 범죄를 폭로하는 아펠바움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 연방 요원들이 시애틀에 있는 그의 자택을(연인이 혼자 집에 있었음) 서투르게 무단 침입한 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수사는 물론 초동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여러 번의 시도 끝에 ACLU가 개입하자 그 때서야 움직였다.

http://www.democracynow.org/blog/2013/2/6/part_2_daniel_ellsberg_and_jacob_appelbaum_on_the_ndaa_wikileaks_and_unconstitutional_surveillance

나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스토킹 경험을 자주 언급한다. 대테러란 이름 하에 행해지는 경찰의 많은 범죄는 이미 앞 장에서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소방관

이미 언급하기도 했지만 소방관들도 때로 스토킹 가해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다. 경찰은 이미 언론보도도 수차례 이루어져서 가담여부가 명확히 밝혀졌지만 소방관이 가해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명확하지 않을 듯 보일 수도 있다. 소방청은 2006년 국토보안국(DHS)과 안보 자료를 공유하는 체제를 출범시켰다. 완벽한 국가적 '거동수상자 보고' 체계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소방청이 이 체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인이 라면 소방관, 구급대원, 의료종사자, 공익사업 종사자들이 민간인 감시업무도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국가 첩보수집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다음 문서를 읽어 보기 바란다.

다음은 2012년 시카고 소방청의 Joshua M. Dennis 가 쓴 미국해군대학원(Naval Postgraduate School) 논문으로 소방청의 정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공교롭게도 NPS는 소방관 첩보 교육기관이다.

Fire Service Intelligence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fire-service-intelligence.pdf>)

2010년 5월호 *Homeland Security Affairs*를 보면 소방관이 건물 안전점검을 나오거나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출동해서 당신이 어떤 출판물을 읽는지 면밀히 관찰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한다. 소방청도 국가 첩보 자료 연합본부의 일원이다.

ABC TV 뉴스 보도: 부패한 소방관이 오하이오 부부를 괴롭히다.

2014년 5월 보도된 뉴스로 소방관들이 개인적 보복 수단으로 조직스토킹 수법을 사용한 사건이다. 부동산 문제로 이 부부와 연쟁을 벌인 소방서장이 7년간 소방수, 경찰, 이웃주민을 동원하여 집 주변에서 밤낮으로 크랙손을 울려대고 괴롭힌 케이스로 이 부부는 모두 녹화를 해두고 고소를 진행중이다.

(<http://abcnews.go.com/2020/video/couple-claims-entire-town-turned-23574799>)

대중적 이미지와 실제 모습

대중적 이미지와 실제 모습에는 현격한 차이가 종종 존재한다. 구급대원, 경찰, 소방관들은 좋은 사람 혹은 영웅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지만 그들의 악한 모습은 종종 과소평가되기도 한다.

부패 (http://news.yahoo.com/more-retired-ny-firefighters-copsarrested-pension-fraud-150615014--sector.html;_ylt=AwrTWf1RyAxTxVwAJuvQtDMD) 친인척 부정채용, (<http://www.latimes.com/local/lanow/la-city-probecalls-for-anti-nepotism-reforms-at-lafd-20140730-story.html>) 인종차별

(http://www.nypost.com/p/news/local/emts_are_pic_and_twisted_WHMpohpsktzM2epWfrXw9I) 잔학성, (<http://rt.com/usa/fbi-kelly-thomas-evidence-589/>) 인맥 문화 등을 고려하면 조직스토킹 가해 행위에도 쉽게 가담한다는 가정은 절대 불가능한 추측이 아니다.

15. 허위사실 유포 교란작전

“모든 정부는 거짓말쟁이들에 의해 운영된다.”

– I.F. Stone (<https://firstlook.org/theintercept/2015/05/07/new-documentary-legacy-f-stone/>)

“...만약 미국 관리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바보다.”

– 베트남전 기자회견에서 미국방차관보 Arthur Sylvester

(<https://theintercept.com/2016/05/20/pentagon-official-once-told-morley-safer-thatreporters-who-believe-the-government-are-stupid/>)

방첩 작전에서 허위 정보의 역할

국가대테러행정부에 의한 허위 정보 정의: U.S. Off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 (<http://www.ncix.gov/index.php>): 오도, 미혹, 분열, 개인이나 조직 혹은 정부의 자신감을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기관이나 방첩 기관에 의해 정교하게 고안된 가짜정보이다.

슈타지의 미국 버전 대테러 제거 작전은 대중 노출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허위 정보는 노출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동원된다. 허위 정보의 효과는 사람들이 대하는 정보가 심사숙고한 일련의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때 나온다. 부분적으로 역사와 정치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유이기도 한데 이들에게 안보에 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애기한테 마술을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속이기 쉬운 일이다.

앵무새 작전 (Operation Mockingbird)

슬프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에 의한 허위정보 유포의 역사를 잘 모른다. 미 정보기관이 1950년대에 조직적으로 대중을 속인 사건은 문서로도 잘 나와 있다. 아래는 위키피디아 설명 일부이다.

- 앵무새 작전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CIA의 여론 조작 캠페인이다. Cord Meyer와 Allen W. Dulles가 시작했고 델레스가 CIA 국장이 된 후에는 Frank Wisner가 그 자리를 이었다. CIA의 입장을 대변해 줄 뛰어난 언론인들을 모집했고 학생과 문화단체, 잡지사도 앞잡이로 이용하기 위해 후원 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CIA의 다른 작전 부서와 함께 외국언론과 정치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나갔다. 1950년대 초에 Wisner는 뉴욕 타임즈, 뉴스위크, CBS와

다른 언론사의 존경받는 언론인들까지 영입했다. 보통 CIA가 제공한 정보에서 나온 기사를 기자에게(알고 있던 모르든) 준다. 이런 기사들은 다른 기자들에 의해 반복 인용되어 퍼져 나갔다. ~~~

위즈너는 CIA의 이란정부 전복 음모가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다.

칼 번스타인(Carl Bernstein) 기자의 앵무새 작전 보도

http://www.carlberstein.com/magazine_cia_and_media.php

풀리처상을 수상한 칼 번스타인 기자가 보도한 앵무새 작전 기사도 있다. 뉴욕 타임즈 지가 어떻게 CIA 나팔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적은 기사의 일부이다:

CIA 관료 말에 따르면 뉴욕 타임즈 지는 신문사 중에 가장 쓸모 있었다고 한다. 1950~1966년 까지 10명 가량의 CIA 직원이 Arthur Hays Sulzberger 편집장이 결정한 1면 기사를 받아보았다고 한다. 1면 기사 배열은 Sulzberger가 정한 타임즈지 정책의 일부였는데 CIA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될까 싶어 제공되었다. Sulzberger는 Allen Dulles와 유독 가까운 사이였다. 회의에 참석해 본적이 있는 한 CIA 고위관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신들의 대화 수준이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서로 돕는다는 합의가 있었다. 여러 번 1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 재배열은 부하들이 맡아서 할 것이었고 대장은 세세한 것까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발뺌 할 수 있을 만한 그럴 듯한 내용이면 되었다."

앵무새 작전 시대 창기 언론

1960년대 미국 정치에 관한 가장 훌륭한 기자 중 한명인 Theodore H. White는 4백만부나 팔린 '대통령 만들기'란 책의 저자로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2015년 4월 Politico 지에서 Scott Porch가 그를 다루었고 The Intercept지에서는 Jon Schwarz가 중요 부분만 간추려서 기사를 썼다. 화이트는 정치인과 언론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사실 그들 모두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다음은 1960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 다 사기다. 전부가 다. 위나 아래나, 어디든지. 영화도 라디오도 나라도 책도 TV도 모두가 사기다. 단체도 대학도 학자들도 모두 사기꾼이다. 공무원도 기업가도 공산당도 흐루시초프도 모택동도 똑같은 사기꾼들이다. 이것은 큰 판의 게임이다. 여기에 두가지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기꾼들이 자기네들 거짓말을 참말이라더니 지네들이 그렇게 믿는다. 두번째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노가 치밀고 치밀어 폭발하게 되어있다."

FBI, NSA, CIA, DHS와 동맹 민간 계약업체들과 쓸 만한 앞잡이들이 사찰공화국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열 받은 뚜껑이 열릴까봐 노심초사 지켜보는 것이다.

http://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5/04/teddy-white-politicaljournalism-117090_full.html#.VWIKtdJVikr

<https://firstlook.org/theintercept/2015/05/28/legendary-journalist-private-fraudulent-everywhere/>

오늘날의 창기 언론

앵무새 작전은 조직적인 허위정보 교란작전의 예를 잘 보여준다. 또다른 위험은 한쪽에 치우친 보도에서 나오

는 비공식 허위정보에서 나온다. 주요언론의 첩보와 관계된 심심치 않은 왜곡과 기만은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출세지상주의에서 비롯된다. 첩보 문제에 관해 거짓말하는 정치기관을 변호하는 기자는 우익기자가 맞는데, 이래야 고위관료와 인터뷰를 따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로서 날카로운 비판의식보다는 정부 대변인 노릇만 하는 기자로는 전국공영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NPR)의 Dina Temple-Raston기자가 있다.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 거짓말만 늘어놓는 Temple-Raston 기자 얘기에는 2014년 8월 Glenn Greenwald 기자가 잘 해명해주었다.

[\(https://firstlook.org/theintercept/2014/08/12/nprs-dina-temple-raston-passed-cia-funded-nsa-contractor-independent-fear-mongersnowden-reporting/\)](https://firstlook.org/theintercept/2014/08/12/nprs-dina-temple-raston-passed-cia-funded-nsa-contractor-independent-fear-mongersnowden-reporting/)

NSA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에 관한 스노든의 폭로를 보고 정보기관 옹호자들은 스노든이 미국 안보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폭로로 말미암아 테러리스트들은 들키지 않고 그들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이런 주장은 억측이지만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은 빅브라더 국가 출현을 위한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NPR은 Recorded Future란 데이터 회사가 제공한 '명백한 증거'가 정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왈드의 기사에 나왔듯이 NPR은 Recorded Future란 회사가 CIA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회사라는 사실은 감추었다고 했다. 이런 식의 흔한 거짓말은 정보기관이 심각한 권한남용을 저지르고도 도망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린왈드 같은 진짜 언론인과 정부 선전도구인 Temple-Raston의 논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 동영상의 처음 7분간 시청을 권고한다. 두 기자는 정당한 절차없이 국민을 처형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설전을 벌인다.

Youtube. Glenn Greenwald's Infamous Battle with NPR's D...

거짓말에 대한 현 정부의 방침

앵무새 작전의 가치는 헌법과 정직함에 가벼운 태도를 취하는 정부 속에 아직도 잘 살아있다. Glenn Greenwald는 2010년 1월 Salon지에서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조지 오웰 식의 뉴스와 선전 방식을 취하는 놀랄 만한 기사를 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Cass Sunstein은 오바마의 절친한 친구로 2009년 9월부터 2012년 까지 국정홍보처장(Administrator of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을 지낸 인물인데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선스타인 2010년 5월

“선스타인은 2008년 하버드 로스쿨 시절 정부가 댓글 부대와 가짜 개인 후원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이트에 잠입시켜 정부에 대한 '가짜 음모론'을 옹호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문을 공동 저술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정부관료들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음모론자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선스타인은 정부가 댓글 요원들을 채팅방, 소셜 네트워크, 오프라인 모임에 은밀히 침투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정부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부 대신 비밀리에 활동하는 독자적인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의 주장을 지지하게 만들어줄 사람들에게 은밀한 자금을 대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작전은 그들의 역할을 숨겨온 유력 인사들의 책동을 언급할 사건이나 행동을 설명하는 가짜 '음모론'을 지지할 자들을 위한 것이다. (http://www.salon.com/2010/01/15/sunstein_2/)

Cass Sunstein의 하버드 논문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084585)

음모론

선스타인은 정부의 사기에 특별히 관대했던 전례를 들먹이면 불편해 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그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실 병적인 음모론에 의한 위협을 밝히겠다고 기사까지 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사나 써대는 관료들에 대해 병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아마 없을 것이다. 선스타인의 명확한 입장을 가진 사람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과 정부관료를 맹목적으로 신임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에 대한 의혹은 없을 것이고 정치인들의 거만과 도덕적 타락은 의미심장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4OliOztc52g>)

(<http://www.bloomberg.com/news/2014-01-30/how-to-spot-a-paranoid-libertarian.html>)

주요언론에서 조직스토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교란 전술 중 하나는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떠올리면서 진지한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 주요 언론기관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논리를 보이도록 고무된다. 1977년 4월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Murray N. Rothbard는 Reason지(<https://mises.org/daily/2809>) 기사에서 권좌에 있는 자들은 자기이익만 챙긴다는 말을 가차없이 부정하는 정치 기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준다.

“이런 현실적인 분석이 주류에서 벗어난 ‘극단론자’들에 의해 명확히 설명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대중의 눈에는 정당성과 신성함까지 지닌 국가기관의 관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이 대중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정신을 가져야 하는 신성함에도 중요하다. 비밀을 얘기하자면 이런 정신은 국가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에 짓밟혀버리고 정부의 근간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음모론에 일가견 있는 사람으로 Russ Baker 기자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뉴욕 타임즈지가 국민은 항상 정부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쓰레기 같은 기사를 반박한 적이 있다. 뉴욕타임즈지 기자의 '모든 음모론은 가짜이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베이커는 정부 범죄의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녀의 주장은 해마다 수 만명의 비밀 잠복요원, 살인 훈련을 받은 암살단원과 특공대원을 고용하는 나라에서 살인사건이나 상해사건의 배후가 조직 단위에서 비롯된 것 같은 의심을 절대로 하면 안된다는 소리나 같다.”

(<http://whowhatwhy.com/2013/05/31/new-york-times-warning-trust-authorities-on-boston-bombing-or-youre-nuts/>)

Michael Parenti의 음모론

예일대 정치과학 박사이자 역사학자인 Michael Parenti는 음모론에 관한 책도 썼다. 2010년 '숨은 권력의 이해'에 관한 강의에서 음모론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정부/민간 첩보업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싶다면 그의 강의는 통찰력 깊은 분석을 제공해준다. (<https://vimeo.com/11830789>)

정보기관 고위 관료에 의한 사기

Cointelpro시대 스토크들이 상대를 괴롭히며 내국인 제거 작전을 계속 할 수 있게 거짓말로 둘러댔 때 그들은 업계 상부에서 세운 그들의 윤리규범 또한 따르고 있었다. 철저하게 썩은 것을 말이다. 정보기관과 경찰이 저지른 사기의 역사를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여기서는 일일이 기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 사건 몇 개만 본다면 2013년과 14년 정보기관의 가장 고위직 3명이 거짓말을 하다 들통이 났는데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14년 8월 Reason지를 보면:

<http://reason.com/archives/2014/08/07/the-intelligence-communitys-secrets-and>

CIA 국장 John Brennan은 고문 여부를 수사하고 있던 상원을 사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CIA 감찰관은 사찰이 사실이었다고 고백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CIA 국장에게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힐난했다고 한다.

국가 정보(National Intelligence) 국장 James Clapper는 거짓말만 했을 뿐 아니라 상원 대규모 사찰 청문회에서 위증도 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잇따른 폭로는 클래퍼가 부인한 대규모 사찰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했다. 클래퍼는 위증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게 "대답을 좀 더 잘하지"라는 심한 힐책을 했다고 한다. (<http://rt.com/usa/obama-dni-clapper-lie-485/>)

NSA 국장 Keith Alexander 는 두 번이나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부인했다. 그는 데이터 수집 사실을 부인했는데 나중에 진실이 폭로가 되자 이번에는 그로 인해 54건의 테러 음모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 Patrick Leahy가 반박하자 숫자는 과장 되었다고 자백했다. 나중에 대통령 Review Board는 실제 테러위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바로 해직되었는데 사실은 2014년 3월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월급 \$600,000(7억원 가량-연봉 84억정도) 달러를 받고 금융업계로 이직했다. (<https://www.eff.org/deeplinks/2014/06/top-5-claimsdefenders-nsa-have-stop-making-remain-credible>) (<http://www.emptywheel.net/2014/06/20/keith-alexander-to-earn-600000-a-month-for-preventing-ddos-attacks/>)

“평행시공”

경찰과 정보기관의 도덕적 부패 정도와 헌법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 정직에 대한 무관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무집행 하는 자들은 어쩌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정책으로 거짓말을 한다' 는 표현을 상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3년 8월 로이터 통신에 이걸 잘 보여주는 보도가 있었다. 마약단속국(DEA) 의 특수작전부(Special Operations Division -SOD)는 국내외에서 도청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여러 기관에 전송한다. SOD는 여러 기관과 수사 공조도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로이터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SOD에서 받은 자료는 피고측 변호사, 검사, 판사도 모르게 출처를 비밀에 붙여야한다고 했다. 이 정책은 평행 시공(parallel construction)이라고 부르는데 초동수사 때부터 작성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조작하라는 SOD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원은 특정 차량을 세워 수색을 할 수도 있다. 만약 수색이 구속으로 이어진다면 공식 정책대로 무작위로 차량을 세웠다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 평행 시공은 도덕적 평행 우주를 추구한다. 거짓말이 윤리적으로 건전하게 들리도록 말이다. 로이터 보도처럼 'DEA를 감독하는 법무성의 대변인은 언급을 회피했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다.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8/05/us-dea-sod-idUSBRE97409R20130805>

기업형 흑색선전

정보기관과 업체는 비평가들을 사찰하고 음해를 하는 더러운 일을 해줄 계약직원을 고용한다. 2013년 6월 18일 네이션 지는 '베렛 브라운의 이상한 경우'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정보계약업자들은 상공회의소 비평가들과 Glenn Greenwald 기사를 음해하기 위한 모략을 꾸몄다.

"주목적인 상공회의소 감시위원회 같은 비평가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정기재정자료를 돋보이게 한 허위문서를 진보단체에 전달해 위원회를 대적하게 만든다. 그리고 문서가 허위라는 것을 폭로해 감시위원회는 거짓말만 하는 믿을 수 없는 기관이란 인상을 심어준다. 게다가 가짜 내부인사를 심어 놓는 계획도 했다. 2명의 가짜 내부인사를 만들어 하나는 다른 자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면서 다른 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이런 교란 작전은 위키리크스와 Glenn Greenwald 기사를 상대로 쓰이려고 했다. 이런 사실이 해커들에 의해 폭로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그저 '음모론'으로 일축했을 것이다.

<http://www.thenation.com/article/174851/strange-case-barrett-brown>

2012년 USA Today에서 선전운동을 하도록 돈 받은 펜타곤 계약업자에 대한 취재를 한 기자와 편집장이 흥계에 휘말린 기사가 보도되었다. "가짜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이 만들어져서 위키피디아, 각종 자유게시판, 블로그에 그들 이름으로 된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들 이름으로 가짜 홈페이지도 만들어 지고...." 소유자를 모르는 프록시 서비스가 사용되었고 존재하지도 않는 주소로 홈페이지도 등록되었다고 한다.

<http://usatoday30.usatoday.com/news/washington/story/2012-04-19/vanden-brook-locker-propaganda/54419654/1>

미국판 슈타지에 의한 4가지 주요 교란 전략

내국인을 상대로 한 대테러작전을 숨기기 위해 4가지 주요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각 전략은 한가지 전술의 변형이다. 최종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의 정신상태와 지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1) 정부 위장단체 (Government Front Groups)

첫번째 전략은 피해자를 위한 가짜 지원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Freedom From Covert Harassment and Surveillance (FFCHS)와 Organized Stalking Informers (OSI)가 대표적인 위장기관이다. 이 단체들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첫째, 피해자들이 합법적인 지원단체를 결성하여 국회와 언론으로 하여금 조직스토킹을 조사하지 못하게 자기 단체 속에 가두어 두기 위함이다. 둘째,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말이 진지하게 들리지 않도록 이상한 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두 단체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내용도 형편없고 편집도 희한하게 되어있다. 홈페이지나 문서는 가해자들에 관한 정보는 모두 배제하고 주요 언론보도나 방첩 활동과의 연관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방첩작전에서 쓰이는 또 다른 위장 단체의 기만술은 적법한 조직을 설득하여 기관의 연출 기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영국의 Firecracker Films라는 영화사는 조직스토킹을 걱정하는 듯한 다큐멘터리를 2013년에 제작했는데 기만술이었다.

<http://www.firecrackerfilms.com/>

2) 교란 사이트

두번째 전략은 정신병자 같은 주장과 쓸데없는 자료들로 가득 찬 다수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다. 역시 목적은 피해자들이 망상증을 가진 바보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수없이 많은 위장사이트를 보다 보면 공통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MK Ultra는 빠진 채 마인드컨트롤만 추구장창 외치는 사이트들인데 대중이 방첩작전에는 정작 관심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용되는 이미지도 정신 이상을 연상시키는 이상한 그림 투성이 이다. 이들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해자들을 요원으로 부르면서 제임스 본드의 악한 사촌 정도로 매력적인 인물들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찰들이 군사 작전에 참여할 때 자기들을 특수전 부대원으로 상상하는 현상과 유사하다. 댓글을 다는 아이디는 '루시퍼'나 '네메시스'(복수의 여신)같은 것들이 많고 이미지도 죽음 숭배를 나타내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 Douglas Valentine 기자가 CIA 요원들 성격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인 '겁쟁이 정신병자'와 잘 어울린다.

"혼자 지하세계에 갈 용기가 없는 소시오패스들이 CIA에 찰싹 들러붙는데 거기서 힘센 '죽음 숭배' 교도들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http://www.counterpunch.org/2013/09/16/the-cia-the-press-and-black-propaganda/>)

이런 이미지는 국가대테러행정부(Off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의 공식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사상검열의 가치를 찬미하는 공식 포스터이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ci-poster.jpg>)

3) 댓글부대(사이버상 가상인물)

세번째는 조직스토킹을 다루는 제대로 된 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감시하는 사이버 요원을 두고 공격하는 것이다. U.S. Off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는 사이버 요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사이버공간에서 다른 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료를 모으며 정체를 숨기고 작업하는 인물이다.

조직스토킹이란 주제가 인터넷에 나올 때마다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회의적인 의견이 등록되는 것을 볼 것이다. 게시판에 정치 주제 게시글이 올라와 설전을 벌이는 것처럼 별로 잘 알려진 주제도 아닌 조직스토킹에 댓글부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반박을 하는 것을 보면 의아할 것이다.

LiveLeak에서 전직 CIA 비밀작전 훈련을 받은 사람과 DIA 분석가가 밝힌 대로 FBI와 CIA에는 소셜미디어를 검열하고 사용자들 사이를 파고들어 조작하는 일을 하는 도깨비가 있다고 한다.

(http://www.liveleak.com/view?i=6f2_1355313666)

Lynnae Williams양은 CIA를 떠나면서 조직스토킹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보면 결국 미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지경까지 FBI로부터 지독한 스토킹과 시달림을 당해왔었다.

(<http://ciacorrupt.blogspot.com/>)

대부분의 주요언론은 정부의 허위정보 유포를 담당하는 사이버 요원들을 파헤쳐 보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고맙게도 어떤 언론사는 진실을 폭로해주기도 한다. NSA 대규모 사찰을 폭로한 가디언 지는 2013년 7월 Stratfor 같은 민간첩보업체들의 컨소시엄에서 기업고객을 위해 인터넷에 거짓말을 유포하는 사이버 요원에 대해 보도했다:

"[첩보회사들은] 소셜미디어에 침투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대중을 오도할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공인물을 만들어

냈다.”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jul/01/cyber-intelligence-complex-useful-idiots>)

Jeremy Hammond 해커는 미국 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전문사기꾼들과 첩자들의 존재를 폭로하고 10년형을 살고 있다. 진실을 폭로한 Barrett Brown 기자도 재판을 기다리며 텍사스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종신형을 연도받을 위기에 놓여있다. 브라운 기자는 Project PM이란 단체를 찾아내 정보보안업체들의 허위사실 유포 전략을 보도한 바 있다. (http://wiki.echelon2.org/wiki/Main_Page) (http://wiki.echelon2.org/wiki/Persona_Development)

증거: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문서

2014년 2월 NBC News와 The Intercept 지에 실린 Glenn Greenwald의 기사를 보면 NSA의 영국 자매기관인 GCHQ에서 허위사실 유포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제거 대상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평판을 깨뜨리는 허위사실 유포가 주 전략이었다고 한다. 조직스토킹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방 정보기관들이 자유게시판 등에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https://firstlook.org/theintercept/2014/02/24/jtrig-manipulation/>) 문서에 나온 전략에는 대상 개인과 단체가 올린 인터넷 문서에 ‘가짜 깃발’(문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꽂아 놓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GCHQ는 피해자가 만든 것처럼 꾸민 가짜 블로그들도 만들고 동료나 이웃, 친구들에게 가짜 이메일도 보냈다고 한다. Greenwald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법망 밖에서 감시 감독도 없이 은밀히 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

Greenwald가 또 지적하는 바는 이런 전략은 국가안보와 전혀 관련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정부가 부인하는 정치활동을 밝히려는 전과도 전혀 없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쓰였다.

4) 신문에 허위기사 보도

마지막으로, 네번째 전략은 신문에 조직스토킹이란 것은 망상병을 앓고 있는 마음속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는 기사를 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그들의 악마 공유하기”

세간의 이목을 끈 다음 기사의 배경을 모르고 허위사실 유포 기사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뉴욕타임즈 기사 속에는 조직스토킹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보도를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다. Sarah Kershaw 기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없는데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모르나 2016년 2월 사망했다. (http://www.nytimes.com/2016/02/27/business/media/sarah-kershaw-former-times-reporter-dies-at-49.html?_r=0) 어떤 경우든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거나 허위사실 유포인 줄 모르고 그냥 보도한 경우 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그들의 악마 공유하기” 는 2008년 11월 13일 보도된 조직 스토킹에 관한 뉴욕타임즈 지 기사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기자와 편집장은 4명의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와의 정신병에 관한 인터뷰로 조사를 제한한다. 당연히 정보요원이나 경찰 같은 보안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전혀 없다. Kershaw 기사는 FFCHS의 회장이라고 밝힌 자칭 피해자 Derrick Robinson과의 인터뷰만 실고 있다. 기사는 조직스토킹의 가해자 신원이나 다른 언론 보도에는 관심이 없다. FFCHS란 단체는 위장단체답게 그들 회원들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인상만

주는 자료만 포스팅하고 있다. 사내지를 발간해서 피해자들에게도 주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다. 법무성은 FFCHS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회피하고 있다. 기자는 방첩작전과의 연관성을 전혀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동참한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우연인지는 모르나 한달 후 ABC 뉴스도 조직스토킹에 관한 비슷한 보도를 내보낸다. 음모론에 관한 얘기도 하면서 NY타임즈 지에 나왔던 같은 정신과 의사인 Ken Duckworth와의 인터뷰도 내보낸다. (<http://abcnews.go.com/print?id=6443988>)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언제든지 그들을 기관에 넘겨버릴 비밀 첩자라고 믿는 집단이다. 이런 문화가 조직스토킹 지원단체와 인터넷 카페, 사이트를 태동케 했다."

NY 타임즈지 기사 이후로 FFCHS같은 위장 단체와 사이트, 블로그 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하지만 슈타지식 심리적 테러 전법을 쓰는 스토킹에 관한 기사도 자주 올라오게 되었다. 2013년 NSA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의해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의 사찰 당하는 얘기는 신빙성을 더하게 되었다.

16. 진실을 둘러싼 침묵의 벽

“파이트 클럽의 첫번째 규칙은 파이트 클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 1999 영화 Fight Club에서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규칙을 깨뜨리기도 한다.

산타크루즈 경찰청 Larry Richard 경관과 캘리포니아 지역 TV 뉴스 기자가 2011년 1월 조직스토킹에 대한 보도를 낸 적이 있다. 리차드 경관은 정부 주도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고, 보도 이후 정보공개법 요구에 따른 질문 서신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조직스토킹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주요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어 지지 않는다. (<http://www.youtube.com/watch?v=DB-MlhPmXqk>)

F.B.I와 법무성의 침묵

현재 진행되는 FBI 방첩 활동이 대중에게 들키지 않고 계속 수행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작전의 은밀성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 때문이다. 처치위원회 조사 보고서에서도 나온 Cointelpro시대 때의 수법 상당수가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그 작전도 사실 누군가가 용감하게 FBI 사무실을 뚫고 들어가 관련 문서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비밀에 부쳐 졌을 것이다. 전직 FBI 고위 관료였던 Ted Gunderson이 조직스토킹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정보기관과 경찰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찰 수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고 법무성의 비호 아래 적법한 것처럼 제스처만 취하는 테러방지법을 마련하면서 Cointelpro시대 때 보다 법적인 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졌다.

법 밖의 보복을 '수사', 스토키를 '정보제공자'라 칭하는 이 작전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수사'는 '평가'라는 단어로 대체되면서 용의자의 기준을 대폭 낮추었고 '의심 행위보고서'에 기초한 '안보 서신'은 법원 소환장을 대체했다. 이제 조직스토킹은 헌법 수정 4조항과 스토키 처벌법에 관계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aclu.org/ten-most-disturbing-things-you-should-know-about-fbi-911>) 게다가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FBI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에서 제외되면서 직원들의 양심 선언을 막아왔다. FBI의 범죄사실을 폭로하려는 사람은 심각한 법적인 반격을 각오해야 한다. 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와 같은 일은 아직까지 FBI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CIA의 Ted Gunderson도 퇴직 후에 조직스토킹을 폭로하긴 했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식 문서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다. 정부 스캔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보기관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것이다. 2014년 1월 외교부 관리였던 Peter Van Bure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아직 정보기관의 가장 악하고 불법적인 면은 모른다. 스노든이 1백7십만건의 NSA 문서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이 중 상당량의 문서는 아직 조사도 분석도 안 이루어졌다. FBI나 CIA 혹은 다른 정보기관에서는 아직

그런 폭로가 없다. NSA에 관한 엄청난 폭로가 더 많은 베일이 벗겨지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줘야 한다.”

[\(http://www.tomdispatch.com/post/175792/tomgram%3A_peter_van_buren%2C_we_have_to_destroy_our_constituti_on_to_save_it/\)](http://www.tomdispatch.com/post/175792/tomgram%3A_peter_van_buren%2C_we_have_to_destroy_our_constituti_on_to_save_it/)

정보-보안 업체의 침묵

대테러업무에 참여하는 경찰과 정보기관 직원들은 기밀유지 서약에 입이 묶여 있는데 이 기관들에 의해 고용된 민간 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감시업무담당 직원 모집 공고 요구조건에는 대테러훈련 뿐만 아니라 기밀취급인가도 요구하고 있다. 빅 브라더를 위해 국내 첩자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밀고자가 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버는 돈도 마다하지 않는 것 같다.

증인들의 침묵

정부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들에게는 침묵을 요구하는 압박이 가해지고 거절할 경우 본보기를 삼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쉽게 폭로를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2013년에 제작된 4분짜리 다큐멘터리 트레일러를 보면 내부고발자가 직면해야 하는 블랙리스트 등재, 사찰, 법적인 전쟁 등이 잘 나와있다.

Promotional video for *Silenced: The War on Whistleblowers*

Silenced: The War on Whistleblowers | The Pass...

FBI 요원들은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에게 수사중이니 입다물라는 함구령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BI가 이용하는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NSL)은 행정 소환장인데 수신자에게 함구령을 명한다. (<http://www.wired.com/threatlevel/2012/05/nsl-challenges/>) 정부는 법원이 후원해주는 이런 서신 수집 만 건을 보냈는데 조식스토킹에 가담했던 집주인이나 이웃주민, 직장동료들이 침묵하는 것은 감옥에 가기 싫어서 일 수도 있다.

정치 지도자들의 침묵

고등학교 윤리(한국은 사회) 시간에 정부의 3권 분립에 대해 배웠을 것이다. 아마 요즘도 가르칠 것인데 미국은 사실 힘센 행정부가 다 장악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백악관이 꼭대기이지만 실제로 나라의 수장은 정보기관 및 그 친구들과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장을 임명하거나 해임시킬 권한이 있다. 또한 정보기관도 대통령의 전화를 도청하고 성생활과 온갖 비리를 파악하고 있다. 이론상 국회는 정보기관을 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다들 교과서에 나온 사실과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을 분간할 줄 안다고 믿는다.

1970년대 미국인들은 FBI의 불법 방첩 작전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COINTELPRO)와 CIA가 불법적으로 행한 인체 실험, 고문, 암살에 대해서도 다들 들어 보았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불법적인 작전의 공식 조사는 처치위원회(프랭크 처치 상원의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요한 사실은 의원들도 증언한 것처럼 민간인에 의해 폭로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사실은 처치 위원회 의장이었던 프랭크 처치 자신도 NSA에 의해 사찰 당했고 그 자신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2013년 9월 기밀 해제된 문서에 의하

면 NSA는 그의 해외 전화와 통신문까지 도청하고 있었다.

http://www.washingtonpost.com/lifestyle/style/declassified-documents-show-nsa-listened-in-on-mlk-muhammad-ali-and-artbuchwald/2013/09/25/1a018178-262b-11e3-b3e9-d97fb087acd6_story.html

첩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미래의 부패한 정보기관과 민간계약업자들이 앞선 기술을 가지고 국민들을 사찰할 것 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만약 민주주의와 인권에 이토록 심각한 위협이 될 줄 알았다면 이런 감독체계를 처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하원은 정보기관에 대한 특별 위원회를 각자 가지고 있다. 두 위원회에는 3-40명 가량의 사람들이 정보기관들을 감독하도록 배정되어 있는데 다들 기밀유지 서약에 따라 정보기관들의 위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발설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고 있다. 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의회의 위원에게도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의회 의원들의 정보기관에 대한 두려움

국회의원들도 정보기관을 무서워하고 그런 이유로 그들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안하려는지도 모른다. 2014년 3월 두 의원이 그런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걸 강하게 암시한 적이 있다. Rand Paul(R-Kentucky)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보기관은 권력에 취해 있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권력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http://www.politico.com/story/2014/03/rand-paul-berkeley-speech-nsa-cia-104804.html>

그 다음날 하원 소수당 Nancy Pelosi (D-California)의원은 정보기관과 다투면서 다음처럼 말했다:

“당신은 아무 대가없이 싸우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고있으니까요. 대통령은 정보기관들을 무서워해요.”
<http://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4/03/nancy-pelosi-whenlegislators-take-on-the-cia-they-come-after-you/284524/>

몇몇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보기관에 취하는 비굴한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선 때는 진보적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 비밀유지, 대규모 민간인 사찰, 드론 폭격, 리비아 공세와 내부고발자 핍박을 지지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물론 결과 속이 다를 수도 있다. 기회주의적 부정직함은 정치인들에게 흔한 일이니까. 아니면 더 해괴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CIA 분석가였다가 시민 운동가가 된 Ray McGovern은 2013년 6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바마가 CIA를 무서워한다는 말을 한적이 있다.<http://mondoweiss.net/2013/06/renege-d-progressive-promises.html> :

“나는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무서워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첫째, 그는 마틴루터에게 일어난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 . . CIA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청취자 중에 James Douglass의 JFK의 비밀을 안 읽어 보신 분이 있다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아직 그 비밀을 밝히지 않았습시다만 제임스 더글라스의 글을 읽고 이전 조사도 살펴보고 최근 의회 조사도 알아보았다면 케네디가 후르시초프와 내통하고 동남아를 공산주의에 넘겨주려 하고 카스트로와 놀아난다고 믿던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친했던 CIA 국장 Allan Dulles가 케네디 암살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http://dissenter.firedoglake.com/2013/11/22/jfk-secrecy-the-unspeakable-forces-of-the-national-security-state/> 증거가 있냐구요? 네 있습니다. 케네디가 죽기 한달 전쯤 1963년 말까지 베트남에서 군대 철수를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파들은 1965년을 주장했지요.”

지역 정치인들의 두려움

Mike Rothmiller와 Ivan G. Goldman은 그들의 책 'L.A의 비밀경찰' 에서 어떻게 LAPD가 들키지 않고 수십년 간 무법의 사찰을 해왔는지를 밝히고 있다. LAPD는 Daryl Gates 청장 시절(1978~1992) 시 의원들과 L.A 타임즈 기사를 공갈 협박하는 방법을 썼다:

http://www.truthdig.com/eartotheground/item/the_secret_police_of_los_angeles_daryl_gates_paranoid_legacy_20100419#below(2014)

“L.A 경찰은 사람들의 삶과 명성을 망쳐 놓고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며 살인도 서슴지 않았고 수많은 범죄를 은닉해왔다. L.A 경찰은 현금 봉투를 주고 받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 경찰 권한을 이용해 총체적 부패를 저질렀다. 수십 년간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자, 유력인사 등 경찰청장이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법사찰 해왔다.”

기득권을 비난하기 꺼려하는 기득권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관례 같은 것이 있다. 부패와 무능을 폭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질까 봐 그런 일을 꺼린다. 2014년 5월 Glenn Greenwald 기사는 인터넷지에서 하버드대 총장과 재무성 장관을 역임한 Lawrence “Larry” Summers가 뉴욕커에서 전 하버드 법대 교수 Elizabeth Warren에게 한 말을 인용한 바 있다.

“Larry Summers는 Warren을 데리고 워싱턴에서 저녁을 먹으러 가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 주류로 남을 것인지 비주류로 내동댕이 쳐질 것인지. 그런데 주류로 남고 싶다면 우리 규칙을 지켜야한다. 우리끼리는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

<https://firstlook.org/theintercept/2014/05/23/response-michael-kinsley/>

사법기관의 침묵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처럼 해외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SA Court)의 재판관들도 기밀유지 서약에 묶여서 첩보 업계의 비리를 누설 못하게 되어있다. 미국판 성실청(星室廳 Star Chamber)인 해외정보감시법원은 FBI가 요구하는 것은 자동 승인을 해주면서 국내사찰 업무는 헌법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는 FBI가 숨기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국민들도 알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FBI는 모든 비밀을 보자기에 싸두고 풀지 않는다.

<http://www.wired.com/threatlevel/2013/04/secret-surveillance-court/>

<http://www.motherjones.com/politics/2013/06/justice-department-electronic-frontier-foundation-fisa-court-opinion>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침묵

한가지 상상을 해보자. 만약 당신이 ACLU의 변호사이고 가족도 있고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민간인을 스토킹이나 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비리를 캐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일 용의가 있는가?

게다가 그들은 무슨 범죄든 저지르는 교활한 자들이다. 법적인 후원을 제공하면 성가신 일에 휘말리게 되므로 아마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작전을 세상에 공개하여 말벌집을 제거하려 든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ACLU는 조직의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을 쉽게 하려 들지 않는다. 발뺌 못할 공식 문서와 함께 주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음모론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직스토킹에 대해서는 더 할 나위 없다.

1971년 FBI 사무실에 들어가서 최초로 Cointelpro를 세상에 밝힌 사람 중 한명인 Keith Forsyth는 무단 침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FBI가 하고 있는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아무도 믿으려 들지 않았다.”

<http://www.nytimes.com/2014/01/07/us/burglars-who-took-on-fbi-abandon-shadows.html?hp&r=0>

언론의 침묵

조직스토킹은 주요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메이저 언론사들은 정보기관과 경찰이 꺼려하는 주제는 잘 보도하지 않으려는 무언의 규칙이 있다. 그래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문서가 없는 한 음모론으로 의심 받는 사항들은 보도하지 않는다. NSA사찰도 그랬고 펜타곤 건도 그랬고 Cointelpro도 그랬 듯이 밥상을 다 차려서 갖다 주었을 때 보도를 했다.

폴리처상 수상 기자 Seymour Hersh는 2013년 9월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스노든의 폭로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편집장들은 문서를 좋아하죠. 문서가 없었다면 그런 얘기는 거들떠도 안 봤을 걸요. 그래서 스노든이 뒤집어 엮을 일을 한 거죠.”

정부의 위협도 한몫을 한다. 대중에 공개되길 꺼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려 들면 언론에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조준을 한다. 통화 감시와 내부고발자 처벌이다. 법무성에서 기밀정보 제공자 신원을 확보하겠다고 AP 통신의 2달간의 통화 기록이 비밀리에 수집된 것이 2013년 5월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해진 칼 번스타인 기자는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http://www.politico.com/story/2013/05/inside-the-ap-fear-determination-91338.html?hp=t1_3

FBI의 이런 노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AP 통화기록 사건으로 믿을만한 소식통들이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량이 대폭 줄었다고 보고되었다. AP 사장 Gary Pruitt은 이르기를 “소식통들은 정부의 검열을 싫어한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 작가 협회의 PEN American Center 2013년 11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출판 작가들이 군대 비리, 집단 감금, 마약 정책, 월가 점령 운동, 정부 비판 등의 주제로 글을 쓰면 자가 검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40%는 소셜 미디어 활동을 자제하거나 심각하게 그럴 생각이라고 응답했으며 33%는 일부러 그런 주제를 피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일부는 아예 그런 주제를 전화나 이메일로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http://www.pen.org/sites/default/files/Chilling%20Effects_PEN%20American.pdf) 또한 28%는 그런 주제로 인터넷 검색도 하지 않으며 논란이 될 만하거나 의심받을 만한 웹사이트 방문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의 내부고발자 기소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기소를 감행했다. 기자 보호 협회의 워싱턴 포스트 전직 편집장은 2013년 이런 동향을 우려하는 기사를 실었다:

“2009년 이후 6명의 공무원과 스노든을 포함한 2명의 민간계약직원이 1917년의 방첩법 (Espionage Act)에 따라

기밀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앞선 모든 정부의 기소를 다 합쳐도 3명 밖에 없었다. 기밀 유출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더 하고 있다.”

“낭비, 사기, 남용”을 폭로하면 내부 고발로 간주된다. 그러나 불법적인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중단시키거나 처벌해야 할 죄로 간주된다. 이것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일을 해야하는 정부를 도와줄 언론의 역할을 극도로 제한하게 만든다.”

국경 없는 기자회견은 2014년 2월 언론 자유도 면에서 미국을 46위로 선정했는데 이는 루마니아와 하이티 중간이다. (<http://www.thewire.com/global/2014/02/us-takes-sharp-dropworld-press-freedom-rankings/357992/>)

왜 많은 기자들이 정보기관과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조사를 꺼리는지 의문이 든다면 CIA가 비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던 사실을 폭로한 워싱턴 포스트의 풀리처상 수상 기자 Dana Priest의 다음 3분 짜리 동영상을 보기 바란다. 그녀는 이로 인해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Dana Priest on Backlash from Uncovering CIA S...

“누군가는 말하지 않았겠냐”의 오류

Russ Baker 기자는 정부가 은밀히 저지르는 범죄를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누군가는 말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내부고발자는 바로 이미지 추락 작업을 당하고 억압받고 더한 일도 당한다. 국가안보기관에서 비리를 증언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값비싼 대가를 치루면서 다른 양심선언을 어렵게 막는다.” (<http://whowhatwhy.com/2014/02/02/classicwho-someone-would-havetalked-right/>)

베이커 기자는 John Kiriakou의 예도 들었다. 전직 CIA 관료로 ‘고문은 CIA의 공식 정책’이라고 폭로한 그는 직장도 잃고 3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무도 얘기 안해요. John Kiriakou를 보세요”

펜타곤 문서를 공개해서 유명해진 내부고발자 Daniel Ellsberg도 같은 얘기를 한다:

“범죄를 저지르면 거짓말하고 은폐를 하게 되는데 그걸 덮기 위해 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숨기게 된다. 민주정부에서의 잘못된 행동은 비밀로 부쳐지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안보관련 종사자들은 예외다. 아무도 말을 안한다.” (<http://www.ellsberg.net/archive/secrecynational-security-whistleblowing>)

퍼즐 맞추기 실패 (Failure to Connect the Dots)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스토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여러 보도 자료의 연관성 인식이 잘 안되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중요한 기사와 보도내용은 ‘보도 자료’ 파트에도 열거되어 있다.

2004 PBS 시사 프로그램 NOW는 예전 FBI의 방첩작전 Cointelpro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 - “Cointelpro의 수사가 이전 느슨해진 결과로”- 얼마 후 뉴스위크 지는 펜타곤이 국내 사찰 업무를 조용히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2007년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Magazine)는 군사정책과 무기 체계에 능통한 한 언론인이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지성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전자 비살상용 무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보도를 냈다.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의 Stockton 시행정 담당관이 계약 협상

에서 실패한 후 경찰에 의해 스토킹 당한 내용이 보도 되었고 2012년 고속도로 근무 경찰 Donna Jane Watts가 다른 관할 구역의 여러 경찰들로부터 조직스토킹을 당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앞의 두 경우는 경찰이 조직스토킹 수법을 잘 알고 있었고 법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란 것을 인식하고 벌인 사례를 보여준다. 2013년 the Nation과 CounterPunch 잡지는 FBI의 Cointelpro 작전이 다시 부활했음을 확인하였다. Democracy Now는 불법 방첩 작전이 전현직 경찰, 정보요원에 의해 은밀히 시행됨을 보도해왔다.

과거 10여년 간 수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슈타지 같은 정보기관과 FBI가 예전에 쓰던 방식과 유사한 수법으로 감시 당하고 시달려왔다는 증언을 해왔다. 요즘 들어 전국 각지의 지역 신문과 뉴스에서도 조직스토킹이 간간히 보도가 되고 있다. 각각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증언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같은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인식해도 좋을 것이다. **조직스토킹이란 주제를 더욱 파고 들어갈수록 기자들이 이 범죄의 범위와 피해자들이 받는 충격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극심한 부패와 맞서기 싫어함

정부 관료와 공무원들의 범죄를 알리는 방해물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한 기관이 엄청나게 썩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려 한다는 것이다. Russ Baker 기자가 1991년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연락장교 (National Security Council liaison) Gary Sick의 저서 'October Surprise'를 돌아보며 이 현상을 다룬 적이 있다. (<http://whowhatwhy.com/2014/04/04/dont-get-dont-want-hear-truth/>) 1980년 대선전에서 로널드 레이건 캠프 총책 William Casey는 헤즈볼라에게 52명의 미국인 인질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안 풀어 주는 조건으로 군사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카터가 유약하고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함이었다. 베이커 기자는 케이스의 거래가 실상 반역죄였다고 설명한다. 게리 식은 이런 사건이 어떻게 언론과 워싱턴 정가에서 파묻혔는지 설명한다. (<http://www.nytimes.com/1991/12/22/books/the-case-for-aconspiracy.html>)

- 워싱턴에서는 사실 자잘한 정치적 사건엔 익숙해 있다. 그러나 프랑스 시인 Andre Chenier가 말한 것 같은 차원이 다른 죄가 있다. "les crimes puissants qui font trembler les lois (죄가 하도 심각해 법도 떨게 만든다)" 우리는 공금 횡령을 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기반 자체를 체계적으로 망치는 증거를 마주하게 되면 상상력과 용기가 주춤하게 된다. 대부분의 제3자들은 그릇된 판단 쪽으로 쏠려 눈앞에 놓여진 증거를 애써 외면하고 믿기 거부하다는 결론을 내리려 한다. 그래야만 상대하기엔 극도로 위험한 일로 여겨지는 일을 떠맡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되기 때문이다. -

히틀러의 어린 양

마지막으로 어떻게 비겁함과 부정직함이 정부지원 범죄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Primo Levi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 적이 있다. '수사'로 위장한 작전에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는 비슷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뱃지를 흔드는 자들에게 뒤가 켤기는 협조를 하고 함구령 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의 말을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히틀러 시대에는 아는 것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 듣는 문화가 있었다. 입과 귀와 눈을 닫고 국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공범이 아닌 듯 아무것도 모른 채 했다. (<http://www.newrepublic.com/article/119959/interview-primo-levi-survival-auschwitz>)

17. 대응책

A. 종합전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전술을 공격하는 것이다.”

- 손자병법(The Art of War)

1. 빛을 싫어하는 바퀴벌레.

조직 스토킹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보기관과 경찰, 군수업체 그리고 이들과 연합한 기업이나 조직이 모든 정부 기관 위에 군림한다는 것의 간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바람직한 체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다수 위반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조직스토킹은 연방법과 50개 주의 스토킹 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가해자들이 비밀리에 이 짓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같은 조직스토킹 수법이라도 공산국가였던 동독에서 쓰인 것과 국내에서 쓰이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땅에서는 불법이다.

COINTELPRO 시대 때에도 기밀문서가 폭로되면서 처치 상원의원에 의한 진상 조사 위원회가 출범했다.

현재 FBI와 다른 기관들의 참여에 의한 조직스토킹의 많은 전략 전술은 슈타지의 수법과 거의 유사하다. 동독에서는 감시자들이 나라에 넘친다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국민통제를 이어 나갔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했다간 정부 기관의 권한 남용에 따른 철퇴로 이어지므로 꼭꼭 숨겨야만 한다.

바로 조직스토킹의 아킬레스 건은 폭로이다.

정보기관과 경찰의 관점에서 보자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 곤궁에 처하여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게 되면 완벽한 작전 수행이었다고 쾌재를 부르게 되어있다. 그런 일들은 실제로 종종 일어났고 FBI의 심리전이 잘 먹힌 경우로 인권운동을 하던 여배우 진 시버그(Jean Seberg)를 들 수 있다. 시버그의 경우 단기간에 작전이 잘 먹혀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전국 신문에 온통 도배가 되면서 사실상 실패한 작전이 되어 버렸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도 밀고자가 우글거린 동독에서처럼 많은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부터 정보기관에 의한 이 은밀한 범죄의 실상에 대해 잘 설명해 주면서 그들을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양방향으로 진격하도록 한다. 한쪽은 가까운 지인들부터, 또 한쪽은 전국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면서 말이다. 양쪽 다 저들에게 치명적이다.

2. 예상된 위험 감수.

스포츠 경기나 전쟁의 교전 중에는 보통 지고 있는 쪽이 더욱 공격적 전략을 취하게 된다. 스포츠에서도 이기고 있는 쪽은 조심스런 플레이를 하고 점수가 뒤진 쪽이 위험하지만 더욱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친다.

피해자들은 불규칙적인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행동을 최대한 예측하기 힘들게 하면서 단순하지만 창조적이고 대담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스토킹 피해자가 방어적이면서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이다.

이 작전의 성공은 피해자가 아무데도 안 나가고 계속된 경계태세를 취하도록 겁 먹게 하는 전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심리 상태로는 장기간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없고 가해자들의 범죄를 알리는데 써야할 정력과 시간과 재원을 분산시킨다.

조직스토킹은 비열하고 불법적인 범죄이지만 전술적으로까지 멍청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다고 알려진 효과적 전략을 취하면서 부패한 정보기관과 연합한 동맹군들로부터 풍부한 재정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보장받는다.

이제 이 게임 양상을 가해자들과 지도부 심기가 불편하도록 만들면서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거침없이 달려가는 가해세력에게 태클을 거는 방법은 폭로이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선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로 범죄자들의 추잡한 범죄를 알리는데 주력하다 보면 그들의 가해행위를 상당수 줄어든게 하는 이점 또한 있다.

시민 운동(Civil Disobedience-납세 거부 같은 시민 불복종)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가해자들로부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경기에 쳐도 우린 이제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행위는 지양하라. 다행히도 여기에 소개된 방법은 100% 합법적이다. 몇가지 아리송한 것이 있지만 모두 비폭력 시민 운동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불의에 항거하는 조직적인 비폭력 시민 운동은 윤리적으로도 합법적이다. 부패한 정보기관과 경찰, 보안 업계로부터 희생양이 된 사람들에게는 더한 명분이 있다. 바로 정당방위다.

조직스토킹(더 엄밀히는 부패에 대한 항거)에 대항하는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시민운동의 철학까지 깊이 파고 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꼭 해야 한다면 Henry David Thoreau의 'Civil Disobedience'부터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버밍햄 교도소에서의 서신(Letter from Birmingham Jail)"도 주제에 잘 부합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시민 운동가였던 점 외에 마틴 목사도 FBI의 무자비한 스톱킹 기법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

이다. 부패한 경찰, 정보기관에 의해 피해자가 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이 시절 FBI국장이었던 에드가 후버는 현재 한국의 김기춘처럼 죽어라 욕을 먹고 있지만 마틴 목사는 국경일까지 지정해 국민들이 추모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스트라이샌드 효과

여기 나오는 방법들은 피해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해자들을 고민에 빠뜨리기 때문에 소개한다.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란 어떤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게 오히려 관심을 더 끄는 현상을 말한다. 웹상에 해안 침식을 설명하기 위해 12,000장 가량의 캘리포니아 해안가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 중엔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의 말리부 저택 항공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2003년 스트라이샌드는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항공사진 삭제를 요구한 소송을 진행했는데 결국 패소했다. 이 소송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더욱 더 그녀의 집을 검색하게 되었다. 소송 전에는 이 사진이 총 6번 다운로드 되었는데(2번은 바브라의 변호사가 함) 소송 후 한달간 42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어졌다.



Barbra Streisand's Mansion

조지스토킵 가해자들은 공공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들의 범죄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피해자가 이 범죄를 노출시키려는 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데 이 점을 파고 들어야 한다. 의도치 않게 스트라이샌드는 펜타곤의 내부 고발자 Daniel Ellsberg가 직면한 법원 소송에 도움을 준 셈이 되어 버렸다.

3. 장비 사용.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적 대응은 스토킹에 쓰이는 감시와 학대를 어느 정도 무력화 시킨다. 몰카 감지기나 경보시스템, 금고, 도청 감지기, 방해 신호 발생기, CCTV 등을 설치할 여유가 있다면 하라. 단 가해자들의 간섭이 없도록 최대한 지능적으로 해야 한다. 인터넷 주문보다는 친한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구입, 설치를 한다면 24시간 감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본인 포함 주변 사람들 전화는 항상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휴대전화는 배터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항상 감시도구로 사용된다.

하지만 보안장비 설치에는 두가지 제약이 따른다.

하나는 비용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으므로 효과가 뛰어난 장비 구입 능력이 없다. 조직 스토킹에서 재력이 풍부한 사람이 제외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장비에 의존한 대응은 훨씬 기술적 지식이 풍부한 가해자들과 자금 지원을 받는 자들의 또다른 대응을 야기한다. 어쨌든 경제적 능력 내에서 최대한 첨단 장비로 무장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방법이다.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4.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끈질겨야만 승리할 수 있다. 부패한 권력 상층부에서 국민들의 인터넷 사상검열을 강화하려 하지만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정보는 웹상에 넘쳐나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사찰 장치나 주요 언론기관 선동가들도 예전처럼 주류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 진실을 알리는 내부 고발자, 시민기자, 블로거, 대체언론, 소셜미디어가 넘치는 상황에서 갈라치기로 여론몰이 하거나 진실을 잠재우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위키리크스(WikiLeaks)같은 조직이나 어나니머스(Anonymous)같은 운동은 대중으로 하여금 뉴욕타임즈(한국의 조중동)에서 펜타곤 기밀문서를 폭로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해주었다. 뉴욕 타임즈도 이것을 시인했다:

“뉴스는 더 이상 보도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특종은 언론 지도 어디에서도 터지고 관심있는 독자는 어디서도 나온다.” – David Carr, New York Times, June 16, 2013

조직스토킹의 목표는 세상 사람 모두가 피해자를 싫어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고립되게 만들고 심리적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거짓된 인상에 속지 마라. 스토킹에 가담하는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에 둘러붙어 기생하는 밀고자들로 넘쳐나는 동독 같은 공산 국가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은 출세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전체주의자들에게 대항하고 국가 통제 강화보다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진보론자나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한국은 뉴스공장과 다스퇴이다의 김어준, 주진우 기자 등.)

5. 다른 피해자와의 연합.

피해자들끼리 정보 공유나 이 범죄를 드러내기 위한 인터넷 모임에 참여해 연합세력 구축을 도모하라.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도 드물며 정확한 정보 공유도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이다.

흑인은 NAACP란 연합조직이 있고 이슬람들은 CAIR(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란 연합이 있어서 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가야할 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스톡킹 피해자들은 고립되어 흩어져 있고 인터넷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댓글부대에 의한 사실과 교묘히 뒤섞인 허위 역정보들로 인해 많은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국회의 관심이라도 끌려면 온라인 조직 등을 통해서라도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조직스토킹 웹사이트들을 보면 온통 쓰레기 정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정보들인 것 같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자료를 보면 U.F.O 납치나 외계인과 연관을 짓는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기자나 일반인이 이 주제로 검색을 하다 보면 피해자라는 사람들은 망상증 환자나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결론 내도록 해놓았다.

진짜 피해자가 블로그 하나 더 만들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더 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홈페이지 개설이나 페이스북 오픈은 본인도 적극 장려한다. 하지만 허위정보로 가득 찬 인터넷 상에서 서로 고립되어 흩어져 있기보다는 피해자 모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뭉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질문에 진짜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댓글들을 많이 달아야 한다. 일일이 대답하기 힘들다면 여기 있는 자료 중에서 쉽게 대중에게 어필될 수 있는 대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인데 위장피해자를 항상 조심하라.(미국의 조직스토킹 피해 정부 단체인 FFCHS도 위장단체이다) 피해자를 자처하면서 조직스토킹에 경찰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대표적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법한 피해자 단체 구성을 위해 청원을 넣고 시위를 하는 것이다. 당연히 프락치의 개입이 있겠지만 내가 아는 한 아직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B. 첩보기술(Tradecraft)

이 단어를 넓은 의미로 피해자 관점에서 본다면 본문에서 사용되는 모든 방법이 해당된다. 원래는 첩보작전에 임하는 요원들이 사용하는 일련의 전문적 방법이다.

1. 요새화

주거공간을 잠재적 외부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런 방법은 침입자들로 하여금 더 위험한 방법을 강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완벽한 가택보안과 장비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하겠지만 추후 시간이 된다면 이 주제에 관한 기술과 방법에 관해 연구해보는 것도 추천하는 바이다.

다음은 기본적인 몇가지 추천사항이다.

기본적인 방법을 잘 준수하라.

- 모든 창문은 안에서 잘 걸어 잠그고 밖에서도 테스트 해본다.
- 출입구가 여러 곳이라면 외출 전 한곳만 제외하고 안에서 자물쇠로 모두 잠궈서 한 곳만 출입 가능하게 만들라.
- 출입구에 간단한 경보장치를 설치하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원격조종 가능한 복잡한 장비보

다 간단한 장치가 더 따기 힘들 수도 있다.

- 디지털 기록장치의 발전으로 감시카메라 설치가 더욱 용이해 졌다. 가능하다면 출입구 주위에 여러 각도의 카메라를 설치하라.
- 허락 없이 침입하는 자를 놀래 쫓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강구해보라.
- 거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침입자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할 결심을 했다면 비용도 싸고 대단한 기술을 요하지도 않는 방법이 있다. 본인과 무고한 사람에게는 해가 안되는 장소에 면도날을 심어 놓거나 낚시 바늘이나 깨진 유리 등으로 침입자에게 부하를 걸리게 하라.

2. 잠적

스토킹 피해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첩보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히고 정보업계를 연구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아서 여기서는 몇 가지 개념만 살펴본다.

첩보업계에서 감시 대상자가 시야에서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 '잠적' 과정이 있다. 일시적으로라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통해 최대한 복잡한 장소를 통과하여 감시를 따돌리는 방법이다.(복잡한 교차로나 카메라 없는 버려진 장소, 출입구 많은 지하 주차장 등을 통과하여)

당연히 추적가능한 기기나 GPS가 심어져 있는 자가용은 버려야 한다. 휴대용 기기는 배터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전원을 꺼 놔도 소용이 없다. 피해자의 얼굴이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면 CCTV를 쳐다보는 순간 위치 노출이 된다.(모자나 선글라스로 얼굴을 최대한 가려라)

깨끗한 잠적의 몇 가지 요소는 전문적이지만 대부분은 일반 상식적이다. 세부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하고 지능적으로 진로를 짜야 한다. 당연히 스토킹 피해자들에게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 장기적 잠적을 계획한다면 익명으로 살 장소와 도처에 있는 감시 장비를 따돌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마도 경찰과 정보기관의 극심한 부패를 세상에 노출시키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이다. 이것은 감시공화국에서 이익을 얻으며 살아가는 쥐새끼들을 제거하는 정치적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애국자가 피해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말이다.

다음은 잠적에 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한 사이트이다.

<http://nymarketing.wordpress.com/2011/05/16/counter-surveillance-the-cleaning-run-and-evading-capture/>

http://www.spytrainer.com/Articles/Art_Cleaning.htm

심도있는 연구를 원한다면 다음도서를 추천한다: Surveillance Countermeasures

다음기사는 감시 장비에 관한 것들이다.

"How To Disappear: 9 Ways To Avoid The Creepy Surveillance Systems All Around You"

(http://www.huffingtonpost.com/2012/09/18/how-to-disappear-avoid-surveillance_n_1872419.html)

3. 컴퓨터, 휴대 전화 보안

부패한 전현직 경찰과 정보기관 요원들은 그들이 괴롭히는 개인들보다 훨씬 풍족한 재정,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많이 노력을 하더라도 완벽한 컴퓨터, 통신 보안은 사실상 힘들다. 통신장비가 안 뚫렸을 것이란 생각은 절대 하지말라.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대화는 계획없이 찾아간 전자기기 없는 한적한 곳에서 얼굴 맞대고 하거나 필담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장비를 이용한 사찰을 암호화 하여 어렵게 만들 수는 있다. 통신보안도 주택보안처럼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뚫고 들어오지만 항상 대문을 잠그는 것처럼 보안 장치는 해 놓아야 한다. 완벽하게 접근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최대한 지키도록 하자.

익명의 웹브라우저

어느 정도 익명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싶다면 무료로 제공되는 토르(Tor)란 브라우저 (<https://www.torproject.org/>)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NSA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사용하여 유명해짐) 토르 서버를 경유해 해킹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윈도우가 이미 화면 해킹 방식으로 뚫렸다면 별 의미가 없다) 일상적인 검색은 비교적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모질라의 파이어폭스(Firefox-<http://www.mozilla.org/en-US/firefox/new/>)가 있다.

USB 드라이브나 SD 카드, DVD로 부팅하는 운영체제

토르 네트워크 팀에서 개발한 Tails(<https://tails.boum.org/about/index.en.html>)란 운영체제로 해킹이 기존 운영체제보다 어렵다.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 되고 컴퓨터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만약 해킹한 증거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그들의 범위를 입증할 용의가 있다면 온갖 보안 검증 툴, 마음만 다르게 먹으면 해킹 툴로 변하는 KALI LINUX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익명의 검색엔진

전쟁 범죄자 헨리 키신저가 의장으로 있는 구글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회사측 주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검색엔진이라고 하는 Start Page (<https://www.startpage.com/>)가 있고 검색결과를 추적하지 않는 것으로는 DuckDuckGo 도 있다.

인터넷 검색 기술

대부분의 검색엔진 결과는 단순하다. 인터넷상의 자료를 더 깊이 파고 들려면 연구용 도구와 기술을 배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2007년에 나온 정보로 오래되긴 했지만 검색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Untangling the Web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untangling-the-web.pdf>)

암호화된 메일

메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는 Pretty Good Privacy가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Pretty_Good_Privacy) 이 프로그램의 이점만 손쉽게 사용하고 싶다면 Hushmail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https://www.hushmail.com/>) 단 상대방도 이 메일 계정이 있어야 한다. 두 사용자간 메일이 암호화 되어 전송된다 하더라도 정보기관에 소속된 해커들과 수학자들이 다 뚫어 버리긴 할 것이다. 하지만 최대한 귀찮게 만들어 피로도를 증가시켜주는 것도 현명하리라. (후시메일은 요즘 유료로 전환된 것 같음)

또 다른 암호메일 서비스로 Riseup(<https://help.riseup.net/en>)이 있는데 음성, 화상 채팅과 VPN(일종의 현재 위치 위장술)도 지원한다.

방화벽 테스트

Gibson Research(<https://www.grc.com/x/ne.dll?bh0bkyd2>)는 컴퓨터 보안에 정통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바로 방화벽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페이지 아래쪽의 "Proceed."를 누르고 다음페이지에서 "GRC's Instant UPnP Exposure Test."를 누르면 된다.

Ad-Blocking 프로그램

모두 알다시피 인터넷 광고는 사용자 검색에 따른 맞춤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가해 세력은 피해자 IP 어드레스를 이용해 이 맞춤광고를 피해자 희롱도구로 삼는다. 어느 날부터 스토키가 우리집 마당 안으로 생명보험 전단지를 넣기 시작하더니 인터넷 팝업 광고로도 검색도 해본 적 없는 같은 보험 광고가 계속 뜨도록 했다. 이것은 증거를 안남기는 전형적인 조직스토킹 수법이다. 왜냐하면 전단지와 인터넷 광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해봐야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이다.

성가신 광고창은 다음 프로그램으로도 잠재울 수 있다.

Ad Muncher (<http://www.admuncher.com/>)

전자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

정보기관의 사찰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고 싶다면 비영리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 문서를 읽어보기 바란다. (<https://ssd EFF.org/>)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

민간인 사찰을 반대하는 비영리 단체로 (<https://epic.org/privacy/tools.html>) 개인정보 보호 툴을 추천해준다.

암호화된 음성통화

일부 전화기는 암호화된 통화와 문자를 제공한다. 2014년3월 PC Magazine 기사를 읽어보면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454563,00.asp>)

직접 대면

모든 전자 통신기기는 뚫릴 가능성이 있다.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간 장소에서 비밀에 붙일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실내에서 "백색소음" (white noise)을 발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싱크대 물을 최대한 세게 틀어 놓고 그 옆에서 조용히 속삭이듯 대화하면 대화 내용을 걸러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4. 첩보 장비

구입 가능 장비

이 회사(<http://www.brickhousesecurity.com/category/counter+surveillance.do>)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것 같다.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장비를 이용해 증거 수집이나 가해 행위를 포기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감지 장비

물카나 도청장비 감지기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해보니 \$80에서 전문 첨단기능을 보유한 \$2,700짜리 장비까지 다양하게 사용들을 하고 있었다. 판매자들은 장비 액수에 따라 보통 수당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비싼 장비를 추천할 것이다.

아래는 온라인에서 떠도는 기본적인 정보이다.

- 감시장비는 보통 자기장과 전기"소음"을 발생시키고 RF(radio frequency-전파)가 발생하므로 이런 것을 감지할 장비를 구입하라.
- 감시장비로 집안을 샅샅이 훑어보라. 보통 물카는 천장이나 벽 뒤에 설치된다. 새로 생긴듯한 구멍을 특히 잘 살펴보라. 하지만 눈에 안 띄게 어디라도 설치 가능하다. 볼펜, 시계, 전등, 손목시계, 가재도구 등에도 설치 가능하다.
- 검사는 자주하라. 감시장비는 주파수 변경을 자주하고 누가 배터리를 갈아주기 전까지는 작동안하고 있을 수도 있다.
- 조그만 감지장비는 전화기나 전화기 주변의 도청장치 감지가 가능하고 여행용 가방크기의 감시장비는 물카 감지까지도 가능하다.
- 더욱 첨단 장비는 감지하는 기능 뿐 아니라 RF 신호를 가로채 모니터에 물카 화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작동원리

물카나 컴퓨터 인터넷 같은 무선 장비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주파수를 송출한다. 이 RF신호가 수신기로 전송되는데 감지 장비는 이 신호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검사 시에 스마트폰 같은 무선 기기는 끄고 해야 효과

가 좋다.

신호범위

감지기는 2 GHz 에서 3 GHz 사이에서 작동한다. 대부분의 감시장비가 이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데 더 복잡한 장비는 4 GHz 에서 6 GHz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장비로는 검출이 불가능하고 정보기관에서 쓰는 9 GHz 까지 검사가능한 장비가 요구된다.

유선 몰카 감지도 가능한가?

대부분 감시장비는 RF 신호를 쓰는 무선기기는 검출해 내지만 유선으로 연결된 몰카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C. 가해자 대응

1. 준비된 멘트와 가짜 통화

피해자와 대면하는 최하위단계 가해자들은 지시 받은 대사만 읊고 행동하게 되어있다. 오랜 기간 심리학자들에 의해 갈고 닦이고 슈타지와 정보기관 요원들 실험에 의해 효과가 입증된 가해 행위만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는 비열하고 모욕적이며 도발하는 말이지만 녹음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멘트처럼 말이다. 피해자를 가로막거나 부딪치며 지나가는 행동들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히 이상할 게 없다. 녹화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 가해행위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우발적인 행동이 거의 없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노리고 역으로 써먹어야 한다. 충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동일한 단어 사용과 표준화된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공공장소에서 가두연극을 하는 가해자들과 직장에서 따돌리는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위협이 되지 않을 만한 행동과 대화를 정해 놓고 속으로 연습해 봤다면 충동적인 반응은 안 일어날 것이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될 만한 미끼를 던지므로 덩석 물지 말고 계획한 대로 대응하라.

직장에서의 대응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언어폭력을 겪고 있다면 공격받을 때 마다 이런 말을 해보라
“왕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적 회색분자란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뜻으로 한 말이나?”고 논쟁할 기세로 나온다면 웃으면서 “그냥 재미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요!”라고만 말하라. 매번 그 말만 반복하고 다른 말은 하지말라. 그들이 모욕을 줄 때 마다 기회주의적 회색분자란 소리와 재미있는 기사란 말로 끝나는 대화를 20번쯤 하게 되면 그들도 지치게 된다. 이런 류의 대화는 인사관리 보고서에 오를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한번씩 변형한 대사를 쳐보는 것도 좋다. “얼굴에 회색 먼지가 묻었네요”

이러면 지시 사항을 접어두고 감정대로 반응하고 싶어한다. 이 멘트는 사실이므로 가해자를 언짢게 하고 흥분하게 만든다. 그들의 다음 행동은? 아마 당신 말을 죄다 몰래 녹음해 당신 말의 진의를 증명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감시받고 있다는 당신 말만 입증하는 꼴이 된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신경언어학 프로그래밍(NLP)의 역이용.

공공장소에서의 대응 - 가짜 통화

근무 중일때는 가해자들에게 성질대로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 하지만 야외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 때 마다 다음과 같이 해보라.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통화하는 척을 한다. 전화기가 없다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손으로 귀를 덮고 가해자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웃어준다. 그리고 상대만 알 수 있는 모욕적인 말을 크게 해준다. 사용할 말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미리 만들어 놓고 반복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원색적이고 모욕적일수록 좋다. 조직스토킹을 만만히 보지 말라(Gang stalking - like politics - “ain’t bean-bag.”)

“딸랑이들을 또 보냈네” 같은 말이나 더 심한 말이 있다면 사용하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단어는 피하라.

반복이 중요한데 반응이 없다면 더 크게 다시 말하라. “그래 딸랑이들을 또 보냈다구~” 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짓고 가해자들을 똑바로 쳐다본다.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리게 “신호 상태가 안좋은가 봐. 더 크게 말해 줄께~~”

만약 반응없이 가해자들이 지나쳐 간다면 똑같은 톤과 목소리로 길에 물건을 떨어뜨리고 그냥 가는 사람 잡는 것처럼 “이봐요, 이봐요~ 딸랑이들~~~”이라고 고함을 지른다. 마음껏 쏟아내라.

가해자들은 상관 명령에 의해 대응행동이 아주 제한적이다. 만약 우발적으로 성질대로 했다간 자기네 상관과 크게 부딪히게 된다. 내가 여러 번 실험을 해봐서 안다.

할말이 정해졌다면 속으로 많은 연습을 해서 가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한다. 가해자들은 정신 지체자 보다 약간 나은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 수준에 맞춰 대응 하도록 한다. 가해자인지 확신이 안 들더라도 안전선상에서 준비한 멘트를 날려라. 만약 아니라면 사오정이 시끄럽게 전화한다고만 생각할 것이다. 요즘 세상에 아주 특별한 일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이 가짜 통화는 연기를 가다듬은 후 직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진, 동영상 증거 확보

나의 경험과 다른 피해자들 증언을 종합해보면 가해자들은 촬영되는 것을 꺼려한다. 반응정도는 가해자들마다 다르지만 아무도 기록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몰래 찍든 드러내 놓고 찍든 둘다 각각의 장점이 있다. 가해

자들을 언짢게 하려면 드러내 놓고 찍고 증거확보를 위한 기록이 필요하다면 몰래 찍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법적인 가치는 별로 없다. 가해자들은 유죄가 성립될 만한 발언은 하지 못하도록 지시 받는다. 그저 상관이 시키는 말만 읊조릴 뿐이다. 주로 당신을 몰래 24시간 관찰해야만 알 수 있는 말들 뿐이다.

피해자들은 인터넷상으로 그들의 얼굴이 뚜렷이 나오는 사진, 동영상을 포스팅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상모략으로 여겨질 말은 사용하지 말라. 예를 들어 사진 밑에 "이들이 나의 스토키들이다."라고 설명을 붙이기 보다는 "내가 조직스토킹 당하는 집 근처에서 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 한명이 증인이 되어 준다면 내게 도움이 되겠다."가 낫다.

사진/동영상 촬영의 법적 권리.

공공장소에 있다면 누구나 탁 트인 시야로 사진 촬영할 수가 있다. 사유지에 있다면 소유자가 정해 놓은 규칙을 따르면 된다.

3. 소음

소음테러는 조직스토킹에서 쓰이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이제는 당신이 반격할 차례다. 에어혼을 하나 구입해서 들고 다니다가 가해자들을 만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면 몇 초간 불어주라. 소리가 굉장히 크므로 사용 전 귀마개를 하는 것이 좋다. 항상 그렇듯이 가해자들을 보고는 웃음을 날려준다. 누가 물어본다면 스토키를 당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해준다. 가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따진다면 "그만 따라다니라"라고 대답한다. 당연히 온화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하지만 큰소리로 귀가 울릴 정도로 말해준다. 누가 시끄럽다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당신이 조직스토킹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론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상으로도 그렇다.

(한국의 층간 소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작 보복스피커, 연령대별로 다른 가청주파수를 이용한Teen buzz 혹은 틴벨에 관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의 수법대로 신경언어학 프로그래밍(NLP)에 걸려 들게 하려면 단순한 소리로 잠 못자게 매일 같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무료 프로그램 audacity)

4. 소음 억제

여유가 된다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구입도 고려해보라. 형편이 안된다면 귀마개도 좋다.

5. 가해자에겐 항상 웃음을

"웃음을 지으면 상대가 다음 행동을 예측 못한다."

주변에서 가해자를 만나게 되면 똑바로 쳐다보고 이빨을 드러내 놓고 항상 웃음을 날려주라. 더 좋은 방법은 앞서 설명한 가짜 통화 등과 함께 준비된 대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가두 연극하는 가장 하위단계 스토킨거들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파괴시키는 목적을 잘 알고 있더라도 멍청한 인간들이 대부분이다. 루저들이란 인상을 제대로 심어주라.

6. 가해자 살해

논란 많은 총기사용 주제를 다루면서 피해자들을 양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간다면 불완전한 '대응법'이 될 것이다. 내가 법조인이 아니므로 법적인 자문은 해줄 수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해줄 말은 없다. 스미스앤 웨슨 357구경 매그넘 같은 권총을 지니고 다니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어를 위해 사용하려는 당신의 의지를 전문가와 다각도로 상의해 보는 것도 유용하다.

총기 사용에 관한 설명은 이 사이트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대신 링크만 남겨둔다.

- 권총 사격 기초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fundamentals-of-handgun-shooting.pdf>
- 총기 소제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cleaning-handguns.pdf>

총기 규제법은 주마다 다르므로 일반화 하지는 않겠다.

불법 가해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복수를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이다. 미국처럼 개인의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에서 총기 사용에 의한 보복은 항상 잠재해 있다. 이것은 이 심리전을 승인해 준 법무성과 FBI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지를 보여준다.

불법 사찰의 피해자로 조준 된 사람은 자기 집에서 가해자를 조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끔씩 피해자들이 장전된 총으로 집안에서 가해자들을 겨누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주로 안전장치를 쏜 상태로 제스처만 취하지만 실제로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대처법은 벽도 통과할 수 있는 대구경 총기 사용 유혹을 불러 일으킨다. 피해자들은 이런 행동을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짝 열어놓고 밖에서 사진 찍어도 될 정도로 보이게 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조준 능력을 한 번씩 연습하고 무단침입으로 누가 총기에 장난을 친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이유에서 인 듯하다.

물론 이런 행위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이 부패한 경찰과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스토킹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가능성은 고려해 봐야 한다.

D. 가해자 공개

쥐구멍에 수류탄 투척

우선 가해세력들을 바퀴벌레라고도 했다가 쥐새끼라고도 하는 일관성 없는 단어선택에 대해 사과 드린다. 변명을 하자면 이 족속들은 정확한 분류가 힘들다.

이 해충들을 박멸하는데 우리는 두가지 간단한 방법을 취한다.

첫째, 주변인 중심으로 폭로를 해 나감과 동시에 둘째, 전국적으로도 이 범죄의 실상을 알리도록 한다. 이 두가지가 우리의 승리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 이 사악한 무리들의 전략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방법 몇가지를 여기서 소개한다. 조직스토킹 가해자들은 최대한 아무도 관심 못 가지게 해서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다. 이제 우리가 판을 엮을 차례다.

1. 지역 관계 기관에 이메일&서신 발송

여러 경우 가해자들은 지역경찰의 목인이나 협조를 받는다. 어떤 경우 지역 관료들도 이 범죄의 실상을 알고 있지만 공개적인 언급은 피한다.

- (1) 지역 관공서 리스트를 뽑아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다. 공원관리자에서부터 시장까지
- (2) 전단지를 만든다.
- (3) 중요 문구를 강조해서 확보한 이메일에 복사 붙이기를 반복한다.

* 합법적인 일이긴 하지만 추적을 안 당하게 익명으로 보내는게 편할 수도 있다.

- (4) 메일을 발송한다. 이제 직원들 그날의 휴게실 대화주제를 정해주었다.

2. 전단지

전단지 배포는 조직스토킹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다. 익명으로 전단지를 우편 발송하거나 도보나 건물입구에 두는 것은 경제적이면서도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해자들에게는 이것을 저지할 만한 좋은 방법이 없다. 이윤 추구만 하고 진실 알리기에는 관심 없는 주요 언론사들을 대신해 대중들에게 직접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다.

TV와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전한 디지털 시대에도 부패한 정부기관의 범죄를 폭로하기 위한 팜플렛 사용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상세한 설명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를 남기면 효과는 더욱 증대한다.

HBO 다큐 Mea Maxima Culpa 는 1950~60년대 성직자에 의한 청각장애인 학교의 미소년 성희롱을 다룬다. 피해자들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어서 가해자를 지목한 전단지를 배포했다. 아이들에게는 절박한 수

단이었고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를 사직 시킬 수는 있었다.

전단지 배포는 여러가지 목적 달성을 가능케 한다: (a)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측할 단서를 제공하여 가두 연극을 벌이는 가해자들의 행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b) 지역경찰로 하여금 이 결코러운 질문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상황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c) 진실을 알릴 용의가 있는 용감한 언론이 있다면 조사에 착수하게 만들 수도 있고 (d) 이런 보도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조직스토킹의 실체에 대한 시인을 야기하여 진상 조사위원회 발족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의 Cointelpro 와 CIA의 MK Ultra 작전 수사로 이어졌던 처치위원회처럼 말이다.

2009년 뉴저지 주의 베로나 주민인 Frank L. Raffaele가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로 지목 되자 이 범죄를 알리는 전단지를 회사와 이웃에 배포했다. 이로 인해 지역뉴스에서도 다루어졌고 경찰의 입장 발표 압박으로까지 이어졌다. (<https://fightgangstalking.com/#newjerseyflyers>)

2014년 7월, 커넥티컷 주 길포드(Guilford)에서 조직스토킹 피해자가 배포한 전단지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NBC의 이 지역방송 겪인 WTNH News 8과 지역 TV 뉴스, 커넥티컷 지역 신문 The Courant지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Conintelpro 방식의 스토킹 작전이 길포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https://wtnh.com/2014/07/04/flyers-threatening-gang-stalking-scaring-people-in-guilford/>) 길포드 경찰청의 입장은 The Day지에도 보도되었다.

The Courant지 홈페이지에는 전단지의 복사본도 게재되었다.

최종점수 : TI(targeted individuals) 10, 보안업계 기생충 0.

형편이 허락된다면 전단지를 발송하라.

각 가정, 회사, 학교, 지역기관까지 가능하다면 익명으로 발송하라. 반송주소 없는 우편물은 불법이 아니다. 주민 이름 대신 '입주자'라고 해도 된다. 하지만 수신자 명의를 알 수 있다면 표기해도 무방하다. 최대한 따로 따로 보내야 한다. 친구나 도와줄 친척이 있다면 좋다. 우체국에 하수인들이 배치되어 있다면 방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단지 직접 배포

우편요금을 지불할 형편이 안된다면 가가호호 직접 배포해도 된다. 입주민들과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잘 보이는 곳에 두기만 하라. 우편함 안에 두는 것은 불법적인 곳이 있긴 하지만 완전 합법적인 일이다. 대량 살포를 계획한다면 집에서 프린트 하기보다 인쇄소가 비용이 적게 든다.

질 좋은 종이로 배포해야 열독률이 올라가고 도발적인 문구와 디자인이어야 시선을 많이 끈다.

전단지 사이즈는 본인이 배포하기 편한 사이즈로 하라. 배포 매수는 가해자들이 당신을 괴롭히는강도와 비례하면 된다. 간헐적으로 당신을 희롱한다면 조금만 배포하고 악착같이 괴롭힌다면 동네 전체에 배포해버려라. 필요한만큼 반복하면 된다.

3. 명함

명함도 이웃들에게 이 범죄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다.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시 손쉽게 차 앞유리창이나 대문에 꽂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당하고 있다면 선반, 책상, 휴게실 등등 여러 곳에 놔둘 수도 있다. 창의적으로 해보라.

명함 팔 여유가 없다면 두꺼운 종이를 명함크기로 재단해서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사용해보라. 이후에 가해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도 웃으면서 명함을 전달해보라. "정확히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 명함을 안받는다면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을거예요!"라고 말하고 땅바닥에 명함을 던져라. 가해자는 당신이 사라지고 나면 호기심이 발동해서 명함을 집어갈 수도 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범죄를 자세히 설명한 홈페이지가 있다면 가해자들도 자기네들이 무슨 일에 참여하는지 알 기회가 될 것이다. 경찰, 정보기관 및 외주 받은 업체들은 그들의 더러운 업무 목표와 과정을 최하위단계 가해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에게 태클을 거는 행위이다.

4. 창문 광고와 자동차 스티커

전단지와 명함배포는 가해자들의 시선을 끄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나 일시적이다. 집 창문에 붙인 광고는 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실상을 알게 되면 혼란에 빠지는 가해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집 창문 외에 자동차 유리안에 문구를 새기거나 자동차 스티커를 만들어 범퍼 등에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컬러 분필, 크레파스 이용

그래피티와 달리 분필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은 법적인 문제를 거의 야기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 주변에 거의 항상 가해자들도 거주하고 있는데 도보에 그 집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그리고 "조식스토킹 가해자"라는 문구를 써 보라. 전단지나 명함처럼 홈페이지 주소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적어도 이웃 중 몇 명은 사이트를 방문하여 실상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가해자들은 도보에 그려진 예술작품(?)을 문제삼음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는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노린 방법이므로 그들은 걸려들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물어보는 이웃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해주고 믿고 안믿고는 그들 자유에 맡겨라. 범죄자는 당신이 아님을 기억하라.

컬러 분필은 쉽게 살 수 있는데 요란한 색상보다는 비에 씻겨 내려가지 않는 기능이 있는 것이 더욱 좋다. 이래도 가해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물에 지워지는 크레파스 등으로 더 다채로운 작품 활동도 해보라.

6. 스탬프 사용

홈페이지를 새겨 넣은 잉크 나오는 스탬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휴대도 편하다. 가해자들이 직장에 있다면 전화번호 책, 송장, 편지봉투, 식당 메뉴판, 찌라시 등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포스트 일 에 미리 찍어 두면 사방 팔방으로 퍼지게 된다.

지폐를 이용한 방법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만한 방법은 추천하지 않으려 한다. 잉크 스탬프를 포스트 일 에 붙이는 방법처럼 지폐에 정보기관 범위를 알리는 스탬프를 찍는다면 쉽게 버려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노출 될 것이다. 재무성에서 이 방법을 완벽히 적법한 방법이라고는 안하겠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 중이다. Ben & Jerry 아이스크림의 공동창업자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 정책에 기업의 검은 돈이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 경우도 있다.

(<http://readersupportednews.org/news-section2/440-occupy/11771-ben-a-jerrys-co-founder-occupy-dollar-bills>)

개인적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정보기관의 민간인 제거작전

Google "xxxxxx" 검색

잉크 스탬프를 사용하기 힘들다면 수기로 적는 방법도 있다.

7. 현수막

현수막 설치하는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인데 여러 명이 육교 같은 곳에 걸었다가 제거하는 게릴라 전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단 현수막이 도로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현수막에 관한 정보는 이 사이트(<http://ioncoalition.net/sign-making-tips/>) 참조를 추천한다. 동물보호자들의 현수막 이용 방법도 있는데 유명 배우와 모델을 앞세워 전라로 시위할 생각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8. 경찰신고

앞선 가해방법 내용들을 읽었거나 조직스토킹을 당해본 사람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전법에 익숙할 것이다. 이것은 스토크들이 무단 침입하여 물건 위치를 바꾸거나 숨겨놓는 수법이다.(저가의 물건일 경우 절도도 행한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건망증을 의심하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a) 경찰도 공범이라는 것을 알고 (b) 도둑이 고가의 물건에 손을 안대고 돈도 안되는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보기관에 의해 수십년간 쓰인 아주 교활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기억력을 의심하고 주거지가 더 이상 안전한 장

소가 아니라 암시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들의 방식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이제 우리식 대로 리드해야 한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 안할거라고 가정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라. 가해자들은 거의 항상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안 남겨 경찰 보고서 작성을 피한다. 물론 신고하더라도 범인 체포하는 노력은 안 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에 따른 간략한 경위 보고서라도 작성해야 하며 이웃들의 관심도 끌게 된다. 소유물 훼손같은 다른 심리전법에도 이렇게 대처해 보라.

전화하기 전 침입자가 아직 집에 숨어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해보라. 이론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이래야 신속한 출동으로 이어진다. 경찰이 도착하면 조직스토킹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고 질문 해보라. 그러면 주제를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망가진 인간이 아니라면 대화하기 불편해 한다. 그리고 당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당신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것이다. 모든 과정은 되도록 녹취, 녹화를 하고 보고서에 조직스토킹을 언급하라는 말도 당부한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청에 보고서 사본이나 신고 횡수를 요청하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신 거주지 관할서에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른 지역 경찰에 무단침입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신고도 고려해 보고 지역신문 제보도 고려해 보라. 이 사건에 대한 전단지 배포도 가능하다.

여러가지 방안을 실행에 옮길수록 효과도 증대한다. 가담 정도나 인지 정도에 관계없이 경찰은 이런 행위를 부담스러워 한다. 가해자의 이 다음 스텐트 행위에는 부하가 걸리게 되어있다. 관계자들이 이런 사소한 사건 신고에 반대할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당신의 신고를 저지해서 생기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싫어한다. 당신의 끈질김이 오히려 다른 관계당국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9. 경찰 응대

피해자와 경찰의 직접 대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당신의 법적인 권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경찰이 당신이나 주변 지인과 대화하려 한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라.

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충고

(<https://www.aclu.org/drug-law-reform-immigrants-rights-racial-justice/know-your-rights-what-do-if-you>)

CDLC (Civil Liberties Defense Center) 조언

FBI-Script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fbi-script.pdf>)

다음은 경찰이나 정보요원과 이야기 할 때를 잘 요약한 말이다:

“경찰과는 어떤 경우라도 말을 섞지 말라.”

- Robert Jackson, 미 대법원 판사

E. 국가적 공개

이 범죄의 토대를 손상시키는 첫번째 무기가 주변에 알리는 것이라면 두번째 무기는 전국적인 공개이다.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편지를 쓰고 이메일을 보내고 온라인으로 정확한 답변을 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말라. 충격은 누적되고 실상에 대한 관심도는 서서히 올라간다. 결국 언젠가는 진실이 알려지게 되어있다.

1. 국회 서신

일반전략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비리의 진상을 밝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압박에 의해 시작한다.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은 유권자 중 힘없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일반 스토킹 범죄처럼 많은 사람의 관심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입법기관에서도 큰 관심을 안 가질 것이므로 국회 서신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여러 전략 중 한 요소 정도로만 생각하자.

좀 더 치명적인 방법인 '언론 제보'에서도 다루겠지만 국회의 진상 조사 압박은 빈번한 언론의 노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겐 진상 조사 요구 서신을 발송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표준화된 서신의 예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는 방법이다. 어느 정부 기관이나 언론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수신자 이름과 날짜만 바꾸면 된다.

Subject: U.S. Domestic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Date: _____

Can you please shed some light on the following news reports?

Although Edward Snowden's revelations about the NSA deservedly generated a lot of public discussion, U.S. domestic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receive very little attention. This is so despite some disturbing news reports on the issue from source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About 7 months after the U.S. Senate's "Church Committee" issued its final report about the FBI's Counterspy operations and the CIA's MK Ultra program, Pulitzer Prize nominee George O'Toole, a novelist and historian who specialized in the history of American espionage, and who had worked for the CIA as an analyst, wrote an article titled "America's Secret Police Network." The article, which was published in the December 1976 issue of *Parade*, exposed a secretiv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called the Association of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 (LEIU).

Although LEIUs – or "Red Squads" – have existed in America since the late 1800s, the private national network of such intelligence units that was quietly formed in the 1950s had remained – and still remains – nearly unknown to the general public. O'Toole described the group this way:

"The organization forms a vast network of intelligence units that exchange dossiers and conduct investigations on a reciprocal basis. Several of the police departments belonging to the group have recently been caught in illegal wiretapping, burglary, and spying on the private lives of ordinary citizens. The LEIU is, in effect, a huge, private domestic-intelligence agency."

Is there a connection between the LEIU association and the articles and anecdotal reports which have been appearing with increasing frequency over the past decade or so alleging that something comparable to the FBI's Counterspy operations is happening again?

In 2004 the PBS news program *NOVA* and *Newsweek* magazine both reported that the Pentagon had quietly created in practice of domestic spying, and suggested that "something like Counterspy may again be at hand." Spying on civilians by the U.S. Army was one of the scandals which led to the famous Church Committee investigations by Congress in the mid-1970s.

In October 2004 the U.K. newspaper *The Sunday Times* published an article about the use of Stasi-type psychological operations to punish whistle blowers by MI5 – an intelligence agency with close ties to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In December 2005 National Book Award winner Gloria Naylor, wrote a semi-autobiographical book in which she described her experiences as a target of organized stalking. The book's title, *1966*, was the year it became apparent to Naylor that she was being stalked. Apparently, her harassment began after she had a minor dispute with a neighbor whose brother worked for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The Globe and Mail, a national newspaper in Canada, reported in May 2006 that 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CSIS) and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used organized stalking techniques (referred to as "Diffuse and Disrupt" tactics) against suspects for whom they lacked sufficient evidence to prosecute.

The first of three academic peer-reviewed articles on organized stalking – also called "gang stalking" by Belgian criminologist Nicolas Denaugant – was published later that year in the July–September 2006 edition of *Revue Internationale de Criminologie et de Police technique et scientifique*.

A cover article in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in January 2007 by a journalist familiar with military policies and weapons systems portrayed self-proclaimed victims of gang stalking as intelligent and credible, and suggested that claims about exotic non-lethal weapons being used by the U.S. government to harass targeted individuals were possible.

Former CIA division chief Melvin Goodman was quoted in a June 2008 article by Jeremy Stahall in *The Nation* on the vast private contractor element of the intelligence-security community:

"My major concern is the lack of accountability, the lack of responsibility. The entire industry is essentially out of control. It's outrageous."

A newspaper article in the *Verona Cedar Grove Times* in March 2009 titled "Stalker Claims Unsettled Police" described how a self-proclaimed target of gang stalking had been disturbing flyers in his former neighborhood in Verona, New Jersey, warning about organized stalking of targeted individuals. The flyers stated: "Their intention is to murder their target without getting their hands dirty. It's the perfect hate crime."

A post on the political blog *Daily Kos* in October 2010 alleged that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U.S., the U.K., and Canada use gang stalking (*stalking* as East Germany's Stasi called it) against targeted individuals.

A TV news report in California in January 2011 (on KION and KCRB) addressed the issue of gang stalking – referred to as such by the reporters and by Lieutenant Larry Reback of the Santa Cruz Police Department.

In a February 2011 article for *The Guardian*, investigative reporter Janice Ridgeway described how corporations target people with what is, in effect, a secret private law enforcement system:

"The private detective firms working for corporations can develop information against their own targets and find eager recipients among federal and local law enforcement agencies, some of whose employees end up retreating into private-sector detective work. The corporate spy business thus amounts to a shadow, para-law enforcement system that basically can get around any of the safeguards set out in the American legal system: it ought to be subject first to transparency, and then to hearing."

A newspaper article in *The Record* and a TV report on *KCRB* in August 2011 reported that the city manager of Stockton, California was stalked by local police after a break-down in contract negotiations. The broken tactics included purchasing the house next to the city manager's home and using it as a base for psychological operations.

A newspaper article in *The Record* and a TV report on *KCRB* in August 2011 reported that the city manager of Stockton, California was stalked by local police after a break-down in contract negotiations. The broken tactics included purchasing the house next to the city manager's home and using it as a base for psychological operations.

Florida's Pulitzer Prize-winning *Sun Sentinel* reported in December 2012 on the organized stalking of a police officer by other police officers and sheriff's deputies from multiple jurisdictions. The victim of the stalking had cited an off-duty police officer for reckless driving. The stalking – which included illegally snooping on the victim's private data and efforts to harass and intimidate her – was apparently done in residences.

An article in *CounterPunch* magazine in January 2013 asserted that the FBI's infamous Counterspy operations have re-emerged in full force: "Counterspy is alive and well."

A June 2013 article in *The Nation* said this about activities by private security firms, the FBI,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One might think that what we are looking at is Counterspy 2.0 – an outsource surveillance state – but in fact it's worse."

Articles in the *Washington Times* and *Wired* magazine about the September 2013 mass shooting at the Washington D.C. Navy Yard included reports of speculation that the incident resulted from the shooter having been systematically tormented by gang stalking, including tactics such as constant noise harassment.

The cover article of *Forbes* magazine in October 2013 (U.S. edition) was about "state-sponsored gagging." The author, a professor fro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described in detail how a former nurse who stole some equipment from the U.S. military has been relentlessly stalked by undercover operatives and psychologically tortured.

A TV news broadcast in West Virginia on 14 November 2013 (on CBS affiliate WDTV) included a report about "organized stalking" which featured two individuals from Pennsylvania who appeared to be credible and sincere, discussing their constant harassment by perpetrators using gang stalking tactics.

That same month – November 2013 – a TV and radio broadcast of *Democracy Now!* featured an interview with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Corporate Policy who discussed the shadowy industry of spies employed by U.S. corporations to conduct secret – and often illegal –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against critics of those corporations.

Articles published by CBS *the Daily Mail*, *RT*, *Teck Dert*, and *Courthouse News Service* in December 2013 reported that a U.S. government contractor filed a lawsuit against multiple federal agencies for gang stalking him (the complaint refers to gang stalking as such). The plaintiff claims he was subjected to constant surveillance – including inside his residence and his vehicle – and constant psychological harassment from co-workers and strangers.

U.S. Department of Justice crime statistics from a 2006 survey indicated that an estimated 445,220 stalking victims reported being stalked by 3 or more perpetrators. In your view is that possibly related to the use of counterintelligence tactics such as those described in the above-referenced articles?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of this issue.

Sincerely,

Links to the sources cited above – and additional information – is at <http://FishGangStalking.com/>

본인만의 편지

글재주와 시간이 있다면 본인만의 설득력 있는 편지로 이 범죄의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편의성에서는 이메일이 우위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우편 서신이 우위라고 알려져 있다. 조직 스토킹이란 단어는 아껴 써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용어에 대해 무지하고 위장피해자들에 의해 정신병자들의 소리란 부정적 이미지가 박혀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관심을 꺼버릴지 모른다.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스토킹 범죄' 라는 표현 등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본인의 경험을 나열하기 보다는 언론 보도 인용을 강조하라. 당신이 조직스토킹 피해자라고 하는 순간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경찰에나 연락하라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

막연한 주장보다는 의문 제기를 하라. 아무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확실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상대방은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므로 의심을 품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조사를 해보아야한다' 라기 보다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대테러방지 작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게 순서이다. 회신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최소한 실무자 측에서 검토해보고 논의라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접수한 서신은 법에 의해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진보적 국회의원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본인 선거구 유권자의 서신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입법부 관련자에게도 발송하는 것이 좋다.

기밀유지 서약

국회의원 중 안보,보안에 능통한 의원들이라면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인해 이미 이 불법 작전이 시행되고 있는 사태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보기관에서 뿌려 놓은 정보원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극도의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이 작전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한 의원은 없었다. 기밀유지 서약을 한 의원들은 이 작전이 위험적이라 할지라도 일체 발설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있다. 이런 범죄의 실상에 대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양심적으로 폭로해 주는 정치인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발상이다. 여하튼 이런 서신이 의원들 사이 혹은 실무자들 사이에서 토론을 도출해낼 수는 있다.

지역구 의원, 인권 변호사

또다른 방법으로 지역구 의원이나 인권 변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래는 서신의 예이다.

2. 온라인 청원

온라인 청원은 손쉽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국회의원과 연결되길 원할 때 최선책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온라인 청원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음과 같은 한계와 저항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온라인 청원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기껏해야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을 뿐이다.

둘째, 이미 댓글 부대를 풀어 이 지역도 정신병이나 지능이 의심되는 위장 피해자들로 오염시켜 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게 되더라도 곧이어 달리게 될 이상한 댓글들을 잔뜩 예상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에게 보내진 조직스토킹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위장 피해 사이트의 글을 인용하거나 가짜 뉴스들을 적절히 섞은 읽을 가치도 없는 글들이었다. 많은 위장 사이트처럼 온라인 청원도 실제 피해자가 아닌 위장들로 득실거린다.

만약 청원 작성을 한다면 개인 블로그나 사이트 인용보다는 주요 언론 기사나 정부 공식 자료를 인용하라.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적극 활용도 장려한다.

3. 라디오에 사연 보내기

과거 Cointelpro 수법을 상당히 많이 인용한 대국민 범죄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 보도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라디오에 제보해 보라. 만약 진행자와 통화 연결이 된다면 1970년대 처치 진상 조사 위원회가 발족된 것처럼 제대로 된 조사를 지금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수도 있다. 조직스토킹 관련 전체를 설명할 수준이 안되어도 된다. 당신은 이미 경찰공화국 출범 문제에 관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처치 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진 사건 한 가지 정도만 언급하면 된다. 많은 청취자가 조직스토킹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어도 장족의 발전이다. 이 주제에 관한 방송 편성은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 사이트 이용자 중 한명이 2013년 7월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에 관한 라디오 토크쇼에서 집단 따돌림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조직적인 흑색선전에 시달리게 되어 이 문제를 상사에게 보고했는데 상사는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한다. 계속 파고들자 결국엔 해고 당하게 되었다. 고용전문 변호사이자 심리학자인 게스트 한명은 이 집단 따돌림을 잘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 청취자들은 이런 현상을 처음 들었고 (일본, 한국에서 흔한 왕따는 서방 국가에선 흔치 않음) 이런 사악한 문화를 경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녹음 사본을 듣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라. 바쁜 사람은 40:33~48:15만 청취하면 된다.

(<http://www.newhaven.edu/news-events/UNH-in-the-media/2013-2014/591194/>)

4. 정보공개 요구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누구나 정보공개법에 따라 무슨 일이 자신한테 일어나는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수사 대상인지 감시 대상인지를 알아낼 수도 있고 조직스토킹에 관한 정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도 법조인이나 기자가 아닌 일반인도 요구할 수 있다.

조직스토킹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는 창의적인 각도로 해야 한다. 모호한 단어 선택은 종종 거부로 이어진다. 정보기관은 종종 이런 요구를 회피해 왔고 소송을 걸어야만 해결이 되곤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할 만한 시간과 여윌돈이 없다. 정보기관과 한통속인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5. 인터넷에 정확한 답변 달기

조직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조직스토킹에 대한 온라인상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고 연관 사건들(불법 민간인 사찰, 경찰의 권한남용 등)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댓글을 다는 것이다. 특나는 대로 몇 분씩만 투자하면 이 불법작전에 치명타를 날리게 된다. 전과자, 용병, 자경단원 등을 동원한 21세기 판 Cointelpro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관련 정보 검색 할 사람을 위해 이 사이트 '링크'가 아닌 '이름'을 걸어 놓는 것도 좋다. 링크를 걸어 놓으면 스팸으로 필터링 당할 수도 있다. 신뢰할 만한 사이트 리스트도 좋은데 위장피해자들로 오염되지 않은 사이트야 한다 (한국의 인터넷 카페는 거의 다 오염) 만약 시간을 들여서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해서 계속 쓸 생각이라면 맞춤법 검사를 여러 번 하고 설득력 있는 내용인지도 점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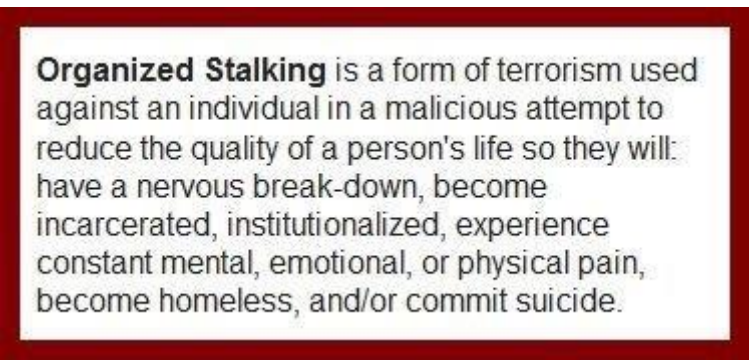
사람들이 조직스토킹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다 보면 호기심이 발동해 검색을 하게 된다. 나도 MK Ultra를 주요 언론 기사 댓글에서 몇 번 보다가 파고들게 되었다. 조직스토킹도 마찬가지다. 댓글은 많이 달면 달수록 효과가 좋아진다.

이미 위장피해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사이트에서 글을 남기는 것은 시간 낭비다. 당신의 글은 교란작전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제대로 읽을 확률이 낮다.

조직스토킹과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을 만한 사건, 정책 글에 댓글을 달면 스팸처리가 되지 않는다. 미국엔 Craigslist 와 Toxic이라는 사이트가 스토킹 피해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아래 글은 예시이다.

이글을 복사해서 붙이는 것도 하기 싫다면 우리는 스토킹을 당해도 싸다.



6. 언론과 비영리단체에 서신 발송

지방방송국, 비영리단체, 친지, 친구들에게도 서신을 보내 보라. 위에 있는 서신을 국회의원에게 보내도 좋다.

언론제보

신문사, 잡지사, TV/라디오 방송국 웹사이트에 조직스토킹에 관한 사연이 있다고 제보를 해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공익을 위해 해달라고 하기 보다 청취자, 시청자,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이 소재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많이 있다고 언급해보라. 서신을 보낼 때 조직이름으로 보내기 보다 특정한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

시민의 자유 연합(ACLU) 같은 비영리단체

ACLU는 조직스토킹에 대한 어떤 논평도 하지 않는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으므로 서신을 보내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서신 뿐 아니라 지역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조직스토킹에 대해 알고 있다고 문의하고 전국적인 주목을 끌게 도와줄 수 있다고 건의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다른 단체 접촉

교사 협회, 인권옹호 종교단체(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경제단체, 대학 연합 등 많은 조직에 제보해 보라. 물론 이 사람들은 정보기관과 경찰이 주도하는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모를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점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가해세력은 그들의 범죄행위가 수면에 떠오르는 것을 극히 꺼려해서 댓글부대를 동원해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아래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신 샘플이다.

글을 마치며 ...

극우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만 관심있는 부패한 정보기관, 그리고 그와 연합한 부패 경찰, 기회주의자, 출세지상주의자, 사기꾼, 앞잡이, 정신병자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비록 완벽한 승리가 보장 되어있지 않다고 해도 양심적인 세상 건설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이다.

2013년 10월13일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인권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나는 승리할 자신이 있어서 파시스트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단지 파시스트라서 싸우는 것이다.”

만약 불법 민간인 사찰에 기반한 정보기관, 경찰, 보안업체의 범죄를 많이 알리고 싶다면 그렇게 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 <https://fightgangstalking.com/> -

18. 경찰스토킹 개론 원문

An Introduction to Police Stalking

by Reidar Visser

Most people will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have experienced bullying. Local neighbourhoods, schools and workplaces are common settings where bullies operate. Bullying is destructive – it can lead to social isolation, dependence on drugs or even suicide. Thankfully, though, in most cases there are limiting factors. For example, bullies are rarely able to penetrate the confines of a private home. Alternatively, in extreme case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physical relocation – to a different area, or even to another country.

Now, imagine if that bothersome gang of bullies on the corner near school was a powerful state. Consider that it may have the resources and mandate to install surveillance devices in your private home, track your every movement, and follow you geographically everywhere, even to other countries. Sounds like a wild experiment in totalitarianism on the lines of George Orwell's *1984*? Alas, this kind of government-sponsored bullying already exists in numerous Western democracies today. It operates in various guises and under different names, but these can all be subsumed under the general heading *police stalking*. Even though the bully in this case is a state, the underlying logic and the modus operandi is remarkably similar to that of a gang of teenage bullies – except that the resources and the potential to do damage to the lives of individuals are vastly bigger.

Human rights aspects

Stalking is a method used by the police when they are angry with a person but are unable or unwilling to express their anger in proper judicial terms. Typically, the targets are marginal groups or individuals engaged in activities that are not perfectly mainstream (and therefore disliked by some) but without being punishable by law. Biker gangs, marginal political groups, human rights activists as well as dissident academics are known to have been targets of these kinds of operations in various Western countries. Very often police stalking involves monstrous abuse of power by police in cases where they are simply unable to understand and fit the subject into their normal criminal procedure scheme. Since prosecution is impossible, the goal is often to force individuals to leave a particular geographical area, though stalking operations can continue nationwide or

even internationally. Police stalking is known to exist in North America as well as in a number of European states, including in Denmark, France, Italy, the Netherlands, Norway and the United Kingdom. There is however no uniform nomenclature. Terms that are sometimes used to describe police stalking (but that sometimes may describe something else) include "conspicuous surveillance" in English, "step by step pursuit" or *fotfølging* in Norwegian, "to man mark someone" or *mandsopdækning* in Danish (originally a soccer/ball game term) and "targeted disturbance of an individual" or *persoonsgericht verstoren* in Dutch.

Police stalking is one of the most cowardly forms of policing that exist. It violates the most basic principles of the human rights revolution against state abuse that began in Europe in the eighteenth century, including the inviolable principle that a citizen has the right to appear before an independent court with due process and a fair hearing if the police think he or she has done something wrong. One of the most sacrosanct ideas in modern Western judicial philosophy is the requirement that police adhere to due process principles if they want to target someone, or else leave citizens undisturbed. These principles are formally enshrin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freedom from inhumane and degrading treatment in article 5; equality before the law in article 7; the right to appear before a court (*habeas corpus*) in articles 6 and 10; the right to be as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praesumptio innocentia*) in article 11a; freedom from punishment in the absence of a legally defined infraction (*nulle poena sine lege*) in article 11b; the right to privacy in a private home in article 12). They are similarly guarante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3 on inhuman/degrading treatment; article 6 on the right to a trial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rticle 7 on no punishment without law; article 8 on the inviolability of the private home). Together, these articles impose certain minimum standards all state powers must adhere to if they wish to prosecute a citizen and deprive that person of his or her liberty. When these standards are violated, the unique legitimacy of the police as law enforcer is in jeopardy.

Police stalking takes the opposite approach of modern Western judicial tradition. Police stalking involves attempts to informally and without resort to any court of law label otherness and marginality as crimes. Often there may be no formal contact with the police at all, since these cases rarely involve infractions of the law of the land. Instead, the police will often circumvent the whole idea of prosecution before a court altogether and put to one side any relevant penal codes. As an alternative to normal prosecution, they will then organise a protocol of their own for putting pressure on the stalking victim. With no reference to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the police will devise a programme of bullying to be carried out by a mix of uniformed and plainclothes police, sometimes also with a degree of community involvement as part of a "community policing" approach.

Even though the recruitment of wider sections of the population in stalking operations means an even worse infrac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is option is tempting for the police since social marginalisation may often be an effective driver towards expelling an individual from a geographical area. This is also a disturbing aspect: Any number of angry police officers cannot create a police state on their own, but when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intelligentsia acquiesces or even takes part, Orwellian parallels become very

relevant. Police stalking is a process where the police are jury, judge and executioner – the principal characteristic of a police state.

How police stalking works

The exact techniques used in police stalking may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but some basics recur. Establishing control of the physical movements of the targeted individual is seen as key, and this goal in turn requires hyper-invasive surveillance methods. In addition to traditional surveillance technologies like wiretaps, computer surveillance and hidden video surveillance, the police will frequently place a tracking device on the clothes of the stalking victim. Having achieved that, the police will aim to disturb the stalking victim as much as possible throughout the day and night. Again, the exact methods may var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individual operation. A fleet of marked and unmarked police cars trailing the stalking victim everywhere appears to be a mainstay feature in most countries (this is likely also the origin of the term “conspicuous surveillance”). Using a tracking device enables the police to forecast the movements of the stalking victim so that the people who chase him or her can be given instructions to “meet” rather than pursue the stalking victim on the street. This is a distinctive feature of modern, cell phone assisted police stalking that differentiates it from traditional stalking and undercover pursuit or “tailing”. The reason is simply that whereas in traditional undercover work the goal of the police was not to be seen, their aim is the opposite in stalking operations!

A main element in police stalking operations is noise. Typically, the police will try to make noise wherever the stalking victim is, for example by letting unmarked cars run their engines endlessly outside the house of the stalking victim, using their horns excessively etc. When the police have good surveillance, a beep of the horn from an unmarked police car each time the stalking victim enters or exits a building is at the same time subtle vis-a-vis the community at large and intimidating and paranoia-inducing for the stalking victim.

Light is another common ingredient. Participants in police stalking operations will typically use a lot more light than normal: Cars driving with main beams on in broad daylight, cyclists using lights on their bikes in perfect sunshine, or even cars parked in parking lots with their lights constantly blinking are recurrent features of these operations. Again, in isolation, totally unremarkable and innocuous; when encountered every 2 minutes each day the stalking victim is out walking, an obvious trigger for paranoia.

Humiliation can be yet another prominent aspect of police stalking operations – an element that shows how police stalking is often as medieval in content as it is twenty-first century in technology. This is also the aspect of these operations that is most frequently met with disbelief when stalking victims report them. A number of stories from different countries are however sufficiently uniform to be convincing. Sometimes plainclothes police use symbolism intended to show that the stalking victim is marginal and unwanted. For example, they may stage “street theatre” with people simulating blind or handicapped people constantly congregating around the stalking victim. Street theatre may also relate to the perceived offense that created the conflict with the police; this is typically done through plainclothes police mimicking the “unwanted” actions of the

stalking victim that led to him or her being targeted by police in the first place.

Finally, sleep deprivation is in some countries another important element in police stalking. When it is used, police will employ every conceivable technique to wake up the stalking victims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he night. Obviously, the exact methods depend on where the stalking victim lives, but common methods include the use of cars outside the home of the stalking victim as well as slamming with doors and banging on adjacent walls. Almost all police stalking methods constitute human rights violations, but the invasion of a private home is perhaps the feature of these operations that is most glaringly at variance with modern European interpretations of the right to privacy – which tend to define the home as an inviolable precinct where each individual may have the right to be “fully himself or herself”, away from the public sphere and shutting the world out entirely (Niemitz versus Germany, 1988). Forced sleep deprivation is described as “inhumane” by a majority of judges and as “torture” by a minorit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olice stalking and community policing

The involvement of society at large in police stalking operations may also differ according to context. In some countries, the privacy violation involved in sharing information about fellow citizens is taken seriously by the police; as a consequence the stalking is mainly carried out by a mix of uniformed and plainclothes police. In other countries, limited segments of the local community may be involved – for example through the employment of other emergency services in the stalking patrols (fire engines and ambulances), cooperation with shopping mall security guards (these may be asked to behave in an intimidating way towards the stalking victim) or even services providers more broadly (supermarkets, restaurants, and, where applicable, hotels.) An advantage for the police is that people in low-income jobs will often feel gratified when asked to help the police with something and without thinking about the judicial and human-rights aspect will gladly make some extra noise in their office or restaurant “for the good cause” until the stalking victim feels so intimidated that he or she moves somewhere else. The near universal knee-jerk preparedness among large parts of the general population in many countries to do anything the police asks without considering the legal aspects of these actions (i.e being accessory to an act of stalking) is a sad but very prominent feature of many so-called liberal societies today.

In police stalking involving the society at large, each act of intimidation may be much less hurtful than what is commonly seen in a bullying situation. The whole point is to induce paranoia by repeating seemingly commonplace incidents endlessly, in what becomes a familiar pattern, at least to the stalking victim. For example, in addition to making deliberate noise, people at shops may be instructed to greet the stalking victim in particular ways, for example by compulsively using something like a “have a nice day” greeting (which is very common but surely not universal in most languages). There may be bogus emergency calls to places visited by the stalking victim with fire engines or ambulances showing up where the stalking victim is for no good reason. An alarm goes off each time the stalking victim *enters* a shopping centre (this is caused by interaction between the tracking device hidden on the stalking victim’s belongings and the electronic theft protection system of the shop); a clearly arranged succession of cars with blinking lights will line the streets

wherever he or she goes. These are plausible incidents, just mildly out of the ordinary. Except that in a police stalking setting, on every corner there is a little oddity greeting the stalking victim. In this way, despite the seemingly innocuous and everyday character of each individual act of intimidation, the cumulative effect is bigger than in traditional bullying given the far greater scale of involvement.

The most depraved variants of police stalking involve large sections of a local community, who may take part in the stalking patrols, assist the police in disturbing the stalking victim with noise in their local neighbourhood (such as driving aggressively around the victim) or receive instructions to address the stalking victim in particular ways. At least one EU member country is known to practise this most totalitarian variant of police stalking, which conceptually seems somewhat related to social isolation methods reported from communist East Germany. Another disturbing aspect of many police stalking operations are the crude attempts by the police to signal stigmatisation and marginalisation by deliberately parading disproportionate numbers of physically and mentally handicapped people in "street theatre" designed to humiliate the stalking victim. It makes sense to discuss these particular variants of widespread community-based police stalking as possible crimes against humanity – not for what they do towards the stalking victim, but for the deliberate and disproportionate employment by the police of children and other legal minors as well as the handicapped. Not only are stigmas relating to physical handicaps reproduced. Children are socialised into believing bullying of socially marginal targets is acceptable and that the police has the right to administer extrajudicial punishment in the most totalitarian fashion imaginable.

Often these different elements are combined so that the general public ma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 what they see as comparatively soft bullying during daytime (joining the police in chasing the stalking victim with their cars, for example) whereas the more physical mistreatment – chiefly sleep deprivation – is carried out by the police themselves at night in more secretive precision hits directed at the private home of the stalking victim. Normally, it is probably these nocturnal disturbances done by police away from the gaze of the public that are instrumental in putting the stalking victim under unbearable pressure and force him or her to move, but the police are happy to keep these dirtiest activities in the dark and let the general public believe it is their noble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their shops and restaurants that pushes the stalking victim around. The use of sleep deprivation by the police in stalking operations is generally consonant with the "leave-no-marks" characteristic of torture in democratic states identified by [Darius Rejali](#).

Legal aspects of police stalking

On top of the obv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volved, almost all forms of police stalking are specifically illegal (and hence punishable by law) in the countries where they are carried out. This is so, firstly because the police laws in most democratic countries do not give the police powers to conduct gross privacy invasions unless a very serious crime is suspected. In many states, even systematic surveillance (as opposed to occasional observation) requires suspicion about a specific crime that is punishable by law. Secondly, many democratic countries have laws that specifically make stalking illegal, or there are laws relating to psychological torture in

place. In fact, despite the care taken by police to simulate “normal behaviour” (cars just driving in the streets and making a little noise, people slamming doors, noisy construction work etc.), these acts are prosecutable under most anti-stalking laws in the second they are staged in relation to a particular stalking victim – and with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as the main stalking offender. This is so because police stalking operations are quintessentially based on *regular harassment of a particular individual*, which is the key to defining stalking as a criminal offense in most countries that have relevant legislation, including Austria (107a), Belgium (442), Germany (241b), Italy and the Netherlands (285b). The anti-harassment law of England and Wales from 1997 similarly emphasises repeated unwanted behaviour towards someone else (twice or more). A good example is the Italian anti-stalking law, which addresses “continued harassing, threatening or persecuting behaviour which 1.) causes a state of anxiety and fear in the victim; or, 2.) fills the victim with fear for his/her own safety or for the safety of relatives...; or 3.) forces the victim to change daily habits.”

It is immaterial in this respect whether each act of intimidation in police stalking may be legal in isolation. It is the repeated targeting of an individual with the intention to harass – regardless of method – that is key. For example, driving a car in broad daylight with full head beam lights – a common practice for cars participating in police stalking – may not be illegal if a person does it by mistake. Conversely, once a police officer tells a citizen to turn on high beam lights in order to intimidate or terrify a fellow citizen, that police officer will in most countries be liable to prosecution for a stalking crime. If a citizen goes along with the order but without knowing the reason or intent, it may be a case of unknowing collaboration in organised stalking, and as such may not be punishable by law for that citizen. However, once he or she knows there is a deliberate intention to stalk, turning on the head lights of a car will become punishable in most countries also for the collaborator who responds to a request from the police to participate in something he or she knows (or should have known) is illegal.

In this respect, one could argue that many European penal codes in theory offer somewhat enhanced protection towards police stalking. This is so because the anti-stalking laws of many states in the US also require the presence of specific and explicit threats (often absent in police stalking) as part of the definition of stalking. On the other hand, Denmark appears to offer little protection since its anti-stalking law is hinged on the existence of an individual anti-stalking order by the police! Generally speaking, the minimum demand in stalking legislation worldwide is regularity of harassment, and then with some various added preconditions in countries with more liberal laws (explicit threats in the U.S., a specific warning by the victim that the stalking must stop in Belgium etc.)

In this way, police stalking contradicts almost every basic aspect of modern judicial philosophy. The judicial principles involved are no more sophisticated than those of the gang bully context. In police stalking there is neither burden of proof nor any roadmap for societal reintegration. The punishments are concocted by the police themselves or society at large depending on context. In the worst cases, the night-time harassment may be carried out by uneducated thugs that know no more about human rights and have no greater respect for human life than an average Syrian *shabiha* torturer. These are state-authorized bullies with the mind sets of 6-year olds who get overtime payment from supposedly liberal states for making noises with cars and slamming doors at night. Also, unlike the situation in countries that openly practise torture and corporal

punishment, in Western police stalking there is no medical supervision whatsoever.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psychological stress plays a key role in a number of physical illnesses and negatively affects many chronic conditions like asthma, inflammatory bowel syndrome and irritable colon. In police stalking operations, the supposedly democratic Western state is basically running around like a mad dog – barking and wheezing, entirely without being able to offer any judicial justification for its anger.

Suggestions for how to limit police stalking

Are there nonetheless contexts in which police stalking can be considered defensible as a contribution to upholding the rule of law? In a geographically limited, very local setting – maybe. There may be a perception in a local community that there is some kind of unusual behaviour that is seen as a nuisance but that nonetheless does not lend itself easily to criminal prosecution. Faced with requests from the general public to “do something”, the police may feel powerless and frustrated. In this kind of context, it is understandable if the police turn to limited variants of stalking in public areas as a preventative strategy. At the same time, though, there should be limits to the application of this kind of strategy with reference to the imperatives of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principles. In the first place, police stalking should be strictly limited to the public sphere. Police stalking should never target anyone inside their private home or when they are in uninhabited areas. Where there are no potential victims there is also no possible preventative justification! The very minimum criterion for the application of conspicuous surveillance strategy must be that there actually exists someone that needs protection from the perceived problem – a potential “victim”. Said with different words, in a democracy and *rechtsstaat*, in the absence of clearly defined preventative or investigative goals, the caravan of a gang member should be as inviolable as the residence of the prime minister. Sleep deprivation per definition has no preventative value since the chances of undesirable behaviour inevitably is greater when the stalking victim is awake than when he or she is sleeping. Actually, the widespread police maxim of being “the boss on the street” might actually offer a good rule of the thumb as regards police stalking. The corollary to that ideal, of course, is that it is not the business of the police to invade private homes or follow people into uninhabited areas unless there is suspicion about a specific, legally defined crime.

Precisely because conspicuous surveillance methods are grey zone territory, they themselves need to be monitored especially closely. Those who participate in stalking operations should be subjected to continuous surveillance and should be prompted to provide judicially sound explanations for what they are doing. When a plainclothes police officer runs his car engine for hours outside the house of a gang member at night, he or she should be able to explain how those actions relate to existing European human rights jurisprudence.

These considerations also have geographical dimensions. If a conspicuous surveillance strategy is applied to a case of judicial ambivalence (or to what the police perceive as a judicial vacuum) we are per definition in grey zone territory. Accordingly, if the target of such an operation decides to move geographically – to a new jurisdiction or even to a new country –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must be re-

established subsequent to that migration and a clean slate offered. Inevitably, the longer the stalking goes on and the wider the area it covers , the more the whole operation assumes the character of a purely extra-judicial punitive act with no preventative dimension whatsoever.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a grey-zone, judicially vague (or even extra-judicial) decision from one country serve as basis for the imposition of a global stigma for which individuals are persecuted across the world without once being granted the right to defend themselves before an independent court. It is just plain wrong if the threshold for prosecuting someone in a particular country is higher than for subjecting a person to a global persecution regime based on vague suspicion that has never been tested before any court. If the police choose to create state-sponsored vigilantism, it should at least stay true to the original concept of vigilantism – which may be savage and reactionary, but which at least is limited geographically to a particular location. To use a parallel, declaring someone an outlaw was a common practice in the dark ages. However, medieval culture also had a relatively humane end game in store for outlaws: Exile and a new start.

Finally, it should be an unalienable principle that grey-zone methods like police stalking are only employed as a last resort when other methods that are less invasive in te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exhausted. This is logical both with reference to subsidiarity as a general principle and in view of the basic idea of societal reintegration in modern theories of justice. Indeed, in a number of countries, the police law officially enshrines this kind of gradual approach as a general principle and a duty for the police (Norway being a case in point). There simply cannot be any excuse for making the radical step from vague suspicion to global persecution without even once trying some of the less radical options in the toolbox of the police, including establishing a dialogue through a normal conversation with the suspect. In many cases, a simple verbal warning that a person is about to become the object of the police's interest would make that person think twice about any unusual activity he or she is engaged in, regardless of whether it can be legally justified or not. No one wants conflict with the police if it can be avoided.

Historical perspective and ways forward

In historical perspective, of course, police stalking represents a deplorable step of retrogression from the modern judicial standards that were introduced in the Western world during the age of enlightenment in the eighteenth century. To appreciate just how antiquated some "modern" police stalking methods are, consider the fact that the same French revolutionaries who abolished death penalty by breaking on the wheel (Catherine wheel) limited public shaming offences (e.g. the pillory) to three days maximum. Contemporary police stalking operations typically go on for months or even years!

It seems clear that this sorry reversion to pre-1789 standards of Western policing was spearheaded by big-city undercover police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t is however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s of the last decade – perhaps in combination with an increasingly apathetic intellectual class in the post-2001 period – that the most totalitarian variants have been developed. The way politicians in

numerous European countries support these new police measures is so pronounced that it satisfies the Orwellian definition of a "bully worship" condition: "Where this age differs from those immediately preceding it is that a liberal intelligentsia is lacking. Bully worship, under various disguises, has become a universal religion."

It cannot escape notice that many of the countries that practice police stalking have constitutions that are far less explicit in their protection of basic human rights than the French revolutionary charter was. Today, key judicial human-rights concepts such a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seem to be boilerplate items whenever a third world state turns democratic, but they may well be in need of explicit reinsertion into many "old democracy" constitutions of first-world countries that seem to lazily rely on good reputations instead of actually taking the spirit of the UN and EU human rights articles seriously. In police stalking cases, it is certainly alarming to see how few European citizens are actually aware that extra-judicial punishment by the police is one of the deadliest sins of the modern democratic and liberal state. You can understand it when people who are in a difficult personal position cooperate with the police since they feel they need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But that students, the intelligentsia and even people who may talk in academic terms about human rights should be so prepared to participate raises serious question about the current state of Western liberalism.

So far, the literature on police stalking is limited. Only a few cases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court (the Netherlands has some examples), and so fa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where these cases rightfully belong – has yet to hear any cases. To some extent, this may be so because stalking victims are unwilling or unable to tell their stories to a wider audience. Also, there appear to be considerable efforts on the part of the police to discredit testimonies from police stalking victims. By way of example, there is a whole genre on the internet devoted to "targeted individuals" which probably includes some real victims of police stalking, but which nonetheless may be dominated by impostors seeking to discredit police stalking victims by including some truly unbelievable elements in their stories. Additionally, these cases of police mistreatment are notoriously difficult to document given the extreme asymmetry between the stalker and the stalking victim in cases where it is a powerful state that is the offender.

Perhaps the best way to study modern police stalking then is through language. In this respect, Northern Europe stands out as having a particular potential because of the marked dualism of the behaviour of the police in these countries. On the one hand, the police forces of several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ake part in some of the most repressive stalking operations that are known to the Western world. On the other hand, though, those same police forces are eager to come across as democratic and transparent organisations, which means some of their representatives often go on record in public debate and comment on methods used in stalking operations. Through ambiguous, contradictory and sometimes outright stupid comments, these police officers enable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 police-state mentality has managed a surprising comeback in twenty-first century democracies. They should also offer a vantage point for combating this exceptional threat to the proud and modern rule of law tradition.